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018-10

2009년도 인권논문 수상집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목 차

Ⅰ. 2009년도 인권논문 공모사업 개요 ····· 1

Ⅱ. 2009년도 인권논문 수상작 ····· 11

〈학생부〉

- 평화권을 통해서 본 한국 인권담론 확장과정 연구 ····· 13
  임재성 / 서울대 사회학과
-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 59
  박윤진·임옥석·소주현·박형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 파양(罷揚) 당한 입양아동의 인권 실태 연구 ····· 101
  - 파양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고찰 및 프로그램 제안 -
  서수원 / 서울산업대 · 심미선 / 전북대학교
-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규제를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 방안 ····· 159
  -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이창훈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초등학생 인권의식 증진에 관한 실증 연구 ····· 205
  -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정영희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백서현 / 인천 만석초등학교
- 외국인 유학생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 245
  이상희·전예림·최지혜·남혜령·윤창민 / 경북대학교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 287
  이유리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 '88만원 세대'의 주거권 논의를 향해 ····· 323
  이윤주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일반부〉

- 2007 개정 초등 저학년 교과서를 활용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 탐색 ····· 365
  조기성 / 서울 계성초등학교
  임용덕 / 경기 산본초등학교
  정영찬 / 인천 안산초등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만들기 ····· 407
  -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김영갑 / 부명고등학교
- 금융 채무자의 인권에 관한 고찰 ····· 445
  - 대부업 채무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지현 / 부산 YMCA 시민중계실

I

2009년도 인권논문 공모사업 개요

2009년도 인권논문 공모사업 개요

Ⅰ 목 적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연구 활성화

○ 인권연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국내 인권 지식 기반구축

Ⅱ 추 진 경 과

○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제2009-20호) : 2009. 6. 15. ~ 10. 11. (5개월)

○ 접수일정 : 2009. 9. 1. ~ 10. 11.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응모건수 : 총 44편(학생부 - 33편, 일반부 - 11편)

Ⅲ 심사 및 결과

○ 심사기준 : 인권지향성,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적 일관성, 현장 적용성

○ 시상내역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상금 및 상패

- 최우수상(자유상, 학생·일반부 통합1편) : 상금 300만원
- 우수상(평등상, 학생·일반부 부문별 시상) : 각 상금 200만원
- 장려상(평화상, 학생·일반부 부문별 시상) : 각 상금 100만원

○ 2009년도 인권논문 최종 수상작 : 총 11편

- 학생부 : 8편(우수 4편, 장려 4편)
- 일반부 : 3편(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2편)

※ 2009년도 인권논문은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작품은 없고 학생부와 일반부 접수논문 편수와 질을 고려하여 우수상과 장려상의 편수를 조절하여 시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인권논문 수상작

이름	소속	제목	수상내역
임재성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평화권을 통해서 본 한국 인권담론 확장과정 연구	평등상 학생부 : 우수
박윤진 임옥선 소주현 박형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평등상 학생부 : 우수
서수원 심미선	서울산업대 4학년 전북대학교 4학년	파양(罷養)당한 입양아동의 인권 실태 연구 - 파양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고찰 및 프로그램 제안 -	평등상 학생부 : 우수
이창훈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규제를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 방안 -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평등상 학생부 : 우수
정영희 백서현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인천 만석초등학교	초등학생 인권의식 증진에 관한 실증 연구 -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평화상 학생부 : 장려
이상희 전예림 최지혜 남혜령 윤창민	경북대학교 3학년	외국인 유학생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차원분석	평화상 학생부 : 장려
이유리	건국대 법과대학 3학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평화상 학생부 : 장려
이윤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4학년	'88만원 세대'의 주거권 논의를 향해	평화상 학생부 : 장려
조기성 임용덕 정영찬	서울 계성 초등학교 경기 산본 초등학교 인천 안산 초등학교	2007 개정 초등 저학년 교과서를 활용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 탐색	평등상 일반부 : 우수
김영갑	부명고등학교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평화상 일반부 : 장려
김지현	부산 YMCA 시민중계실	금융 채무자의 인권에 관한 고찰 - 대부업 채무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평화상 일반부 : 장려

인권논문 심사 총평

○ 2009년 인권논문을 심사하면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학생들의 논문공모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인권논문에 투고된 전체 44편 중에서 학생부가 33편이었고 그 중, 16편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일반부에 모두 11편이 접수되었고 4편이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에 비교할 때 학생들의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학생부는 공모 편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부와 작품의 질적 차이도 거의 없어서 좀 더 많은 수상작을 낼 수 있었습니다.

○ 심사과정은 1차 심사에서 적격심사를 하여 수상작의 배수로 뽑았습니다. 2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별로 점수를 준 것을 합계하여 기초 자료를 만들고, 각 심사위원 간에 점수 차가 있어서 순위 표를 별도 집계하여 수상작의 후보범위를 정한 후에 각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상작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렇게 해서 우수상으로 5편 뽑고 장려상으로 6편 뽑았는데, 최우수상을 뽑을지에 대해 상당히 논의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의 후보작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작품은 임재성(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평화권을 통해서 본 한국 인권담론 확장과정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은 평화권에 대한 담론을 잘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돋보였는데 실천성을 좀 더 강화했더라면 최우수상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다른 우수상의 작품에는 조기성 외의 "**2007 개정 초등 저학년 교과서를 활용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 탐색**", 박윤진 외의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서수원 외의 "**파양(罷養)당한 입양아동의 인권 실태 연구**", 이창훈의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규제를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 방안**"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 대체로 수상작에는 아동 인권에 관한 작품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우수상에서 아동 인권교육, 장애아동 인권교육, 입양아동의 파양 등이 그 범주에 속합니다.

인권논문 심사 총평

○ 장려상에서도 아동 혹은 학생인권을 소재한 논문이 많은 것은 참여자가 대학생이거나 교사 등 아동과 함께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규제**" 등을 다룬 논문은 소재의 독특성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 심사위원들은 이번 논문 공모전에 대해서 대체로 해당 분야에 대한 담론을 잘 정리하였지만 실천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각주를 달거나 참고문헌을 정리하는 등 논문작성법에 좀 더 충실하면 좋겠다고 평가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인권논문을 심사하는 이유는 관심 있는 학생과 일반인의 눈을 통해서 인권소재를 발굴하고 인권담론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뜻도 있기에 소재의 다양성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점에서 장려상의 작품 중에서 이상희 외의 "**외국인 유학생 인권**", 이유리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이윤주의 "**88만원 세대의 주거권**", 그리고 김지현의 "**금융 채무자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특색 있는 소재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작품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인권상황을 보다 치열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더라면 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 끝으로 심사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논문 공모사업이 한국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담론을 확장시키고 질적인 고양을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논문을 투고한 모든 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논문공모전에 참가하길 기대합니다.

Ⅳ 발표 및 시상

○ 심사결과 발표 : 2009. 11. 13.(금)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시상 및 사례 발표 : 2009. 12. 1.(화) 14 : 0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Ⅴ 연도별 수상현황

2003년 ▮ 최우수 : 없음

▮ 우수 : 없음

▮ 가작

○ 이덕인(동아대 대학원), 사형제도에 대한 법 감정의 비판적 고찰

○ 정필주(서울대 대학원), 국가정책의 강제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공간선택권

2004년 ▮ 최우수 : 없음

▮ 우수

○ 민지원(고려대 대학원), 국제협약상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 젠더 박해와 그 근거에 관한 연구 : 북한 여성의 난민자격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을 중심으로

▮ 가작 : 없음

2005년 ▮ 최우수 : 없음

▮ 우수

○ 정유진(일본 오사카대 대학원) 경합하는 가치로서 국가안보와 개인의 안전

○ 오시진(고려대 법학과) 국제인권법 중심의 한국양심적 병역거부 논의에 대한 고찰

○ 이해정(이화여대 대학원),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가작

○ 홍성수(영국 런던정경대 대학원), 여성인권의 실현과 법적 규제
○ 박휴용(미국 메디슨 위스콘신대 대학원), 이주노동자들의 언어인권에 대한 생태론적 고찰
○ 박미경(한양대 대학원), 이주노동자협약 가입을 위한 정책 제언
○ 박희정(건국대 법학과), 해외 입양인의 인권보호

2006년 ▌최우수

○ 권미진(한신대), 여성 노숙인에 대한 인권실태 연구 : 사회적 배제와 이중 차별의 관점으로

▌우수

○ 김낙근외(고려대),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족 여성의 인권에 관한 연구

▌가작

○ 이마리아 외(서울여대) 탈성매매여성 지원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연구
○ 김연식(고려대), 노인노동에서 발생하는 노인차별과 그 해결방향
○ 최원근(한국외대), 우리나라 난민의 경제적 빈곤과 난민보호제도
○ 강동일(인권운동연구소), 노인 주거권의 쟁점
○ 김기남(경희대),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인권에 관한 연구

2007년 ▌최우수 : 없음

▌우수

○ 정민수(서울대)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통해 살펴본 노동건강권과 안전조건제도 : 2005년 노말헥산 노출사건에 대한 산업역학적 접근
○ 김푸른샘(한국외국어대부속외국어고),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공부방 인권수업을 중심으로 -

▌가작

○ 안소정 정재숙(한동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제안

2008년 ▌최우수

○ 김정혜(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우수

○ 김동재외 7명(연세대 법학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의한 노동건강권 및 인권침해 : 매장판매원이 겪는 감정부조화로 인한 스트레스 중심으로

○ 장영아외 2명(서울대 대학원), 대학내 장애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 정영훈(국선전담 변호사),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구속기준

○ 김명수외 3인(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 지표 개발-인권으로서 적절한 주거

▌가작

○ 오지윤(대원외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한국의 혼혈문제

○ 김정식(서강대 석사과정) 학생의 선택권보장-0교시 및 방과후 보충학습을 중심으로

○ 최아라 한빛나(성결대), 일반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관계 개선 방안

○ 유성애(한양대 석사과정), 예술창작의 자유와 인권 : 위태로운 외줄타기

○ 김솔(도제원초등학교 교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보장에 관한 연구

Ⅱ

2009년도 인권논문 수상작

• 평화권을 통해서 본 한국 인권담론 확장과정 연구 / 13
•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 59
• 파양(罷揚) 당한 입양아동의 인권 실태 연구 / 101
•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규제를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 방안 / 159
• 초등학생 인권의식 증진에 관한 실증 연구 / 205
• 외국인 유학생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 245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 287
• '88만원 세대'의 주거권 논의를 향해 / 323
• 2007 개정 초등 저학년 교과서를 활용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 탐색 / 365
• 인권 친화적 학교만들기 / 407
• 금융 채무자의 인권에 관한 고찰 / 445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학생부분

임재성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평화권을 통해서 본 한국 인권담론 확장과정 연구



목차



요 약 ····· 16

제1장 서론 ····· 19

제1절 문제 제기 ····· 19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 21

제2장 예비적 고찰 : 평화권을 둘러싼 쟁점들 ····· 24

제1절 권리로서의 평화 ····· 24

제2절 평화권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 27

제3절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논쟁 ····· 30

제3장 대북 인권 압박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평화권 ····· 33

제1절 '한반도 평화권'의 등장 ····· 33

제2절 경합하는 인권과 평화권 우선론 ····· 37

제4장 안보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서 평화권 ····· 41

제1절 평화권에 대한 초창기 문제의식 ····· 41

제2절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저항의 언어 ····· 43

제3절 안보영역에 대한 인권담론의 확장 ····· 48

제5장 결론 ····· 50

참고문헌 ····· 53

요 약

본 연구는 2000년대 한국사회에 등장했던 평화권 담론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인권담론이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 인권운동가들은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 사안들이 '평화권'이라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한반도의 평화권을 침해한다는 논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화권은 아직까지도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권리가 아니며, 권리로서의 효력 역시 불명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왜 '평화권'이라는 낯선 권리를 말하기 시작했을까?

평화권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평화권이 국제기구들을 통해 공인된 '제도'로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 구성되는 과정에는 위로부터의 제도형성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형성되는 흐름 역시 존재한다. 특히 평화권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의 경우에는 후자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역사적 의미에서 인권이란 '천부적'인 무엇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회적 배경 속에서 민중들이 이룬 저항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제3세대 인권으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평화권을 온전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권리가 무엇에 저항하기 위해서 등장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평화권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에서 등장한 평화권 담론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제사회에서 평화권을 둘러싼 쟁점을 예비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역사 속에서 개인의 '평화'는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빈번하게 침해되어왔다. '평화권'은 이 역사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권리'로서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가 더 이상 정치적 계산속에서 유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침적인 인권임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평화권은 강대국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평화가 '권리'로서 인정될 경우 자신들의 무력 사용에 걸림

돌이 될 것이라 판단한 강대국들이 1984년 평화권 선언에 기권했고, 선언 이후 조약으로의 이행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평화권에 대한 담론들이 20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쟁 속에서 등장한 평화권 담론이 있다. 2003년부터 유엔을 통해 이루어진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을 두고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팽팽한 대립이 형성되었다. 진보적 시민사회는 북한 인권의 열악함을 이유로 진행되는 압박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침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평화와 인권의 딜레마 속에서 평화권이 등장하게 된다. 진보적 시민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평화권이라는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평화권 담론은 자유권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대북 인권 압박에 대한 대항담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한 인권 압박의 대항담론으로 등장한 평화권 담론은 인권 내부에도 다양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다양성'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평화권 우선론'으로 이어졌다. '평화권 우선론'의 내부에는 전쟁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모든 인권의 전제조건이기에 평화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 원칙적으로 각각의 인권은 평등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접근방식에 있어서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이 두 입장 모두 그 배경에는 인권에 대한 개입 역시 반드시 '평화적 수단'에 의해야 한다는 '평화주의'가 존재했다.

평화권 담론이 형성된 또 다른 갈래로는 2003년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던 반전평화운동을 들 수 있다. 당시 인권운동가들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던 평화운동의 문제의식을 인권운동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평화권모임'을 구성했다. 이 모임은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했고, 이후 평화권 담론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의 전면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에서는 이전까지의 미군기지 관련 사안에서 등

장하지 않았던 평화권 담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저항의 언어가 '권리 담론'으로 구성되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권리 담론'이 평화권을 통해서 등장할 수 있었다. 평화권 담론은 민주적 개입이 불가능했던 국방·안보영역에 대해서 시민들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 인권운동을 확장했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등과 같이 인권담론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사안을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인권담론이 평화권을 통해서 확장된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 인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평화권 형성과정이다.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인권관(人權觀)에 도전하면서 인권 내부의 다양성을 주장했고, 인권 문제가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반전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평화권이다. 시민들이 가진 평화의 '권리'는 폐쇄된 안보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이 열쇠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인권의 문제로 보지 못했던 전쟁, 군사기지, 군사훈련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인권의 언어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인권 운동의 범위 역시 확장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평화권을 통해 나타난 인권의 확장과정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저항 과정이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선언했지만, 이후 우리가 직면했던 것은 핵전쟁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공포의 평화'였다. 냉전은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안보담론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개인의 평화를 양보할 것을 요구한다. 분단이후 한국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수많은 인권유린이 자행되어왔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인권의 언어와 힘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보문제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앞에 평화권이 서 있다. 이제 평화권이 인권으로서 존중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 시대의 노력에 달려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인권운동에 '평화권' 또는 '평화적 생존권'[1]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이 그 평화권을, 즉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역시 한반도의 평화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28일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7년 3월에 이루어진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나온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의 '평화'가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했다.[2]

평화권은 과연 '인권'일까? 한 사회에서 어떤 것이 '인권'임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왜, 어떤 것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본 연구는 평화권이라는 낯선 권리가 한국 사회에서 인권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하나의 대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이후 한국 인권운동에서 등장한 평화권 담론들 속에서 누가, 왜 평화권을 인권이라고 주장했으며 그것이 한국 인권담론의 확장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은 '천부인권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신성한 권리가 인권이라고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험적 규정은 인권이 역사적인 개

---

1) 평화권(Right to Peace)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권리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용어 역시 통일되어있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도 "Right to Peace" 혹은 "Human Rights to Peace" 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1984년 유엔에서 결의된 평화권 선언에서는 "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국문으로는 "평화권"과 "평화적 생존권"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은 일본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1960년대 이후부터 일본의 사회운동과 학계에서 주되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한국의 "평화적 생존권"이란 표현은 이러한 일본의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권"과 "평화적 생존권" 모두 같은 내용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영문에서의 표현 역시 그 내용상의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없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모두 "평화권"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논의는 최경옥, "日本憲法 第9條와 平和的 生存權의 등장과 문제점", 2008; 서경석,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2004 pp67-69 참조.

2)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념이며,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든다.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카렐 바삭(Karel Vasak)은 세대 개념을 통해서 인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자유권을 제1세대 인권으로, 사회권을 제2세대 인권으로 지칭하고, 평화권·환경권·발전권 등 새롭게 등장하는 권리들을 제3세대 인권으로 표현했다.[3] 이처럼 인권은 태초에 존재한 무엇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가는 무엇으로 봐야 한다.

인권을 역사적인 산물로 파악할 때, 우리는 각각의 인권이 해당 시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민중들이 이룬 치열한 저항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세대 인권인 자유권은 18세기를 전후로 전제정치와 같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고,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었다. 사회권은 19세기 후반이후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형성되었다.[4] 지금은 상식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등장했던 시기에는 급진적이며 불온한 주장에서 출발했던 것이 바로 인권이었다.[5]

그렇다면, 바삭이 3세대 인권이라고 주장했던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 등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학자들은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평화유지, 식민지 민족들의 자유보장, 1세계 국가들과 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격차 해소, 환경보존 등과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3세대 인권개념의 등장 배경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은다.[6]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자연스레 권리의 출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84년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7]이 유엔 총회에서

3) Karel Vasak, "*A 30-year Struggle*", 1997 p29. 이러한 세대개념을 통해서 인권의 역사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는 있지만, 세대개념에 내재한 다른 관념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대체되는 것과는 다르게 제1세대 인권이라 불리는 자유권이 제2세대 인권인 사회권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각각의 권리가 자연스럽게 이후의 권리를 등장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 세대 개념과 그것의 야기할 수 있는 오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Wellman, "*Solidarity, the Individual and Human Rights*", 2000 p641 참조.

4) Wellman, 앞의 글, p640.

5) 조효제, 인권의 문법, 2007 p50.

6) Wellman, 앞의 글, pp640-641; Kim, "Human Rights to Peace in International Law", 2007 pp18-26.

7) A/RES/39/11, 본 논문에서는 1984년 선언된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에서 "Peoples"을 "인류"라고 번역하고자 한다. 이는 김형민(2001)의 번역을 따르는 것인데, 평화권이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의 권리이자 집단의 권리라는 점에서 그 권리의 주체인 "Peoples"를 "인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언의 내용 중에서 "[T]he peoples of our planet have a sacred right to peace"라는 표현의 문맥을 본다

선포될 때 강대국들은 표결에서 기권하면서 평화권의 등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8]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국제인권규범으로서 평화권의 제도적 확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강대국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유효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국제사회에서 평화권 논의가 지체되는 모습과는 대비적으로, 2000년 이후 한국 인권운동에는 '평화권'이란 낯선 권리가 주요한 인권운동의 화두로 등장했다. 평화권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인권이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인권의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했고, 해당 사안에 인권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운동과 담론의 영역 역시 확장되었다. 제도적 영역에서는 평화권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합의조차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임에도, 왜 한국의 인권운동은 평화권을 실천의 언어로 선택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평화권이 등장하는 담론들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인권담론이 확장되는 과정으로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 연구방법

평화권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관련된 소수 연구들도 '평화'가 제도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 자체를 두고 찬반으로 대립하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9] 평화권을 규정할 때 핵심적인 권리의 주체나 내용, 보장 메커니즘과 같은 부분들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평화권 연구도 비슷한 상황인데, 국제법이나 헌법의 관련 조항을 통해 평화권에 대한 규범적 연원을 모색

면 더욱 그렇다. 이근관은 이 선언에서 사용된 "Peoples"를 "민족/인민"(2006 : 196) 이라고 번역했는데, 평화권의 특징상 민족은 권리의 주체중 하나일 뿐이며, 인민은 복수로 표현된 "Peoples"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8) Roche, "*The Human Right to Peace*", 2003 p124.

9) 평화권을 더욱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연구로는 Roche, 앞의 책; Bilder, "The Individual and the Right to Peace", 1980; Isakovic, "Peace and/or Human Rights?", 2000; Fried, "The United Nations' Effort to Establish a Right to the Peoples to Peace", 1990; Alston, "Peace as a Human Right", 1980 등이 있다. 이와 대립적으로 평화권이 인권으로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기존의 인권과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연구로는 Wellman, 앞의 글; Forsyth, "*Human Rights and Peace",* 1993; Alston, "Conjuring Up New Human Rights", 1984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후 2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10] 연구가 지체되는 중요한 원인은 1984년 평화권 결의 이후 뚜렷한 제도적 진전이 없다는 것이겠지만, 기존 연구에서 평화권을 접근하는 방식이 제도적 측면에만 한정되었다는 점 역시 또 다른 원인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편향은 평화권이라는 인권을 온전히 연구함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 인권이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확립되고 보장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인권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내부에는 '제도'라는 위로부터의 힘뿐만 아니라 '실천'과 '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권연구가 이정은은 이를 프랑스의 사회학자 삐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구조화된 구조'와 '구조화하는 구조'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한다. '구조화하는 구조'로서의 운동은 제도로 결정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킨다. 이와 함께 '구조화된 구조'인 현실의 제도 역시 이후 운동의 출발점이자 도구가 되는 상호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11] 인권 내부에는 이 양자가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권이 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긴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온전하게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담론분석을 통해 인권에 접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평화권'을 둘러싸고 등장했던 '발화'들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의 사회적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제도와 운동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장(場)에서 서로의 '말'을 가지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12] 담론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투쟁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작업은 인권을 구성하는 제도와 운동의 변증법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전략이 다.[13] 특히 평화권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

10) 평화권에 관한 국내의 학술적 논의는 크게 두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평화권의 형성과정을 바탕으로 나름의 정의(定意)를 모색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이근관, "국제적 인권으로서의 평화권에 대한 고찰", 2006; Kim, 앞의 글 등의 있다. 또 다른 흐름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내재한 평화주의 원리를 통해서 평화권이 현행 헌법이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을 주장하는 이경주,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와 '평화국가'만들기", 2008 의 연구가 있다. 이경주의 연구는 평화권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을 주목하는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김형민, "평화와 인권", 2001 은 구조적 평화주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평화권의 의의를 사회윤리학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평화권과 관련한 사회운동의 성과와 비교해본다면, 관련한 국내의 학술적 성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1) 이정은, "해방 후 인권담론의 형성과 제도화와 관한 연구", pp4-17 2008.

12)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법/제도, 실천운동, 담론의 세 가지 차원을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정은, 앞의 글, pp13-18 참조.

13) 본 연구에서 담론(discourse)이라는 용어는 하버마스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인권의 경우에는 제도와 운동 모두 구체적이거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에 담론을 통한 연구방법은 더욱 적절하다. 구체적으로는 언론기사나 사회단체 성명서, 토론회, 법원판결문 등에 등장하는 평화권 담론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풍부한 해석의 근거를 얻기 위해서, 당시 인권운동 영역에서 평화권을 주도적으로 고민했던 활동가들과의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서 분석의 근거가 되는 당시의 맥락과 발화자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인터뷰의 대상은 인권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2003년부터 꾸려진 '평화권모임'에서 활동한 이들로서, 당시 인권운동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평화권을 고민하고, 담론을 직접 생산한 주체들이다.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겠지만, 주되게는 해석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한다.[14)]

2. 연구대상

2000년 이후의 한국사회의 평화권 담론은 크게 세 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인권을 명분으로 한 물리적 개입을 반대하면서 등장한 평화권이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인도적 개입'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다른 하나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을 전후로 해서 등장한,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구성된 평화권이다. 이 맥락 속에서 평화권 담론은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에서 본격화되었고, 평택 문제가 봉합된 이후에도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의 사안 속에서 계속 이어졌다.

담론이 등장한 시간상의 순서를 본다면 반전평화운동의 평화권 담론이 약간 앞서 있으나 비슷한 시기적 배경을 가지기에, 상호간의 영향도 존재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각각의 흐름 속에서 평화권이

담론을 구별하는데, 논증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한 의사소통의 형태를 담론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개별 담론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분류체계 속에 위치해 있으며, 사회적 논의지형을 반영하고 있다. 담론에 대한 하버마스의 자세한 논의는 Habermas, "사실성과 타당성", 2007 참조.

14)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존재했던 '평화권모임'은 활동 과정에서 구성원의 변화가 많았다. 심층면접은 '평화권모임'에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활동한 정용욱(前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참여했던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어떻게 등장했고, 이후 인권담론의 확장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각각의 담론의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노무현 정권시기 진행된 개헌 논의 속에서, 시민사회가 평화권을 기본권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등장한 평화권 담론이 있다. 앞선 두 가지의 사례가 저항의 언어로 평화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마지막은 평화권의 제도화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논의에서 제출된 평화권 담론은 내용이 단편적이며, 선언적 의미를 넘지 못하기에 별도 분석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제2장 예비적 고찰 : 평화권을 둘러싼 쟁점들

1984년 UN에서 평화권에 대한 선언이 결의되었지만, 평화권은 여전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권리이고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등장했던 평화권 담론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평화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평화권의 의미와 국제사회 속에서 평화권이 놓여있는 정치사회적 지형을 파악해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평화권이 가지는 성격을 분석하는데 나름의 준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권리로서의 평화

전쟁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오랜 염원이며,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국제사회의 노력들은 모두 세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라는 것에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엔헌장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유엔의 주요 목표임을 천명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역시 전문에서 세계 평화의 기초를 위해 인권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평화가 하나의 ‘권리’로서 규정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인류는 전쟁의 공포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선언과 “인류는 평화에 대한 권리, 평화권을 가지고 있다”는 언사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15] '평화'가 '권리'로 구성되는 순간 그 권리의 주체와 객체, 보장체계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즉 '평화를 이뤄야한다'는 '정의(正意)의 문장'이 아닌 평화권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권리의 보장을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제도적 규범을 담은 '권리의 문장'이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16]

그렇다면 왜 평화를 권리로서 주장하는가?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권리 이론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다. 드워킨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가진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권리의 정의에 따르면 그 어떤 사회적 목표로도 권리를 찍어 누르지 못한다"고 말했다.[17] 그가 정의하는 권리란 그 어떤 패로도 누를 수 없는 '으뜸패(trump)'이며, 다수의 이름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소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평화를 권리로서 말한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나 다른 명분으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김기남은 평화라는 '가치'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언제든 제한될 수 있는 '취약한(vulnerable)' 것이지만, '평화권'은 법적인 보호를 수반하는 권리이기에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진다는 대비를 통해서 평화권이 가진 의미를 설명한다.[18] 인류 역사에서 개개인의 '평화'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빈번하게 침해되어왔으며,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평화가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19] 평화권은 그러한 역사에 대해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인권 헌장에서도 외부의 위협을 상정하며 국가안보만이 최우선시 되었던 아시아의 역사를 지적하면서 평화권을 유보될 수는 없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20]

평화권이 제도화된 권리로서 작동하는 사례는 서유럽에서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일본의 '평화적 생존권'을 들 수 있다.[21]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가 안보를 이

15) 이근관, 앞의 글, p197.

16) 김도균, "권리의 문법 : 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2008 p147.

17)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1977 p92.

18) Kim, 앞의 글, pp15-16.

19) 정유진, "경합하는 가치로서의 '국가안보'와 '개인의 안전'", 2005.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 역시 국가 안보로서 유보되었던 개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맥락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20) 아시아 인권 헌장, "4-4 … 외세의 강점 위협에 대항하여 주권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 때문에 개인의 안정과 평화로운 생활의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

21) 서경석, 앞의 글.

유로 개인의 평화가 유보될 수 없다는 평화권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을 시작으로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는데, 스스로의 양심에 반하는 국가의 군사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병역거부권은 자유권의 맥락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 중 하나로 이해되는 측면이 컸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적 행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평화권이 부재했던 기존의 권리체계에서 자유권과 친화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거부권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안보 우선성에 대항하는 개인의 권리로서 본질적으로 평화권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병역거부는 반전운동의 대표적인 실천방식으로 존재해왔으며, 개인의 고유한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평화운동의 측면으로 확대되가고 있다.[22] 평화권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병역거부권이 평화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며, 평화권을 통해서 병역거부권이 새로운 정당성을 가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23]

병역거부권이 국가폭력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는 소극적 성격을 띤다면,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일본에서의 평화권은 안보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저항이라는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일본 시민사회는 1960년대 초반부터 비무장과 전쟁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와 평화적 생존권을 담고 있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69년 나가누마 주민들이 항공자위대의 미사일기지 설치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낸 소송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1973년 9월 7일 후쿠시마 판사는 미사일 기지 설치가 유사시 상대국의 첫 번째 공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4] 이 판결은 평화권을 통해서 "재판받는 자위대"[25]라는 상징과 함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을 보

22) 임재성,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병역거부운동 연구", 2009 p3. 병역거부권은 역사적으로 종교적 자유에서 기원하지만, 평화운동으로서의 측면도 존재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서독 기본법 제4조 3항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군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병역거부권은 전범국으로서의 반성을 담은 평화권의 맥락에서 병역거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후 독일사회에서 병역거부권에 대한 논의는 문수현, "전후 서독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2009 참조.

23) 이경주, 앞의 글, p36; 이근관, 앞의 글, pp204-205.

24) 이경주,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 투쟁", 2006 pp98-100. 이 판결은 이후 항소에서 각하되지만, 당시 일본의 사회운동과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5) 최경옥, 앞의 글, p169. 최경옥은 수많은 인명이 살상된 일본의 전쟁경험이 국가와 개인의 기본권 내지 자위권

여주었다.

이후 살피게 될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권이 논의되는 과정과,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평화권 담론이 등장하는 과정 모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쟁점은 '권리'와 '인권'으로서 평화가 인정받을 수 있냐는 문제였다. 인권이 가진 불가침적 성격으로 인해 평화권을 주장하는 시도들은 빈번히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

제2절 평화권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1. 평화의 '권리'를 반대하는 이들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권리로서 접근한 논의는 1978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적 생존(Life in Peace)을 위한 사회적 준비에 관한 선언(A/RES/33/73)'을 결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결의는 침략전쟁 금지, 모든 국가의 자결권 보장, 군비 경쟁의 제거 등을 평화로운 삶을 위한 조건으로 보았다. 이후 유엔 총회는 1984년 11월 12일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A/RES/39/11, 이하 '평화권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a sacred right to peace)를 갖는다"고 천명했다.[26] 또한 "전쟁이 없는 삶이 모든 나라의 물질적 복지, 국가의 발전과 진보, 권리와 자유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 요건"[27]이라는 점을 선언했으며, "평화권을 지키는 것이

에 대해서 분리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개인의 평화적 생존권으로까지 발전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전쟁경험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국가안보를 개인의 안보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이 분석은 평화권이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국가안보와 개인의 평화에 대한 동일시를 극복해야 한다는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26) 평화권을 논의함에 있어서 '평화'의 정의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평화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일반성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0세기 후반 갈퉁으로 대표되는 비판적 평화연구의 흐름 속에서 '평화'의 개념이 '적극적 평화'로 확장되면서 평화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권에서 '평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념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권이 실제 규정하는 영역을 통해서 평화의 범위와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84년 UN의 평화권 선언이나 이후 관련된 결의안들, 실제 평화권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담론들을 살펴볼 때, 평화권에서의 평화는 전쟁을 비롯한 군사적 폭력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갈퉁의 평화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적극적 평화'보다는 '소극적 평화'에 가깝다. '평화'개념이 가지는 일반성에 대해서는 Carter, "*Peace Movement*", 1992 p13, 갈퉁의 평화개념에 대해서는 Galtung,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2000[1996] 참조.

27) "[L]ife without war serves as the primary international prerequisite for the material well-being, development and progress of countries, and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and fundamental human freedoms proclaimed by

국가의 근본적인 의무”[28]라고 규정했다. 이는 평화권이 유엔의 이름으로 공식화된 최초의 선언이며, 이후 평화권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평화권 선언’ 이후 평화권의 진전은 매우 더딘 상태이다. 선언으로 채택된 이후 10년 안에 논의들이 조약으로 성안되어 총회에서 채택되고, 이후 조약 비준국을 받기 시작하는 일반적인 인권 관련 조약의 이행 과정에 비춰본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는 사실 ‘평화권 선언’이 결의될 때부터 예정된 일이기도 했다. 평화권 선언이 채택될 때 92개국의 찬성이 있었지만, 서구 다수의 국가들을 포함한 34개국이 투표를 거부함으로서 선언 자체에 큰 무게가 실리지 못했다.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선언의 내용에 부담을 느꼈던 서구 국가들이 기권을 했던 것이다.[29]

‘평화권 선언’을 두고 진행되었던 여러 과정들의 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당시 이 선언을 두고 존재했던 긴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4월 4일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권 선언’ 이후 각국에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30] 1986년 8월 5일 호주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이는 사회주의권 국가 혹은 저개발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유일한 응답이었다. 답변은 평화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었다. 평화를 다른 어떤 인권보다 우선시하고, 그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at any price)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로 상정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unbalanced) 시각이라는 내용이었다. 호주는 ‘평화권 선언’의 표결에도 기권 했는데, 국제적 관행으로 볼 때 호주의 의견은 당시 표결에 기권했던 서구 국가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1]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이후 평화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1999년 유엔에서 진행된 “평화의 문화를 향한 행동 프로그램 선언 초안”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평화가 인권의 범주로 고양되어선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

the United Nations.”

28) “[T]he preservation of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and the promotion of its implementation constitute a fundamental obligation of each State.”

29) Roche, 앞의 책, p124.

30) 이에 대해 응답을 한 국가들은 대부분 저개발(underdeveloped) 국가들이었으며 평화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내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 역시 답변에서 평화권에 대해 적극적 찬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눈이 띈다. 보다 자세한 각국의 답변내용은 A/45/546, A/45/546/Add1, A/41/625/Add2 참조.

31) Fried, "The United Nations' Effort to Establish a Right to the Peoples to Peace", 1990 pp26-28.

전쟁을 시작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32] 만약 평화가 침해될 수 없는 '권리'로 구성된다면, 이제까지 예외의 영역으로서 존재했던 국가의 전쟁관련 행위에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핵무기 보유국이나 서구의 강대국들은 이러한 제약이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인 무력행사를 제한할 것이라 본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후 유네스코에서 이루어진 평화권 논의에서도 이어진다. 1997년 당시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이었던 마이어(Mayor)는 냉전 이후 계속되는 이라크, 소말리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등에서의 비극을 보면서 평화권 선언의 초안을 준비했다. 1997년 11월 6일 "평화권에 관한 오슬로 선언 초안(Draft Oslo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 to Peace)'이 등장했을 때 유럽 국가들은 평화권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남반구 국가들은 북반구 국가들이 자신들의 무기 산업을 지키기 위해 평화권에 반대한다고 야유했다. 평화권을 인권이 아닌 다른 무대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는데, 이 역시 평화가 권리로서 규정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33]

2. 계속되는 평화권 형성 노력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평화권을 국제적 인권으로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은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도에 유엔 총회는 "평화권을 증진하기 위한 결의(A/RES/57/216)"를 채택했으며, 2004년부터는 매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권을 온전하게 향유하기 위한 핵심적 요구로서 평화(A/RES/58/129)"[34]라는 이름의 결의안을 통해서 평화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평화권에 관한 워킹 페이퍼(Working Paper)를 2010년까

32) Roche, 앞의 책, p129.

33) Roche, 앞의 책, pp125-129. 이 회의에서 파라과이 대표는 부족한 자원들이 모두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남반구 지역에게 평화가 더욱 절실하며, 이것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립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34) "Promotion of peace as a vital requirement for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all." 이 결의안은 2003년의 평화권 증진 결의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평화권(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이 결의문 제목에서 빠졌고, 각 나라가 평화권의 행사와 증진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ensur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and its promotion) 역시 탈락되었다. 2004년부터 평화권 증진 결의안은 인권이사회에서만 결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평화권'이 명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국가들과 평화권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타협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지 준비하기로 결정했다(A/HRC/AC/3/L.4). 이 워킹 페이퍼에는 평화권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 권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

유엔을 통한 평화권 형성과정이 보이는 지지부진함과는 대비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평화권을 선언하기도 전인 1981년 "아프리카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에서 "모든 인류는 국가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적 수준이지만 독자적으로 평화권을 개념화한 것은 이 헌장이 최초이다. 이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평화권 형성을 위해 관련 결의안들의 초안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갔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지역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1998년 선포한 "아시아 인권 헌장"에 평화권이 규정되어있다.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헌장이지만 평화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 헌장은 오랜 기간 식민통치와 국가폭력의 그늘 아래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아픔이 평화권이 요구되는 배경이라고 말한다. 이 선언에서 평화권은 경찰과 군대를 비롯해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된다. 평화권의 핵심인 불가침성 역시 외부의 위험이나 경제 성장을 빌미로 개인의 안전과 평화로운 생활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35]

제3절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논쟁

1. 권리의 모호함과 절차적 문제점

평화권을 비롯한 제3세대 인권은 기존 인권과 여러 가지 상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징들을 두고 많은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비판

35) 아시아 인권 헌장에서 평화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4-1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 사회가 심하게 군사화되어 모든 문제가 폭력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나 군부가 가하는 그 어떠한 위협이나 공포로부터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4-2 …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5 …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개발 정책과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막대한 공공자금을 무기구입에 유용한 것이다.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 시설(흔히 외세의)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왔다."

중 대표적인 것은 이것이 '인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데이비드 포사이드(David P. Forsyth)는 제3세대 인권이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법적 원칙으로 공식화되지도 않았으며, 권리들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평화권을 예로 들면서, 평화권에는 자기 방어를 제외한 폭력의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 특히 개전권(開戰權, jus as bellum)을 강조하는 국제안보법(international law of security)을 넘어서는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좋게 말해봐야 기존에 인권들로부터 파생된 혼합물에 불과한 것이다.[36]

새로운 권리로서의 독자적인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필립 올스턴(Philip Alston)은 유엔총회가 '레토릭(rhetoric)'을 '권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권한의 정당성은 총회가 유엔 헌장 기구로서 가진 법적인 지위에서도 기인하지만, 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이 담보된다는 점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평화권의 경우 여러 위원회나 총회에서 '선언'되기만 했을 뿐, 내용은 물론이고 지위나 구성에 대한 토론이나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을 근거로 올스턴은 평화권이 권리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에 가까울 뿐이라고 비판한다.[37]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연대의 권리(solidarity rights)'라고 규정되는 제3세대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제1세대와 제2세대 인권에서 권리의 주체였던 '개인'이 아닌 '집단'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칼 웰맨(Carl Wellman)은 '연대의 권리'는 아직 미숙한(premature)한 것이라고 본다. 개인을 넘어서 다양한 결사체들에게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모색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집단적인 의무가 요구되는 사안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권리의 출현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38]

제3세대 인권 일반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흐름으로, 평화권이 현실에서 과연 실효

---

36) Forsythe, "*Human Rights and Peace*", 1993 pp3-7.

37) Alston, "Conjuring Up New Human Rights", pp608-609 그는 새롭게 등장한 인권들이 국제사회에 충분히 토론되지도 않은 채 인권의 목록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인권이라는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38) Wellman, 앞의 글, pp650-656.

성을 가질 수 있겠냐는 회의도 존재한다. 평화권이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의무'가 지워져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포사이드는 군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대전이 일어난 역사를 언급하면서 현재 국제정치의 역학상 평화권이 말하는 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39] 웰맨 역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국가만이 국제관계에서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진단한다.[40]

2. 탈역사화된 인권관(人權觀)에 대한 도전

제3세대 권리에 대한 비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1세대 인권을 '이념형'으로 사고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인권이 초역사적으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장구한 인류사를 통하여 계속된 투쟁과 노력의 결과로 그 승인을 쟁취한 역사적 형성물"[41]임을 이해한다면, 제1세대 인권을 탈역사화 시켜서 절대화하는 것은 인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바삭은 제3세대 인권이 가진 특징들을 통해서 기존의 인권관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새로운 권리가 가진 연대성이 개별 국가를 통해서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기존 인권관의 치명적인 결점과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보완해줄 것이라고 믿었다.[42]

바삭의 평가처럼 제3세대 인권이 기존 인권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가진 권리라면, 자유권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현실에서 이미 '개인'만을 인권의 주체로 상정하는 기존 인권의 틀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법상에서 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이나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 집단(minority group)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집단이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43] 또한 국가 단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국가 중심의 권

39) Forsythe, 앞의 책, p9.

40) Wellman, 앞의 글, pp656.

41) 이근관, 앞의 글, p202.

42) Karel Vasak,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Human Rights*" Vol. 1, 1982.

43) 이근관, 앞의 글, pp201-203.

리 보장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고정관념에 근거한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색이다. 비판론자들 역시 대부분 현재의 제도적 논의 수준에서 평화권을 '인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는 것이지, 평화권이 요구되는 상황과 새로운 권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84년 '평화권 선언' 이후에 평화권이 가진 구체적인 내용과 보장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것은 사실이다. 평화에 대한 당위적인 필요성을 넘어서서 권리로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필수적인데도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평화권이 인권으로서 가지는 결정적 약점이다. 따라서 평화권을 비롯한 이후 제3세대 인권에 관한 연구들은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예비적 고찰을 통해서 권리로서 평화권이 가진 보편적 성격과 국제사회에서 평화권의 형성을 놓고 벌였던 대립, 그리고 '연대의 권리'인 제3세대 인권으로서 평화권을 둘러싼 쟁점들을 확인해보았다. 이제 본 연구는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평화권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특히 인권운동은 왜 평화권을 주장했으며, 그 평화권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평화권은 인권담론 확장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제3장 대북 인권 압박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평화권

제1절 '한반도 평화권'의 등장

1. 평화와 인권의 딜레마

1995년 이후 북한의 대기근과 연이은 탈북자 증가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과 권고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5년에는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44] 이에 대해서 북한은

국제 사회가 인권을 명분으로 체제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한 내에서도 사회적으로 팽팽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평화권' 담론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당시 한국 인권대사직을 맡고 있었던 박경서는 2006년에 이루어진 한 강연에서 "북한 인권을 논할 때는 우선순위를 한반도 평화권에 두고 … 그 다음에 시민적·정치적 자유권과 사회권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45] 인권대사로서 2005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표단으로 참여했던 그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권 우선론'을 제기한 것이다.

박경서 인권대사의 '한반도 평화권 우선론'이 제기되기 전부터 진보적 시민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46]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의 발화 속에는 아직 '평화권'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높인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을 명분으로 평화가 침해될 수는 없다는 원칙적 입장이 나타났을 뿐이다. 또한 한반도 혹은 북한의 특수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되었다. 진보적 시민사회가 남한의 인권문제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것이었다.[47]

인권과 평화가 상충하는 진보적 시민사회의 딜레마에 대해 평화운동가인 정욱식은 "북한 인권 문제가 한반도 정치에서 갖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인권 문제의 적극적인 거론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48]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일 수밖에 없는데, 북한 정권의 특성상 이러한 압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이 속에서 진보적 시민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온전한 입장을 제출하지 못했다.[49]

---

44) 김원식, "북한인권 담론의 규범적 논거들에 대한 검토 : UN의 개입에 관한 국내 시민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2006 p76.

45) 연합통신, 2006년 1월 19일.

46) 참여연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2005년 2월 11일.

47) 장은주,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2009 p286.

48)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2005 p20 재인용.

49) 앞의 책, p20.

2. 평화권을 통한 프레임의 재설정

진보적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본격적으로 표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평화권' 담론이 등장하게 된다. 2005년 11월 30일 진보적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50] 워크숍을 통해서 인권단체들은 "평화적 생존권 문제는 모든 인권의 전제 조건"[51]라며 평화권을 인권운동 담론 속에 등장시켰고, 평화권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인권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모순임을 지적했다.

워크숍을 주도한 인권단체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주도해온 보수단체들의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식량권과 평화권 범주에서 더욱 논의되어야 한다"[52]고 주장했다. 진보적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 평화권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북한 인권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했다.[53] 평화권을 통해 인권에는 자유권을 넘어서는 다양한 권리들이 있으며, 그 각각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대항담론이 구성된 것이다.

진보적 시민사회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대의 앞에서, 그 정치적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적절한 반론의 언어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가치로서의 '평화'가 권리의 영역에서 '평화권'으로 구성되자, 인권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인권인 평화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모순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평화와 인권의 대립에서 인권 내부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권리간의 문제로 프레임[54]을 재설

50) 이 워크숍은 6개의 시민단체가 주도했는데, 구체적인 단체명은 다음과 같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51) 한겨레, 2005년 11월 29일.

52) 일다, "북한인권, 제3의 시선이 필요하다", 2005년 12월 6일.

53) 국민일보, "'북한 인권 개선책'양 기구 입장차… '北인권-식량지원연계'…'평화정착 우선'", 2005년 11월 25일.

54) 본 연구에서 '프레임'이라는 개념은 로버트 벤포드(Robert Benford)와 데이빗 스노우(David Snow)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운동 프레임 이론에 기대고 있다. 벤포드와 스노우는 사회운동조직이 잠재적 지지자들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대상에게 전략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프레임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사회운동조직이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면서 능동적으로 창출해 나아가는 발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한 것이다. 평화운동가 이준규는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평화권'이 대항담론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

> "북한 인권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한반도 혹은 북한의 특수성에 대해 많이 강조한다. 그러나, 설사 특수한 상황을 설명할 때도 '보편적인 인권의 언어'로 발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군사적 대결과 안보상황을 말할 때도 '평화권'과 같은 인권의 논리를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5]

이준규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등장한 평화권이 보편적인 인권의 언어로서 가진 힘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시민사회가 권리로서의 평화를 대항담론으로 선택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특수성이나, '평화'에 대한 강조가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명분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하기 힘들었다면, 평화권을 통한 대항담론은 "보편적인 인권의 언어"로서 구성되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평화권을 통한 대항담론은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적 시민사회의 논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2000년에 인권과 평화의 딜레마를 토로했던 정욱식은 2006년 11월 17일 "북한에게 가장 절실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권고나,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평화권과 개발권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자유권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56] 평화인권단체들이 2007년 3월 20일에 낸 성명서에서도 그간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북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권과 발전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57]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담론을 비판하며 형성된 평화권 담론은 자유권에 갇힌 한국의 인권담론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박경서 인권 대사는 "인권에는 자유권, 사회권 외에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까지 있다. 자유권만을 인권으로 보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58]고 했는데, 이러한 담론은 자유권에 집중되어온 기존의 인권담

논의는 Benford, Robert and Snow, David,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2000 참조.

55)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과 북한인권정책의 방향", 2006년 11월 27일.

56) 오마이뉴스, "북한 인권, '이름 불러 망신주기'는 이제 그만", 2006년 11월 20일.

57) "제 4차 유엔인권이사회 북 인권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평화인권단체 입장", 2007년 3월 20일.

58) 프레시안, "한반도 평화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배우자", 2008년 5월 4일.

론이 가진 폭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서보혁은 보다 명확하게 "북한 인권을 시민·정치적 권리로만 좁혀서 보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냉전시대 미소가 합의하지 않아서 국제인권협약으로 결의되지 않았지만, '평화권'은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59]

제2절 경합하는 인권과 평화권 우선론

1. 복수의 인권, 충돌하는 보편성

평화권 담론이 자유권으로 한정된 기존 인권담론을 비판하면서 인권의 폭을 넓혔지만, 이 확장은 곧 새로운 쟁점에 직면했다. 그것은 각각의 권리가 대립할 때 우선순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박경서 인권대사는 "한반도 평화권이 여타의 인권들보다 먼저 성취돼야 한다"[60]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특성상 평화권이 다른 인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들먹이고 '평화권'이 인권에 우선한다는 궤변"[61]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평화권 담론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인권과 평화라는 대립을 넘어서서 '자유권'과 '평화권' 이라는 인권간의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했다. 그러나 이 전환은 보편적 성격을 지닌 인권들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하는 또 다른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대항담론으로서 평화권 담론의 요체는 자유권을 앞세운 인권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인권인 평화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역으로 평화권을 이유로 자유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평화권이 무슨 의미"[62]가 있냐는 비판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59)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과 북한인권정책의 방향", 2006년 11월 27일.

60) 연합통신, 2006년 1월 19일.

61) 문화일보, "[사설]盧정보, 유엔 北인권결의에 또 비겁해선 안된다", 2006년 11월 11일.

62) 동아일보, "[사설]인권대사의 북한 인권觀 문제 있다", 2006년 1월 21일.

그러나 이 딜레마에 대해 평화권을 발화했던 이들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평화가 모든 인권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요건 속에서 평화권이 여러 인권 중에서도 '으뜸패(trump)'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63] 이러한 인식은 평화권 담론의 효과를 단지 인권의 폭을 확장한 것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다수의 권리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평화권 우선론'을 제기하면서, 권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다.

'평화권 우선론'은 결이 다른 두 개의 담론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첫째는 앞서 살펴본 박경서 대사나 인권단체들의 주장처럼 평화권을 모든 인권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이 담론 속에서 평화권은 다른 권리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하는 위치를 점하게 된다. 전쟁 혹은 군사적 폭력 하의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그 어떤 상황보다 극심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보편성이라는 인권의 본질적 전제와 상충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흐름은 이러한 한계를 피하기 위해서, 인권 자체의 우선순위는 존재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정부의 접근방법으로서는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담론이었다. 진보정치인인 금민은 "평화인권세력은 원칙적으로 인권보편주의"에 입각해야 하기에 모든 인권이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 일본, 한국의 정부당국에 대하여 평화인권세력이 요구해야 할 원칙은 역설적으로 단계적 접근의 원칙"이며 평화권이 "제1순위"라는 일견 모순된 논리를 펼쳤다.[64] 북한 인권 연구자인 서보혁 역시 "인권의 범주가 다양하지만, 원칙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없다. 동시에 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어떤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인권 로드맵도 그릴 수 있을 것이다"[65] 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담론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적 접근과정에서는 단계론을 취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두 가지의 흐름은 일견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의 담론

63) 이근관, 앞의 글, p217. 1984년 '평화권 선언'을 반대한 호주가 평화권이 모든 인권에 우선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 역시 이러한 쟁점을 담고 있었다.

64) 프로메테우스, "북한주민의 인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권'의 주권, 한반도 평화 : 평화진보세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II) 평화진보세력 및 평화인권세력의 입장", 2006년 1월 31일.

65)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과 북한인권정책의 방향", 2006년 11월 27일.

적 위치나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두 담론 모두 평화권을 한반도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합하는 인권의 상황에서 평화권이 우선시할 수 있었던 판단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배경을 통해서 한국의 인권담론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2. 평화주의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인권'

유엔의 평화권 선언은 냉전체제 속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모색이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평화권 담론은 '인도적 개입'이 가진 폭력성에 대항하기 위한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등장했다. 평화권 담론은 한국 인권 담론의 폭을 넓힌 것을 넘어서서 평화주의라는 가치를 인권 담론 속에 필수적인 원칙으로 세우고자 시도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이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은 무력 개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된 주권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오래전부터 그것의 무력사용이 정당한가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다.[66] 게다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벌어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통해서 국제사회는 인도적 개입이 가진 정당성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을 목격했다.[67]

이 속에서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진 폭력성을 예감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던 한 관계자는 북한 문제를 '이라크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군사침략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인권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섬뜩한 이야기다."[68] 이러한 우려는 북 인권에 대한 극단적인 정치적 접근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력 선동'으로 보일 수 있다"[69]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

66) 모가미 도시키(最上敏樹), "인도적 개입 :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2003.

67) 장은주, 앞의 글, p288.

68) 한겨레, "북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위하여", 2005년 4월 25일.

69) "제 4차 유엔인권이사회 북 인권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평화인권단체 입장", 2007년 3월 20일.

평화권 담론은 '인권개선'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화주의를 강조했다. "전쟁은 개인들의 인권을 유린한다. 인권을 위한 전쟁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평화권, 곧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유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70]는 것이다. 평화권 담론의 평화주의는 그것을 비판한 담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평화권이 유엔 헌장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폭력행위 자체를 금기시 할 경우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폭력범을 다루기 위한 국가독점폭력, 즉 공권력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히틀러나 김정일 정권과 같은 망나니 정권의 비행을 순전히 도덕적 호소로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71]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담론의 대립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인권'을 주장하는 '평화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당한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정전론(正戰論)'간의 대립이었다고 볼 수 있다. 평화권 담론은 평화주의를 통해서 무력행사 정당화 논리에 대항했다. "인권보편주의는 평화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무력사용을 통한 개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인권보편주의는 평화주의이며, 무엇보다도 국가 간 전쟁에 대한 반대이다."[72] 평화적 수단에 의한 인권의 강조는 자연스레 평화권을 여러 인권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그 어떤 명분으로도 유보될 수 없는 권리로서 위치 지웠다. 그리고 평화권 담론은 평화주의를 인권담론 속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세우고자 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압박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평화권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평화권 담론은 자유권에 한정되었던 기존 인권관념을 확장시켰으며, 복수의 인권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평화권 우선성을 주장했다. 평화권을 통한 인권담론의 확장과 지속은 2006년 북핵 실험에 대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화적 생존권'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을 통해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 시민사회의 반응이 '민족자주'였다면, 이제는 평화권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까지도 인권의 이름으로 비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73]

---

70) 프로메테우스, "북한주민의 인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한반도 평화 : 평화진보세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I) 유엔의 인권 개입주의와 평화", 2006년 1월 31일.

71) 데일리NK, "박경서 인권대사의 '사이비 인권 순수론'", 2006년 1월 27일.

72) 프로메테우스, 앞의 글.

73) 오마이뉴스, "북한 핵실험 그 후, 양분된 진보진영", 2006년 11월 3일.

한편, 한국사회에서 평화권 담론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등장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흐름이 존재했다. 그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 대중적으로 등장한 평화운동을 통해서였다. 당시 평화운동을 접한 인권운동 내부에는 '평화권'이라는 새로운 인권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모임이 꾸려졌다.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을 통해서 평화권은 사회운동의 언어로 전면화 되었으며, 이후 인권운동과 담론의 영역을 뚜렷하게 확장시켜나갔다.

제4장 안보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서 평화권

제1절 평화권에 대한 초창기 문제의식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정권이 선언한 '테러와의 전쟁'은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을 촉발시켰다. 평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회운동이 뒤늦게 등장한 한국사회였지만[74] 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은 평화운동을 대중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 특히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문제와 겹치면서 반전평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인권운동가들은 새롭게 등장한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관계를 모색하고, 전쟁과 폭력에 대한 인권적 문제의식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인권단체연석회의라는 인권단체들의 연합체 속에 '평화권모임'을 꾸렸다.[75]

'평화권모임'의 초장기 문제의식은 당시의 반전운동에 어떻게 인권운동이 잘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인 것이었다. 내부적으로는 평화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나 평화주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76], 기본적으로 활동가 모임이었기에 현안 대응

74) 정욱식,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과제", 2004. 정욱식은 탈냉전과 민주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평화운동의 주체들이 한국의 다른 사회운동에 비해 뒤늦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75) 전국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2003년 전국인권활동가 대회" 자료집, 2003 pp35-36; 이용석, "평화권으로 바라본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 2005 p20.

76) 2003년 5월부터 '평화권 모임'이 진행한 토론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평화에 대한 권리의 의미와 실현 방안', '무장한 세계화와 한반도 전쟁 위기', '여성주의와 평화', '평화운동과 시민 불복종', '북한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제목들을 통해서 당시 평화권 모임이 다루었던 내용들의 폭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인권활동가대

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03년에는 이라크전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소책자를 발간하였고[77], 2004년에는 '전범민중운동재판'에 참여하면서 당시의 반전평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발화 속에는 권리로서의 평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공개적인 실천에서 평화권이 전면화 되지는 못했지만 인권운동 내부적 공간에서 평화권 담론들은 문제제기의 형태로 형성되어갔다. '평화권모임'은 2003년 10월에 진행된 인권활동가대회에서 "(평화를 권리로 인식하는 것은)너무나 당연시되어 인권침해로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측면에 대해 평화권의 구체 항목을 개발, 실현하면서 문제제기 하려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평화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질문은 더 나아가 시민들이 안보영역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도록 한다. "왜 '안보'를 결정하는 주체는 항상 국가인가?", "국가안보 혹은 군사안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서 안전의 내용을 정의하고 결정하는 권리가 박탈되어 있다는 뜻이 아닐까?(안보에 대한 자기결정권)"[78] 이러한 초창기 문제의식은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에서 평화권이 안보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담론으로 구성되는 맹아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의 폭발적인 대중 동원 시기였던 2003년과 2004년 이후, 앞으로 평화운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모색 속에서 평화권 담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평화운동가 김정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를 제도화된 인권의 권리로 고민해야 할 시대가 왔다. 권리로 인정된 평화만이 군사력을 이용한 강압적 시장확장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79]고 말했다. 이 담론을 통해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경험이 제도적 영역에서 국가의 전쟁과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형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 속에서 평화권 담론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는 못했지만, 국가가 독점한 안보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화권이 모색되었다. 이는 앞서 살핀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한 평화권 담론이 인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평화권의 우선

회준비모임, 앞의 책, p36.

77) 인권단체평화권모임,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2003.

78) 전국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앞의 책, pp113-114.

79) 참세상, "파병철회가 가능한 시점이다", 2004년 5월 10일.

을 주장했던 것과는 분명 다른 결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파병이라는 국가의 정책결정, 그것도 안보영역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비판하고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등장한 평화권 담론은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을 통해서 인권운동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제2절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저항의 언어

1. 평화권을 침해하는 전략적 유연성

2003년 11월 평택 팽성읍 일대가 미군기지에 수용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평택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기지 확장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평택의 저항에는 다른 군기지 관련 문제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쟁점이 담겨져 있었다. 미국은 2000년부터 유사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을 추진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한미군 역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언급이 2003년 한미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서 등장했다. 이후 이루어진 평택 미군기지 확장 결정은 단순한 기지 확장을 넘어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평택 문제는 기지 확장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 국방부 사이의 토지매입 문제를 넘어선 쟁점이 되었다.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80] 이에 따라 평택 문제는 전쟁 위협을 높이는 국가의 안보정책과 그것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갈등으로 확장되었다.

평화권 담론은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등장하게 된다. 당시 평화권 담론은 이 문제가 해당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문규현 신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화약고처럼 될 수도 있다. 주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권까

80) 평택범대위정책자료집편집팀,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문제점", 2008.

지 빼앗기는 것 아닌가. 팽성읍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 지금은 평택주민들의 시련으로 비치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 평화가 달린 문제"[81]라고 평택 사안을 규정했다.

평화권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평택 사안에서 평화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협받는 평화적 생존권은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평화적 생존권은 평택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신속기동군 형태의 주한미군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82]는 언사가 그러한 경우이다.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그것을 위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기본적 권리인 평화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은 단순히 '나쁜 결정', '문제가 있는 결정'을 넘어서서 '인권'을 침해한 결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평택 사안에서 주민들은 협의매수의 '이해 당사자'일 뿐이며, 이주·보상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이 문제가 '이해 갈등'일 뿐이라고 규정했다.[83] 이는 기지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었던 대립구도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지 확장의 불필요함이나 주한미군 자체의 부당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등을 근거로 삼아 저항해왔다. 그러나 평화권을 통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은 최초로 보편성을 통한 저항의 담론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평택 투쟁은 보편성을 획득하는 투쟁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남겼다. 협소한 반미투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 보편적 가치인 평화권이라는 인권을 향한 투쟁[84]"이라는 평가는 이러한 성과와 관련된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이 기지 관련 운동에 있어서 평화권을 통해 보편적 권리 담론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였다면, 과연 이 사안에서 누가 평화권 담론을 사용했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평택 사안이 평화권을 통해서 담론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인권운동가들의 참여 덕분이었다. 평택 기지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인 2004년부터 '평화권모임'의 인권운동가들은 평택에 결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81) 오마이뉴스, "평택은 폭풍전야 10일 큰일 낸다", 2005년 7월 8일.

82) 프레시안, "'민주주의의 봄'은 대추리를 피해갔는가?", 2007년 2월 22일.

83) 국방부, "전략적 유연성 설명 자료", 2006년 1월 23일.

84) 프레시안, "평화운동의 불씨는 여전히 평택에 있다", 2007년 2월 26일.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던 촛불집회에 결합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르치는 강좌 사업을 진행했다. 평화권은 이러한 '권리' 강좌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화두가 되었다.

> "… 그때는 평택주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었고. 평화권모임에서 와서 헌법에 나타나 있는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씩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서 담당을 했었다. … 처음에 매주 가서 주민들하고 헌법 이야기를 하고, 권리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평택에서 평화캠프를 했다. 평택에서 벌였던 행사 중에서는 초반에 꽤 크게 했다. 관련 행사에서는 평화권이 자연스럽게 중심적으로 논의되었다. 낯설 측면도 있었겠지만 평택 사안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라고 생각했다."[85]

평택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된 이후에도 인권운동가들은 그 내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평택 사안을 인권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고, 평화권 담론이 저항의 언어로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권의 언어로 표현된 저항은 해당 지역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서 보편적 권리가 쟁점이 되는 '인권의 문제'로서 주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평택에 있어서 평화권 담론과 인권운동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인권운동이 평화권 담론은 만들었다"로 설명하는 것은 절반만을 비추는 것이다. 평화권 담론을 통해서 인권운동가들이 평택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또 다른 연결의 고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군기지 확장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운동가들이 이처럼 전면적으로 결합한 예는 평택이 최초라 할 수 있다. 인권운동가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평화권 담론은 역으로 인권운동을 평택으로 끌어들이게 했다.

인권운동가들은 2006년 평택 투쟁을 중간 평가하는 워크숍에서 "인권운동이 평택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더불어 평화 투쟁을 통해 인권운동이 자극을 받기도 했다"고 평가하며 "평화적 생존권의 제기"가 인권운동이 평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로 놓았다.[86] 평화권 담론은 사안 자체의 성격을 새롭게 구성했으며, 인권

85)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당시 '평화권모임' 참여자) 심층면접 내용 中.

86) 참세상, "인권운동의 도약 필요한 평택 투쟁", 2006년 6월 14일.

운동 역시 평화권을 통해서 기지 관련 문제를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의 활동과 담론을 확장시켰다.

2. 권리 담론을 통한 안보영역 통제

그렇다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 속에서 평화권 담론이 가진 효과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크게는 앞서 언급한 보편성 획득이다. 정부는 이 사안을'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평화권 담론은 평택 문제를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라고 규정했다. 이에 더해서 평택 사안에 있어서 평화권 담론이 가진 또 다른 효과는 안보영역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었다. '전략적 유연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고도의 정치·외교적 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87]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안보영역은 지금까지 사회적 통제를 벗어나 존재했다.[88]

평화권 담론은 바로 이 폐쇄적인 안보 영역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가 갖는 절차상의 하자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으로, 평화권 담론은 보다 근본적으로 시민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안보영역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안보영역의 폐쇄성이란 단지 정보의 차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와 생존을 동일시하고 안보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현실주의 안보담론의 특성도 포함된다.[89] 이러한 정보 차단과 안보 최우선주의는 안보가 다른 가치와의 비교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고, 안보영역이 사회적 의제로 논의되는 것 자체를 막았다.[90]

평화권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는데 유용한 이론적·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었다. 평화'권'이라는 권리 담론을 동원해 안보 문제를 폐쇄적인 권력정치의 영역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91] 평택 사안에서 주

87) 2005헌마268 전원재판부.

88) 이대훈,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2005.

89)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2007 p20.

90) 이대훈, 앞의 글.

91) 이근관, 앞의 글, pp205-206.

도적으로 활동했던 인권운동가 박래군은 평화권을 통해서 폐쇄된 안보영역이 침해하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었으며, 그 권리를 통해 효과적인 저항을 만들 수 이었다고 말한다.

> "군사·안보 정책은 외교안보권력과 군부에 의해 독점되고, 그 결과 빚어지는 기본권의 침해는 고스란히 민중의 몫으로 전가되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다. … 평택 전쟁기지 확장 저지 투쟁의 경우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나선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권리 침해 당사자의 상징이 되었다. 이들의 전쟁기지 확장 저지 투쟁은 단순히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는 정치적 투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92]

물론 안보영역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이전까지의 사회운동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리로서, 침해될 수 없는 인권으로서 평화권은 강고한 안보담론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법학자 이경주는 평택 투쟁을 통해서 평화권이 한국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고 분석하면서, 평화권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방어권"[93]으로 규정했다. 방어권이란 그 본질상 국가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평택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평화권이 가진 이 권리로서의 '힘'은 폐쇄된 안보영역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했다. 이라크 파병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결정을 비판하는 평화권 담론의 논리는 평화권의 침해를 근거로 안보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평화권이 방어권으로서 구조상 소극적 권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효과는 안보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94] 평화권이라는 열쇠를 얻게 된 인권운동은 평택사안 이후에도 군사·안보영역에 대한 문제에 개입하면서 인권운동과 담론의 폭을 확장해나갔다.

---

92) 인권오름,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2007년 3월 14일.

93) 인권오름,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2006년 4월 26일.

94) 이경주,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와 '평화국가' 만들기", 2008.

제3절 안보영역에 대한 인권담론의 확장

평택 사안을 통해서 전면화 되었던 평화권 담론은 이후 인권담론의 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당시 '평화권모임'에서 활동했던 정용욱은 이를 '평택 이후'의 고민이라고 표현했다.

> "좋게든 나쁘게든 평택문제가 봉합 되었다. 평택을 겪은 활동가들이 평택 이후에 평화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다. 이렇게 끝날 것이냐. 운동의 성과 혹은 운동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펼쳐보고 싶었던 거다. 무건리 문제도 그때 나왔던 것이었고. RSOI 한미군사훈련도 그런 평화권의 문제의식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전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평화권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인권사안이 될 수 있었다."[95]

그의 이야기처럼 인권운동은 평택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한다. 이전까지 자신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평화권을 매개로 연대하기 시작했다. 인권운동가들은 2007년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에 평화권 담론으로 접근했다. 기존 인권 활동의 영역으로 본다면 한·미 군사훈련에 인권운동가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다. 그러나 평택을 통해서 평화권에 대한 고민을 확장시킨 인권운동은 "RSOI 등과 같은 군사훈련이 '누구'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추상적이다. …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권력 감시를 통해 현재성을 획득하고 침해되는 권리 영역을 구체화해야 한다"[96]고 주장했다. 이 발화 속에는 이전까지 인권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군사안보 영역에 인권운동이 개입하여, 침해된 권리를 드러내고, 인권의 언어로 적극적으로 발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이 가진 대북 선제공격의 성격과 이 군사훈련이 가져올 군사적 긴장관계를 비판하며 "성역으로 남아 있는 안보문제에 대해 어떻게 '안보독점주의'를 깨고,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을까"[97]라는 질문을 던졌다.

---

95) 정용욱(前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당시 '평화권모임' 참여자) 심층면접 내용 中.

96)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미국의 군사훈련 RSOI 對 평화적 생존권" 토론회 자료, 2007.

97) 인권오름,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2007년 3월 14일.

전통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 통제나 인권담론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평화권을 통해서 안보의 문제는 인권담론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시민사회의 통제가 '권리'의 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안보영역에 대한 인권담론의 확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평화권을 재판규범으로 활용했던 헌법소원들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 결정[98], 2005년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결정[99], 2007년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100] 등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각각의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의 해당 결정이나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각 청구들은 모두 각하되었지만 법원의 이름으로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101] 평화권을 재판규범으로 주장하는 시도는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 평화권이라는 인권을 통해 시민사회의 통제가 광범위해짐을 의미한다.[102]

지금까지 전쟁과 평화, 안보의 문제는 폐쇄적인 권력정치 내부에서 결정되고, 그 결정은 '공포'의 언어로서 시민들에게 강요되었다. 그 앞에서 시민들은 저항의 언어를 가지지 못해왔고, 인권담론 역시 안보의 영역에서 발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했다.[103] 그러나 이라크 파병결정이 평화권을 침해한다며 등장했던 평화권 담론은 평택을 거치면서 '안보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인권의 문제라는 의식이 인권담론 내부에서 명확해졌고, 이후 군사안보영역의 비가시성을 넘어 '누구'의 '어떤'권리가 침해되는지를 살펴야한다는 논리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평화권 담론은 지금

98) 2003헌마255·256병합 전원재판부.

99) 2005헌마268 전원재판부.

100)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101) 헌법재판소는 2006년 2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에 대한 결정(2005헌마268)에서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9년 6월 "2007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에 대한 결정문(2007헌마369)에서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헌법의 이념 내지는 목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면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102) 이경주, 앞의 글, p38.

103) 구갑우, 앞의 책, pp17-20.

까지 인권담론이 주목하지 못했던 안보영역을 인권담론의 확장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

제5장 결론

인권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였다. 그리고 인권이 확장되어가는 역사였다. 한국사회에서 평화권이 등장하고,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 역시 저항과 확장의 역사였다. 결론에서는 앞서 살펴본 평화권 담론의 형성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인권담론을 어떻게 확장시켰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평화권 담론이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과정은 크게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압박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평화권이다. 당시 등장한 평화권 담론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인권관에 도전하면서 인권 내부의 다양성을 주장했고, 평화권이 저해되는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순임을 드러냈다. 이 평화권 담론은 인권 내부에 다양한 권리가 존재함을 강조한 것을 넘어서서 '평화권 우선론'으로 나아갔다.

'평화권 우선론'을 적극적으로 평가해보면, 기존의 인권담론이 가진 보편성 원칙에 평화주의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성을 그 요체로 하지만, 다양한 인권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간의 경합이 발생하고,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억압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권의 보편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한다. 사실상 인권의 역사에서 살펴본다면 보편성이란 그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제한적' 인권을 나타낼 뿐이었다. 모든 인간의 이름을 걸었지만, 제 1세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중산층 백인 남성들뿐이었다. 그렇기에 보편성의 진정한 의미는 개념 자체의 의미에서 찾기보다는 해당 시기 저항에 맞서기 위한 '형식논리'로서 이해할 수 있다.[104]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이 갖는 현재적 의미 역시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의미로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재구성의 작업은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의 원칙을 요구한다. 평화권을 대항담론으로

104) 조효제, 앞의 책, pp220-224.

내세웠던 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인권 압박의 이면에 존재하는 '인도적 개입'의 폭력성을 예감하고, 이에 저항하는 가치로서 평화주의를 내세웠다. 또한 평화권은 모든 인권의 전제이며, 인권의 개입 역시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인권담론은 이를 통해 평화주의에 근거한 저항의 논리를 가질 수 있었고, 이후 북핵 실험 등이 벌어졌을 때도 일관된 평화권 담론을 이어갈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반전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평화권 담론이다. 반전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평화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시킨 인권운동가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담론으로 평화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국과 맺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국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평화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역시 주민들의 생존권과 함께 한반도 평화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이 가진 평화의 '권리'는 폐쇄된 안보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국방이나 안보 관련 사안들은 법적 통제나 인권담론의 개입으로부터 봉쇄되어 있었다.[105] 미군기지 관련 문제들은 이전에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으나 불평등한 한·미 군사협정, 주한미군 자체의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만, 그리고 관련된 피해자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지역에 한정되거나 구호를 넘어서는 구체적 힘을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평화'권'이라는 권리적 담론장치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영역으로 존재했던 안보영역을 법과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106] 인권운동진영은 국가의 안보정책 때문에 시민들의 평화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기존 인권운동이 포괄하지 못했던 국방·안보 영역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 권리담론을 통해서 제시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흐름을 통해서 평화권 담론이 각각의 맥락에서 어떻게 기존의 인권담론을 확장했는가를 확인했다. '평화권모임'에서 활동한 정용욱씨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자신이 평화권을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5) 이근관, 앞의 글, p205.

106) 앞의 글.

"평화문제도 평화문제였지만, 출발점은 인권에 대한 고민에 있었다. 무엇이 인권이다 하고 규정을 내려버리면, 어떤 주어지는 것으로 느껴진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 … 그래서 인권의 외연을 넓혀가는 것들을 모색했던 거 같다. 말이 쉽지. 어찌 보면 거대한 상식에 도전하는 것인데. 그 상식을 넘는 새로운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랬다. 저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자유권은 이것이고 사회권은 이것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권리옹호 차원을 넘어서서 권리를 확장시키는 모색을 했던 것인데, 나는 그 부분을 평화권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한 것이다"[107]

그의 말처럼, 한국 사회에서 평화권 담론이 등장하고 발화되는 과정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인권은 무엇이다"라는 거대한 상식과 제도의 벽을 넘어서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인권의 시도였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선언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의 폐허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야한다고 다짐한 인류였지만, 그들이 곧장 맞이했던 것은 핵전쟁의 공포였다. 전쟁과 평화, 안보의 문제는 폐쇄적인 권력정치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될 뿐이었다. 국제사회에서 평화권의 고민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지배적인 안보담론에 맞서 '인류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외쳤다. 그러나 차가운 핵균형의 국제정세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냉전은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기존의 안보담론은 개개인의 평화에 대한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와 인권운동가들은 평화권 담론을 통해, 평화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저항했다. 그러나 그 힘 역시 미약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바탕을 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이전 결정까지 뒤집으면서 '평화적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평화권모임' 역시 그 활동이 중단되었고, 인권담론 내부에서 평화권에 대한

107) 정용욱(前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당시 '평화권모임' 참여자) 심층면접 내용 中.

논의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

다시 이 연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중 하나로 돌아가 보자. 평화권은 과연 '인권'일까? 인권운동가 박래군은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들의 외교적 타협의 장인 유엔에서는 조약으로 절대 채택되기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평화권을 민중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항과 해방의 무기로 바꾸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108] 되묻는다. 평화권은 저항의 언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담론을 확장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그 저항의 언어를 이어가는 노력은 우리의 몫이다. 인권은 목소리가 이어지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1) 시민사회단체 자료

배경내, "평화에 대한 권리의 의미와 실현 방안", 인권운동사랑방 내부 교육자료, 2006.

인권단체평화권모임,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2003.

전국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2003년 전국인권활동가 대회" 자료집, 2003.

참여연대 외, "제 4차 유엔인권이사회 북 인권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평화인권단체 입장", 2007년 3월 20일.

참여연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2005년 2월 11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미국의 군사훈련 RSOI 對 평화적 생존권" 토론회 자료, 2007년.

평화네트워크, "북한인권결의안 찬성과 북한인권정책의 방향" 토론회 속기록, 2006년 11월 27일.

108) 박래군, "평화권·발전권은 권리일 수 있는가", 2008.

2) 법원 자료

2003헌마255·256(병합) 전원재판부,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2004헌마508, “국군부대 이라크주둔 위헌확인.”

2005헌마268 전원재판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2007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3) 국제인권 관련 자료

아시아 인권 헌장, 1998.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A/RES/39/11), 1984.

Declaration on the Preparation of Societies for Life in Peace(A/RES/33/73), 1978.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A/45/546), 1990.

Promotion of peace as a vital requirement for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all(A/RES/62/163), 2008.

Promotion of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A/HRC/AC/3/L.4), 2009.

Promotion of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A/RES/57/216), 2003.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2. 국내문헌

1) 단행본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후마니타스, 2007.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김도균, “권리의 문법”, 박영사, 2008.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엮음, “평화백서 : 시민, ‘안보’를 말하다”, 아르케, 2008.

하영선 엮음,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2.

2) 학위논문

이정은, “해방 후 인권담론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1945년~1970년대 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임재성,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병역거부운동 연구 : ‘양심의 자유’와 ‘반군사주의’간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Kim, Ki Nam, “Human Rights to Peace in International Law : Theory and Practice”, Masters Degree of Department of Peace and Global Governance in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007.

3) 일반논문 및 북챕터

김원식, “북한인권 담론의 규범적 논거들에 대한 검토 : UN의 개입에 관한 국내 시민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제10권(1), pp75-95, 2006.

김형민, “평화와 인권 : ‘평화권’에 대한 사회윤리적 고찰”, 신학사상, 제114호, pp210-232, 2001.

문수현, “전후 서독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역사와 문화, 문화사학회, 제17호, pp106-133, 2009.

서경석,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25호, pp49-77, 2004.

이경주,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 투쟁”,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32호, pp87-112, 2006.

_____, “헌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와 ‘평화국가’ 만들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엮

음, “평화백서 : 시민 ‘안보’를 말하다”, 아르케, 2008.

이근관, “국제적 인권으로서의 평화권에 대한 고찰”, 인권평론, 한길사, 제1호, pp195-233, 2006.

이대훈,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5.

장은주,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연구회, 제17호, pp285-2322, 2009.

정욱식,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과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 특별 심포지움, 2004.

정유진, “경합하는 가치로서의 ‘국가안보’와 ‘개인의 안전’”, 2005년도 인권논문 수상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

차명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 : 유럽과 한국의 비교”, 1994년 전기사회학대회, 1994.

최경옥, “日本國憲法 第9條와 平和的 生存權의 등장과 문제점 : 反戰時期(1964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판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호(3), pp149-175, 2008.

평택범대위정책자료집편집팀,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문제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엮음, “평화백서 : 시민 ‘안보’를 말하다”, 아르케, 2008.

4) 기타

금민, “북한주민의 인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권’의 주권, 한반도 평화 : 평화진보세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II) 평화진보세력 및 평화인권세력의 입장”, 프로메테우스, 2006년 1월 31일.

류은숙, “[인권문헌읽기]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 유엔)”, 인권오름 제15호, 2006년 8월 1일.

_____, “서평 : 평화에 대한 인권(Douglas Roche, The Human Rights to Peace, 2003, Novalis), 인권오름 제55호, 2007년 5월 22일.

박래군, “비상식 인권론8 : 평화권·발전권은 권리일 수 있는가”, 인권잡지 사람 제31호, 2008년 1월.

이경주,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인권오름 제1호, 2006년 4월 26일.

이용석, “평화권 모임 박석진씨 인터뷰 : 평화권으로 바라본,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 전쟁없는세상 소식지 제11호, 2005년 8월.

프로메테우스, “정전협정 53주년 ‘북한사회와 인권’ : 제3회 프로메테우스 포럼(3) - 북한 ‘인권’ 문제의 등장 배경과 실상”, 프로메테우스, 2006년 8월 21일.

3. 외국문헌 및 번역본

Alston, Philip, “Conjuring Up New Human Rights : A Proposal for Quality Control”,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 78(3), pp607-621, 1984.

_____, “Peace as a Human Right”, *Bulletin of Peace Proposals*,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Vol. 11(4), pp 319-330. 1980.

Benford, Robert and Snow, David,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pp611-639, 2000.

Bilder, Richard, “The Individual and the Right to Peace : The Right to Conscientious Dissent”, *Bulletin of Peace Proposals*,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Vol. 11(4), pp387-389, 1980.

Carter, April, “*Peace Movement : International Protest and World Politics*”, Longman, 1992.

Dworkin, Ronald, "Taking Rights Seriously", Duckworth, 1977.

Forsyth, David, “*Human Rights and Peace : International and National Dimension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3.

Fried, John H. E, “The United Nations' Effort to Establish a Right to the Peoples to

Peace",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4,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 pp21-66, 1990.

Galtung, Johan,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1996].

Habermas, Jürgen, 한상진·박영도 옮김, "사실성과 타당성 :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 2007[1992].

Hayden, Patrick, "Constraining War : Human Security and the Human Right to Peace", *Human Rights Review*, Springer, Vol 6(1), 2004.

Isakovic, Zlatko, "Peace and/or Human Rights?", Opening Key Note Address. Canadian Peace Research and Education Association (CPREA) Conference, Queen's University, 2000.

Karal Vasak, "*A 30-year Struggle*", The Unesco Courier, 1997.

_____,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Human Rights*" Vol. 1, Greenwood Press, 1982.

Othman, Nimatalie A, "*The African Union and the Right to Peace and Security*", Masters Degree of University of Pretoria, 2003.

Roche, Douglas, "*The Human Right to Peace*", Novalis, 2003.

Wellman, Carl, "Solidarity, the Individual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Vol 22(3), pp639-657, 2000.

모가미 도시키(最上敏樹), 조진구 옮김, "인도적 개입 :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소화, 2003.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학생부분

박윤진·박형규·소주현·임옥선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목 차



요 약 ····· 62

제1장 서론 ····· 6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63

제2장 장애아동 인권침해 실태 ····· 65

제1절 장애아동 인권침해 사례 유형 ····· 65

제2절 일반아동의 장애인식 실태 ····· 69

제3장 장애아동의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 ····· 73

제1절 인권교육 ····· 73

제2절 장애아동 인권의 관점에서의 교육 ····· 74

제4장 매체활용 중심의 장애분야 인권교육 매뉴얼 ····· 80

제1절 매뉴얼 구성 및 내용 ····· 80

제2절 매뉴얼 구성의 실제 ····· 81

제5장 결론 및 논의 ····· 90

<참고문헌> ····· 92

요 약

우리 사회가 ‘인권(Human Rights)’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60년대 이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급속한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소외된 계층들에게 관심을 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쟁점은 차별과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었던 소외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면서 아울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이며,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인권과 관련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인권교육을 고민한 그 시작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지만, ‘헌법’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대해야 한다는 철학이 나타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의 관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 내에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령기의 장애아동이 속해있는 일선 초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장애아동들이 또래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무시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인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태파악과,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며 서론에 이어 제2장에는 장애아동 인권침해 실태분석, 제3장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실제 매뉴얼을 제안한 뒤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애아동의 교육을 인권적 차원에서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서로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어나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우리 사회가 '인권(Human Rights)'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60년대 이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급속한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소외된 계층들에게 관심을 둘 여지가 없었다. 이는 무관심의 경계를 넘어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양산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사회적 쟁점은 차별과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었던 소외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면서 아울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이 장애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였다[1]. 또한 장애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인권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2]. 한편 장애인 인권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응답 장애인의 86.7%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본인 스스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느낀 경우가 96.2%로 인권 침해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3].

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의 문제 해결해 나가는 정책적 대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는 신문·방송매체의 언론 보도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1년 남짓의 진정 접수 건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근절되지 않고 늘어만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법의 구속력과 강제력만으로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까지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인권을 인권교육과 관련지어 보는 관점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p.1.

2) 국가인권위원회. 2002. p.1.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인용. 2002. p.1.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7.4.10., 법률 제8341호, 이하 '장차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8.4.10., 대통령령 제20766호) 제정, 2008년 4월 11일 '장차법' 법률 공포

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을 위한 인권교육에 관련 연구는 불과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인권'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채 안 된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할지도 모른다.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 사회통합 운동 등이 기존에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많은 성과들도 가져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헌법'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철학을 가지고 장애인을 마주하였으면 한다. 즉 이들의 '인권'의 관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교육 내에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령기의 장애아동이 속해있는 일선 초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장애아동들이 또래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무시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인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태파악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아동의 인권' 연구와 관련된 국내 학술지, 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 및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뉴얼 제작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모형, 통합교육 매뉴얼, 장애인식개선 매뉴얼 등을 비교·연구하여 장애와 관련한 차별금지,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로 재구성해 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며 서론에 이어 제2장에는 장애아동 인권침해 실태분석, 제3장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실제 매뉴얼을 제안한 뒤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장애아동의 교육을 인권적 차원에서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서로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2장 장애아동 인권침해 실태

제1절 장애아동 인권침해 사례 유형

주혜영·박원희(2006)는 국제인권문서[5]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초등학교 통합교육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침해라고 언급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인권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표 1>은 기존의 인권문제와 수집된 사례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장애아동의 인권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1. 교육평등의 측면[6]

가. 입학기회보장

장애아동은 그들이 가진 장애 때문에 일반학교나 특정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도적·법적인 마련과 관련이 있다.

나. 학교접근권

장애아동은 그들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학교통학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여기에서 언급할 학교접근권은 학교의 물리적 접근법과 학교내에서 이동과 접근을 위해 요구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다. 무상교육권

무상교육권은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육비의 무상교육뿐 아니라 교육평등의 원칙에 따라 더욱 확

5) 국제인권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의미를 크게 요약하면 첫째,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무차별적인 평등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차등적인 평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주혜영, 박원희, 2006).

6) 주혜영, 박원희. 2006. p.311.

대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라. 보조적 서비스의 마련

장애아동의 교육에서 보조적 서비스란 장애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교육과 수정된 교육과정, 교육자료 등을 포함한다. 교육평등은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의 인권침해 사례에서 드러난 적절한 교재의 제공, 필요한 치료서비스등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마. 교사자질

훈련받은 교사,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교사 등의 투입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법을 모르는 교사는 장애아동을 어쩔 수 없이 방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항목은 교육평등의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항목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자유의 측면[7)]

가. 의사결정권

자유의 적극적 의미는 참여이며 교육에서 참여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의사결정권은 장애인의 권리에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으나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나 수업선택, 학교에서의 개인의 선호도와 관련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과 관련하여 하나의 권리항목으로 유형화하였다.

나. 장애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부모의 권리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경우 그들의 권리를 대변할 권리가 인정

7) 주혜영, 박원희. 2006. p.312.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애아동의 부모의 권리와 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장치는 교육에서 의사결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장애아동의 교육에서 선택과 참여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항목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를 교육에서 장애아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그 비중을 크게 두었다.

3. 인간존엄의 측면[8)]

기존의 개념은 학교폭력, 인간관계내의 차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등으로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학교공동체에서 구성원간의 연대, 권위주의, 냉담, 과잉보호라는 자세를 바탕으로 인권문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가. 체벌받지 않을 권리

체벌이란 권위주의적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며, 장애아동에게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겁주기, 언어적 폭력도 이 권리에 포함된다.

나. 교육적 방임되지 않을 권리

장애아동이 교육에서 방임되는 것은 교육의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함이나 제도적 미흡이 원인인 경우는 교육평등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보다 앞서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교육적인 방임이다. 천세영·남미경(2000)은 교육적 방임이란 외부적 원인에 인해 학교와 교육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극적 차원의 방임의 의미이며, 교육기관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의 방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즉, 학교의 교육적 처치가 교육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를 모두 교육적 방임으로 규정하였다[9)].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들을 희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임의 맥락에서 정의하였다.

---

8) 주혜영, 박혜영. 2006. pp.312-313.

9) 주혜영. 장애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통합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다. 또래와 동등한 관계맺기

장애아동이 또래에게 놀림당하거나 무시, 괴롭힘 당하는 상황이 인권침해 사례에서 수집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학교에서 장애아동이 동등한 인간관계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래와의 동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는 인간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권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라. 과잉보호배제

억압적 권위주의만큼이나 과잉보호도 장애아동의 발달에 유해하며 수평적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이러한 요소는 충분히 인권의 문제로 제기되어질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표 1〉 통합교육에서 장애아동 인권문제 도출과정과 인권유형[10)]

인권개념	기존문서의 인권분류	출처	인권문제유형
평등	교육설비, 의무교육에서 차별을 두지 않음	UN세미나	입학기회 보장
	교육기회차별(취학기회박탈, 모집요강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취학기회	한국아동지표	
	학교에서 모든 활동에 통합	UN세미나자료	학교접근권
	학교통근에 따른 물리적 요인	UN세미나자료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과 배분	UN세미나	무상교육권
	교육환경차별(교육비지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환경차별(편의시설미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조적서비스의 마련
	교육환경차별(학습도우미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사당 아동수	한국아동지표	교사자질
	교사교육과 교사자질	UN세미나자료	
자유	문화향유권(참여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의사결정권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법안	
	학부모교육참여도	한국아동지표	장애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부모의 권리
	부모가 장애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UN세미나	

10) 출처 : 주혜영, 박원희. 2006. p.313.

인권개념	기존문서의 인권분류	출처	인권문제유형
인간 존엄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한국의 아동지표	체벌
	교육환경차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환경차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적 방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UN세미나	또래간 괴롭힘
			과잉보호

제2절 일반아동의 장애인식 실태

일반 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의 중소도시에 소재한 K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총 461명을 대상으로 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여러 장애 인식 조사 설문지의 항목을 추출하여 연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초등학생 연령에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은 인식 측면의 문항 4개와 실천 측면의 문항 6개로 작성하였으며 Likert의 5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2점 : 아니다, 3점 : 보통이다, 4점 : 그렇다, 5점 : 아주 그렇다)를 적용하고 SPSS 12.0K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장애인에 관련된 인식 조사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 연령별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인식면과 실천면으로 이분하여 간략하게 구성하여 설문 참여 아동의 이해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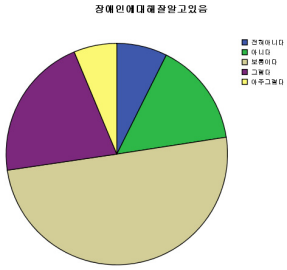
1. 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인식면〕
2. 나는 장애인을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 또는 '바보'란 생각이 떠오른다.〔인식면〕
3. 나는 장애인을 만나면 피하고 싶다.〔실천면〕
4.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인식면〕
5. 나는 학교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다.〔실천면〕
6. 나는 장애인을 대할 때의 예절에 대해 알고 있다.〔실천면〕
7. 장애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인식면〕
8. 나는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보호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실천면〕

9. 나는 장애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실천면〕
10. 나는 장애인을 만나면 잘 도와준다. 〔실천면〕

1. 장애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장애인에대해잘알고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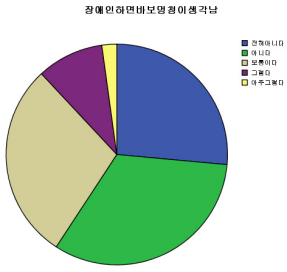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아니다	34	7.4	7.4	7.4
	아니다	70	15.2	15.2	22.6
	보통이다	231	50.1	50.1	72.7
	그렇다	97	21.0	21.0	93.7
	아주그렇다	29	6.3	6.3	100.0



2. 장애인은 '머리나쁜' 또는 '바보'다

장애인하면바보멍청이생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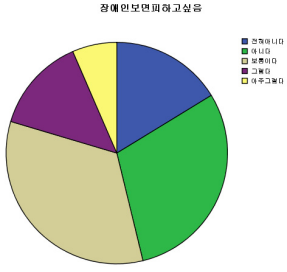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아니다	122	26.5	26.5	26.5
	아니다	151	32.8	32.8	59.2
	보통이다	133	28.9	28.9	88.1
	그렇다	45	9.8	9.8	97.8
	아주그렇다	10	2.2	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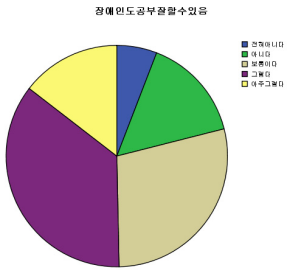
3 나는 장애인을 만나면 피하고 싶다

장애인보면피하고싶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아니다	75	16.3	16.3	16.3
	아니다	138	29.9	29.9	46.2
	보통이다	154	33.4	33.4	79.6
	그렇다	64	13.9	13.9	93.5
	아주그렇다	30	6.5	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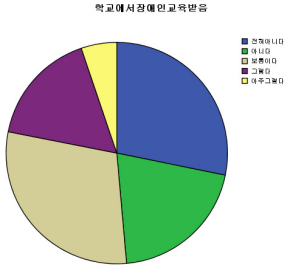
4.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장애인도공부잘할수있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아니	27	5.9	5.9	5.9
	아니다	70	15.2	15.2	21.0
	보통이다	132	28.6	28.6	49.7
	그렇다	165	35.8	35.8	85.5
	아주그렇	67	14.5	1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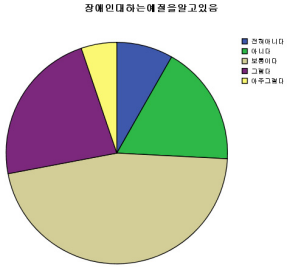
5. 학교에서 장애관련 교육을 받는다



학교에서장애인교육받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아니	130	28.2	28.2	28.2
	아니다	94	20.4	20.4	48.6
	보통이다	136	29.5	29.5	78.1
	그렇다	77	16.7	16.7	94.8
	아주그렇	24	5.2	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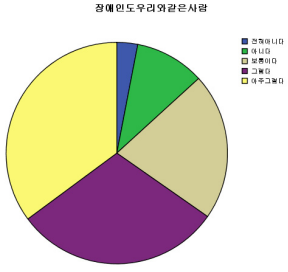
6. 장애인을 대할 때 예절을 알고 있다



장애인대하는예절을알고있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아니	38	8.2	8.2	8.2
	아니다	81	17.6	17.6	25.8
	보통이다	213	46.2	46.2	72.0
	그렇다	105	22.8	22.8	94.8
	아주그렇	24	5.2	5.2	100.0

7.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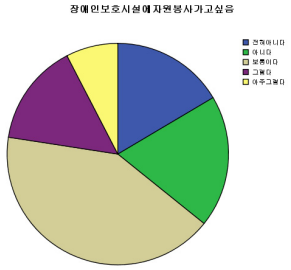
장애인도우리와같은사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아니	14	3.0	3.0	3.0
	아니다	47	10.2	10.2	13.2
	보통이다	99	21.5	21.5	34.7
	그렇다	139	30.2	30.2	64.9
	아주그렇	162	35.1	35.1	100.0

8. 장애인보호시설에 자원봉사 가고 싶다

장애인보호시설에자원봉사가고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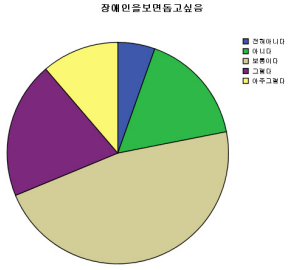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아니다	76	16.5	16.5	16.5
	아니다	89	19.3	19.3	35.8
	보통이다	192	41.6	41.6	77.4
	그렇다	69	15.0	15.0	92.4
	아주그렇다	35	7.6	7.6	100.0



9. 장애인을 보면 돕고 싶다

장애인을보면돕고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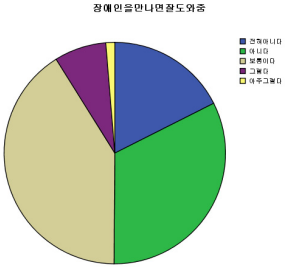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아니다	25	5.4	5.4	5.4
	아니다	76	16.5	16.5	21.9
	보통이다	216	46.9	46.9	68.8
	그렇다	92	20.0	20.0	88.7
	아주그렇다	52	11.3	11.3	100.0



10. 장애인을 만나면 잘 도와준다

장애인을만나면잘도와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아니다	81	17.6	17.6	17.6
	아니다	150	32.5	32.5	50.1
	보통이다	189	41.0	41.0	91.1
	그렇다	35	7.6	7.6	98.7
	아주그렇다	6	1.3	1.3	100.0



위의 문항들의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적인 문항들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2,3,4,7항목)가 대다수를 이루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행동과 실천적인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70%이상의 아동들이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결과(1,5,6,8,9,10항목)로 대답하였다.

개별적인 문항결과들을 살펴보면, 1번 문항인 '장애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73%정도가 무관심하거나 모르고 있었고, 5번 문항, '학교에서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48%정도가 아니다. 또는 관심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 문항, '장애인을 대할 때 예절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아동들이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는 결과로 나왔다. 특히 8, 9, 10번 문항은 장애인을 돕기에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의외로 아동들은 장애인을 대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함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을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비장애인과 똑같아 질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직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차별은 여전히 어린 시기의 아동들에게도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자료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꾸준히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장 장애아동의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

제1절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의 의미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기술과 가치를 발전시키는 모든 학습을 말한다[11]. '유엔인권교육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은 다음과 같이 인권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인권교육이란 다음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이다."

11) http : //sarangbang.or.kr/kr. 인권운동사랑방.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자료집. 2001. p.23.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라고 하였다[12]. 한편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권리를 아는 자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으로서의 인권교육은 모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인권을 '위한' 기술과 인권을 '통한' 가치 및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14]. 이에 Lister는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다른 교육에 비해 인권교육이 단순히 인권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 다시 말해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을,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술,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의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의 방식에 통합되게 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들 모두를 지향하는 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절 장애아동 인권의 관점에서의 교육

1. 장애와 인권의 개념적 의미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보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으로 불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와 인권을 결부하여 검토하여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왔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장애인을 단순히 동정이나 돌봄의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이들의

12)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2004. p.17.

13) 인권운동사랑방. 2001. p.23.

14) 인권운동사랑방. 2001. p.25.

15) 국가인권위원회. 2001. p.17.

인권을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인권이란 매우 보편적인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역동성을 지니는 탓에 인권개념과 인권정책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변동과정, 그리고 실천적인 인권운동의 흐름과 동떨어져서는 사고할 수 없다[16]. 그리고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직면한, 배제의 문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인권개념을 다시 정의함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의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개념의 포괄적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17]. 즉, 장애인의 인권이 우리 사회의 논의 주제가 된 것은 국내외적인 장애인 인권정책 및 인권운동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들의 인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박래군 등(1999)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으며,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시대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장애인의 인권문제의 범위는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교육·경제·정치·문화·사회 등 모든 쟁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포괄적인 장애인 인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 시급하며, 이를 통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2. 교육에서의 장애아동의 인권침해 발생요인

가. 집단 따돌림과 차별

또래들에게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경험은 또래집단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생활 전반의 적응에서 실패할 수 있으며[18],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는 일반학교에서 실패할 수 있다[19]. 외모적으로 특별하거나 자기보다 약한 학생,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

16) 국가인권위원회. 2002. p.6.

17) 국가인권위원회. 2002. p.8.

18) 이정선, 최영순. 초등학교 고학년 학급에서 나타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초등교육연구, 14(2), pp.181-221.

진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20]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학교나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반아동들이 장애아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들로는 장애아동들의 비전형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거나, 자기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Favazza, Phillipson, & Kumar, 2000)[21]. 그리고 일반아동들은 장애아동들과 직접 어울릴 기회가 드물어서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시정할 기회가 드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일반아동들에게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촉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나 프로그램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Favazza & Odom, 1997)[22]. 자신을 인정하듯이 타인도 인정하는 것이 인간존엄성의 출발선이며,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역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동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혜영, 박원희(2003)는 인권교육이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며, 장애인을 이해하는 태도도 이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따돌림이나 차별이 교사나 또래의 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먼저, 교사나 또래가 긍정적, 수용적인 장애인식을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적 방임 및 온정주의

통합교육에서의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의 지원 요구[23]를 조사한 연구에서 특수학급 교사는 행정, 재정적 자원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반면 통합학급 교사는 학업지도 영역에서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학급 교사는 행정, 재정적 자원에 대한 요구보다 장애아동의 수업과 학습지도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장애아동의 통합에 대해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태

19) 주혜영, 박원희(2003). 초등학교 통합교육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소고. 특수교육학연구, 38(3), 2003. p.370.

20) 박경숙(2002). 장애아동집단 따돌림의 현황 및 대책. 제 3회 장애인 인식개선 세미나. 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

21) 주혜영, 박원희에서 재인용. 2003. p.370.

22) 주혜영, 박원희에서 재인용. 2003. p.370.

23) 류기연. 특수학급 교사와 원적학급 교사의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요구 조사 연구. 공주대학교 특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도를 보이는 교사라 할지라도 교육과정을 수정 및 이들을 위한 교수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 적절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아울러 장애아동에 대한 수정된 교육과정의 제공이나 적절한 교수방법의 부재는 장애아동이 성취해야 하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져온다. 이로 인하여 장애아동은 교육적 방임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수자료, 교육설비, 교육과정상의 부재는 열정적인 교사라도 아동을 적절하게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지 못할 수도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상의 문제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아동의 교육적 방임을 초래할 수 있다[24].

반면,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방법에 대해 무지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온정주의만 작용한다면 과잉보호의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25]. 과잉보호는 동정심과 낮은 기대감으로 성격 지어지는 것으로 아동의 발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26]. 주혜영(2005)는 과잉보호의 자세가 장애아동을 희생자로 삼는 것이 주요한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의존성을 조장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또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가 장애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나 또래아동의 과잉보호는 이들의 발달을 방해하고 의존성을 조장하며, 상호존중과 해방이라는 인권목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 또한 인권의 올바른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과밀학급과 장애아동의 방임

우리나라 초등학교 한 학급당 평균 35~4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OECD 국가들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21.8명인 것에 비하면 1.6배 많은 수라고 한다[27]. 만약 학급 내에 부적응행동을 보이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등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사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28]. 교육적 열의가 높은 교사라 할지라도 전체 학생 수가 많다 보면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29].

---

24) 주혜영, 박원희. 2003. pp.371-372.

25) 주혜영, 박원희. 2003. p.372.

26) 주혜영. 2005. p.112.

27)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교육지표 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2004.

28)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 일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서울 : 학지사, 2006. p.15.

주혜영·박혜영(2003)은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학급에서 일부 눈에 띄는 학생만이 교사의 주목대상이 되고 그렇지 못한 아동은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개별능력을 진단하고 그것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학급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특히 과인수 학급에서 교사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수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의 지원도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학급당 아동 수의 조정이 장애아동의 방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과제로 남아있다.

3. 장애아동과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반차별(nondiscrimination) 혹은 반편견(antibias)교육이다. 성별(gender), 인종(race), 그리고 장애(disability) 등으로 인하여 나와는 다른 남들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잣대로 자신과 타인을 놓고 비교하여 볼 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슬로건(slogan)이 인권교육의 골자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편 유아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활발한데 반해,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취약한 편이다. 이에 장애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온갖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이와 관련된 장애아동 지원 대책으로 연 몇 회 이상의 장애이해교육, 장애체험 등을 실시하라는 등의 관할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단순한 일회성의 학교행사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은 교사와 또래의 장애이해, 장애수용이라는 한정된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에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 또한 교육에서의 장애아동의 인권의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익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이 장애아동이 통합된 환경에서 교사나 또래와 같이 있는 것만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아동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교육과정에 접근하고 참여하여

29)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 2006. p.15.

진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배려가 이들의 인권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요소들이 문제시된 것이다. 부연하자면, 잘 구조화 되지 않은 통합교육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며 심하게는 장애아동이 또래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듯이 통합교육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아동이 일반환경 속에서 상처받고 소외당할 수 있다고도 한다[30].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으로서 장애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뤄지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져야 장애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장애아동의 인권 보장에 따른 인권에 기반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일반교육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즉, 첫째 교사나 또래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둘째,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정비와 교수자료 및 교육설비의 보충을 포함하는 교육적 지원의 문제, 셋째, 과인수 학급의 문제 등이다. 학교의 기존의 체계는 경쟁적이고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획일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아동이나 우수아 등의 소수집단에게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것[31]이 지적되었고, 김정권(1997)은 완전통합교육을 위해 학교교육이 재구조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장애아동의 인권문제는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 다시 말해 모든 아동의 개별 특성이나 능력이 존중받고 교육적 형평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장애아동을 허용하거나 수용하는 인권교육에 머물지 않고, 이들을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단계의 인권교육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30) 주혜영, 박원희. 2003. p.360.

31) 김성애(1997).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국립특수교육원.

제4장 매체활용 중심의 장애분야 인권교육 매뉴얼

제1절 매뉴얼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애분야 인권교육 매뉴얼은 매체를 활용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사용할 매체로는 주로 애니메이션, 영화, 공익광고, 인터넷, 음악 등의 영상매체, 그 밖에 아동들과 친숙한 반차별 혹은 반편견 동화가 제시되어졌다. 그리고 본 매뉴얼을 통한 인권교육의 대상은 일반아동으로 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식개선에 관련지어 그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다. 인권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아동들로 하여금 상황극, 토론, 감상, 자료수집, 에세이쓰기, 놀이 등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에 전반적으로 반영토록 하여야 하는 동시에, 도덕 교과목이나 학급의 재량활동 수업시간에 별도로 지도되어질 수 있다.

본 매뉴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영역은 2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 단원별로는 3개와 5개, 총 8개의 활동내용이 들어있다. 매뉴얼 내용의 유형별로는 반차별 동화를 활용한 첫 번째 단원에는 '지구인 화성인 우주인', '차이와 차별', '우리가 키우는 인권 나무'라는 주제의 활동내용이 있다. 첫 번째 단원에서 반차별 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있어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도서목록을 <부록3>으로 첨부하였다. 다음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두 번째 단원에는 '우리 반 친구 민수', '대륙 횡단', '대화의 문', '장애인 편견', '생각의 나눔'이라는 주제의 활동내용이 있다. 두 번째 단원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인권교육의 몇 가지 형태를 안내하고 있는데, 동영상이나 영화 외에 공익광고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눈여겨볼만 하다. TV에 나오는 익숙한 공익광고와 같은 시각적 자극은 아동들의 학습적 흥미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다. 끝으로 본 매뉴얼은 일반아동들에게 '차별'이나, '편견'과 같은 다소 생소하고 딱딱한 용어적인 접근을 하여 인권교육을 하기보다는 동화, 영상매체 등의 매체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본 매뉴얼의 제작 의도는 다양한 상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권의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히게 함으로써 일반아동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올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제2절 매뉴얼 구성의 실제

♣ 목 차 ♣

Ⅰ. 차이를 넘어 바라보기
1. 지구인 화성인 우주인 ▶ 82
2. 차이와 차별 ▶ 83
3. 우리가 키우는 인권 나무 ▶ 84

Ⅱ. 영상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권
1. 동영상-'우리 반 친구 민수' ▶ 85
2. 인권영화- '대륙 횡단' ▶ 86
3. 공익광고1- 대화의 문 ▶ 87
4. 공익광고2- 장애인 편견 ▶ 88
5. 공익광고3- 생각의 나눔 ▶ 89

Ⅰ. 차이를 넘어 바라보기

Ⅰ- 1. 지구인 화성인 우주인

지구인 화성인 우주인



저자- 움베르트 에코

〈개요〉

화성에 도착한 세 지구인 앞에 흉측하게 생긴 화성인이 나타나자 세 지구인은 마음을 모아 화성인을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화성인도 지구인도 우주인이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차이'에 대한 이해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다. 장애 이전에 본질적인 인간 각 개인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차이가 서로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올바른 차이에 대한 이해는 차별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범세계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활동 – '다름에 대한 이해'

목표	■ 차이로 인한 좋은 점, 어려운 점을 말할 수 있다. ■ 인간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소중하고 동등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활동	■ 책 들여다보기 – 책의 삽화를 발표 자료로 만든 것을 보며 책의 내용을 읽는다. ■ 화성인의 눈물 – 서로 다르지만 화성인의 눈물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야기한다. ■ 생활 속으로 끌어내기 – 내가 낯선 화성인이 될 때의 상황 나누기 – 화성인은 곧 타인임을 인식하고 누군가에 있어 자신 역시 타인임을 인식하여 서로가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도록 한다.

Ⅰ - 2. 차이와 차별

차이와 차별	
	〈개요〉 서로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동등한 인간임을 인식하는 활동이 이뤄졌다면 이제 그 차이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풀어내는가를 배워야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차별, 그리고 좋은 차별의 하나인 '배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차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좋은 차별의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함으로써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천의 형태인 배려를 통해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활동 – '배려와 차별에 대해'

목표	■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다. ■ 차별과 배려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활동	■ 너와 나, 우리의 차이 – 우리 반, 학교, 가정 등 생활 주변에서 나와 다른 이들의 목록을 적어보며 모두가 다름을 인식한다. ■ 차이로 인한 차별의 종류 – 인종, 학력, 장애, 빈부 등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황이야기를 통해 '내가 만약 차별을 받는다면' 어떠할지 생각해보며 차별의 문제점을 인식한다. ■ 생활 속 차별과 배려 – 차별과 배려의 차이점을 발표 자료를 통해 이야기 나눈다. –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배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살펴본다. – 배려는 동등한 관계를 위한 권리이기도 함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Ⅰ - 3. 우리가 키우는 인권 나무

우리가 키우는 인권 나무



〈개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권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인권은 우리가 지켜 나가야하며 지켜줘야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 주변 또는 사회, 국제면 등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인권 나무 만들기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비유법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인권에 대한 생각들은 생각을 넘어선 실천으로 발전되어져갈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힌다.

활동 – '인권에 대한 생각 키우기'

목표	■ 인권의 중요성을 비유법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 인권나무를 만들 수 있다.
활동	■ 인권 바로 알기 –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 세계인권선언으로 인권 알기 – 인권은 동등한 인간의 권리이자 약자의 권리 – 우리 주변이나 사회 각 장면에서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살펴본다. ■ 인권 나무 – 인권은 '금반지'다.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 나뭇잎 모양의 메모지에 각자 인권에 대한 생각을 비유법을 통해 적 거나 인권 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적어 인권나무를 완성한다. – 인권나무가 건강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 실천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Ⅱ. 영상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권

Ⅱ- 1. '우리 반 친구 민수'

동영상– 우리 반 친구 민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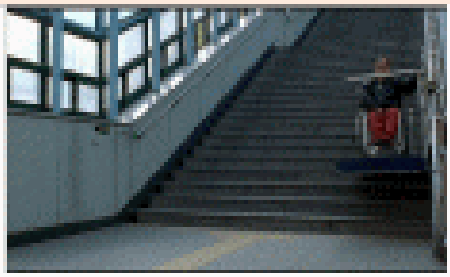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장애학생을 대할 때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배제가 관심과 이해를 통해 '장애는 다양한 특성 중 하나'라는 인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자료이다. 현장 특수교사들의 삽화와 음성 녹음으로 만들어진 '우리 반 친구 민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활동 – '장애인의 학습권'

목표	■ 장애인의 학습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제시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의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활동	■ 친구들의 생각 공감하기 – 민수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며 영상 속 민수 반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한다. ■ 민수의 입장 공감하기 – 내가 민수였다면 친구들의 반응에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해본다. ■ 장애인의 학습권 –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중 하나인 학습권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를 가진 학생도 함께 교육받아야함을 인식한다. ■ 실천을 위한 모색 – 학교 내 학습권 침해에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면, 관심과 이해를 통해 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Ⅱ – 2. '대륙 횡단'

인권영화– 대륙 횡단



대륙횡단 中- '음악 감상'

〈개요〉

인권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영화 '여섯 개의 시선' 중, 여균동 감독의 '대륙횡단'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의 일상을 다룬 단편영화이다. 이 짧은 영화(약 15분)는 또다시 여러 개의 작은 에피소드로 나뉜다. 비장애인들의 익숙하지만 성숙되지 않은 배려로 인한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에 대해 생각해보고, 올바른 이동권 확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활동 – '장애인의 이동권'

목표	■ 영화 속 에피소드를 통해 인권의 종류를 찾을 수 있다. ■ 장애인의 이동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활동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찾기 – 여러 에피소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아본다. ■ 내가 만약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 우리 학교, 동네 등에서의 이동 –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 장애인의 이동권 – 신문 및 뉴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피해사례를 알아본다. ■ 생각해 보기 – 생활 주변(건물, 도로 등)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가 안 되어 있거나 어려운 곳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생각해본다.

II- 3. 서로 마주하면 대화를 여는 문이 됩니다.

공익광고1– 서로 마주하면 대화를 여는 문이 됩니다.



〈개요〉

장애를 떠나서 어린이들은 누구나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들이 경험한 차별들을 생각해 보면서 부당했던 감정을 이야기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켜간다.

활동 – '서로 들여다보기'

목표	■ 차별 당했을 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우리 반 친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활동에서 당연히 제외 되었을 때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 친구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활동	■ 상황1 – 잔소리 대장 우리 엄마 ■ 상황2 – 넌 어리니까 잠자코 있어 ■ 토론하기 – 어리기 때문에 어른에게 대든다고 혼나본 적 있나요? 그럴 땐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 생각해 보기 –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려고 해요. 눈이 안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II- 4. 무엇이 보이십니까?

공익광고2– 무엇이 보이십니까?





〈개요〉

베토벤, 루즈벨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무도 그들을 장애인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장애는 단지 차이일 뿐이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보는 시각에 따라 장애를 결함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 '장애를 넘어선 능력'

목표	■ 장애를 가진 위인들을 알고 장애인들의 능력에 대해 이해한다.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 해 보고 차별이 아닌 차이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다.
활동	■ 장애를 가진 위인들 알아보기 – 베토벤, 루즈벨트, 스티븐 호킹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장애인의 능력 알아보기 – 시각, 청각, 지체, 정서, 정신지체 장애인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 토론하기 – 장애인을 보고 느꼈던 생각(편견)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앞으로 가져야 할 생각을 이야기 해 본다. ■ 칭찬하기 – 옆에 있는 친구의 장점을 생각해 보고 칭찬하는 글을 써 본다.

II- 5. 생각이 어울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공익광고3– 생각이 어울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개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장애인들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과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같은 유전자를 받았지만 나와 내 동생의 생김새와 장끼가 다르듯이 나와 장애인과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한다.

활동 – '생각의 어울림'

목표	■ 나와 가족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한다. ■ 공동체의 구성원을 알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시각을 갖는다.
활동	■ 나와 가족의 차이점과 공통점 알기 – 내 모습 중에서 엄마, 아빠와 닮은 곳을 찾아본다. – 나와 내 동생의 모습과 행동에서 다른 점을 찾아본다. ■ 나와 장애인 친구의 차이점과 공통점 인식하기 – 나와 장애인 친구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해서 이야기 해 본다. ■ 이야기하기 – 옆에 있는 친구의 특별한 점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해 본다. ■ 핸드 페인팅하기 – 커다란 도화지에 핸드 페인팅을 한다. 손의 모양과 손에 칠해진 물감의 색은 다르지만 모두가 어울려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제5장 결론 및 논의

장애인의 인권(人權)은 근본적으로 일반인의 인권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일반인과 다르게 나타나는 신체적·인지적·행동적 특성이 인정될 때 그들의 인권은 정당성과 형평성이 부여된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성이란 정상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개인에게 부여된 교육평등, 자유, 인간 존엄성 등의 기회를 부여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행사의 자격을 온전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보장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 개개인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요구가 보장될 때 권리의 형평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장애로 인한 개개인의 독특한 요구가 수용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의 확보의 최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적,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물질적·심리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간의 발달상에서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의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을 제안하며, 이상의 실태분석과 교육적 측면, 실제 매뉴얼 개발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와 구현되는 현실은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의 개념을 보호의 차원이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차별과 인권침해의 문제해결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 대책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을 비롯한 많은 장소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과 기회부여 축소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를 법률적으로 제지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 표출해야 할 책임은 장애를 지닌 개인과 부모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변호와 행정적 보조지원을 스스로 요구하기 힘든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구성원으로 가진 가정에서는

법률적 구제와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질적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권주장교육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직되고 제공되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많이 좋아졌으나 구체적인 실천적인 측면들은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바른 장애 이해와 장애인의 인권 보장 실천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홍보의 기회가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제도와 행정적 지원은 현대에 이르러 많은 발전과 개선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에 대한 이해는 여러 정보매체를 통한 지엽적인 정보전달로 인해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각종 영화와 드라마, 방송을 통해 그동안 일반인들이 받아들인 장애에 대한 정보는 대개 장애를 지닌 아동과 가족들이 장애로 인해 겪는 고통과 이러한 장애를‘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성공이라는 감성적 코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장애에 대한 근본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장애인의 인권이 본질적인 인간완성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약자에 대한 정서적 배려‘와 ’무조건적인 양보‘를 토대로 한 감정적 호소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여러 법률적 제도와 행정적 지원이 과거에 비해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호응을 얻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칫 이러한 효과에 기대어 추진되는 여러 정책과 지원은 자칫 양날의 칼이 되어 장애인 인권의 본질을 오도하고 근본적인 장애인 인권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인간이 수많은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발달되어지는 학령기에 적절한 장애 이해 교육과 인권교육이 장애 유무(有無)를 떠나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히 이루어질 때 인권보호를 위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학령기에 속한 학생들

에게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와 인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교육과정 속에서 구현될 때 그 교육적 파급효과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장애를 지닌 아동을 동등한 학급 구성원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장차 성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같은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통합의 토대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약컨대 장애아동의 권리보호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이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은 많이 나아졌으나, 사회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실천지식과 의지 등은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여된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실천적 차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이 담겨진 매뉴얼의 개발 보급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며 이는 장애아동과 함께 교육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학령기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 목적은 이러한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위한 시작점을 찍고자 하는 것이다. ‘Rawls(1971)는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에 따라 사회의 취약구성원이 불평등한 분배로 이익을 얻을 때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곧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개인주의, 몰가치성, 경쟁중심의 이기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와 다른 타인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아는 이해와 경험’은 이타적인 마음을 통해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가인권위원회. 학령기 장애아동 교육권의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2009.

김성애.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국립특수교육원. 1997.

김승엽.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분석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정권. 완전통합교육과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도서출판 특수교육.

김홍완. 도덕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 :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노광호.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류기연. 특수학급 교사와 원적학급 교사의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요구조사 연구.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박경숙. 장애아동집단 따돌림의 현황 및 대책. 제3회 장애인 인식개선 세미나. 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 2002.

박래군 등. 인간답게 살 권리-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 사랑방. 사람생각. 1999.

박영수. 영상자료를 활용한 도덕교과 인권 교육 방안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 대학원. 2005.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 일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서울 : 학지사. 2006.

손희권. 교육에서의 장애 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한계. **교육문제연구. 32, 2008. 143~166.**

양준석. 정신지체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에. 학술저널, 2001. 66~67.

양향미. 일반교사들의 장애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윤정숙. 인권단체 인권교육을 활용한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이순주. 장애아동 통합교육과 인권침해적 태도 :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이정선, 최영순. 초등학교 고학년 학급에서 나타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초등교육연구, 14(2), 2001. 181~221.

정소영. 반편견(Anti-Bias) 교육을 강화한 교과수업이 통합학급 아동의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주혜영, 박원희. 초등학교 통합교육에서의 장애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소고. **특수교육학연구**, 38(3), 2003. 359~377.

주혜영. 장애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통합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주혜영, 박원희.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인권문제의 유형화. **특수교육학연구**, 41(2), 2006. 297~319.

천세영, 남미정. 한국에서의 교육적 방임에 관한 소고. **아동권리연구**, 4(1), 2000. 63~77.

〈부록1-일반학생용 장애인식 설문지〉

1. 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 나는 장애인을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 또는 '바보'란 생각이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3. 장애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4.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5. 나는 학교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6. 나는 장애인을 대할 때의 예절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7. 나는 장애인을 만나면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8. 나는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보호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9. 나는 장애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0. 나는 장애인을 만나면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부록2-장애인 인권교육 참고사이트〉

사이트명	인터넷 주소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이해사이트	http：//edu.knise.kr/index.jsp
한국장애인인권포럼	http：//www.ableforum.com/
제 10회 장애인 인권 영화제	http：//www.dhff.or.kr/main/main.php
서울 장애인 인권 영화제	http：//www.420.or.kr/fest/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http：//www.kshb.or.kr/
한국장애아동인권연구회	http：//www.kdcr.org/
여주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	http：//www.ydhi.net/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e장애인신문	http：//www.ednews.co.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kdawu/index.asp
장애여성공감	http：//www.wde.or.kr/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emodu	http：//www.emodu.or.kr/
한국장애인방송국	http：//jnettv.co.kr/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html/index.php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http：//www.korida.org/korean/portal.php
한국장애인연맹	http：//www.dpikorea.org/
나와우리	http：//www.nawauri.or.kr/
Disability Rights Advocates	http：//www.dralegal.org/
인천사회통합지원센터	http：//happylog.naver.com/isisc.do
대구DPI	http：//www.dpidaegu.org/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장애이해교육	http：//spedu.eduhope.net
위드유아(장애유아통합교육포탈)	http：//www.withua.com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http：//se.usgbe.go.kr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http：//special.usgne.go.kr
희망경기교육	http：//kysenet.org/index.php
손오공의 특수교육	http：//special.new21.org/
장애이해교육	https：//student.pcu.ac.kr/
논산특수교육지원센터	http：//www.cnnse.go.kr/
경상북도의성교육청교수학습도움센터	http：//study.kbused.go.kr/
특수교육-알자넷	http：//alja.net/web/board.php?board=kkkbodyonly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http：//www.ddask.net/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www.sadd.or.kr/
열린세상 국민문화운동본부	http：//www.openworld.or.kr/

〈 부록3–장애관련 인권교육 참고 도서목록 〉

순번	제목	저자	출판사 (연도)	내용
1	깃털 없는 거위 보르카	존 버밍햄	비룡소 (1996)	깃털이 없어 날지 못하는 거위 보르카 이야기
2	목소리 큰 개미 에피	베벨리 에린슨, 바바라 레이드	다음세대 (1999)	목소리가 너무 커 따돌림 받는 개미 에피의 이야기
3	외눈박이 한세	곽재구, 심미아	미세기 (1993)	외눈박이 고양이 한세의 신비한 모험 이야기
4	우리도 똑같아요	박경진	보리 (1991)	서로 다르지만, 또한 모두 같은 장애인들의 이야기
5	눈먼 곰과 다람쥐	정승각	보리 (1991)	앞을 못 보는 곰과 다람쥐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야기
6	혹부리 영감님	강원희	아기월드 (1997)	놀림받던 혹으로 오히려 보물을 얻은 할아버지 이야기
7	반쪽이	이억배	보림 (1997)	몸은 반쪽밖에 없지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청년의 이야기
8	티코와 황금날개	레오리오니	분도출반사 (1979)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하는 티코가 황금빛 날개를 얻으며 겪게 되는 이야기
9	내 귀는 짝짝이	히도 반 헤네흐텐	웅진출판사 (1999)	오른쪽 귀가 늘어진 토끼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
10	헬렌 켈러	윤형부	국민서관 (1995)	시각, 청각 장애를 노력을 통해 극복한 헬렌 켈러 위인전
11	일곱 마리 눈 먼 생쥐	애드영	시공주니어 (1999)	일곱 마리의 눈 먼 생쥐들이 힘을 합쳐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이야기
12	자라지 않는 소녀 트루디	어슐러 헤기, 지젤 포터	베틀북 (2003)	난쟁이 소녀 트루디가 세상에 마음을 열어가는 이야기
13	그래도 우리 누나야	오가사와라다이스케 /우메다슌사쿠	베틀북 (2003)	장애인인 누나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동생의 이야기
14	할머니가 남긴 선물	론 브룩스, 마거릿 와일드	시공주니어 (1997)	할머니를 떠나보내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는 손녀 돼지의 이야기
15	으뜸 헤엄이	리오니	마루벌 (2000)	작은 물고기들이 힘을 모아 큰 물고기를 물리치는 이야기

순번	제목	저자	출판사 (연도)	내용
16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J.W. 피터슨, D.K. 레이	히말라야 (1995)	청각장애 여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
17	민수야, 힘내!	아오키 미치요, 하마다 케이코	한림출판 (2000)	언제나 누워 지내야 하는 민수와 친구들의 이야기
18	우리가 달라도	김혜리	아이코리아 (2007)	다른 모습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19	내 친구 여진이	김혜리	아이코리아 (2007)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20	큰 산이 될거야	김혜리	아이코리아 (2007)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21	넌 왜 보청기를 하니	김혜리	아이코리아 (2007)	보청기를 사용하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
22	함께 가는 길	김혜리	아이코리아 (2007)	각자 길을 떠났지만 서로 만나 함께 길을 가는 세친구 이야기
23	내 동생 아영이	김중미	창작과비평사 (2002)	상처가 많은 두 소녀가 친구가 되어 가는 이야기
24	내 친구 재덕이	이금이	푸른책들 (2006)	재덕이와 명구가 교감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
25	꼴지를 하더라도 달려보고 싶어	홍기	삼성당 (2007)	꼴지를 하더라도 달려보고 싶은 친구의 이야기
26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조대현	문공사 (2001)	사랑에 목마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려와 사랑에 관한 생각을 하게 하는 동화
27	나보다 작은 형	임정진	푸른숲 (2001)	나보다 작지만 형을 사랑하는 동생의 이야기
28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백남원	사계절 (2002)	친구를 위해 가방을 들어주며 우정을 쌓는 이야기
29	성윤이는 내친구	김태련, 박경숙	한국어린이육영회 (1998)	정서장애를 가진 친구 성윤이를 이해해가는 이야기
30	바퀴의자 선생님	이경우, 전효훈	한국어린이육영회 (2000)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31	까마귀 소년	타로야 마시	비룡소 (1996)	땅꼬마라고 소년이 가진 재능과 친구들의 이야기

순번	제목	저자	출판사 (연도)	내용
32	내 짝꿍 최영대	채인선	재미마주 (1997)	놀림을 받는 영대가 친구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
33	키 큰 아이가 되고 싶어요	올리브	삼성당 (1998)	키가 크고 싶었던 소녀와 엄마 아빠의 따뜻한 이야기
34	길아저씨 손아저씨	권정생	국민서관 (2006)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35	나는 청각 도우미견 코코	이지현, 이승원	대교출판 (2005)	유기견에서 청각 도우미견이 된 강아지 코코의 이야기
36	손으로 노래하는 우리엄마	남인숙	꿈소담이 (2001)	청각장애를 가진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
37	네 잘못이 아니야	고정욱, 최문수	황금두뇌 (2005)	정신지체 학생과 친구가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38	재주 많은 다섯 친구	양재홍	보림 (2004)	다양한 재주를 가진 다섯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
39	쌀쥐 보리쥐	유준호, 김종도	한국어린이육영회 (2000)	농사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 쌀쥐의 이야기
40	종이봉지 공주	로버트 문치, 마이클 마첸코	비룡소(1998)	용에게 납치된 왕자를 구하는 씩씩한 공주 이야기
41	아기돼지 세 자매	프레데릭	파랑새 어린이 (1999)	아기돼지 세 형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패러디 한 동화
42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닷컴 (2000)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에 대응하는 이야기
43	한이야, 시장갈래	신혜경	바오로딸 (1993)	시장에 온 남자 손님을 통해 기존의 성역할 모델 탈피
44	엄마의 의자	베라 B. 윌리엄스	시공주니어 (1999)	저소득층, 편모 가정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린 이야기
45	오른발 왼발	노미 드 파올라	비룡소 (1999)	할아버지에게 걸음마를 배운 보비의 이야기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학생부분

서수원 / 서울산업대학교 전자정보학과
심미선 /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파양(罷揚) 당한 입양아동의 인권 실태 연구

–파양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고찰 및 프로그램 제안–



목차



요 약 ····· 104

제1장 서론 ····· 107
제1절 연구목적 ····· 107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109

제2장 파양아동 인권 보호 체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11
제1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11
제2절 아동 인권보호의 구성 요소 ····· 114
제3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현황 ····· 115

제3장 주요선진국의 파양 아동 인권보호 체계 ····· 119
제1절 파양 아동 인권보호 관련 법률체계 ····· 119
제2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관련 행정체계 ····· 122
제3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관련 서비스체계 ····· 124
제4절 미국의 파양아동 인권 보호 체계의 시사점 ····· 125

제4장 우리나라의 파양아동 인권보호 체계 ····· 127
제1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관련 법률체계 ····· 127
제2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관련 행정체계 ····· 135
제3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관련 서비스체계 ····· 136

제5장 우리나라 파양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고찰 및 프로그램제안 ·· 138
제1절 우리나라 파양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138
제2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프로그램 제안 ····· 141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 ····· 154

참고자료 ····· 155

요 약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는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아동의 존귀성과 건전하게 성장하여 발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아동기는 한 인간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 사회적으로 아동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입양 한 후 입양부모로부터 파양당한 아동들이다.

입양은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의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를 말하며, 파양은 입양설립 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인 2008년에는 모두 1250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지만 그와 함께 파양과 같은 많은 문제점도 늘어나 무려 9백여 명의 입양아동이 파양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는 국내입양 활성화에만 치우친 정부의 입양 정책의 결과, 파양에 따른 아동들의 인권을 위한 제도적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 국내에서는 파양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입양 시스템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파양이 가능하며, 파양절차가 구청에만 신청하면 되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부모, 기관 중심의 파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사소하고, 정당하지 못한 이유에 의한 파양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책적 노력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사유조차도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는 정책적으로 입양활성화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아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파양당한 아동의 인권 보호체계를 법률체계, 행정체계, 서비스체계로 나누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가의 파양 아동인권보호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파양 아동인권보호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파양 아동인권보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파양 아동인권향상을 위한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민법상 파양허가제 도입과 입양특례법상 파양사유 판단기준의 명확화이다.

현행 민법상 입양이나 파양의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재판을 통한 과정이 필요한 외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입양률 저하를 우려해 국외입양에 한해서만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신중한 파양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양사유는 아이의 건강, 성격 문제부터 경제적 악화, 부모의 이혼, 불임부부의 임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부모의 기준에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만으로 아이의 의사에 관계없이 파양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파양기준을 불가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분을 법률로써 명확히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파양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아이 중심의 행정', '파양담당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민간차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러한 노력들을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적부분에도 파양당한 아동인권보호 문제를 전담하는 보다 세분화된 조직 및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파양의 행정절차는 일방적으로 양부모의 입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양아동의 인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입양에 관한 행정절차와 정책을 부모 중심이 아닌 아이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양담당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에서는 파양

당한 아동의 인권보호체계를 따로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2009년 7월 15일에 중앙입양정보원이 설립되었으나 이곳은 입양활성화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즉 파양 아동의 인권문제는 아동복지과에서 대부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인권신고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사무소에서 접수를 통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파양담당기구의 설치를 통해 앞서 말한 파양허가제 도입 시 파양신청에 대한 재판 및 허가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파양담당기구는 모든 파양을 관리 하에 둘 수 있다.

셋째, 서비스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전·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파양당한 아동은 제이드의 사례처럼 국제 미아가 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바로 보호시설로 옮겨져 재입양을 기다리게 된다. 이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여 악용을 가능케 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사전·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전체적인 사전·사후 입양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양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파양은 그 당시 아동에게 '부모가 죽었을 때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갖게 되는 외로움과 버려짐, 그리고 자기 학대에까지 이르는 깊은 자괴감의 정신적 후유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써,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입양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아이의 중심에서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양 아동 인권보호체계의 개선점과 프로그램 제안은 파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은 물론 파양이 발생 시에 조기 개입을 통하여 아동의 인권 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이 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는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아동의 존귀성과 건전하게 성장하여 발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아동기는 한 인간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 사회적으로 아동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 환경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Best Interests of Children)[1]을 담보로 하는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을 조성하고, 아동 인권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을 위한 건전한 성장과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책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입양 한 후 입양부모로부터 파양당한 아동들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제도가 그 동안 꾸준히 입양아동의 복지 및 권익 보호 중심으로 변화하여 왔다고는 하나, 아직 전근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입양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입양절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인 2008년에는 국·내외 모두 1,250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지만 그와 함께 파양과 같은 많은 문제점도 늘어나 무려 9백여 명의 입양아동이 파양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는 국내입양 활성화에만 치우친 정부의 입양 정책의 결과, 파양에 따른 아동들의 인

---

1)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 Convention on the Pights of the Child)제 3조.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이 협약으로,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3년 1월 현재까지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1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91년 가입했다.

권을 위한 제도적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 국내에서는 파양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입양 시스템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파양이 가능하며, 파양절차가 구청에만 신청하면 되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부모, 기관 중심의 파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사소하고, 정당하지 못한 이유에 의한 파양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책적 노력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사유조차도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는 정책적으로 입양활성화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아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입양특례법은 그 대상을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보호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필요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계계승 목적이 강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최대화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입양요건에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입양취소 및 파양규정이 입양아동의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입양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입양아의 입양관련 정보 요구 시 공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약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입양의 사후 관리에 대한 입양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행정적 조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어서, 현재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입양 아동에 관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 국가의 아동의 인권 보호는 미래사회에 대한 중요한 투자전략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인적 자본의 개발 차원에서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의 책임을 갖는다. 입양 후 파양 당한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입체적인 파양아동의 인권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아동인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인 동시에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입양 후 파양당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인권보호체계를 법률체계, 행정체계, 서비스체계로 나누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 국가와 우리나라의 파양당한 아동의 인권보호체계 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파양당한 아동의 인권보호체계의 현황과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파양 아동의 인권보호개선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아동인권 보호의 개념, 파양당한 아동인권보호의 체계 구축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주요 선진국 국가의 파양 아동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파양 아동의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과 인권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아동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주요 선진국 국가의 파양 아동인권보호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우리나라의 파양 아동인권보호 체계를 살펴본다.

넷째, 우리나라 파양 아동인권보호 체계의 개선방향과 인권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 국가와 우리나라의 입양 후 파양당한 아동의 인권보호체계를 살펴보고 기존 파양 아동의 인권보호체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파양 아동 인권보호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파양아동인권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인권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는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신문기사, 잡지 등의 언론매체, 논문, 인터넷 등을 통한 문헌조사방법

입양 아동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기사, 그리고 입양아동에 관한 논문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을 도서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2) 아동입양과 관련된 담당기관 방문을 통한 조사방법

현 아동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실제적인 아동입양 절차과정에서의 현실을 관찰 및 입양담당기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 입양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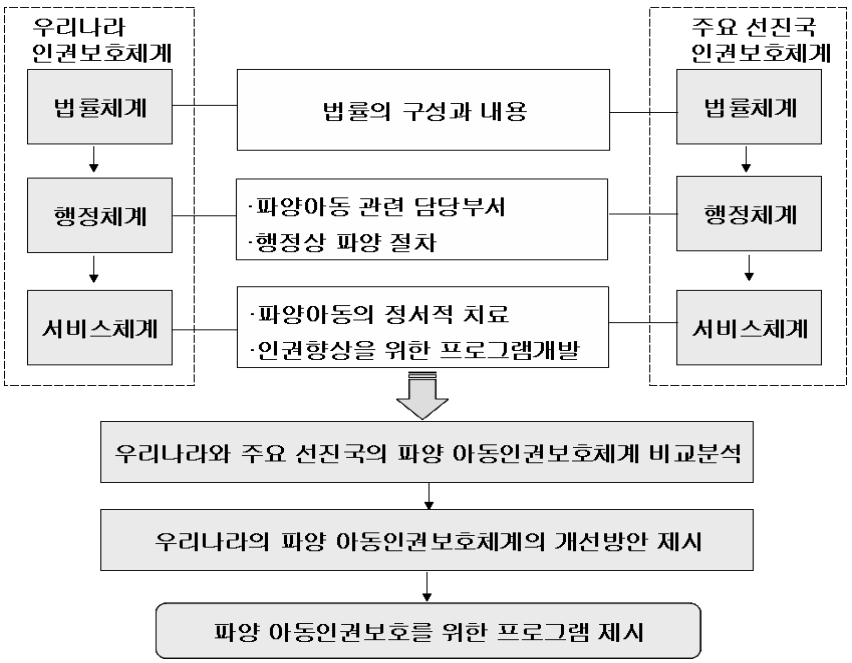
3) 여러 인권단체의 방문을 통한 아동피해 사례 연구조사

여러 가지 입양아동에 관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관의 방문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입양아 문제점의 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실제적인 파양아의 정신적 피해에 관한 점을 조사할 것이다.

4) 법률 자문가와 만남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한 조사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입양 아동의 보호에 관한 현실적 법률안에 대한 조사를 한다.

〈 연구의 분석 틀 〉



제2장 파양아동 인권 보호 체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Kadushin(1998)은 보호 아동을 ①부모의 사망, 별거, 이혼, 신체와 정신적 질환, 불법이민 등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이 결여된 경우, ②부모의 신체·정신·정신적 무능력, 정서발달 지체 또는 미성숙, 약물중독, 무지 등 부모가 무능력한 경우,③양육자가 태만, 자포자기, 신체적 학대, 유기 등으로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는 경우,④역할 내 갈등과 역할 간 갈등상황에 방치된 경우, ⑤부적절한 주택, 실업 등 지역사회자원의 결함으로 인해 보호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장인협은 아래 표와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상을 정리하였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대상〉

대상	구분	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양육환경상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신체 정신 정서 장애아동 . 사회적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	빈곤가정 아동, 결손가정 아동, 부모부재 아동, 신체장애 아동, 정신장애 아동, 정서 장애 아동, 가출아동, 비행아동, 미혼모 아동
일반아동	일반 건전 아동	근로·농어촌아동

* 자료 : 장인협 외,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96~P101표로 정리

즉 보호아동은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문화적인 욕구 충족에 있어 심각한 결핍을 보이며, 이러한 욕구의 결핍은 아동의 성장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빈곤의 악순환, 신체·정신·정서적 질병, 무지, 문화적 결손의 사회문제를 낳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아동의 비행, 자살, 약물중독, 정서장애, 인격 장애와 같은 사회 부적응은 물론 인권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2008월 6월 개정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파양당한 아동 또한 보호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원칙

1)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 사상, 즉 권리로서의 아동복지 사상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동복지의 이념과 실천과제로서 강조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부모나 사회의 종속물에 지나지 않았던 아동들도 아동으로서의 가치와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선이나 박애의 소극적인 보호에서 권리와 책임이라는 적극적인 인권보호와 복지가 요청되고 있다.

처음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1922년 아동복리회 창설자 Englantync Jebb여사에 의한 아동권리선언이 성문화된 것을 계기로 비롯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인류가 아동들에게 주어야할 최소한의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2008년까지 세계 191개국이 비준함으로 인류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 협약 중에서 국가 간 입양에 대한 것으로써 1993년 5월에 헤이그에서 체결된 '국가 간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협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리는 첫째, 아동 인성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아동이 가족 내에서 행복과 사랑 및 이에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우선적으로 아동이 원래 가족의 보호에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셋째, 국가 간 입양은 아동의 원래 국가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

우에 아동에게 영구 가정을 제공하며, 넷째, 국가 간 입양은 아동복지를 위하며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증하여야 하며, 아동의 확대, 인신매매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정은 국가 간 입양에서 아동의 이익과 국제범상 기본권리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safeguard) 설정하고 입양에 관한 협정체결 국가의 인식 공고화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권리란 아동들의 욕구와 관심을 인정하고 충족해주는 사회적 표명이다. 즉 아동의 제반 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주장될 때 권리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권리의 본질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Maslow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있으며, 가정이나 사회,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한다. 아동들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욕구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 될 때 아동들도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들이 갖는 욕구체계를 충족시키고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복지 활동이 전개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욕구충족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 보장은 아동의 행복을 보장해야 할 아동인권의 원리가 된다.

2) 아동의 보호 원칙

(1) 가족유지와 가정 중심의 서비스

가족의 유지서비스는 다섯 개의 주요 목표가 있는데,

①아이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머물도록 하는 것, ②가족의 유대를 유지하고 강화 하는 것, ③위탁을 조장하는 위기상황을 안정시키는 것, ④가족의 대처기술과 능력을 증대 시키는 것, ⑤가족이 적절한 공식·비공식적 지원 자원을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즉 가족유지 서비스는 장으로부터 아이를 분리하는 대신 아이의 해로운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족의 유비 서비스에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음 5가지 가정과 가치에서 기인한다.

첫째, 가족은 아동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가능한 경우 언제나 유지되고 지원되어야한다.

둘째, 아동의 삶은 지속성과 안전성을 필요로 하며,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체 보호보다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

셋째, 가족의 분리는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입양 전 서비스에 최우선으로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는 가족의 통합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동일하게 위탁에도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각 자족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시간 제한적이고 집중적이며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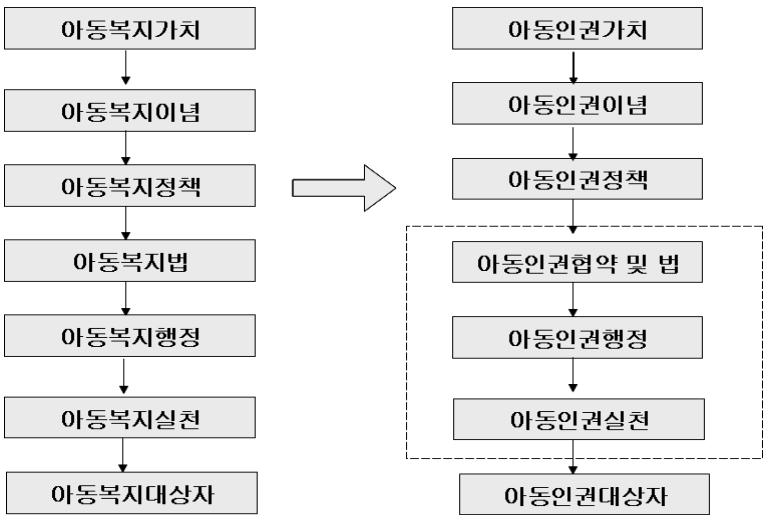
(2)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의 변환

아동의 시설보호를 부정하고 지역사회보호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를 탈시설화 사상이라고 한다. 탈시설화는 기존의 거대 관리 시설이 기본적 권리인 자유, 인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쉬우며, 비민주적 운영으로 시설 이용자의 주체성을 잃기 쉽다고 강조하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관리인가를 묻고 있다. 아동의 경우 탈시설화는 특히 부당한 시설병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찍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는 시설무용론이 아닌 탈거대시설, 탈 관리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보호는 지역사회보호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며 이 때 시설은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방적인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절 아동 인권보호의 구성 요소

아동의 인권보호는 아동에 대한 복지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진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아동 인권보호의 가치, 이념, 정책을 바탕으로 아동복지체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아동복지체계를 기초하여 아동 인권 보호체계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의 인권보호 실천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인권대상자를 입양 후 파양당한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아동 인권보호체계〉



*자료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01

제3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현황

1. 파양의 정의

입양은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의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파양은 입양설립 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2. 파양 사례

'뉴스후' 입양 후 파양, 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굴레
국제 미아가 된 '제이드'

31일 방송되는 MBC '뉴스후'(진행 윤도한)에서는 파양(破養)된 어린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된다.
홍콩 한인 신문에 7살 난 한국 여자 아이를 입양할 부모를 찾는다는 신문 광고가 게재됐다. 일곱 살짜리 한국 아이가 먼 타국에 홀로 남겨진 이유는 다름 아닌 파양이다.
지난 2000년 홍콩 주재 네덜란드 영사 부부에게 입양됐던 제이드 양은 입양된 지 6년 만에 홍콩에서 파양돼 국제 미아가 됐다. '뉴스후'는 제이드를 파양한 레이먼드 푸테라이 영사 부부를 단독 인터뷰를 시도했다.
네덜란드 국적도 주어지지 않은 채 국제 미아로 전락해버린 제이드는 영어와 광둥어 밖에 할 줄 몰라 한국에서 재입양 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안타까움을 더한다.
또 12년 전 경남 진주의 보육원 앞에서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여섯살 난 여자 아이가 발견됐다. 그 역시 갓난 아이 때 외국으로 입양을 갔다가 양부모에게 버림받아 고국으로 돌아온 상태이다. 파양된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커 다른 부모에게 재입양 돼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손쉽게 이뤄지는 입양과 파양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충격은 더하다. 돈을 받고 아이를 파는가 하면, 그 아이를 사서 아파트 분양 당첨에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이다.
아이에게는 호적에 남는 입양과 파양의 기록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파양이다.

*자료 : 뉴스엔 박세연기자 (psyon@newsen.com) 2008년 05월 29일 기사.

지난해에 일어난 네덜란드 주 홍콩 대사의 파양으로 인하여 국제 미아가 된 '제이드'의 사례는 그 비인간적인 행태보다도 6년 간의 입양기간과 파양의 행태가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아니었다는 점이 입양에 대한 우리나라 법적 현실의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3. 파양의 원인 및 현황분석

〈파양 유형과 원인〉

유형	원인
아이의 부적응	.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울기만 해서 . 아이가 엄마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아빠만 따라서 . 아이가 부모에게 화를 내고 소란을 피워서
부모의 부적응	. 아이가 아무에게나 안기는 걸 좋아해서 . 친부모가 자꾸 아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 아이가 양부모와 닮지 않아 사람들의 의심해서
건강상 이유	. 아이 다리가 휘어서 . 입양 당시 몰랐던 신체적, 정신적장애가 발견되어서
기타	. 이론 뒤 입양아를 서로 맡지 않으려 해서 . 경제적으로 어려워 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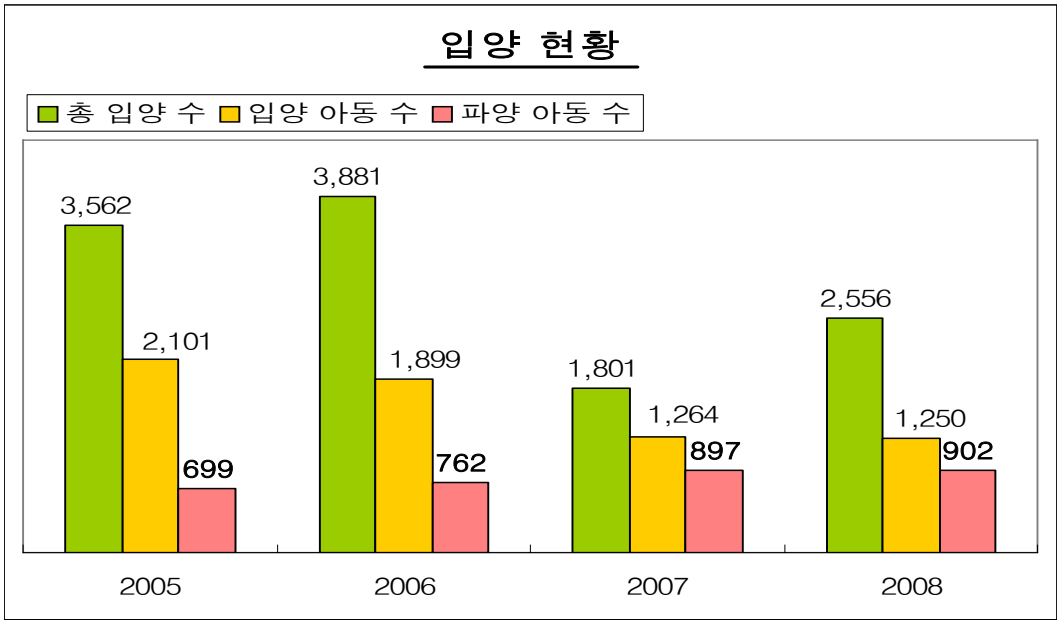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입양기관 현황 : 가족정책 서비스 기관 현황에서 참조.

입양을 준비함에 있어 불충분한 준비도 파양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입양으로 인해 현재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입양아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행동, 특성, 취약성들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을 경우, 입양가정의 이혼이나 경제적 파산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등 입양아의 양육에 대한 확대가족의 도움이 부재하였거나 입양아의 양육 포기를 권유하는 부정적 환경이 파양의 이유로 제기된다.

부모의 기준에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이가 없는 불임부부가 입양을 한 이후 직접 아기를 낳게 돼 파양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입양아동이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한다는 이유, 집안에 우환이 들게 됐다, 말을 잘 듣지 안 는다 등의 사소한 이유만으로 아이의 의사에 관계없이 파양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파양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만으로도 쉽게 파양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입양을 부모의 관점에서 희생이나 배려 등의 '은혜를 베풀다'는 식으로 인식하여 아동을 위한 입양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입양이 되고 있다. 파양의 기준이 양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치할 경우 이뤄지는 것이 아닌 양부모의 입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이나 복지가 외면당하고 있다.

입양 자체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개입양 대신 비밀입양을 하게 만들어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파양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교문화로 인해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혈통주의, 가계계승 등의 의식 또한 그 이유이다. 입양의 결심은 동정심이나 애처로운 마음처럼 사소한 계기가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입양은 '불쌍한 어린아이 돌보기'가 아닌 정신적·물리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동정심이나 필요에 의해 쉽게 아이를 선택하는 부모들 중 간혹 선택에 대한 후회가 곧 아이를 버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도별 입양·파양 현황(명)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입양기관 현황 : 가족정책 서비스 기관 현황에서 참조.

앞의 그래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총 입양 수의 대부분은 입양아동의 수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양아동 대비 파양아동 비율이 대략 40%를 보이다가 2007년부터는 70%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72.1%를 기록해 파양아동에 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파양 아동의 인권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제3장 주요선진국의 파양 아동 인권보호 체계

제1절 파양 아동 인권보호 관련 법률체계

1. 미국의 파양 아동 인권보호 관련 법률체계

미국에서 입양은 법원을 거치지 않으면 입양된 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입양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증 받은 입양기관에서 행해진 가정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가정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해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막는 한편 빈번하게 일어날지 모르는 파양을 미연에 방지 하고 있는 것이다.

1)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 AACW of 1980)

1980년에 통과된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은 미국의 아동인권보호체계의 형태를 크게 변화시킨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미국의 연방정부는 아동이 보호의 차원에서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맡겨지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주정부로 하여금 아동을 가정이나 친척집에서 보호받게 하기 보다는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가정 밖에서의 보호기관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서 아동이 시설보호 보다는 입양을 통해 빨리 영구적인 가정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1992년 원가정보존법(Family Preservation Act : FPA)으로 확대 개정되면서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부에서는 입양가정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파양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사례를 입양가정은 물론 위탁가정에 까지 확대하는 한편 입양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이나 치료, 위기관리 등의 임상적 서비스까지 개발되어 활용함으로써 파양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2) 입양 및 가족안전법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 ASFA of 1997)

이 법은 일단 아동이 정부의 보호체계에 들어오면 가능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입양가정을 찾아 입양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파양 당한 아동이 보호시설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미아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신속하게 재입양 됨으로써 영속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하겠다. 또한 이 법은 입양부모에게 5,000~6,000불에 해당하는 세금혜택도 제공하고, 주 정부에 대해서는 입양건수를 증가시킬수록 연방정부로부터의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3) 다민족배치법 (Multiethnic Placement Act : MEPA of 1994)과 다민족입양(Interethnic Adoption Provisions : IEP of 1996)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동일 인종 간 입양가정 연결을 통한 보호조치를 추진했으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소수인종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연히 소수인종 입양 아동이 증가하였는데도 백인에 비해 차별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파양당한 아동에서도 인종 간 차별을 두어 파양 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민족배치법이 제정되었고, 다시 다민족입양법으로 아동의 인권보호가 강화되었다.

2. 프랑스·독일·일본의 파양아동 인권보호 법률체계

완전양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양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서만 입양·파양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원과 같은 공적 기관이 파양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파양의 성립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선고형 양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양자협정 13조 1항은 양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은 동안은 반드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판파양만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프랑스민법 제 359조는 완전양자의 경우 일체의 파양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의 이익을 심하게 해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친생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친권을 박탈할 수 있을 뿐이다.

독일민법은 제 1764조 제2항에서 그 파양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입양 당사자의 필요한 의사표시(입양신청이나 동의)없이 입양이 성립되어졌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고, 자의 복리를 해치는 심히 중대한 사유가 있어 자를 위하여 새로운 입양이 요구될 때 후견법원의 직원에 의한 파양을 할 수 있다.[2] 그러나 특히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가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양친은 이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할 수 없다.[3] 이러한 독일민법의 태도는 완전양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즉 친생자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부모가 친자관계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되는 것이다.

양자의 복리를 위한 파양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다.[4] 일단 파양이 되면 입양으로 성립된 친족관계는 소멸하며, 생가의 친족에 대한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된다(독일 민법 제 1764조). 그러나 친생부모의 친권은 자동적으로 부활하지 않으며, 자의 이익을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친생부모에게 그 친권을 다시 부여하고, 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후견인 또는 자를 위한 감독권자(PFleger)를 따로 둘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입양을 하면 원칙적으로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양친의 학대, 악의의 유기 또는 그 외에 양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사유가 있고 친생부모의 상당한 감호가 가능한 때에, 양자, 친생부모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으로 파양될 수 있다. 다만, 양친에 의한 파양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일본 민법 제817조의 10).

특별양자가 파양이 되면 입양에 의하여 종료되었던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간의 친족관계가 다시 부활한다(일본 민법 제817조의 11).

앞에서 살펴본 프랑스, 독일, 일본은 모두 완전양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파양절차가 구청에만 신청하면 되는 신고제인 것에 반하여, 완전양자제도는 입양 후 파양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법률로 두어서 매우 엄격하다.

---

2) Bodenheimer, B.M.,「New Trends and Reqirements in Adoption Law and Proposals for Legislative Change」, Cal.L.Rev., Vol.10, No.13, 1975, p.84

3) BT-Drucks, 7/3061, S. 26f; 이 점에 있어서 일본민법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 817조의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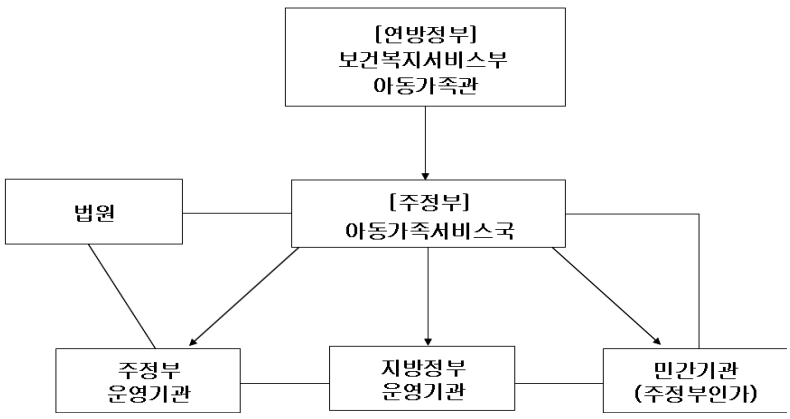
4) 독일에서는 연간 7000여명의 아동들이 입양되는데, 이 중 나중에 파양에 이르는 경우는 기껏해야 10-15건에 지나지 않는다. 파양이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친생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민법은 이제까지 자녀를 양육해 온 양부모를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을 책임질 사람 - 예를 들어 새로운 양친 - 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원에 의해서 파양이 선고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관련 행정체계

미국의 아동인권보호체계는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아동인권이 침해당했을 시에 일차적인 책임과 구체적인 정책시행은 개별 주정부에 주어져 있고, 연방정부는 법적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개별 제도나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주정부의 행정적, 법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에서 아동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연방부서는 보건복지서비스 부 내에 있는 아동가족관 산하 아동청소년가족실 내의 아동국이다.[5] 아동가족관 산하에는 아동청소년가족실 외에도 10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어서 아동보호뿐 아니라 가족 및 아동인권과 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인권보호의 주무부서인 아동국은 각 주의 정책을 지원하기 우한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들을 관할한다. 그리고 각 주정부에는 아동인권보호 서비스 담당부서를 두고 있으며, 이 부서에서 아동인권을 포함한 아동에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아동국은 5개의 과와 1개의 사무소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명칭은 정책과, 연구혁신과, 주정부체계관리과, 아동복지강화과, 프로그램시행과와 아동학대 및 인권사무소 등이다.

〈미국의 아동인권 전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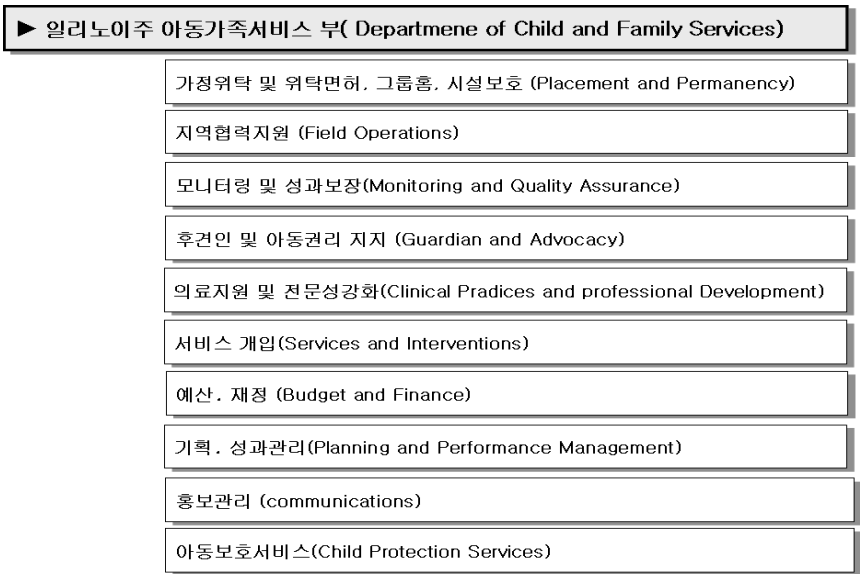


*자료 : U.S. Government Pringting Office (http : //www.gpo.gov/)

5) 미국보건복지서비스 내 아동보호체계 관련부서의 조직체계는 우리나라 정부부서의 조직체계와는 상이하나 편의상 관-실-국-과/사무소 순으로 명명하였다.

즉 주정부는 실질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인권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책임지는 조직이다. 따라서 파양 아동의 인권보호 역시 이 주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각 주정부에는 아동가족서비스국이 있고, 여기서 파양아동의 인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미국 일리노이주 아동가족서비스부의 조직 및 업무분장체계〉



*자료 : 일리노이주 홈페이지 (http : //www.illinois.gov/)

일리노이주(the State of Illinois)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아동가족서비스국은 총 10개 팀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아동보호,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를 포함한 보호조치, 현장기관 관리와 모니터링,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임상서비스 제공, 후견 및 아동권리지지 집단 관리, 기획 및 성과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아동권리지지집단관리 업무는 아동가족 서비스 부에서 총괄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서비스는 민간기관들(Private child Welfare agency)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아동인권보호체계의 가장 말단 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기관이 되며, 민간기관의 운영을 감독하고 이들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공공부문 아동인권 보호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리노이주의 아동가족서비스부서에서는 직접 아동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Child Aduse Hot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양 핫라인도 함께 개설하여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 아동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파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었다.

제3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관련 서비스체계

입양 후 아동이 입양가정에 적응·발달에 관련한 서비스는 입양과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입양까지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 후에는 입양가정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지원해주지 않는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일단 입양이 확정된 아동과 입양 가족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달라진 가정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아동인권보호의 체계의 한 과정이자 목표가 된다.

미국의 입양 후 서비스는 입양아동,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기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첫째, 새로운 입양가정과 사회에서 입양아동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개인 상담, 청소년기에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위기 특별 상담이 있다. 아울러 입양아동으로서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입양아동들과 함께 하는 지지집단활동(support groups)으로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둘째로, 입양 부모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양부모들이 입양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나 입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 입양 전문 상담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파양까지 치닫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상담자는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 문제에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해준다.

특히 미국은 특정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양가족서비스 효과 연구, 파양을 최소화하는 모델의 사후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제4절 미국의 파양아동 인권 보호 체계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미국의 파양아동 인권보호 법률, 행정, 서비스 체계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미국	우리나라
법률체계	• 아동권리보호원칙이 법률에 반영 (가족유지, 가정보호가 최우선, 지역사회 속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제공 등)	• 아동보호원칙이 법률에 없음 • 입양특례법이 근간이 되나, 파양 시에 법적체계가 미흡함.
행정체계 (공적전달체계)	• 대부분 주정부 담당 –연방정부의 아동국에서 아동권리보호관련 분야 전담 –주정부는 직접 공립기관운영, 또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함. • 법률에 명시된 아동권리보호방식의 우선순위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 • 시설중심에서 가족중심 →아동중심으로 변화.	• 대부분 중앙정부 담당 • 아동권리보호와 관련된 세분화된 부서 없음 • 대부분 민간주도하에 이루어짐 • 아동의뢰 및 서비스절차가 임의적 • 보호자에 의해 어떤 기관에 접수하여 맡겨지는 서비스 형태.
서비스	• 입양 후 치료적 환경 필요시, 단기보호목표→친 가족화의 재결합모색 • 지역사회중심의 접근→가족과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연대책임	• 파양 시 시설보호 및 입양기관 → 재입양

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살펴보면, 미국의 입양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의 변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아동보호정책은 시설중심→가족중심→아동중심으로 그 초점이 변화해오고 있다.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이자,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아동의 인권, 즉 권리보장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아직도 시설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대규모 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상황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방향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규모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시설보호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크게 완화시켜주지 못한다.

아동인권보호 행정체계에 있어서 아동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부분으로 보건복지가족 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래의 아동안전권리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도의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여성청소년청책과(여성가족과), 시·군·구의 가정복지과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파양 후에 인권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문제를 전담하는 보다 세분화된 부서가 없다.

실질적으로 아동의 인권보호는 민간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여서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는 보건복지서비스국의 아동가족관에서 책임지고 있다.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아동인권에 관련된 업무는 아동가족관 아래에 있는 아동청소년가족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가족실은 헤드스타트부, 국립아동학대신고센터, 아동국,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 아동인권보호국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여기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련된 입양, 파양, 시설보호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아동국이다.

미국의 아동인권보호는 실질적으로 주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정부의 아동가족서비스국이 그 기능을 담당하며, 연방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는 직접 공립기관을 운영하거나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아동인권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기관의 협력은 아동이 파양 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은 주 당국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 정부의 보조와 계약체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기관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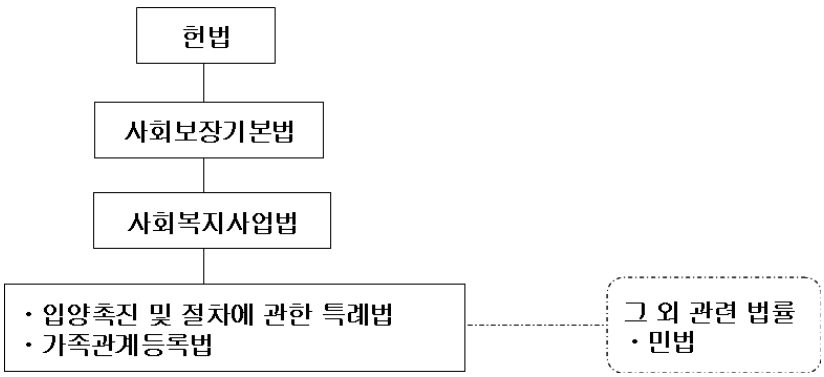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미국의 아동인권보호체계가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지역사회중심의 접근에 관한 것이다. 아동인권보호체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사회에 토대한 접근으로 이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가족과 함께 역량을 동시에 발휘함으로써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결과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기는 하나 사회적 갈등이 없이 아동의 인권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제4장 우리나라의 파양아동 인권보호 체계

제1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관련 법률체계

우리나라 파양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 특례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이다. 현재 입양특례법에는 입양의 무효와 취소 및 파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법체계상 파양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미흡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우리나라 파양 아동인권관련 법률체계〉



*자료 : 법제처(http : //www.moleg.go.kr)

1. 민법

구분	법률 내용
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친자는 협의로써 파양할 수 있다. **제899조(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1.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허락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허락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00조(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협의 파양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 파양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①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③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⑤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상 파양	**가사소송법 2조 1항 나류 12호·50조**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파양이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파양에 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파양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http : //www.moleg.go.kr)

1) 파양절차의 문제점

협의파양은 양친자간협의에 의하나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민법 제869조)이 이를 가름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고 있다. 입양승낙자인 법정대리인과 입양 동의권자는 입양의 완성으로 양자에 대한 권한이 소멸된 상태로서 이들과 양친과의 협의 등으로 파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격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법률위반 여부만을 심사하여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903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양이 양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여지가 없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재판파양에 있어서도 재판사유로서 양자 개인의 복리와 권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양부모의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입양이 친자입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파양절차 없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사실상 파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에 파양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만을 인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협의상 파양의 나이하향조정 시급

한국은 입양아동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이 빨라진 현대사회에서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만15세 이상의 연령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된다. 2009년 7월 1일에 열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13세로 하향조정하여 입양 시 본인의 의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파양에 관한 나이 하향조정은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는 파양이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양 당사자인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제도로서 특례법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아동의 입양(특별양자)에 대해서 파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요보호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권익과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절차보조인제도 도입 필요성

파양 재판과정에서 아동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파양 후 양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나 변호사 등 아동을 대리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절차보조인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분	법률 내용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자료 : 법제처(http : //www.moleg.go.kr)

4) 친양자입양의 취소·파양시의 성과 본의 문제점

친양자법 제908조의 7 제1항은 친양자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과 관련하여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종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친양자입양이 취소 또는 파양되는 경우, (친양자제도에 의해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친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랐던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친부모를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 파양 후에는 원칙적으로 양자는 친생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회복하게 된다. 그런데 자녀복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파양시 양자의 성과 본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양부의 성을 파양에 의하여 갑자기 친생부모의 성으로 바꾸는 것이 언제나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은 아닐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성의 변경은 자녀의 정체성 인식에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자녀의 입양 및 파양사실을 오부에 드러냄으로서 자녀의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용하여 오던 양친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녀 이익이 합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파양 선고시 가정법원은 자녀가 처한 구체적 사정과 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가 종전의 양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에서는 양자의 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일반양자나 완전양자의 구별 없이 입양되는 모든 자녀의 성은 양친의 성을 따라 변경되었으며, 유럽양자법의 역사를 살

펴보면 입양에 관한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양자의 성을 둘러싸고는 단 한번의 논쟁도 발견할 수 없다. 양자가 양부모의 성을 따른다는 것이 외국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완전양자제도를 취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입양에 의해 양친의 성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양자협정 제 10조 3항은 입양의 성립으로 양자는 양친의 성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6)]

독일의 경우 양자는 양친의 성을 따르거나, 양친의 성에 자기 원래의 성을 부가할 수도 있도록 독일민법 제 175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7)], 프랑스, 덴마크,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양자의 성과 양친의 성을 결합시켜 양자를 하이픈(-)으로 잇는 것이 통상적이다.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61년 처음으로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개정 되었고 2008년 3월 법률 제8852호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그만큼 입양대상 아동이나 입양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양 특례법에는 입양의 무효와 취소 및 파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파양 절차 및 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파양관련 특례법이 시급하다.

---

6) 이 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입양체결국의 국내법에 맡기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 p.13

7) 독일의 경우 입양에 의해서 양자는 항상 양친의 성을 따르게 된다. 양친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의 성을, 양친이 부부이며 공통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면 부모 공통의 성을 따른다. 양부모가 각자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오늘날 독일에서는 부부가 혼인 후에도 각자 자신의 성을 유지할 수 있다), 법원이 입양을 선고하기 전에 부모가 협의하여 양자의 성을 정한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양자의 성을 정하는 방식은 아이가 출생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법률 내용
제2장 입양의 요건	**제5조(양친될 자격)** ①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입양기관	**제15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자등의 보호)** ①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뢰된 자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2.이 법에 의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제5장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시책	**제21조(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http : //www.moleg.go.kr)

1) '입양 특례법 -제2장 입양의 요건'의 문제점

입양 특례법상 양친될 자격 조건은 가장 중요한 입양 동기나 양부모의 양육 능력,

범죄·질병 기록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양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양자될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다른 목적을 위해 입양을 남용하는 경우도 사전에 저지할 방법이 없다. 양자를 이용해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기 위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파양 절차가 쉽기 때문에 양자를 잠시 이용하고 파양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양친될 자격이 더욱 강조되어 입양절차가 이루어 져야하고, 양친의 과거내역 조사 또한 철저히 이루어질 법적 제도가 시급하다.

2) '입양 특례법 -제4장 입양기관'의 문제점

파양이 되면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라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며, 입양기관은 이를 관할 행정관청(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여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거한 보호조치 및 제12조에 의거 시설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양자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양자 본인 등의 보호요청 권리가 배제되어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3) '입양 특례법 -제5장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시책'의 문제점

한국의 특례법은 국제입양 된 아동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교적 자세하게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국제 입양된 아동뿐 아니라 국내 입양된 아동, 파양된 아동의 경우에도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대상이다.

실제로 입양은 '사후 관리가 입양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후관리는 입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입양의 사후 관리에 대한 입양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행정적 조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이 실정이어서, 현재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입양에 관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급

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는 파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가족관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신중함을 떨어트리고 결국 파양에 이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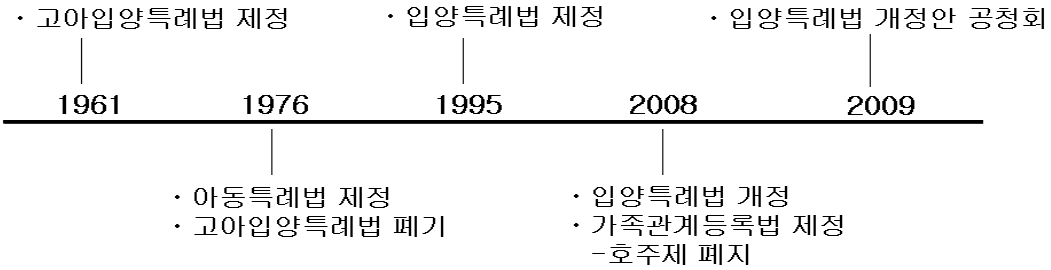
3. 가족관계등록법

구분	법률 내용
제3장 친양자의 입양의 파양 및 취소	**제9조(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①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양부모를 말소하고 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한다. 파양사유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파양된 친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지정의 기록이 있고 파양된 친양자가 파양신고 당시에도 여전히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에 관한 기록도 부활 기록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http : //www.moleg.go.kr)

'가족관계등록법 -제3장 친양자의 입양의 파양 및 취소'의 문제점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입양아의 파양 흔적이 평생 지워지지 않아 입양아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 파양 아동 권리 보호법률 체계 연혁 〉



*자료 : 법제처(http : //www.moleg.go.kr)

제2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관련 행정체계

중앙정부의 파양당한 아동과 그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업무는 크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전담 산하기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8]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기관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The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9] 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기관인 인권사무소[10]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파양당한 아동과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그와 관련된 행정업무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구아동정책관 아래에 있는 아동안전권리팀과 아동복지팀에서 파양당한 아동과 그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위탁기관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에도 파양 아동의 인권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기관인 인권사무소에서는 파양당한 아동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했을 경우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파양당한 아동의 임시보호 시설을 마련하는 일도 인권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도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파양당한 아동의 인권침해 접수 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담신청과 진정서의 접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파양당한 아동이 직접 접수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인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밖에 정부 차원의 아동인권보호 관련 기구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국가정책이 여러 관련 부처에 산발적으로 수립되거나, 일부 중복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2004

---

8)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발족하여, 이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하였으며,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바뀌었고, 2008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9) 보건복지부가 2006년 10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위탁 설치·운영중에 있고, 아동전문가 16인과 아동 10인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옴브즈퍼슨을 위촉하여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해 활동중 이다.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http : //www.childrights.re.kr/)

1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개정 2009.4.6 대통령령 제21411호]

년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7월 아동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파양 아동의 인권에 관한 사항은 입양관련부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복지행정 업무와 혼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동복지행정 업무는 전문행정기관으로서 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아동상담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의 입양과 위탁보호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은 이 아동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담에만 그치고 있으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에서 파양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침업무를 수행하는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아동인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피드백을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 역시 일선기관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파양당한 아동을 위한 복지 업무와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달라 서비스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공공부문의 행정체계가 진술된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파양당한 아동에 관한 인권보호 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의 상당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동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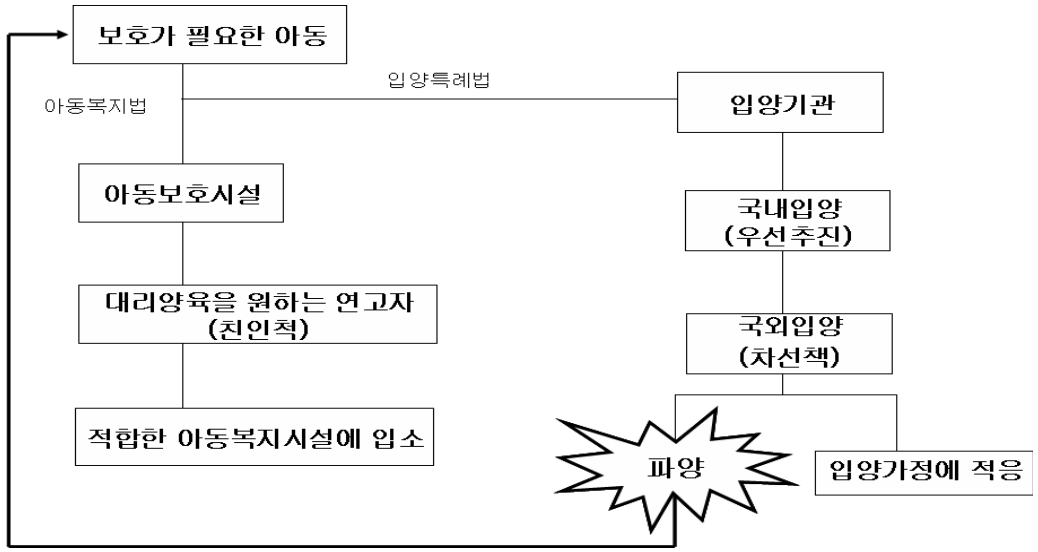
즉 우리나라 행정상 파양아동 인권보호 체계는 아이중심이 아니라 입양부모와 행정상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3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관련 서비스체계

우리나라에서 파양당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지원서비스체계는 파양당하고 난 후 다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지원과 파양당하고 난 후 거처를 위한 시설보호가 있다.

아래 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시설위탁과 입양 후 파양당하고 난 후의 서비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파양 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2008년 아동복지사업안내 표로 구성.

표와 같이 파양 후엔 다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되어 아동보호시설로 가게 되어 보호를 받거나 입양기관에 의하여 다시 입양절차를 받게 된다. 파양 후에 반복되는 이러한 서비스 흐름은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여 악용을 가능케 하는 현 서비스 시스템체계의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모두 외생적 차원의 서비스지원일 뿐 내생적 차원의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파양이 그 당시 아동에게 '부모가 죽었을 때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갖게 되는 외로움과 버려짐, 그리고 자기 학대에까지 이르는 깊은 자괴감의 정신적 후유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써,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입양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파양 당한 아동에게 내생적 차원의 서비스도 앞으로 조속히 지원되어야 한다.

제5장 우리나라 파양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고찰 및 프로그램제안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호체계는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기본적으로 부족하여 입양 후 파양 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입양 후 파양 아동의 권리 보호체계와 우리나라 파양 시 아동의 권리 보호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파양 아동의 권리 보호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파양사전(입양 후)·파양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절 우리나라 파양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파양허가제 도입

현행 민법상 입양이나 파양의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재판을 통한 과정이 필요한 외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입·파양 허가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권고하는 사안으로 단순히 입·파양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인격이 보호될 수 있는 여건을 명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입양률 저하를 우려해 국외입양에 한해서만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신중한 파양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2) 파양사유 판단기준의 명확화

파양사유는 아이의 건강, 성격 문제부터 경제적 악화, 부모의 이혼, 불임부부의 임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부모의 기준에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만으로 아이의 의사에 관계없이 파양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파양기준을 불가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분을 법률로써 명확히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파양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2. 행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미국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아동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전문 부서 및 전문가가 있고 이를 통해 파양 시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아동인권보호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특히 실제적으로 아동에 대해 구체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주정부에는 입양 전문가, 보호관리자, 주정부 인가 전문가, 아동배치에 대한 주정부간 계약관리자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정보교환 및 사진리스트, 변호사 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파양 당한 아동에게 최상의 보호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민간차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러한 노력들을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적부분에도 파양당한 아동인권보호 문제를 전담하는 보다 세분화된 조직 및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지도·감독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아이 중심의 행정

현재 파양의 행정절차는 일방적으로 양부모의 입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양아동의 인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파양의 기준이 양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치 할 경우 이뤄지는 것이 아닌 양부모의 입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이나 복지가 외면당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입양에 관한 행정절차와 정책을 부모중심이 아닌 아이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입양 후 아

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양부모에 대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도록 한다.

3) 파양담당기구의 설치

현재 우리나라 행정에서는 파양당한 아동의 인권보호체계를 따로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2009년 7월 15일에 중앙입양정보원[11]이 설립되었으나, 이곳은 입양을 홍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즉 파양 아동의 인권문제는 아동복지과에서 대부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인권신고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사무소에서 접수를 통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파양담당기구의 설치를 통해 앞서 말한 파양허가제 도입 시 파양신청에 대한 재판 및 허가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파양담당기구는 모든 파양을 관리 하에 둘 수 있다.

현재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됐다 파양된 아동들은 원래의 입양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후견인과 입양부모의 합의만으로 이뤄진 파양의 경우 아동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당국은 정확한 파양아동의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데, 파양담당기구의 설치는 이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파양 아동에 대하여 심리 치료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파양하려는 부모에 대해서는 새 부모가 나타날 때가지 성실히 보살피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파양아동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가능하게 한다.

3. 서비스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사전·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활성화

먼저 사전 프로그램의 경우, 입양 결정 후 아이가 입양되기 전까지 전문가의 도움 아래 입양예정 아동과 그 아이를 입양할 부모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와 아이가 서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입양예정 부모에

11) 1999년 입양정보센터로 섭립되어, 2009년 7월 1일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으로 출범하여, 2009년 7월 15일에 개원했다.

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와 입양아동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실제 외국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거둔 제도로서 입양아동과 입양가정 사이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입양 사후에도, 전문가와 입양부모 간의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다. 현재 가족구성원에 대한 입양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입양 후 6개월간 제공되는 상담과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체제를 보다 현실성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전·사후 프로그램만을 담당하는 기구를 각 입양기관 내에 두고, 이 기관들을 관리하는 전체 총괄 기구를 둠으로써 전체적인 사전·사후 입양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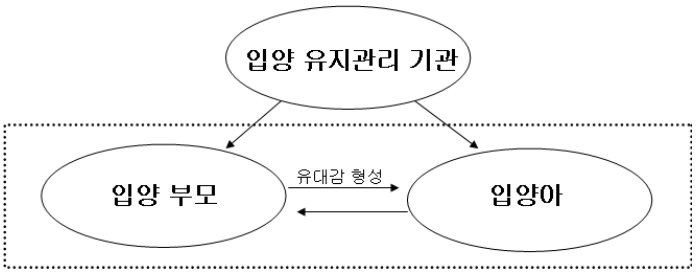
제2절 파양아동 인권보호 프로그램 제안

1. 사전관리 프로그램 제안

1) 대상자 선정

(1) 입양부모 : 불임, 자존감, 그리고 입양에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입양아와의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안정감과 양육의 즐거움을 방해할 것이다. 양부모는 비생물학적 자녀(입양아)의 양육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2) 입양아 : 입양가정 안에서의 신뢰와 영속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포기됨과 이와 연관된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각기 다른 생물학적 부모와 양육 부모를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시와 충성심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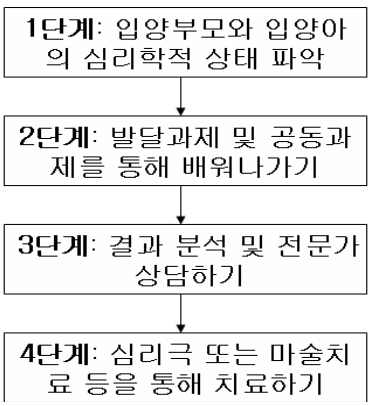
[재해석한 입양서클]

2)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1) 하위목표 : 입양의 원활한 존속을 위해 입양부모와 입양아가 어떻게 그들의 발달과정을 이행하고, 공동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거나(입양부모),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에 의해 길러지는 아동(입양아)을 위한 대안적인 해결책으로써 입양의 긍정적인 특징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2) 상위목표 :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과 사회적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구성요소들을 되짚어 볼 수 있다. 또 각자의 발달과제 및 공동과제를 통해 서로에 대한 상호관계를 폭넓게 인지시켜 주며 공유된 삶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즉, 파양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3) 프로그램운영(활동내용 구성)



① 단계 : 입양부모와 입양아의 심리학적 상태 파악

입양 서클(the adoption circle)은 구성원들(입양부모, 입양아) 개개인의 중요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사회적 이득에 공헌하기 위해 형성된다. 따라서 입양 서클의 구성원들 각각의 심리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입양이 지속되기 위한 노력을 기한다. 이들의 존재는 환상과 현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현실적 측면에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는 서로 일상적인 접촉을 가지고 있으며, 보고 느끼고 생활해간다. 환상적 측면에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는 서로에 대한 상상을 한다. 각자는 자신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입양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발달 과정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개별적인 이슈들이 상호 관련되며, 또한 다른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러한 영향력은, 각 구성원들이 입양을 실질적인 대안 이상으로 그 유익함을 인정함에 따라, 서클의 입양의 질을 좌우하는데 긍정적이고 협력적으로 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구성원들이 헤어 나오기 힘든 '곤경'속으로 이 서클을 빠지게 하는 역기능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각 개인들과 시스템이 일생에 걸친 발달 과정에 따라 진행하면서, 이러한 역동에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양부모와 입양아는 상실감과 분노, 애착과 분리, 그리고 모순적인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하여 공통된 주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② 단계 : 입양부모와 입양아를 위한 발달과제 및 공동과제를 배워나가기

[입양부모를 위한 발달과제]

단계	목표/과제	감정적 이슈들
학령 전기의 아동과 입양부모	-가족 생활 중의 한 가지 사건으로써 입양을 이해하기. -입양 사실을 공개하기 : 입양사실을 이야기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관계의 영원성을 시험하는 것. -입양을 했다는 소식에 대한 주위의 반응들을 다루는 것.
학령기의 입양아와 입양부모	-확대된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생활의 한 가지 사건으로써 입양을 이해하기.	-친부모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바라거나/연락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동의 감정을 다루는 것, 그리고

단계	목표/과제	감정적 이슈들
		자신이 좋은 아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거나/그렇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아동의 감정을 다루는 것. –친부모에게 '되돌려 보내지는 것'에 대한 아동의 극심한 불안감/양가감정을 다루는 것. –아동이 입양아라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들을 다루는 것.
청소년기의 입양아와 입양부모	–가족 경계선들에 대한 융통성 증가시키기. –다른 형태의 가족 모델을 수용하기(심리적 대 유전적 유대). –생물학적 기초 위에 입양가정에서의 양육에 의해 구성된 아동의 정체감을 수용하기.	–분리(개별화 이슈들) : 쫓아내는 것이 아닌 독립을 획득하는 것. –핵가족과 3인 가족의 차이를 구별하기. –안정적인 정체감을 발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써 청소년이 친가족에 대해 갖는 관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성정체성 문제들, 그리고 생물학적 이미지 대 양부모로부터의 이미지에 대해 아동이 투쟁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재계약하기 : 입양을 다시 수용하기.

[입양아를 위한 발달과제]

단계	목표/과제	감정적 이슈들
학령 전기	–신뢰감 발달시키기. –입양부모와 애착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진취성과 자율성을 발달시키기. –만일 이 시기에 입양에 대해 입양부모가 말해 줄 경우, 입양에 대한 '정보'를 통합시키기.	–공격성과 자제력. –자존감과 애착.
학령기 아동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능력을 개발시키기. –만일 이 시기에 입양에 대해 입양부모가 말해 줄 경우, 입양에 대한 '정보'를 통합시키기. –가족의 영원성을 확인하기.	–두 세트의 부모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양가감정을 다루기. –입양관계의 영원성과 관련된 불안감과 싸우기. –버림받음의 감정과 관련된 자존감과 싸우기.

단계	목표/과제	감정적 이슈들
사춘기와 청소년	-자아의 유전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에 직면하기. -여러가지 가족 모델을 수용하기. -생물학적 부분과 양육적인 부분을 통합하여 정체감 형성하기. -내김보다는 독립을 성취하기.	-두 세트의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 및 괴로움과 싸우기, 그리고 다시 관계 맺는 것을 시작하기. -분리 : 개별화.

[입양부모와 입양아의 공유된 주제과제]

입양부모와 입양아에게 친밀감을 높여주고 현재 자신의 위치와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과제를 부여한다. 공동과제를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긍정적인 감정 및 현실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생애 주기를 따라 이동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위해 가족 조직 내의 구성 요소 안에서 필수적인 변화들이 발생하게 된다. 충분히 좋은 환경 안에서 가족 조직은 각 구성원들에게 애착심을 제공하며 동시에 구성원들이 개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가족은 집단을 보호하는 한편 각 구성원들의 욕구들을 평가하고 이에 반응하는 유연성을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예비과제로 가족의 의미와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예비과제) *"가족 내에서 서로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서로에 대한 적절한 역할 및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각의 구성원들이 이 서클에서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요한 주제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이 서클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실감 문제를 겪고 있으며, 때때로 분노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느 구성원도 그들이 경험하는 상실감을 고의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각자는 자신이 무력한 참여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무력감과 관련된 자연적인 분노를 해결해야만 한다. 입양 서클 구성원들은 아마도 그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공동과제(1) "당신은 생활에 대한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 상황들을 서로에 대해 이야기 해 본적 있는가?"

두 번째 공통된 주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들이 가진 계통적(genealogical)불연속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복잡해진 방식으로 애착과 분리의 일상적인 이슈들을 다룬다는 점이다. 입양 서클 내에서는 생물학적 가족관계를 연결하는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부재는 애착과 분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한 근심거리를 만들게 된다.

공동과제(2) "우리는 어디에 속해있는 것인가? 생물학적 가족관계와 현실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 주제는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입양되는 것,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 서클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 존재의 확실성 문제에 대해 고심하도록 만드는 경험이다.

공동과제(3) "나는 누구이며, 내가 이렇게 비일반적인 구성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진정한 나인가?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③ 단계 : 결과 분석 및 전문가 상담하기.

④ 단계 : 심리극(사이코드라마) 또는 마술치료 등을 통해 치료하기.

임상치료 : 각 개인의 성격과 발달사 및 입양 이슈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 개인들의 성격구조,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위치,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 가족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평가과정은 개인과 가족이 발달상 어디에 있는가를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ㄱ. 입양 서클에 대한 인식

입양 서클의 하위 시스템과 개인에 관한 평가 및 치료는 입양 서클 전체에 대한 인

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클의 구성원들이 일생 동안 환상과 현실의 측면에서 어떻게 서로의 삶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구성원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타인들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하며, 또한 표현을 하도록 격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허구적 존재로 남아 있게 되며, 구성원들이 발달과제를 완수함에 있어 점차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ㄴ. 특수과제의 정상화

치료적 방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입양 서클 구성원들의 특수 발달과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서클 구성원들이 특수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은 비정상성에 대한 감정을 완화시키고 그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치료자들이 이러한 과제에 직면함에 있어 서클 구성원들 간의 개별적 차이의 범위를 중요시 여기고, 건강상태와 정상성을 정의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양 서클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공통의 이슈를 해결함에 따라 서로 매우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들의 발달과제의 정상성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가족과 생활 경험이라는 구조 속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적 요소들에 초점을 둔, 지지 그룹들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ㄷ. 발달단계에서의 대안적 과정에 대한 욕구 수용

특수과제의 정상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때때로 발달단계에 있어 대안적 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양된 아이들은 정체성과 분리를 둘러싼 문제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입양경험이 없는 그들의 친구들과는 달리 수월하게 성년기로 진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안적인 가족 구조는 발달단계의 대안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ㄹ. 건강한 방어에 대한 지지

특수 발달과제와 대안적 발달 과정이 있다고 해서 입양 서클 구성원들이 다른 개인들처럼 동일한 기본적 욕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치료자들은 종종 개

인들의 부인(denial)과 가족의 비밀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관찰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그들은 수시로 변화하는 일상적 방어의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모든 관련자들에게 입양 문제의 중요성과 강도는 자연스러운 성쇠를 나타낸다.

ㅁ. 역전이의 관리

입양 서클의 형성은 삶의 형성, 자녀에 대한 책임감 또한 입양부모, 입양자이ㅡ 요구와 권리 등과 같은 중요한 인간적·사회적 이슈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들은 생각과 감정을 폭넓게 자극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명료함과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들은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복잡하면서도 종종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임상적 치료를 통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ㅂ. 전이

입양서클 구성원들은, 입양과 관련된 어떠한 특징들에 대해 입양부모 혹은 입양아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전이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치료자들은 아이를 데려다 주었거나 혹은 데려간 사회사업가로서의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때때로 치료자들은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입양부모가 되기도 하며, 혹은 거부당한 친부모가 되기도 할 것이다. 또 입양아가 되어, 입양아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전이에 대해 입양부모와 입양아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이다.

ㅅ. 종결

모든 입양 서클 구성원들에 의해 경험된 거대한 상실감은 치료 과정에 있어 종결을 중요한 단계로 만든다. 이는 이전의 상실감이 재등장하거나 재경험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입양서클 구성원들은 이러한 중요한 치료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용인되어야 함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4) 프로그램평가 및 피드백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발생 가능한 이점과 발생 가능한 단점을 파악한다. 그렇게 함

으로써, 이점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즉, 서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유대관계를 극대화시키게 된다.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난 후 평가를 통해 입양 아동의 입양 가정 적응을 살핀 후 사전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첫 번째 단계부터 적용시키는 피드백과정을 거친다.

2.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안

1)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앞에서 우리나라 파양에 관한 법률, 행정, 서비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한 결과 성장기 특히 민감한 청소년기를 포함한 아동에게 가정의 결손으로 찾아오는 파양의 아픔은 자기 학대와 상실감, 우울증을 비롯해 낮은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됨으로서 성장 발달과업에 장애를 가져올 것 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조사 하던 중 파양 아동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파양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파양아동 인권향상을 위한 사후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2)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및 목표

사후 프로그램 개발의 공통적인 목표는 파양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해 주고, 더 나아가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재입양을 추진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입양 후 파양당한 아동의 회복을 도와 건강하고 성숙한 성장 발달 과업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파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① 지지적 집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원들과의 접촉은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완화해주고, 유대감과 신뢰감을 촉진시켜주게 된다.

② 입양 부모에 대한 분노와 비난의 감정을 명료화할 수 있다. 입양 부모에 대한 분

노와 비난의 감정과 파양아동 자신에 대한 자책감은 상담원들 간의 대화를 통해 공감받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명료화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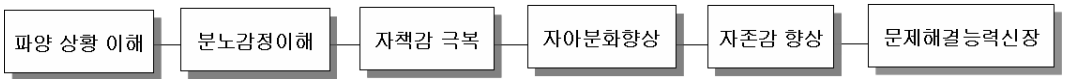
③ 파양으로 인한 두려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자책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④ 파양으로 인해 손상된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도록 돕고자 한다.

⑤ 파양 아동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파양 아동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아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가 많으므로 파양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을 촉진시켜 주고, 자신의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대처 기술 습득과 일반화를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3) 프로그램의 구성

〈사후프로그램 구성요소〉



① 파양 상황 이해하기

아동이 파양과정에서 느꼈던 긴장과 불편감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부정적 측면을 공유함으로써 고통의 시간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파양 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나아진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파양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한다.

② 분노감정 이해하기

파양으로 인해 입양부모에게 갖는 감정들을 탐색해보고 그 중에서 심각하게 경험한 분노의 경험이나 부모의 비난의 감정들을 부각해서 조명해본다. 일차적으로 겪게 되는 자신의 불편감에 대해 부모에게 비난이나 분노의 화살을 돌림을 인지하게 한다.

③ 자책감 극복하기

여기에서는 파양이 자기가 잘못해서 입양 부모가 파양하게 된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

감의 측면을 다룬다. 파양의 이유를 자기에게 돌리는 자기비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입양 부모의 파양과 자신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④ 자아 분화 향상하기

입양부모와 파양아동인 자신의 정서적으로 분리시켜 독립된 한 개체로 보게 한다. 그리고 입양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파양의 짐을 자신이 지지 않기 위해서 입양부모를 용서하는 것임을 알도록 돕는다.

⑤ 자존감 향상하기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타인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수용하며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줌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도록 돕는 것이다.

⑥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 신장

파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문제해결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파양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명료화함으로써 해결능력을 제고하고, 파양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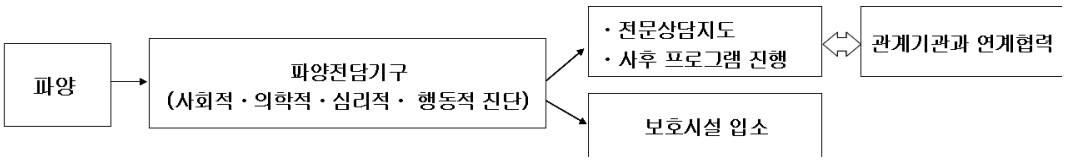
4)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회기	단계	회기제목	목표	내용
1	도입	만나서 방가방가	①파양 아동이 자유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지적 집단 환경을 조성한다. ②프로그램의 규칙을 이해하도록 숙지한다.	–자기소개하기 –별칭 짓기 –프로그램소개 –규칙정하기
2	자기이해	“나는요...”	①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자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②파양아동들의 경험과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는 누구인가?’ 발표하기 –공통의 경험과 요소를 찾아내기

회기	단계	회기제목	목표	내용
			③파양아동이 자신과 다른 집단원의 감정을 인지하고 명료화하도록 돕는다.	
3	파양현황 인지하기	자화상 그리기	①파양에 대한 생각과 문제들을 개방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바로 보도록 돕는다. ②자기 자신을 그림 그리게 하여 아동에게 파양이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자화상그리기 –파양 후 파양아동의 감정 공유하기 –파양 후 좋아진 점 탐색하기
4	분노와 입양부모 비난감정 다루기	나도 감정이 있단 말야	①분노와 비난 감정을 이해하게 한다. ②파양 부모에 대한 분노 감정을 명료화 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게 해준다.	–파양 부모에 대한 감정 다루기 –분노감정 공유하기 –풍선에 감정 표현하여 터뜨리기
5	파양에 대한 이해와 자책감 극복하기	내 잘못이 아니야	①파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파양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명료화 한다. ②파양 부모의 파양 원인이 다양함을 파악하게 한다. ③파양 부모의 원인이 자신의 행도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자책감을 극복하게 한다.	–파양이유에 대한 인지적 이해 –파양부모 이혼 외적요인 파악하기(파양부모의 경제적 부담, 파양부모의 이혼 등) –자책감 극복하기
6	자아분화 향상	지금부터는 내 삶을 살거야	①파양 부모에게 의지했던 정서를 분리시켜 독립된 한 개체로 보게 한다. ②정서적 독립을 하는 것이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이해하게 한다. ③파양 당했지만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을 있음을 이해시킨다. ④용서는 선택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이해한다.	–정서적으로 묶여있는 것 찾아보기 –현재 가장 힘든 것 *토론하기 –파양부모 용서하기 –파양부모가 되어 자신에게 편지써보기
7	자존감 향상	나는 울트라 캡숑짱	나의 환경과 파양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알게 한다.	–“너는 특별하단다” 비디오 보고 느낀점 나누기
8		나도 멋지고 소중한 사람!	자신의 장점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줌으로 각자가 얼마나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한다.	–상대방의 장점을 카드에 적어주기 –자신의 카드를 읽으며 나누기
9	문제해결 능력신장	문제 해결방법	①사회적 문제해결 단계를 이해한다. ②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을 친구관계나 다른	–사회적 문제해결단계 학습하기

회기	단계	회기제목	목표	내용
		학습하기	학교적응과 관련지울 수 있다. ③파양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연습을 한다.	–문제해결 기술 일반화 하기
10		문제 해결방법 적용하기	①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을 실제 생활문제와 연관 지어 적용할 수 있다. ②일상생활에서 아동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	–실생활 적용하기 –해결가능한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 구분하기
11	정리 및 평가	모두들 안녕	①집단경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②파양 아동이 지지 받을 수 있는 자원을 탐색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③전문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파양아동의 심리상태 진단하기.	–프로그램 참여 소감발료 –다과 나누기 –롤링페이퍼 –감사표현과 작별인사하기

5) 프로그램 진행 방법



프로그램 진행 방법은 파양담당기구에서 파양아동의 사회진단, 심리진단, 의학진단, 행동진단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그 중 전문상담지도가 필요한 파양아동에게 사후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파양아로 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까지를 포함한다. 5~8명의 집단원이 전문가와 상담사와 함께 참여하며, 총 11회기로 구성하였다. 회기당 시간은 70분에서 90분이다.

프로그램은 파양전담기구에서 1주일에 2번씩 진행하여 두 달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진행 절차는 매회 들어가기 → 프로그램 활동 → 소감나누기 → 다음시간 기대감 갖기 순으로 진행한다. 매 회의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전문가와 상담사는 목적을 제시

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종료한 후, 그날의 활동경험에 대하여 깨달은 점, 진행과정에서 배운 점이 있으면 간단히 한마디씩 소감을 말한다. 그리고 다음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마치도록 한다.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인권보호의 범주를 입양아동보호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협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할 수 있는 일련의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 즉 입양 후 파양당하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파양 당한 아동이 받는 정신적 피해 등을 줄여나감으로써 아이의 인권을 보호하는 체계로 확대하여 접근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2009년 7월1일 입양특례법 개정안 공청회를 가짐으로써 입양 아동인권보호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바탕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그 법적 근거나 제도적·정책적 바탕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이들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발달을 책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파양 아동인권보호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우선, 파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 체계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파양아의 인권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띠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선진국의 입양 후 파양 아동인권 보호체계를 우리나라의 파양 아동인권보호 체계와 함께 살펴보았다. 즉 이들 국가의 파양 아동인권보호 관련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체계를 살펴보았으며, 미국과 주요선진국의 아동인권보호체계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파양 아동인권보호체계가 개선해야할 점을 제시하고, 파양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현행 법률상 입양이나 파양의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파양의 허가제를 통해 파양 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재판을 통한 과정을 둠으로써 부모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아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

써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파양담당기구의 설치와 법적인 절차를 통한 파양절차의 마련은 순간적인 개인감정 혹은 사적인 이익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도 손쉽게 파양이 가능한 현 사회적 시스템을 고쳐나감으로써 파양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양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들을 파양담당기구가 맡도록 하여 파양아가 받는 정신적 피해 등을 줄여나감으로써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 체계에서는 사전·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사전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해 양부모와 입양아이의 친밀감을 높이고, 양부모의 가정에서의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후 전문가와 양부모간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입양아이의 적응과 문제점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파양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프로그램은 아이 중심의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파양 당한 아동에게는 전문가의 사회적, 의학적, 심리적, 행동적 진단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양아 인권보호체계의 개선점과 프로그램 제안은 파양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은 물론 파양이 발생 시에 조기 개입을 통하여 아동의 인권 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

1. 단행본

장인협 외,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96 ~ P101, 2000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P36~ P105

도미향,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6

성영혜·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2001

최경숙, “아동발달 심리학”, 교문사, 2007

John W. Santrock, “Child Development”, 박학사, 2006

이경희, 아동발달과 부모교육“, 교학사, 2000

박세경 외, “A Comparative Study on ChildProtection System among OECD Countrie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

Elinor B.Rosenberg, “입양의 생애주기”, 집문당, 2006

김종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대왕사, 2007

2. 학위 논문

백온유,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 P103 ~ P104, 2006

장경미,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 P106 ~ P107, 2006

이승미, “완전양자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아주대 대학원 석사, P73, 2004

강수정, “미국의 입양법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58 ~ P59, 2004

안문기,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동국 대학원 석사, 2005

이현우,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원 석사, P11 ~ P13, 2003

홍순옥,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도시과학대학원, 2007

Bodenheimer, B.M., “New Trends and Reqirements in Adoption Law and Proposals for Legislative Change”, Cal.L.Rev., Vol.10, No.13, P84, 1975

3. 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http : //www.humanrights.go.kr)

법제처 (http : //www.moleg.go.kr)

중앙입양정보원 (http : //www.kcare.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 : //www.mw.go.kr/)

U.S. Government Pringting Office (http : //www.gpo.gov/)

일리노이주 홈페이지 (http : //www.illinois.gov/)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 (http : //www.childrights.re.kr/)

한국인 입양아를 위한 홈페이지 (http : //adoptee.or.kr)

4. 그 외 참고자료

여성신문 권지희기자, “입양·파양 법원 개입 서둘러야” 2009-05-15

서울신문 김민희기자, “두번 버림받는 아이 급증” 2009-05-12

뉴스엔 박세연기자, “입양 후 파양, 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굴레”2008-05-29

메디컬투데이 정혜원기자, “파양아동 어디로” 2008-04-0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포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P51 ~ P52, 2009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학생부분

이창훈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규제를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 방안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을 중심으로–



목 차



요 약 ····· 162

제1장 서 론 ····· 164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6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5

제2장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 166
제1절 다국적기업의 의의 ····· 166
제2절 다국적기업과 인권의 관계 ····· 169
제3절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 필요성 ····· 173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다국적기업 규제제도와 한계 ····· 175
제1절 국제인권규범에 의한 다국적기업 규제 ····· 175
제2절 국내법에 의한 다국적기업 규제 ····· 179
제3절 현행 규제시스템의 한계와 시사점 ····· 184

제4장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의한 다국적기업 규제시스템 개선방안 ····· 188
제1절 규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 188
제2절 감시기구로서 한국 NCP의 개선 ····· 191
제3절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이행 제고 ····· 194

제5장 결 론 ····· 197

참고문헌 ····· 200

요 약

1970년대 이후,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개별 국가의 정치적 통제범위를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국(母國)이 아닌 타국에서의 기업활동에 의한 인권침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다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이라는 용어도 이 때 등장하게 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적 활동은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세계화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UN 등의 국제기구는 인권침해적인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국제인권규범을 정립하여 다국적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규범의 영역에서 다국적기업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법이론의 한계로 인해 법적 의무부담의 주체로 인정되기 힘들었으며, 국제인권규범의 강한 연성법(軟性法, soft law)적 성격 때문에 권고적 규제수단이 주를 이루게 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수단의 구속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 간 법체계의 차이'·'관할권'·'주권'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국내법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의 국제적·국내적 인권법에 의한 규제시스템을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규제시스템 중 국제인권규범적 유형으로서 국제기구의 지침에 해당하는 「UN Global Compact」·「OECD 다국적업 가이드라인」·「ILO 삼자선언」 등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조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규제적 측면에서 당사국 및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권고적 효력에 그친 규제수단의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국내법적 유형으로서 '초국내적 공법소송이론'과 미국의 ATCA 등을 검토하

였는데, 국가중심의 법체계에 내재된 사법소극주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소송법적 측면에서도 국제법상 관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다국적기업 규제시스템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규제수단의 '소극성(passivity)'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소극성은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민·형사책임 등과 같은 직접적 규제수단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는데, 간접적 규제방식을 강화함으로써 소극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을 연계하여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적 규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안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실체법이 아닌 조직법적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구속력 있는 규제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범위를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NCP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NCP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감시와 홍보 및 정보제공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의 NCP는 그 활동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독립기구로 전환함으로써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타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내적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체법적 측면에서 국제인권규약 상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적 이행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NCP를 활용하는 조직법적 해결방식과 달리, 형사법상 항소·상고이유에 '국제법위반'을 포함시키고 민사법상 '외국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실체법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존재는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부(富)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재의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노동권·환경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통제의 대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은 정치적 시스템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일정한 통제범위 내에 놓여 있었으며, 이윤창출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질서 내에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민·형사적인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서구사회에서 '법인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형사법의 발전은 결국 기업이라는 존재의 인정과 그 부작용으로 인한 통제의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개별국가의 정치적 통제범위를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국(母國)이 아닌 타국에서의 기업활동에 의한 인권침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다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이라는 용어도 이 때 등장하게 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적 활동은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세계화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UN 등의 국제기구는 인권침해적인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국제인권규범을 정립하여 다국적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규범의 영역에서 다국적기업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법이론의 한계로 인해 법적 의무부담의 주체로 인정되기 힘들었으며, 국제인권규범의 강한 연성법(軟性法, soft law)적 성격 때문에 권고적 규제수단이 주를 이루게 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 시대에, 근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시스템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규제 필요성에 대하여 널리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규제수단의 한계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규제제도의 근본방향으로 설정한 다음,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강한 국내 법제도를 국제인권규범 준수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1)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분석, 2) 기존 규제시스템으로서 국제인권규범 및 국내법의 현황과 그 문제점 도출, 3)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적 규제시스템 제시 등을 주된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현재,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 사례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국내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는 있으나, 규범적 측면에서 사례의 유의성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법학적 분석은 주로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지침에 대한 해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침의 대상 및 효력·내용 등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하지만, 구속력이 약한 지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현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실제적인 해결방안의 도출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정도와 특성, 규범적 측면에서 관련성이 높은 사례(‘인도 Bophal 사건’, ‘미얀마 Unocal 사건’ 등)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한

다. 더불어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의 도출을 위하여 국제기구의 지침뿐만 아니라 시사성이 높은 국내법적 이론과 법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그 규제필요성을 도출한 다음(제2장), 다국적기업의 규제를 위한 기존의 국제인권규범 및 국내법 차원의 이론·제도 등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제3장), 새로운 규제시스템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제4장), 결론을 맺기로 한다(제5장).

제2장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제1절 다국적기업의 의의

1. 다국적기업의 개념

'다국적기업'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의된 단일한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1]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개념정의를 위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다국적기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다수의 해외자회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이들의 국경을 넘은 활동을 1개국에 위치하는 의사결정센터에서 총괄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2] 이와 같은 정의는 '의사결정구조'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행동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규범적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을 규율하고 있는 국제인권문서 속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정의를 기초로 그 정의를 도출하는 견해[3]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1) 예컨대 세계기업(world enterprise),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국제기업(international enterprise), 지구기업(global firm) 등 명확한 구별이나 기준 없이 사용되거나 일부에서는 다국적기업과 세계기업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한다(강연배,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관련 규제 연구", 노동사회 제96호, 2005년, 113쪽 참조).

2) 강연배, 위의 논문, 113쪽 참조.

3) 박미경, "인권을 침해하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규율방안",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2009, 428~429쪽 참조.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에 관한 다국적기업 및 기타 기업의 책임에 관한 규범초안(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이하 "UN 다국적기업 책임에 관한 규범초안"이라고 함)[4] 제20조에는 "다국적기업이란, 한 나라 이상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제실체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제실체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그것은 다양한 법적 형태를 가지며, 그들의 본국 또는 수용국(host country)에 있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고 함)[5] 제1조 제3항에서 직접적 개념정의를 피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국적기업이란, 하나 이상의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다양한 법적 형태를 지닌 경제실체 및 그 집합체를 가리키는 것"[6]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The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이하 "ILO 삼자선언"이라고 함) 제6조에서는 "다국적기업이란, 공기업·사기업·공사 등 그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 밖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여타의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모든 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정의와 규범적 정의에는 각기 차이점이 있지만, 다국적기업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함께 결합될 수 있다. 규범적 정의는 다국적기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인권보호라는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넓은 개념정의라는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 정의에 따른 '통제가능성' 등의 요소에 의하여 일정한 범

4) U.N. Doc. E/CN.4/Sub.2/2003/12/Rev.2 (2003).

5) <http : //www.oecd.org/dataoecd/56/36/1922428.pdf> 14쪽 참조. 2009년 9월 14일 방문.

6) A precise defini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not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the Guidelines. These usually comprise companies or other entities established in more than one country and so linked that they may co-ordinate their operations in various ways. While one or more of these entities may be able to exercise a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activities of others, their degree of autonomy within the enterprise may vary widely from one multinational enterprise to another. Ownership may be private, state or mixed. The Guidelines are addressed to all the entities within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parent companies and/or local entities).

위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국적기업의 특성[7)]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집권화와 분권화'이다. 기업의 범 세계적 구조 하에서는 본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당해 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해외 자회사를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국적기업은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본사에 대한 의사결정의 집권화를 이룰수록 기업집단 전체의 경제적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8)]

둘째, 다국적기업은 주로 '해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그 소득의 1/4내지 1/2을 해외에서 얻고 있는데, 그 결과 대외투자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보인다.

셋째, 다국적기업은 전세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재원과 능력을 지닌 유일한 조직이다. 대부분의 국제적 시장참여기회가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만이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다국적기업은 국경을 넘어 자본을 공급하고 기술의 이전을 촉구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변화를 재촉하고 협동을 요구하며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계획된 이익의 확보를 위해 조달상 문제를 촉진시키게 된다.

다섯째, 다국적기업의 발전은 노동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그 이유는 사업부문의 해외이전 및 타국에서의 자회사 설립으로 인하여 모국의 고용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다국적기업은 광범위한 기반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자국의 통화·재정 및 외환정책을 교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기업은 세계무역과 함께 세계경제 있어서 모국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

7) 자세한 내용은 '황삼생,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경영윤리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2집, 2003, 346~348쪽' 참조.
8) 리처드 E. 케이브스, 『다국적기업과 경제분석』, 법문사, 1985, 92쪽 참조.

3. 다국적기업의 영향력 증대

급격한 세계화로 인하여 과거 국가의 활동영역이었던 부문에서 사적 주체 특히, 기업의 활동기회가 증대되고 있는데,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단순히 주주들이나 상업적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활동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주민 전반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UN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1970년대 초에 그 수가 7,000개에 불과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증가로 오늘날 약 64,000개 정도이고 그 자회사 수 또한 870,000개에 이른다고 한다.[9] 매출액과 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의 운영규모는 230여개 국가들 중 90% 이상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보다 크며, 연간 총 생산액은 세계 총 생산액의 25%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10] 미국·독일·일본·영국·이태리·프랑스 등 6개국의 조세수입만이 9대 다국적기업의 매출을 넘어서는 수준에 있는 상황이다.[11]

이러한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수용국인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까지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해 주는 요소인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용국들의 지나친 의존성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12]

제2절 다국적기업과 인권의 관계

1. 다국적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다국적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지위와 힘만큼 막대하다.[13] 인권에 미치는

9)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ment,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United Nations : New York and Geneva, 2003), p. 14.

10) 강연배, 전게논문, 114쪽 참조.

11) Mahmood, id., at 971. Steve R. Ratner,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 A Theory of Legal Responsibility, 111 Yale L. J. 2001, p. 443. .

12) 박미경, “인권을 침해하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규율방안”,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2009, 428쪽 참조.

13) Fried von Hoof,“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for Companies and Domestic Courts : An Unlikely

영향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하 '사회권'이라 함), 시민적·정치적 권리(이하 '자유권'이라 함) 및 국제인도법상 보호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14]

우선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권이다.[15] 다국적기업의 정책이나 활동은 '공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과 같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다국적기업이 이윤극대화만을 위해 저임금, 강제노동, 유해근로환경정책을 추구할 경우, 이는 사회권의 향유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유해물질을 무단 투기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염을 유발할 경우, 이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유전 또는 광산 개발은 해당 지역 원주민의 생활터전을 파괴함으로써 원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정책과 활동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외에도 해당 지역의 사회권 향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새로운 규율대상으로서 다국적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자유권의 침해는 국가의 개입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국가의 후원 또는 지원 하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6] 주로 에너지 분야의 다국적기업은 현지 정권과의 협력 하에 유전 또는 광산 개발시 시설물의 보호와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방지를 위해 현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원주민들의 개발반대나 노동운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운동가들을 체포·투옥·고문을 가할 뿐 아니라 조작된 증거에 의해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17] 이 경우

Combination?", Castermans-Holleman, Monique, Fried van Hoof & Jacqueline Smith, The Role of the Nation-State in the 21st Century : Human Righ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Policy,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pp. 47~48.

14)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Developments in the Law :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rvard Law Review vol. 114, 2001, p. 2027.

15) Nicola Jägers, "The Legal Status of the Multilateral Corpor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Michael K. Addo,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 259-260.

16) Glen Kelley, "Multinational Investment Treaties : A Balanced Approach to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39, 2001, p. 508-512.

17)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로서 Royal Dutch/Shell은 나이지리아 오고니 지역의 유전을 개발하면서 이를 반대하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으로부터 자유’, ‘생명권’이 침해된다. 또한 송유관 건설을 위하여 건설예정지역의 원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한편, 이들을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강제노동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은 이와 같은 일련의 인권침해과정에서 이를 계획하거나 공권력 행사를 요청하거나 촉구하는 방법으로 현지 정권과 공모하면서, 이들을 위해 자금과 무기 및 병참물자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자유권 침해는 매우 중대한 인권유린으로서 국가에 의한 지속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식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행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것이다. 국제적 무력분쟁 또는 국내 무력분쟁시 다국적기업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학살, 반인도적인 범죄, 전쟁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화학무기와 같은 금지된 전쟁무기를 제조·판매함으로써, 군대 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살상에 간접적으로 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국적기업은 생화학무기로부터 보호하여야할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은 전시 강제노동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군수 분야의 다국적기업은, 경우에 따라 그 활동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인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 인권의 ‘보편적 규범성’

21세기를 전후로 인권은 기업과 개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노동문제, 오염 등에 대한 확고한 도덕적 기반의 확립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수용국 내에서 다국적기업이 가진 경제적, 정치적 힘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고려해서 다국적기업을 규율하는 규범들은 인권과 환경의 보호 의무를 다국적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는 원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나이지리아 군대를 동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군대는 원주민 반대운동의 지도자 Ken Saro-Wiwa와 John Kpuinen을 체포·고문·처형하였다.

‘인권’ 개념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제창된 이후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점차 다원화되어 가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시대적·지역적 특성을 불문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편적 규범’으로서 ‘인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권은 그 국제적 특성에 비추어 ‘국제인권’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적 규범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부정적 견해로서 ⅰ) 인권의 추상적·이상적 성격에 비추어 보편적 규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18], ⅱ) 문화적 상대주의에 기초하여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은 없다는 견해[19]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ⅰ) 절대주의적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인권은 자연권으로서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이라는 견해[20], ⅱ) 최소주의적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환원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최소한의 것’은 인권으로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21] 등은 인권의 보편적 규범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의 ‘보편적 규범성’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보편적 규범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인권’은 그 자체만으로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반론은 경청할 만하지만, 세계화·다원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수단으로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과 각국의 국내법이 상이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이론적 토대로서 인권의 ‘보편적 규범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정치적 역학변화의 복잡성에 비추어 본다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

18) C. Handerson, "Human Rights and Regimes : A Bibliographical Essay", Human Rights Quarterly. Vol.10, 1998, pp. 525543.

19) Rhoda E. Howard, “Cultural Absolutism and the Nostalgia for Community," Human Rights Quarterly, Vol.15, No.2 , 1993, p.315

20) Burns H. Weston, “Human Rights,” in Richard Falk, Hilal Elverand Lisa Hajjar, eds., Human Rights :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I(London : Routledge), 2008, p.19.;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7

21)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79.

'인권'과 관련된 각종 선언 또는 지침 제정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이 인권침해적 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권의 '보편적 규범성'을 근거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국제인권법과 국내인권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 필요성

1. 수용국 정부의 인권침해와 다국적기업의 공모책임

다국적기업에 의한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형태는 첫째, 직접적인 인권유린의 경우, 둘째, 간접적인 인권유린의 경우, 셋째, 국가들의 범죄에 대한 동조의 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다국적기업의 국가의 범죄에 공모한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논의의 많은 부분이 회사의 간접적인 국가와의 공모책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가와의 공모책임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공모책임과 관련하여, Clapham은 이를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22] 먼저, '직접적 공모(Direct Complicity)'로서, 인권침해의도가 없다 하여도 가능성에 대한 지식(knowledge)을 가진 채 국가의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수혜적 공모(Beneficial Corporate Complicity)'로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국가 등 주체들에 의한 인권유린을 통하여 사업적 혜택을 입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소극적 공모'(Silent Complicity)로서, 피투자국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Ratner는 1) 다국적기업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경우(governmental agents), 2) 다국적기업이 국가와 공모하는 경우(complicit with government), 3) 다국적기업이 오히려 국가에게 명령하는 경우(commanders)로 나누어

22) A. Clapham & Scott Jerbi, "Categories of Corporate Complicity in Human Rights Abuses", 24 Hastings Int'l & Comp. L. Rev. 2001, p. 339.

설명하고 있다.[23]

이와 같이 공모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들은 다국적기업이 정부로부터 특별한 양허·허가 등을 통해 사실상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하여 부과된 인권보호책임이 다국적기업에 전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과거 '니카라과 콘트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이 콘트라 반군의 니카라과 정부에 대한 무력행위에 대하여 법위반이 행해지는 과정에서의 군사적, 준군사적 작전에 있어서 유효한 통제권(effective control)을 가지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 판시에서 유추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다국적기업의 공모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국가 간의 공모가 인정되어 왔던 국제책임법의 법리와, 국가의 행위에 대한 개인의 공모책임을 인정하여 왔던 국제법의 관행들을 유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은 국가의 하위에서 국가의 행위를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광산지역의 회사시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부군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24] 이러한 정부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상급자 내지 감독자로 인정되어, 정부의 행위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책임(reponsibility as superiors, or command reponsibility)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25]

이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이 국가의 하위자로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며, 오히려 국가와 함께, 또는 국가와 계약하거나 상위자로서 국가의 범죄를 지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국가의 행위 여부와 별도로 적극적으로 개별적인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6]

---

23) Steve R. Ratner,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 A Theory of Legal Responsibility, 111 Yale L. J. 2001, p. 443

24) Wiwa v. Royal Dutch Petroleum Company, 2002, WL 319887(S.D.N.Y)

25) Ratner, id., at p. 443.

26) Andrew Wilson, "Beyons Unocal : Conceptual Problems in Using International Norms to Hold Transnational Corporations Liable Under the Alien Tort Claims Act, 2006, at 59-61, in Olivier De Schutter e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Hart Publishing)

2. 다국적기업의 규제 필요성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데,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권리, 환경권 등 다양한 영역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적 기업활동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수용국의 전통적인 국내법 체계를 통한 규제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규제시스템'은 일정한 법적 책임이 명시적으로 인정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다국적기업은 수용국 정부의 비호 아래 책임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국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의 '공모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적 활동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용국의 국내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국제인권규범 또는 본국의 국내법을 통한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국제인권규범 및 본국의 국내법에 의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다국적기업 규제제도와 한계

제1절 국제인권규범에 의한 다국적기업 규제

1. UN Global Compact

2000년 7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국제연합 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이하 "GC"라 함)가 공식 출범하였는데, GC는 인권·노동·환경의 3개 영역과 관련된 10개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위 3개 영역에 대

한 주요 가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개별적인 기준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7)]

그러나 GC는 기본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의 대화를 위한 정책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며, 구속력 있는 정책집행 내지 분쟁해결에 간여할 수 있는 규제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준의 추상성과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회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연례보고서의 경우에도 회사들의 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단순한 의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8)]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해 동안의 토론을 거쳐 2003년 UN 인권소위원회에 의하여 마침내 「UN 다국적기업 책임에 관한 규범초안」이 채택되었는데, 동 초안은 인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법을 보이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UN 헌장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조약 등과 연계하여 보다 강력한 의무의 구속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광의의 정의를 채택하여 다국적기업들뿐만 아니라 기타의 상업적 주체들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29)] 그러나 동 규범초안 역시 이미 국제관습으로 인정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초안에 대하여 많은 반론이 제기되자[30)], 인권소위원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2005년 7월 새로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인권과 다국적기업들, 기타 기업들'의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후속업무를 위임하였다.

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는 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소위 '영향의 장(Sphere of Influence)'에서 회사의 '공모(complicity)'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하면서, 인권침해영향을 평가하고 통합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며 실적 평가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적절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위 '공모'책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31)]

---

27) 홈페이지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humanrights.html. 참조.

28) Surya Deva, "Human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Law：Where From Here?", 19 Conn. J. Int'l L. 1, 2003, pp. 12~13.

29) Larry Cata Backer, Multinational Corporations, Transnational Law, 37 Colum, Hum. Rts. p. 287 (2006); David Weissbrodt and Muria Kruger,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97 AJIL, 2003, p. 90.

30) Backer, Id.

31) A/HRC/8/5, Paras. pp. 33-40.

그러나 보고관의 활동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제인권법상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인권규범을 명확히하는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위원회 규범초안에 비하여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1976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제정된 기업의 윤리강령으로, 1976년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부이며 실제적인 국제투자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같은 해에 제정·공표되었다. 그 후 국제투자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2000년 6월 개정되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OECD 회원국들 내에 설립되어 있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대부분의 투자도 이들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본국인 OECD 회원국들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들 입장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지침은 본국과 수용국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32]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정부의 공동권고로서 다국적기업의 행동규범에 대한 모범적 관행을 확립하고자 제정되었고, 특히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행동규범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의무 준수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적인 이행가능성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투자와 다국적기업위원회(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c Multinational Enterprises)'를 설치하고, 가입국으로 하여금 국내에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적·권고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NCP는 불평이 인용될 경우, 중개기능을 행사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의 합의하는

32) 장복희, "다국적기업의 법적 규제", 「국제법평론」, 통권 제10호, 1998, 108쪽 참조.

경우에는 조정 내지 중재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행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3]

3.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들의 삼자선언

본래 ILO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기준은 기업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국제적 인정을 받는 기준들은 기업의 활동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상의 규범적 체계를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다국적기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들의 삼자선언'(이하 삼자선언"이라 함)을 제시하게 되었다.

'삼자선언'은 OECD 다국적기업기준이 선언된 다음 해인 1977년 국제노동기구의 집행기구(Governing Body) 제20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삼자선언은 고용, 근로조건,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대하여 무려 58개 항목을 두고 있다. 1977년 처음 채택 당시에는 삼자선언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그 후1986년부터 삼자선언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정부대표 또는 사용자 및 노동자대표는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었다.

그러나 삼자선언에 대한 해석절차가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단지 23개의 해석요청이 있었으며, 그나마 해석에 까지 이른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34] 그리고, 개별 해석요청은 모두 구체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만 해석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는 삼자선언의 기준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다국적 기업의 제재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35]

---

33) David Kinley, Junko Tadaki, "From Talk to Walk : The Emergence of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for Corporations at International Law, 44 Va. J. Int'l. L. pp. 950~951.

34)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Beyond Voluntarism :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Companies, pp. 102~103.

35) 심지어 해석 요청된 사건과 관련된 개별 기업의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제2절 국내법에 의한 다국적기업 규제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는 국제인권규범 분야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본국을 중심으로 국내법적 측면에서도 그 접근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국내법에 의한 다국적기업 규제 논의는 주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제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을 '다국적기업'이라는 개별적인 사적 주체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하에서 소개할 '초국내적 공법소송 이론(Transnational Public Law Litigation)' 및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에 관한 법(Alien Tort Claims Act)」은 다국적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각각 소송법 및 실체법적 측면에서 강한 구속력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국적기업 규제수단의 구속력 강화라는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방법론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초국내적 공법소송(Transnational Public Law Litigation)

가. 초국내적 공법소송의 의의[36]

'초국내적 공법소송'이란 개인이나 타국 정부가 국제법의 위반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내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37]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방법으로서의 초국내적 공법소송의 대두는 국제사법재판소(ICJ)·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같은 국제재판소들의 분쟁해결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국제재판소들은 관할권과 통제력 등의 역량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피해당사자들은 이러한 국제재판소 대신 역량 있는 국내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38]

초국내적 공법소송의 당사자는 다국적기업의 행위에 대한 배상 및 억제, 국제규범의 확인과 국가정책의 개선을 추구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국제법 소송처럼 법원으로부터 얻어진 판결을 비정부실체나 개인을 포함한 각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상이나 정

---

36) '초국내적 공법소송'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선진, "초국내적 공법소송에 관한 연구 -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을 참고할 것.

37) Harold Hongju Koh, "Civil Remedies for Uncivil Wrongs : Combatting Terrorism Through Transnational Public Law Litigation", 22 TEX. INT'l L. J, 1987, p. 169.

38) R. Falk, Reviving the World Court, 1986, pp. 1~24.

치적 해결과정에서 활용하려는 미래적 목적 또한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국내적 공법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초국내적 공법소송은 현재 완벽하게 확립된 제도로 보기는 힘들며, 국제적 법률절차가 미비한 현실에서 국제관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생성중인 제도로 판단된다.

나. 초국내적 공법소송 사례 – '인도 Bophal 소송 사건'

1984년 12월 2일, 인도의 Bophal 시에 위치한 미국의 다국적기업 Union Carbide사의 인도 자회사인 Union Carbide India Limited(UCIL)의 살충제 제조공장에서 대규모의 폭발사고가 일어나 약 2,500 여명이 사망하고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불구·부상 및 경제적·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도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Union Carbide사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인도 정부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은 이미 국제화되었으며 위험물의 배급과 위험한 기술의 전파도 국경을 초월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뉴욕 연방법원의 John F. Keenan 재판관은 미국법원이 '불편의 법정(forum non convenience)'[39]임을 내세워 사건을 각하하고 소송을 인도 법원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Keenan 판사는 동 명령에서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법과 사법체계의 흠결은 인도의 사법적 결단과 헌법상의 권리 보장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소송의 각하판결에는 Union Carbide사가 '인도법원의 관할권을 승인하고 소멸시효에 기초한 항변을 포기한다'는 것 이외에 2개의 조건이 결부되어 있었는데, Carbide사는 이러한 조건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이었던 '미국 3차 순회재판소'는 '불편의 법정'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

39) 이 이론은 미국법원이 자주 원용하는 이론으로 1947년의 Gulf Oil Corporation Gilbert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forum non convenience의 적용기준으로서 사적 이익요소와 공적 이익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forum non convenience 라 판단되면 소는 각하 또는 이송된다. 채증상의 유리점 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8, 120쪽 참조)

량권에 속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재량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결국, 미국법원은 다국적기업인 Union Carbide사와 자회사인 UCIL의 Bophal 사건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결을 내리진 않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초국내적 공법소송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국내입법에 의한 관할권 창설 - 미국의 ATCA

가. 「외국인불법행위에 관한 법(Alien Tort Claims Act)」의 의의

「외국인불법행위에 관한 법」(이하 "ATCA"라 함)은 1789년 법원조직법(Judiciary Act)의 한 부분으로 제정된 것으로 미국의 "지방법원은 미합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국제법(law of nations)을 위반한 불법행위만을 이유로 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40]고 규정하고 있다.[41]

이 ATC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 원고는 반드시 자신이 외국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2) 소송은 반드시 심각한 불법행위(tort)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3) 그 불법행위는 미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혹은 국제법(law of nations)을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42]

이러한 요건 중에서도 특히 무엇이 '국제법(law of nations)'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그 개념의 해석이 진화·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80년 필라르티게(Filartiga) 케이스[43]는 ATCA의 범위를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한 몇 개의 중요한 판결 중 하나였는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국제적인 인권 법률상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권규범을 위반하

40) 28 U.S.C., § 1350 (1789) http : //www4.law.cornell.edu/uscode/html/uscode28/usc_sec_28_00001350----000-.html

41) 이 법은 본래 해적행위·노예무역 등에 대항하여 제정된 것으로 거의 유명무실하였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이에 공모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매우 현실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42) 이한주,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국제적인 인권보호위반에 관한 소송", 공법학연구 제5권 제1호, 2004, 264쪽.

43) 파라과이의 필라르티게(Filartiga) 가족은 자신들의 아이를 고문으로 사망케 한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던 전직 파라과이 고위급 경찰관 페냐이랄라(Pena-Irala)를 ATCA에 따라 미국법정에 고소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Filartiga v. Pena-Irala 630 F.2d at 876, 887 (2d Cir. 1980)을 참조바람.

는 경우 ATCA 하에서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창설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의 대외법에 대한 재설서 제3판(Restatement of the Law Third,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1986) 제102항에 따르면 "국제법은 1) 관습법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2) 국제협약 또는 3) 세계 주요 법률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국가들 간의 국제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법규"를 의미한다고 한다.[44]

이와 관련하여, 노동권 보호 옹호자들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핵심적인 노동기준 역시도 국제법(law of nations, public international law)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침해 역시도 ATCA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그나타로(Pagnattaro)는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은 국제협약 및 조약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바, 바로 이 점을 ATCA의 요건인 국제법(law of nation)을 해석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쉐러와 그래븐(Scherrer and Greven) 역시도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에서 담고 있는 노동권의 정신은 보편적 인권과 분리될 수 없으며, 노동기준의 증진은 오로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법과 제도에 의한 규율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45]

다국적기업의 수와 영향력이 급증하는 현 시대에 있어서 ATCA는 이들 다국적기업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고 그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46]

나. ATCA 적용 사례 – 'Unocal 미얀마가스개발 사건'

1992년 미국의 석유기업 Unocal사는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 프랑스 석유기업 Total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얀마 남부의 안다만 Yadana 지역에서 개발한 천연석유가스를 태국의 랏차부리 공장까지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건설사업을 진행하

---

44)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S., § 120 (1986) http : //www.kentlaw.edu/classes /bbrown /IntlLawF2004/Course20%Documents/Reinstatement_Sources.rtf.).

45) Scherrer, C. and Greven, T., Global Rules for Trade : Codes of Conduct, Social Labeling and Worker' Rights Clauses, Münster(Westf. Dampfboot), 2001.

46) Kurlantzick, J., "Taking Multinationals to Court : How the Alien Tort Act Promotes Human Rights", World Policy Journal Spring, 2004, pp. 60-67.

였다. 당시의 미얀마는 1988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웅산 수지 여사와 그의 정당인 국민민주연합에 정권이양을 거부한 채, 초법적 집권행위를 통해 국가의 민주적 운영과 절차는 물론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 탄압을 일삼고 있었다.

Unocal사는 미얀마지역에서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탄압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Yadana 가스파이프라인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미얀마 군사정권에게 공사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반정부세력으로부터 파이프 통과지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마을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고 노동을 강요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에 대한 고문, 강간, 살해 등의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1996년 Yadana 파이프라인 건설에 강제 동원되었던 15명의 버마인들은 인권단체와 노동권 옹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Unocal사와 Total사 및 이들 두 회사의 CEO 그리고 미얀마 군부의 통치기구인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와 미얀마국영석유가스공사를 강제노동을 비롯한 반인권 범죄행위 및 그 공모혐의로 ATCA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47].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법원의 판사 파에즈(Paez)는 비록 미얀마의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와 미얀마국영석유가스공사에게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ies)'[48]를, Total에는 '불편한 법정의 법리(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를 적용하여 기각하였지만 Unocal 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49]

결국, 이 사건은 2005년 3월에 Unocal이 원고들에게 12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파이프라인이 건설된 지역의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종결되었다. Total도 같은 해 11월에 12명의 원고에게 612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미국 역사상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는 2002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판사 체니(Chaney)는 "미국 또는 미국 내에 사무소가 있는 기업

47) 이에 대한 내용은 'Doe I v. Unocal Corp., 963 F. Supp. 880, 892 (C.D. Cal. 1997)'을 참조.

48) 외국국가 혹은 외국기관의 행위는 국내법원의 관할을 받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이다.

49) Tolley, H. Jr. and Lawrence, A., "Doe v. Unocal : Forced Labor and Corporate Liability", Paper presented at the 2001 annual meeting of the North American Case Research Association. 2001, p. 5.

이 해외에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위반한 경우, ATCA에 따라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어 미얀마 군사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한 Unocal사의 책임 성립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미국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인권탄압에 대한 Unocal사의 책임이 도덕적 수준을 넘어 법적 책임을 부담케 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국외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대한 소송제기를 인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3절 현행 규제시스템의 한계와 시사점

1. 국제인권규범에 의한 규제의 한계

국제인권규범 즉 국제기구의 지침 등에 의한 규제수단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새로운 국제법을 형성하거나 국제관습법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에 따를 때, 국제기구의 지침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국내법원에서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국제기구의 지침에서 그 법적 구속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적·선언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회원국 또는 다국적기업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도 국제기구의 차원에서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지침들은 오히려 '권고적 효력'에 한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의해 일정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기구의 지침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의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을 엄격히 구속하지 못하므로, 지침을 적용받는 당사국 간의 강력한 합의나 추가적인 국내입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규제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법에 의한 규제의 한계

가. '초국내적 공법소송이론'의 문제점

'초국내적 공법소송이론'은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 청구 및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의 영역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함으로써 '인권'이라는 가치의 자유로운 추구를 가능케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실제적인 구제의 실현이 어려운 국제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초국내적 공법소송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초국내적 공법소송의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서 판결을 내린 법원이 속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 및 역량, 사법시스템 내에서 당해 국내법원이 차지하는 지위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해 국내법원이 속한 국가의 국제정치적 역량에 따라 초국내적 공법소송의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나라의 국내법원에서 상충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복잡한 양상은 결국 초국내적 공법소송의 유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인도 Bophal 사건'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국내적 공법소송은 이론적·사실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내고 있다. 사실적 측면에서는 소송의 수행·증거수집 등 소송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이론적 측면에서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이론'[50]·'권력분립의 이론'[51]·'주권면제이론'[52] 등을 통해 소송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0) 국내법원은 '비자기집행적 조약 이론'을 근거로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인 국내적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련의 인권조약들을 비자기집행적인 조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약집행을 위한 국내법이 마련되는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인권조약은 국내법원에서 법원으로 원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U.S CONST. art. I. §8.cl. 10 (ipet) 253, 1829.)

51) 정치적 선택과 가치판단을 둘러싼 논쟁들을 해결하고 정치적 행위를 수행할 권한은 헌법상 의회와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이러한 문제들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Banco National de Cuba v. Sabbatino 사건'에서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국제법상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제법을 해석하거나 선언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는 Sabbatino의 주장을 미국법원이 수용한 바 있다. (376 U.S. 398, 1964.)

52) 법원은 주권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자국 영역 안에서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외국 및 그 재산에 대하여 자국 관할권의 행사를 면제하거나, 한 국가가 자국 영역 내에서 행한 공적 행위나 제정한 법령에 대해서는 타국의 국내법원에서 그 합법성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론들은 '사법소극론'에 입각하여 정치적 이슈가 초점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자제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데,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는 이러한 정치적 이슈의 범주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국내적 공법소송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내입법에 의한 관할권 창설의 문제점

국외에서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국내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권을 창설하는 법령을 입안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직접적 행위보다 수용국정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법원의 판결은 경우에 따라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타국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의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ATCA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 등을 제정하여 인권침해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에 의한 국제적 인권침해 규제는 미국의 경제력·국제정치력 등이 이러한 입법의 집행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결어 및 시사점

국제기구의 지침은 회원국 정부들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므로 국제법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침에 따라 행동하거나 부합된 행동은 합법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OECD 지침은 이행의무가 없는 권고이지만 절차상의 의무에 대하여 정기적인 '국가별 보고(country review)'나 다른 국가들의 압력에 의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국내법상 다국적기업들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체계는 형법·환경법·차별금지법·노동법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에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통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ATCA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시스템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범적 측면에서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투자국인 다국적기업의 모국 정부들은 전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해외에서의 수익활동에 대하여 유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실에 있어서 자국기업의 외국지사는 물론이고,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53]

다른 한편, 투자유치국인 수용국은 자국이 부담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상의 의무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동기, 정치적 무능과 부패, 법제도의 후진성, 구성원 간 갈등 등의 이유로, 특히 환경과 노동의 측면에서 낙후된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규제책임이 국내법에 위임되어 있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법의 규율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법리들은 주로 국가와 자국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집중하고, 국경을 넘어서는 인권유린행위와 특히 사적 주체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규제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여전히 회사의 책임에 관한 합의의 부재, 대화와 협력 등의 연성 의무(Soft Law)에 대한 집중적인 강조, 회사의 수익과 인권을 연결시키려는 기존의 사고방식, 강제이행수단의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54]

따라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규제정책을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강한 국내법의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53) Paul Redmond, "Transnational Enterprise and Human Rights : Options for Standard Setting and Compliance, 37 Int'l Law. 69, 2003, pp. 72~73.

54) 홍성필, “다국적 기업의 인권책임”, 인권과 정의 제384호, 2008, 49쪽 참조.

제4장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의한 다국적기업 규제시스템 개선방안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내적 규제시스템의 구속력 강화의 방향은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제시된 실체적·조직적 측면들을 국내법에 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이러한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1유형'으로서 타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영역 밖에서 타국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유형'으로서 1)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의 영역 밖에서 타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2) 타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의 '제1유형'과 '제2유형' 중, '제2유형'이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인권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된된다. '제1유형'은 국제인권규범의 전형적 적용사례에 해당하지만, '제2유형'은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을 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적용유형' 중 '1)'에 대하여는 '규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강화'와 '한국 NCP의 재구축' 등을, '2)'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적 이행제고'를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1절 규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다국적기업을 규율하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며 조사 및 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규제기구를 국가기구의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 별도의 다국적기업 규제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2) 국내 인권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별도의 다국적기업 규제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국내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에서의 인권침해활동을 규제하는 기구는 성격상 인권침해활동에 대한 조사·감시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형식의 규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부·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다국적기업 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사무처' 형식의 내부기관을 위원회 산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원활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다국적기업 규제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활동에 대한 조사 및 감시, 조사 등 결과에 대한 심사, 다국적기업에 대한 개선권고, 조정 및 중재, 인권침해사실의 공표,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의견개진 등의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 및 감시활동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진정·신고 등의 행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권침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국 국민'의 진정·신고뿐만 아니라 '타국 국민의 대리인' 또는 '국내·외 시민단체' 등에 의한 진정·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진정·신고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국내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의견·시정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국적기업이 의견·권고 등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정부 및 국회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다국적기업 규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규제기구 신설의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성격을 고려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2

조 제1호에서 ‘인권’을 정의하면서 “ "인권"이라 함은「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근본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진정권자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국 국민에 의한 진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며, 제2호에서는 조사대상으로 “법인, 단체 또는 사인(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간의 운영을 통하여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 해결역량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국적기업 규제를 위한 제반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 어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다국적기업 규제기구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규제기구의 신설에 대한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정부차원에서도 ‘기존 부처와의 권한 중복 및 충돌’·‘새로운 예산·조직 마련에 대한 부담감’·‘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 및 효율적인 인권침해구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 등을 추가하여 다국적기업 규제기구로서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타「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일부 법령을 보완하는 등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시스템의 국제인권규범 연계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 내에 가칭 ‘국제인권규약집행위원회’ 등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한 국내 다국적기업 규제업무를 전담케 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감시기구로서 한국 NCP의 개선

1.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한 NCP의 역할[55)]

NCP는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주체는 다국적기업에 한정되지만 정부에 의한 이행절차의 효용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NCP의 모든 기능은 현재 국내연락사무소에 관한 절차지침의 4개 부분 즉, 1) 제도적 조치(institutional arrangement), 2) 정보 및 홍보(information and promotion), 3) 구체적 경우에 있어 이행(implementation in specific instances), 4) 보고(reporting) 등에 요약되어 있다. 이들 4개 부분은, '기능적 동등(functional equivalence)' 개념을 홍보하기 위한 핵심 기준(core criteria)과 함께 국내연락사무소의 기본 목적을 규정한 서문 다음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각자의 국내연락사무소를 조직함에 있어 가시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in a visible, accessibl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manner) 활동해야 한다.

NCP는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부처 출신 대표, 기관간 그룹(an interagency group) 또는 비정부간기구 출신 대표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NCP는 자국어를 포함하여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본 가이드라인을 잘 알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필요한 경우 장래의 외국인투자가 및 해외투자가들에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이 발생할 경우 NCP는 먼저 국내적 차원에서 당해 현안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와 협조체계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제기된 현안이 심도있는 심사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1차 평가를 함에 있어서 NCP는 당해 현안이 진정한(bona fide) 것이며,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NCP는 1차 평가를 내린 후 당해 쟁점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하여야

55) 자세한 내용은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08)"을 참고할 것.

하며, 당해 쟁점이 심도있는 심사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된 쟁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NCP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대한 선언이나 적절한 권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NCP 활동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면밀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한국 NCP의 구성 및 활동의 문제점[56)]

현재, 한국 NCP는 지식경제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NCP의 역할과 비교하여 많은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홈페이지 등 지식경제부의 각종 정보매체에서 NCP의 역할 및 기능·OECD 가이드라인의 의미에 대한 소개나 홍보 메뉴 등을 소개하지 않고 있어 일반인(해외투자자나 국내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OECD-TUAC 분석에 따르면, 2001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각국의 NCP에 접수된 사례는 150건을 훨씬 넘고, 그 가운데 한국 NCP가 관련된 건수는 모두 7건이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테말라 진출 한국기업 '최신'의 노동조합 결성 방해 사례(2002. 2~2003. 7)
- 스위스 다국적기업 네슬레가 한국에서 공장폐쇄로 노조를 위협한 사례(2003. 9~2004.3)
- 방글라데시 진출한 한국수출자유지역공사가 노동조합 결성 방해한 사례(2004. 3~7)
- 프랑스 다국적기업 라파즈한라시멘트가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하청업체를 폐업,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2006. 10 ~)
- 스위스에 본사를 둔 테트라팩이 일방적 공장 매각을 단행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2007. 7~)
- 필리핀 진출 '청원무역'이 현지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방해한 사례(2007. 9~)
- 필리핀 진출 한국 섬유회사 '일경'이 현지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방해한 사례(2007. 9~)

그런데 TUAC 보고서는 이 사건들을 처리한 한국 NCP의 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

56) 강연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한국 NCP 활동에 대하여",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인권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8.

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NCP가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에만 활동의 초점을 맞출 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국제기준에 익숙한 전문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NCP는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위의 사례로 볼 때 현재와 같은 구조의 한국 NCP는 시급히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NCP의 개선방안

NCP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활동과 관련하여 감시기구로서 그 역할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시성·접근용이성·투명성·책임성 등이 보장되고 제도적 조치·정보 및 홍보·이행·보고 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 NCP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투자정책 중심으로 사고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구가 아닌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개편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의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압력은 가이드라인 이행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공개 원칙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NCP는 기구개편 이전이라도 별도 홈페이지 마련, 충분한 자료 공개 등 을 통해 가시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의 영역에서 국제기구의 지침을 준수하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구제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로 NCP를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절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이행 제고

1. 국제인권규약 상 '개인통보제도'의 의의

개인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를 대상으로 유엔규약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the individual petition)'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등에 규정되어 있다.

개인통보제도는 각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국가가 침해했을 경우, 개인이 인권침해사실을 유엔규약위원회에 통보하고 각 규약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본안심리에 따라 인권침해사실이 인정되면, 규약위원회는 인권침해 국가로 하여금 피해당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고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법령의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개인통보제도는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공모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인권침해 국가의 법령 또는 정책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국적기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타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령을 제·개정함으로써 관련 국내 사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러한 통보제도를 활용하여 당해 법령을 폐지·개정함으로써 특혜제공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약기구가 개인에 의한 진정 내지 통보를 심리한 후 채택하게 되는 '견해(views)'나 '제안 및 권고(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가 당사국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가는 오래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의 인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이고 집행가능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의 2007년 견해와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결이 서로 상반된 법해석을 보인 적이 있다.

따라서 유엔인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국내법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57]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내적 이행방안에 대한 견해 대립

가. 기존법령을 개정하는 방안

법경제적 측면에서 일정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약위원회의 결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기존 법령의 개정'을 지지하는 견해[58]가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규약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우리 법제상 구제를 받는 것은 형사법상으로는 재심절차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것과 민사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제도로는 규약위원회의 권리침해판정이 재심사유나 국가배상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재심제도와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사유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따른 '항소이유' 등 현행 소송법상 상소이유에 '국제법위반'을 포함시켜야 한다거나,[59] 검찰총장이 반드시 '비상상고'를 하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등도 이와 유사한 견해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국내법원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국내법적으로 승인 및 집행하는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60] 이 견해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1조(외국판결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판결의 강제집행), 제27조(집행판결) 등의 조항을 준용하는 입법형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57) 이주윤,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인권조약의 이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8, 333쪽 참조.

58) 박찬운, "실무적 입장에서 본 국제인권규범의 직접적용", 인권과 정의, 제320호, 2003, 118쪽 참조.; 차지훈, "국제인권규범의 사법적 활용을 중심으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2004, 55쪽.

59) 정경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민주법학 제17호, 2000, 98쪽.; 차지훈, 위의 논문, 57쪽

60) 김태천,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적 사후구제방안",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이행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7, 90쪽 참조.

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정부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의 결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61] 한국이 가입한 조약에 근거한 국제기관의 판정 결과를 재심 사유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일일이 국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곧바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62]

다.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구제를 위한 특별입법 방안

비사법절차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해 특별사면과 복권의 방법 나아가 전과기록 말소의 방법 등으로 형사처벌 및 그 효력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63]

이 견해는 특히 민사법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 후에 개인통보절차에 의하여 규약위반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유죄판결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의한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법령 규정(국가배상사유)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법체제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금전적 손해에 대한 회복은 배상절차가 아닌 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가칭 「자유권규약 개인통보절차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동 법률 내에 '개인통보절차 이행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규약위원회가 요구한 구제조치의 국내적 이행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61)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규약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행정부가 은혜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전보시키는 것은 국가의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규약과 배치되는 국내법에 대한 검토 없이 시혜적인 정부정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법무부, 외교통상부에 개인에게 실질적인 구제수단를 할 수 있는 근거법안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62)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2000, 177쪽 참조.

63) 박찬운,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방안",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이행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7, 113쪽 참조.

3.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이행 제고 방안

사법적 구제를 위하여 '기존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은 법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법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우리나라의 현행 민·형사법제와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구제방법을 마련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지만, 비교입법례로 제시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관련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외적인 법률인데 반하여, 가칭 「자유권규약 개인통보절차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률」은 영구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바, 현행 민·형사법제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법적 구제를 위하여 '기존법령을 개정하는 방안'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국내법령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국내의 주요 다국적기업들은 정치적으로도 우리 정부와 국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법령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존법령을 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제5장 결 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적 법체계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문제영역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였다. 현행 국제·

국내 인권법체계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의한 타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이론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세계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증가하게 되었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정부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는 다국적기업의 직·간접적인 행위에 의하지 않고 수용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다국적기업이 일정한 공모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인권규범을 통하여 다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국제인권규범적 규제수단은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규제효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수단의 구속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 간 법체계의 차이'·'관할권'·'주권'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국내법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의 국제적·국내적 인권법에 의한 규제시스템을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국내법적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기존의 규제시스템 중 국제인권규범적 유형으로서 국제기구의 지침에 해당하는 「UN Global Compact」·「OECD 다국적업 가이드라인」·「ILO 삼자선언」 등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조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규제적 측면에서 당사국 및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권고적 효력에 그친 규제수단의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국내법적 유형으로서 '초국내적 공법소송이론'과 미국의 ATCA 등을 검토하였는데, 국가중심의 법체계에 내재된 사법소극주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소송법적 측면에서도 국제법상 관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다국적기업 규제시스템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규제수단의 '소극성(passivity)'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소극성은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 등과 같은 직접적 규제수단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는데, 간접적 규제방식을 강화함으로써 소극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을 연계하여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적 규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안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실체법이 아닌 조직법적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구속력 있는 규제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범위를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NCP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NCP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감시와 홍보 및 정보제공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의 NCP는 그 활동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독립기구로 전환함으로써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타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내적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체법적 측면에서 국제인권규약 상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적 이행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NCP를 활용하는 조직법적 해결방식과 달리, 형사법상 항소·상고이유에 '국제법위반'을 포함시키고 민사법상 '외국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실체법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제시된 위와 같은 규제수단들은 다국적기업 규제를 위한 단계적 접근의 차원에서 단기적 해결방안들을 제시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합의를 통하여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국제인권규범을 제·개정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편적 규범성은 역사적 투쟁에 의하여 성취된 것으로서, 선입견에 근거한 편협한 사고와 행위를 제약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의 척도이다. 이러한 본질적 가치는 아직 달성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연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한국 NCP 활동에 대하여”,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인권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8.

_____,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관련 규제 연구”, 노동사회 제96호, 2005.

김태천,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적 사후구제방안”,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이행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7.

박미경, “인권을 침해하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규율방안”,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2009.

박찬운,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방안”,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이행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7.

_____, “실무적 입장에서 본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인권과 정의, 제320호, 2003.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8

이주윤,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인권조약의 이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8.

장복희, “다국적기업의 법적 규제”, 「국제법평론」, 통권 제10호, 1998.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민주법학 제17호, 2000.

정선진, “초국내적 공법소송에 관한 연구 -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2000.

차지훈, “국제인권법의 사법적 활용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2004.

황삼생,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경영윤리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2집, 2003.

홍성필, “다국적 기업의 인권책임”, 인권과 정의 제384호, 2008.

리처드 E. 케이브스, 『다국적기업과 경제분석』, 법문사, 1985.

A. Clapham & Scott Jerbi, "Categories of Corporate Complicity in Human Rights

Abuses", 24 Hastings Int'l & Comp. L. Rev. 2001.

Andrew Wilson, "Beyons Unocal : Conceptual Problems in Using International Norms to Hold Transnational Corporations Liable Under the Alien Tort Claims Act, in Olivier De Schutter e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Hart Publishing, 2006.

Burns H. Weston, “Human Rights,” in Richard Falk, Hilal Elverand Lisa Hajjar, eds., Human Rights :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I(London : Routledge), 2008.

C. Handerson, "Human Rights and Regimes : A Bibliographical Essay", Human Rights Quarterly. Vol.10, 1998.

David Weissbrodt and Muria Kruger,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97 AJIL, 2003.

David Kinley, Junko Tadaki, "From Talk to Walk : The Emergence of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for Corporations at International Law, 44 Va. J. Int'l. L.

Fried von Hoof,“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for Companies and Domestic Courts : An Unlikely Combination?”, Castermans-Holleman, Monique, Fried van Hoof & Jacqueline Smith, The Role of the Nation-State in the 21st Century : Human Righ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Policy,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Glen Kelley, “Multinational Investment Treaties : A Balanced Approach to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39, 2001.

Harold Hongju Koh, "Civil Remedies for Uncivil Wrongs : Combatting Terrorism Through Transnational Public Law Litigation", 22 TEX. INT'l L. J, 1987.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Developments in the Law :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rvard Law Review vol. 114, 2001.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Beyond Voluntarism :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Companies. 2000.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Jean-Françcois RENUCCI, Droit européen des droits de l'homme, oct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Larry Cata Backer, Multinational Corporations, Transnational Law, 37 Colum, Hum. Rts. 2006.

Mahmood, id., at 971. Steve R. Ratner,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 A Theory of Legal Responsibility, 111 Yale L. J. 2001.

Marjorie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8, (Washington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1973)

Nicola Jägers, “The Legal Status of the Multilateral Corpor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Michael K. Addo,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aul Redmond, "Transnational Enterprise and Human Rights : Options for Standard Setting and Compliance, 37 Int'l Law. 69, 2003.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S., § 120, 1986.

R. Falk, Reviving the World Court, 1986.

Rhoda E. Howard, “Cultural Absolutism and the Nostalgia for Community," Human Rights Quarterly, Vol.15, No.2 , 1993.

Scherrer, C. and Greven, T., 2001, Global Rules for Trade : Codes of Conduct, Social Labeling and Worker' Rights Clauses, Münster(Westf. Dampfboot).

Kurlantzick, J., "Taking Multinationals to Court : How the Alien Tort Act Promotes Human Rights", World Policy Journal Spring, 2004.

Steve R. Ratner,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 A Theory of Legal Responsibility, 111 Yale L. J. 2001.

Surya Deva, "Human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Law : Where From Here?", 19 Conn. J. Int'l L. 1, 2003.

Tolley, H. Jr. and Lawrence, A., "Doe v. Unocal : Forced Labor and Corporate Liability", Paper presented at the 2001 annual meeting of the North American Case Research Association, 2001.

U.N. Doc. E/CN.4/Sub.2/2003/12/Rev.2 (2003).

UN Doc. E/CN. 4/SR. 178

UN Doc. A/6546, para. 485.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ment,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United Nations : New York and Geneva, 2003)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학생부분

정영희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백서현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

초등학생 인권의식 증진에 관한 실증 연구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목 차



요 약 ····· 208

제1장 서론 ····· 210
제1절 문제 제기 ····· 21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11

제2장 이론적 배경 ····· 212
제1절 인권과 인권교육의 개념 ····· 212
제2절 인권교육의 필요성 ····· 213
제3절 인권교육의 목표적 측면 ····· 213
제4절 초등학교 인권 교육의 특징 ····· 214

제3장 초등학생 인권의식 실증 분석 ····· 215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 방법 ····· 215
제2절 표본의 특성 ····· 215
제3절 설문지 구성 및 분석 방법 ····· 215
제4절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 분석 ····· 217

제4장 인권의식 증진방안 ····· 234
제1절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상의 개선방향 ····· 234
제2절 인권교육 지원체계상의 개선방향 ····· 235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 237
제4절 의식적 개선방안 ····· 237
제5절 홍보적 개선방안 ····· 238

제5장 결론 ····· 239

참 고 문 헌 ····· 240

요 약

현재 학교에서 그나마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법질서의 준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권리의 규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교과서 내용 간에 단순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물론 인권은 그에 수반하는 의무와 함께 교육되어야만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부재는 인권교육 자체가 인권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학생 인권이 경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국내외적 상황, 특히 학생들이 처한 사회, 학교, 가정환경은 학생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위해 우선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리어던의 인권단계에 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연구대상,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으로 한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 기간으로 9월1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A초등학교(전교생 1600명 中 216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고, 문헌연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인권의식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기초적인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인식, 다양성에 관한 인식, 세부적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인권과 인권교육의 개

념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목표적 측면, 초등학교 인권 교육의 특징 등을 살펴볼 것이다.

3장, '초등학교 인권의식 실증 분석'에서는 표본의 특성, 설문지 구성 및 분석 방법을 통해 인권에 관한인식, 다양성에 관한 인식, 세부적 인권 문제 측면에서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4장, '인권의식 증진방안'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상에서 개선방향, 인권교육 지원체계상의 개선방향, 제도적 개선방안, 의식적 개선방안, 홍보적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여 급변하는 사회를 대비하는 인권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의 여러 제안에 대해 인권교육에 관련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한다면 사회적·국제적인 인권 의식의 눈을 가진 미래의 시민으로 자라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편견의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인권의식의 분야를 보완한다면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접근하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생각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일반적으로 인권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어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2007, p.17).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되는 삶에 대한 인류의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인권이 부정되고 탄압된다면 이는 개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폭력과 갈등을 낳게 되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관련 연구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인권의식 지수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20문항의 인권의식 설문지를 통하여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각각의 학생들의 인권의식 지수를 비교해 보았다.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정도가 어느 부분에서 더 강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난 세대이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존중을 받고 태어났다. 그들은 만약 인권이 없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지 못하며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이 대부분인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전세계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인권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내적 향상을 이루기 위한 미래 사회인으로서 인권의식 향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사회인으로서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의 정도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여러 교과를 배우는데 아직 반인권, 무인권적 내용도 많은 실정이고, 따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

등학생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의식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연구대상,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으로 한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 기간으로 9월1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에 소재한 A초등학교(전교생 1600명 中 216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고, 문헌연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인권의식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기초적인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인식, 다양성에 관한 인식, 세부적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인권과 인권교육의 개념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목표적 측면, 초등학교 인권 교육의 특징 등을 살펴볼 것이다.

3장, '초등학교 인권의식 실증 분석'에서는 표본의 특성, 설문지 구성 분석 방법을 통해 인권에 관한인식, 다양성에 관한 인식, 세부적 인권 문제 측면에서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4장, '인권의식 증진방안'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상에서 개선방향, 인권교육 지원체계상의 개선방향, 제도적 개선방안, 의식적 개선방안, 홍보적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여 급변하는 사회를 대비하는 인권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리어던이 제시한 인권교육 단계에 비추어 인권의식정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여 교육을 담당할 교

육자들의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선행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 교육과정 해설집, 각종 정책자료, 연구논문, 연구소 등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 기타 참고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문헌 연구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권과 인권교육의 개념

인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부 등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인권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이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추구하는 일체의 교육적 노력”(국가인권위원회, 2006)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 의견, 국제 혹은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배경과 같은 것으로 차별받지 않으면서,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평등을 도모하는데 일조하고, 분쟁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참여와 민주적인 절차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믿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이 참여와 민주적인 절차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며, 이는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음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제2절 인권교육의 필요성

현재 학교에서 그나마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법질서의 준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권리의 규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교과서 내용 간에 단순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물론 인권은 그에 수반하는 의무와 함께 교육되어야만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부재는 인권교육 자체가 인권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학생 인권이 경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국내외적 상황, 특히 학생들이 처한 사회, 학교, 가정환경은 학생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3절 인권교육의 목표적 측면[1)]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소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인권교육의 목표는 바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표현하는 이 절대명령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1. 인권 교육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등과 우정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인 삶의 조건은 그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오늘날의 지구촌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양심과 이성에 따라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성의 이해가 획일성이나 전체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

1) 구정화 외,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국가인권위원회, 2004), p.22-p.23

른 평등과 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교육의 부족 때문이다. 나의 이익만 중요시 하고 상대방의 인권은 신경 쓰지 않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인식 부족으로 인간 존엄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타인의 인권을 고려하고 그것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인권에 대한 문해력과,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관점을 고려하여 그 맥락을 이해하려는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이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제4절 초등학교 인권 교육의 특징[2)]

초등학교는 아동들이 가정과 유치원을 넘어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접하게 되는 곳이다.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도 깨닫게 된다.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인권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권을 의식하는 기본 생활태도, 자신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의인권도 존중하는 기본개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2)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2004, p.95

제3장 초등학생 인권의식 실증 분석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A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 방문을 통해 배포·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50~60부씩 총 220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16부로 전체 회수율은 98.1%로 나타났다. 실제 유효한 설문지는 216부로 100%이다. 각 문항별 퍼센티지(%)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반올림 없이 버림하였다.

제2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130명(60%), 여자가 86명(40%)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3학년 2개반(51명), 4학년 2개반(55명), 5학년 2개반(56명), 6학년 2개반(54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의 지역별 분포는 대한민국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정규 초등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큰 규모의 초등학교이다.

넷째, 학교의 특성은 다문화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4명(필리핀 8명, 중국 4명, 일본 7명, 몽골 1명, 파키스탄 1명, 조선족3명)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이 학교에 재학 중이다.

제3절 설문지 구성 및 분석 방법

다음 <표-1>에서와 같이 이번 연구의 설문지는 리어던이 제시한 인권교육의 단계에

맞추어 인권의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인권의 인식>에서는 인권의 기본적인 지식 정도를 질문하였고, <다양성에 관한 인식>에서는 리어던의 아동기(1학년~3학년) 인권교육의 핵심개념인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였다. 3학년~6학년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정도가 리어던이 제시한 인권교육의 단계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것이 주목적이다. 이에 맞추어 인권교육 단계에 맞춘 교과서의 집필과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에 관한 인식>에서는 장애, 다문화, 왼손잡이, 성에 관한 편견 등에 관한 질문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관한 편견 정도를 분석하였다.

<세부적 인권 문제>에서는 아동 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핵심 개념인 헌법, 공동체의 원리, 자유 등에 비추어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 리어던이 제시한 인권교육의 단계

발달단계	핵심개념, 가치	인권 표준과 자료	쟁점과 문제
아동기 초등학교 저학년 5~8세 1~3학년	규칙 질서 존중 공정 다양성 협동 개인적 책임	교실 규칙 아동권리 선언	불평등 불공정 괴롭힘
아동 후기 초등학교 고학년 9~11세 4~6학년	법 시민성 공동체 원리 헌장 헌법1· 자유 선언 사회적 책임	공동체 기준 독립 선언 아프리카 자유헌장 미국 권리장전 세계인권선언 아동관리에 관한 협약	편견 차별 빈곤 부정의
청소년기 중학교 12~14세 7~9학년	정의 평등 형평 협약 조약 세계적 책임 국제법	지역 인권 협약 UN 조약과 협약 (인종차별 금지, 여성차별 반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종중심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전체주의 식민지주의 기아
청년기 고등학교 15~17세 10~12학년	도덕적 배제 도덕적 책임 도덕적 포섭 세계 시민성 생태적 책임	뉘른버그 원칙 UN협약(민족말살과 금지와 처벌, 고문방지와 제거) 새로운 시준의 정의와 개발	민족말살 인종청소 고문 정치적 억압 환경오염

제4절 초등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 분석

1. 인권에 관한 인식

『1. 인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2〉 1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51명	8	8	12	16	7
%	15.6	15.6	23.5	31.3	13.7
	31.2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10	10	9	19	7
%	18.1	18.1	16.3	34.5	12.7
	36.2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8	11	11	15	11
%	14.2	19.6	19.6	26.7	19.6
	33.8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6	11	11	15	11
%	11.1	20.3	20.3	27.7	20.3
	31.4				

인권의 의미에 대한 이해정도에 관련해서는 각 학년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미를 이해(매우 그렇다, 그렇다)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각 학년의 응답자의 30%이상은 잘 모른다고(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에 있는 인권에 관한 문제를 습득하게 되면서 인권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50%의 학생만이 인권에 대해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초등학생들의 30%이상의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향상이 시급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2. 인권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나요?』

①TV ②학교 ③인터넷 ④신문 ⑤부모님

〈표-3〉 2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6	19	10	1	15
%	11.7	**37.2**	19.6	1.9	29.4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6	21	12	1	15
%	10.9	**38.1**	21.8	1.8	27.2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4	23	10	4	15
%	7.1	**41**	17.8	7.1	26.7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4	21	10	4	15
%	7.4	**38.8**	18.5	7.4	27.7

인권을 어디에서 접하였는지에 관련한 질문에서는 학생들의 40%정도가 학교에서 습득을 하고 2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3번째는 인터넷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교사가 언급하고 교과서에 배운 내용을 학생들은 좀 더 잘 기억하고 있고 의미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해야 할까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4〉 3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7	13	11	13	7
%	13.7	25.4	21.5	25.4	13.7
	39.1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9	15	11	13	7
%	16.3	27.2	20	23.6	12.7
	43.5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13	17	6	13	7
%	23.2	30.3	10.7	23.2	12.5
	53.5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13	16	5	13	7
%	24	29.6	9.2	24	12.9
	53.6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의 응답에서 주모할 점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학년 : 39.1, 4학년 43.5, 5학년 53.5, 6학년 : 53.6>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체 교과목의 증가에 대한 부담과 기본 주요 교과목이 중요시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4.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5〉 4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5	8	19	8	10
%	9.8	15.6	37.2	15.6	19.6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5	9	20	10	11
%	9	16.3	36.3	18.1	20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5	9	16	17	9
%	8.9	16	28.5	30.3	16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5	9	16	15	9
%	9.2	16.6	29.6	27.7	16.6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의 응답에는 학년당 40%이상의 학생이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 10조에 나타나 있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6〉 5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19	14	11	2	5
%	37.2	27.4	21.5	3.9	9.8
	59.6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20	15	12	3	5
%	36.3	27.2	21.8	5.4	9
	63.5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24	11	10	6	5
%	42.8	19.6	17.8	10.7	8.9
	62.4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24	11	10	6	3
%	44.4	20.3	18.5	11.1	5.5
	64.7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질문의 응답에는 과반수(60%이상)가 넘는 학생들이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개편하여 인터넷 세대인 학생들이 사이버 상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인권에 대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2. 다양성에 관한 인식

『6. 여러분은 장애인은 불구자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7〉 6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21	11	9	6	4
%	41.1	21.5	17.6	11.7	7.8
	62.6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 55명	21	13	9	8	4
%	38.1	23.6	16.3	14.5	7.2
	61.7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 56명	18	11	14	9	4
%	32.1	19.6	0.25	16	7.1
	51.7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 54명	16	11	14	9	4
%	29.6	20.3	25.9	16.6	7.4
	49.9				

『여러분은 장애인은 불구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에는 과반수(50%)가 넘는 학생들이 장애인은 불구자[3]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수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저학년 시절에는 특수아동 학생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어울리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학생과 특수아동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는 횟수가 줄어들고, 특수아동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울림의 정도가 낮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3) 오마이뉴스, 2005년 7월 19일,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욱 편하다.」中. 장애인이란 용어는 대략 1980년대 초반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근대 이후에는 주로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불구자(不具者)'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7. 부모님이 외국인인 친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8〉 7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16	13	10	6	6
%	31.3	25.4	19.6	11.7	11.7
	56.7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18	13	10	8	6
%	32.7	23.6	18.1	14.5	10.9
	56.3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16	17	7	10	6
%	28.5	30.3	12.5	17.8	10.7
	58.8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16	15	7	10	6
%	29.6	27.7	12.9	18.5	11.1
	57.3				

『부모님이 외국인인 친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각 학년당 과반수의 학생(55%이상)들이 부모님이 외국인인 친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24명이나 되고 서로 어울려 지내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인과 비한국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학생의 부모의 경우 학생들의 경우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24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 대부분이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인 것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교과서 구성시 다문화 가정의 부모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을 일깨워주는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왼손잡이인 친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9〉 8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24	8	5	6	8
%	47	15.6	9.8	11.7	15.6
	72.6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26	10	5	6	8
%	47.2	18.1	9	10.9	14.5
	65.3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28	8	6	6	8
%	50	14.2	10.7	10.7	14.2
	64.2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28	8	4	6	8
%	51.8	14.8	7.4	11.1	14.8
	66.6				

『왼손잡이인 친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질문에는 거의 과반수 이상(60%)의 학생들이 잘못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인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들 수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나 습관,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편을 느끼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기본이념이다. 하지만 아직도 각 학년당 25%의 학생들이 '왼손잡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9. 운동은 남학생이 더 잘하고 남학생의 놀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10〉 9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16	9	10	5	11
%	31.3	17.6	19.6	9.8	21.5
				31.3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16	10	10	7	12
%	29	18.1	18.1	12.7	21.8
				34.5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16	11	10	7	12
%	28.5	19.6	17.8	12.5	21.4
				33.9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16	11	10	5	12
%	29.6	20.3	18.5	9.2	22.2
				31.4	

『운동은 남학생이 더 잘하고 남학생의 놀이라고 생각하나요?』에서는 학년당 30%이상의 학생들이 운동은 남학생이 더 잘하고 남학생만의 놀이라는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차별이란“ 한쪽 성이 다른 성보다 우월하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남녀사이의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으로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으로 전통적 관념에 기반하여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독특한 억압형태”라고 정의되어진다. 이러한 남녀 사이의 성차별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초등학생 남녀학생 모두 동등하게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집안일은 엄마(여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 11〉 10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34	4	3	6	4
%	66.6	7.8	5.8	11.7	7.8
	74.4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34	5	4	7	5
%	61.8	9	7.2	12.7	9
	70.8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32	8	3	8	5
%	57.1	14.2	5.3	14.2	8.9
	71.3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32	8	3	8	3
%	59.2	14.8	5.5	14.8	5.5
	74				

『집안일은 엄마(여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년별로 약 70%이상의 학생들이 엄마(여자)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에서 편견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사회의 고용기회의 불평등까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이상 되는 편견에 사로잡힌 학생들을 위해 아동의 양성평등적인 역할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부부간의 역할분담과 권력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 과거의 권위주의적 수직적 부부관계에서 오늘날은 평등주의적·수평적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이러한 역할분담을 많이 관찰하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세부적 인권문제

『11. 잘못되거나 부당한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 12〉 11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18	6	8	8	11
%	35.2	11.7	15.6	15.6	21.5
				37.1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19	7	9	9	11
%	34.5	12.7	16.3	16.3	20
				36.3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19	8	9	9	11
%	33.9	14.2	16	16	19.6
				35.6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17	8	9	9	11
%	31.4	14.8	16.6	16.6	20.3
				36.9	

『잘못되거나 부당한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는 질문에는 학년당 35%이상의 학생들이 잘못되거나 부당한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모든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은 인권의 기본정신인데 이러한 인권의 기본정신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학생이 35%이상 된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12. 자기 잘못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는 그냥 두는 것이 좋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13〉 12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11	9	18	5	8
%	21.5	17.6	35.2	9.8	15.6
				25.4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13	10	19	5	8
%	23.6	18.1	34.5	9	14.5
				23.5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13	10	20	4	9
%	23.2	17.8	35.7	7.1	16
				23.1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13	8	20	4	9
%	24	14.8	37	7.4	16.6
				24	

『자기 잘못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는 그냥 두는 것이 좋다.』에 대한 응답에는 각학년당 23%이상의 학생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왕따 당하는 친구는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사생활의 영역에서 개개인은 그 인격 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타인과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그냥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자유로운 활동과 인격 발현에 관한 권리, 즉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제2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와, 그것을 존중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13.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은 항상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14〉 13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16	10	13	6	6
%	31.3	19.6	25.4	11.7	11.7
				23.4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16	11	14	7	7
%	29	20	25.4	12.7	12.7
				25.4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16	10	16	6	8
%	28.5	17.8	28.5	10.7	14.2
				25.1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16	8	16	6	8
%	29.6	14.8	29.6	11.1	14.8
				25.9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은 항상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약 25%의 학생들이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은 항상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4.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15〉 14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24	7	9	6	5
%	47	13.7	17.6	11.7	9.8
				21.5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25	8	10	7	5
%	45.4	14.5	18.1	12.7	9
				21.7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25	8	10	8	5
%	44.6	14.2	17.8	14.2	8.9
				23.1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25	8	10	6	5
%	46.2	14.8	18.5	11.1	9.2
				20.3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질문에는 학년당 20%이상의 학생이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생명권에 관한 인식, 즉 생명존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자

유권 규약 제6조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존중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생명권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15.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마음씨도 착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16〉 15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35	7	3	3	3
%	68.6	13.7	5.8	5.8	5.8
	82.3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36	8	4	4	3
%	65.4	14.5	7.2	7.2	5.4
	79.9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36	8	4	5	3
%	64.2	14.2	7.1	8.9	5.3
	78.4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34	6	6	5	3
%	62.9	11.1	11.1	9.2	5.5
	74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마음씨도 착할 것이다.』의 질문에는 학년당 70%이상의 학생들이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마음씨도 착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중문화와 접촉빈도가 높아지고 또래문화로 변화하면서 이에 편견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신분,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이러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존중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나랑 종교(불교,기독교,천주교)가 다르면 잘못된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17〉 16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34	4	5	5	3
%	66.6	7.8	9.8	9.8	5.8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33	5	7	6	4
%	60	9	12.7	10.9	7.2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33	5	8	5	5
%	58.9	8.9	14.2	8.9	8.9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31	5	8	5	5
%	57.4	9.2	14.8	9.2	9.2

『나랑 종교(불교,기독교,천주교)가 다르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학년당 65% 이상의 학생들이 종교적 평등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15%이상의 학생들이 종교가 다르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즉, 종교적 입장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이 인권의 기본정신이라는 것을 교육한다면 의식 변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17. 나랑 피부색이 다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18〉 17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34	4	5	3	5
%	66.6	7.8	9.8	5.8	9.8
	74.4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31	8	3	7	6
%	56.3	14.5	5.4	12.7	10.9
	70.8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31	8	3	7	7
%	55.3	14.2	5.3	12.5	12.5
	69.5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29	6	5	7	7
%	53.7	11.1	9.2	12.9	12.9
	64.8				

『나랑 피부색이 다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 』라는 질문에 학년당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나랑 피부색이 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3학년에서 6학년으로 갈수록 지수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적 노력을 통해 다문화적 의식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시대를 준비하면서 타문화와 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므로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좀 더 확대하여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18. 남자는 떠들고 시끄럽고, 여자는 조용하고 차분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 19〉 18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27	9	7	5	3
%	52.9	17.6	13.7	9.8	5.8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30	5	9	8	3
%	54.5	9	16.3	14.5	5.4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30	5	10	8	3
%	53.5	8.9	17.8	14.2	5.3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28	5	10	8	3
%	51.8	9.2	18.5	14.8	5.5

『남자는 떠들고 시끄럽고, 여자는 조용하고 차분하다.』와 같은 질문에 20%정도의 학생들이 남자는 떠들고, 시끄럽고 여자는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성별에 의한 잘못된 성역할 구조가 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수록된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에 위배될 뿐 아니라, 평등권의 측면에도 저촉되는 부분이다. 이에 교과서에 구성되는 삽화나 내용을 남녀 동등하게 배치하는 것이 남녀차별의 부정적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19. 나는 학교와 집에서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20〉 19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22	12	10	5	2
%	43.1	23.5	19.6	9.8	3.9
	66.6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29	8	11	5	2
%	52.7	14.5	20	9	3.6
	67.2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27	11	11	5	2
%	48.2	19.6	19.6	8.9	3.5
	67.8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25	10	12	4	3
%	46.2	18.5	22.2	7.4	5.5
	64.7				

『나는 학교와 집에서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다.』에 질문에 학년당 60%이상의 학생이 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사회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의 원칙의 생활을 살고 있지만 10%가 넘는 학생은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래 20번 설문 문항과 함께 내가 차별을 당하면 정정당당하게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의식을 기르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20. 나는 차별을 당해도 그냥 참겠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21〉 20번 문항에 대한 분석

문 항	①	②	③	④	⑤
3학년 51명	25	10	12	2	2
%	49	19.6	23.5	3.9	3.9
	68.6				

문 항	①	②	③	④	⑤
4학년55명	29	8	13	3	2
%	52.7	14.5	23.6	5.4	3.6
	67.2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학년56명	25	10	13	5	3
%	44.6	17.8	23.2	8.9	5.3
	62.4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학년54명	23	10	13	5	3
%	42.5	18.5	24	9.2	5.5
	61				

『나는 차별을 당해도 그냥 참겠다. 』는 질문에는 60%이상의 학생이 차별을 당해도 참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차별에 대한 인간의 자세한 권리와 다른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생각해보도록 한다면 차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인권의식 증진방안

제1절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상의 개선방향

2009년 5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은 첫째로,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하고 있다.

- ○ 학교의 교원들이 충분히 협의해 지역, 학교, 학생 특성에 가장 알맞은 최적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 ○ 관할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따른 교원수급, 학생수용(배정), 시설과 설비 구축, 재정지원을 함.
- ○ 국가수준에서는 질 관리를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
-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둘째로, 교과와 교과 외 활동으로 2원화하고 있다.

- ○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구성영역을 교과와 교과 외 활동으로 구분함.
  ※ 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교과 외 활동으로 함
- ○ 교과외 활동의 종류, 운영 방안은 학교에 일임하되, 학교는 주당 2-3시간을 확보하도록 함.
- ○ 학교에서는 학교급의 특성, 학년군의 특성에 따라 강조할 활동을 달리할 수 있음

미래형 교육과정상에서는 학교의 재량권이 커지고 있다. 즉, 학교의 특색을 살려 교육내용을 선정할 수 있고, 교과 외 활동이 강조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교과적인 측면에서 인권교육을 다루어야 하며, 특히 국어, 사회 등의 과목에서는 인권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이들 교과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심화·보충 교육이 가능한 재량 활동이나, 교과 외 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인권교육 지원체계상의 개선방향

무엇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교육과정의 교과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및 제도상으로도 교육의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지와 태도가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역할,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의 태도, 사회적인 인식,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앞에서 지적한 인권교육 지원체계상의 문제점에 대응해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정부기관의 역할로, 인권교육 교수-학습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만 기본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교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인권교육을 주도하되 학습의 과정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정확한 실태, 학습자들의 요구, 교육담당자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실제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다양한 논의와 아이디어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교육을 수행토록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가치 기준을 설정해주어야 하며 이것은 지침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여타 사항은 각급 학교현장의 교사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다양한 정보의 수용과 자료의 활용이다.

기존 학교 인권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이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의 개발 등 통일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등한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개발한 다양한 수업자료와 교수-학습 방법,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면 효과적인 학교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이전에 자료의 DB 구축을 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자료공개의 제한과 통제는 불신과 무관심, 편견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주체의 정치적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권논의에 기초가 되는 인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에 관심 있는 교사들의 학습 자료 접근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대폭적인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져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내용과 학습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고 연수의 기회, 연구대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는 무엇보다 인권문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 인권교육의 성패가 유능한 교육자의 확보에 달려 있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다.

특히 대부분 담임교사가 사회, 도덕과 등 전과목을 지도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에게 인권교육 관련 능력 수준의 향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의 내용은 사회가 다양화지고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의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 교육의 변화 속도의 교사의 의식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지속적으로 재교육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학교관리자와 학부모들에 대한 인권교육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종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연구논문 대회를 열어 현장과 이론을 접목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인권교육은 학교 현장에 빨리 자리 잡혀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의식적·홍보적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초등학생 인권의식 향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가. 인권캠프

현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체험위주의 인권캠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권캠프를 통하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인권의식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대학생 인권 멘토(mentor) 교육 도입

인권교육 관련 연수나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인권 관련 수업을 실시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후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인권에 관한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주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인권의식 확립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게 됨은 물론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의식적 개선방안

초등학교 재량활동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 이론수업과 체험활동 등의 수업을 병행하고, 초등학생들이 인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권위원회가 지원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가. 학교 인권지킴이 제도 도입

학교에는 환경지킴이, 예절지킴이 등 중요한 학교 운영에 학생들을 주체자로 참여하게 하여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에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인권을 위해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권지킴이를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세계인권선언기념일(世界人權宣言記念日)[4] 기념행사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때이므로 학교에 인권교육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강연회를 여는 것도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쉽게 인권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학교에 인권에 관련된 전문가 목록을 만들어 제공하여 지원한다면 각급 학교에서 쉽게 강연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홍보적 개선방안

가.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친근한 인권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인권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설정하여 홍보하는 것도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을 상징하는 친근한 캐릭터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캐릭터&이미지 공모전 개최를 통해 대회에서 당선된 캐릭터를 다양한 홍보물로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인권관련 홍보의 강화

학생들이 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는 인터넷이다. 정보화 시대인 요즘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를 하면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 커뮤니티 블로그 "동고동락"[5]은 국방 뉴스, 정책정보, 동영상, 웹툰, 사진 수록하여 네티즌의 큰 인

4)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1948년 12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 12월 10일이다. ≒인권 선언일.

5) 국방부 커뮤니티 블로그" http : //mnd9090.tistory.com "

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UCC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홍보를 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를 만들어 인권과 관련 있는 기사와 내용 글, 만화를 삽입하여 인권을 좀 더 친숙한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우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연스런 참여를 유도하면서 인권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인권교육을 받을 학생들은 그들이 과거 인권이 억압되었던 시절을 직접 경험한 세대도 아니며 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인권교육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인권교육에 관련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한다면 사회적·국제적인 인권의식의 눈을 가진 미래의 시민으로 자라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편견의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인권의식의 분야를 보완한다면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접근하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인권교육의 개념을 알아보고, 필요성과 목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인권의식 실증 분석'에서는 20문항의 설문지에 나타난 인권의식 분석을 통해 인권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초등학교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생활에서 정의와 존중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간의 다양성에 관한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력을 배양하여 사람답게 사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의 의식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님과 동시에 변하지 않는 인권의식을 확립하여 세계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고무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성을 갖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1. 교육부, 『도덕 3·4·5·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2.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Ⅱ,Ⅲ)』, 교육부, 1998.
3. 교육부, 『통일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1993.
4.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5. 교육인적자원부,『도덕 3·4·5·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예감기획, 2005.
7.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국가인권위워회, 2007.
8. 국가인권위원회,『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07.
9.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얘들아, 인권 공부하자』, 사람생각, 2003.
10. 구정화 외,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11. 유네스코, 『모든 인간은..』,사람생각, 2000.
12.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 『땅콩 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우리교육, 2003.
13. 박경태,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2007.
14. 이상돈, 『인권법』, 세상출판사, 2005.
15.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 날다』, 사람생각, 2008.

<논문>

1. 김미진,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부록 1>

안녕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관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하나하나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제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성별 : 남( ), 여( ) 2. 학년 : ( )학년

〈인권에 관한 인식〉

1. 인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인권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나요?

①TV ②학교 ③인터넷 ④신문 ⑤부모님

3.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해야 할까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다양성에 관한 인식〉

6. 여러분은 장애인은 불구자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부모님이 외국인인 친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왼손잡이인 친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운동은 남학생이 더 잘하고 남학생의 놀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집안일은 엄마(여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세부적 인권 문제〉

11. 잘못되거나 부당한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자기 잘못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는 그냥 두는 것이 좋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은 항상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마음씨도 착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나랑 종교(불교,기독교,천주교)가 다르면 잘못된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나랑 피부색이 다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남자는 떠들고 시끄럽고, 여자는 조용하고 차분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나는 학교와 집에서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나는 차별을 당해도 그냥 참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학생부분

남혜령 윤창민 이상희 전예림 최지혜 / 경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목 차



요 약 ····· 248

제1장 서론 ····· 250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 250

제2절 연구의 범위 ····· 251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과 절차 ····· 251

제2장 본론 ····· 253

제1절 선행 연구검토 ····· 254

제2절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특징 ····· 255

제3절 설문조사 ····· 255

제4절 실증분석 ····· 259

제3장 결론 및 제언 ····· 280

참고논문 ····· 282

요 약

현 정부는 글로벌 교육 서비스 분야를 17대 '신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또한 대구광역시 역시 대구 장기 발전계획(2009)에서 드러나듯 '글로벌 교육학술 중심도시'라는 모토 아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본격화하는 등 모든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1년 11,646명, 2003년 12,314명, 2004년 16,83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05년에는 22,526명으로 전년 대비 33.8%나 증가되었고 2008년에는 63,952명으로 증가하는 등 그 수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확연히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처한 교육적 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언어문제, 문화적 적응, 인권침해, 경제적인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외국인 소수자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에 비해서도 더 소수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침해의 정도를 연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연구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하여 전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국인에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통계분석패키지 SPSS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통해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의 제도적 지원은 유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둘째, 이수과정에 따른 차별정도분석에서는 어학연수생들이 학교 편의시설이용에 차별을 느끼고 있고, 박사과정생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차별을 느끼고 국가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다. 셋째, 남성에 비하여 여성 유학생들이 심리적, 대인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인권침해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 넷째,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이 심리적인 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 유학생이 서구 유학생에 비하여 모든 차원에서 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여섯째,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척도와 인권침해정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인관계상의 제약'이 '심리적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제약'이 '인권침해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학생활 제약'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보호수준을 높여 얻게 되는 효과는 명확하다. 그만큼 실효적인 해외 우군(친한·지한파)이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함께 이룩하는 것은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한국인 대학생들에게도 국제적 감각과 학문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본 연구가 한국의 대학이 진정한 '글로벌화'와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인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데 있어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자료(2008)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995년에는 1,983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6년 이후 매년 1,000명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최근 5~6년 사이에는 외국인 유학은 그 수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11,646명, 2003년에는 12,314명, 2004년 16,83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05년에는 22,526명으로 전년 대비 33.8%나 증가되었고 2008년에는 63,952명으로 그 수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세계 중심국가로 확고히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 서비스 분야를 17대 '신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한국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하며,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등 국익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증가현상 속에서 그들이 처한 교육적 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언어문제, 문화적 적응, 인권침해, 경제적인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외국인 소수자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에 비해서도 더 소수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국내의 유학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 학생의 학업 및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연구(조흥식 외, 1993),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1997 허춘영 외),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연구(나임순 2006) 등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침해의 정도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여 그들이 대학공간

속에서 자주 겪는 차별의 유형을 분석하고 분석된 차별의 유형이 외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인권침해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향상을 위해 국가 및 대학 구성원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Revised 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 RSACQ)를 본 연구에 맞게 조금 수정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제약, 대인관계에서의 제약, 국가 사회제도의 제약, 심리적 제약의 제약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받는 차별과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단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유치 전략을 그 목적으로 하는 선행연구를 넘어 본 연구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차별과 인권침해 해소에 큰 도움을 주어 그들이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까지 행하여지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연구로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벗어나, 유학생들이 대학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요인을 분석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일반적 의미의 유학생의 생활에 대한 연구보다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에 한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전국이라는 광범위한 연구의 틀보다는 연구의 실질효용 증대를 위하여, 전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보수적인 대구, 경북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였다.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현황과 그들에 대학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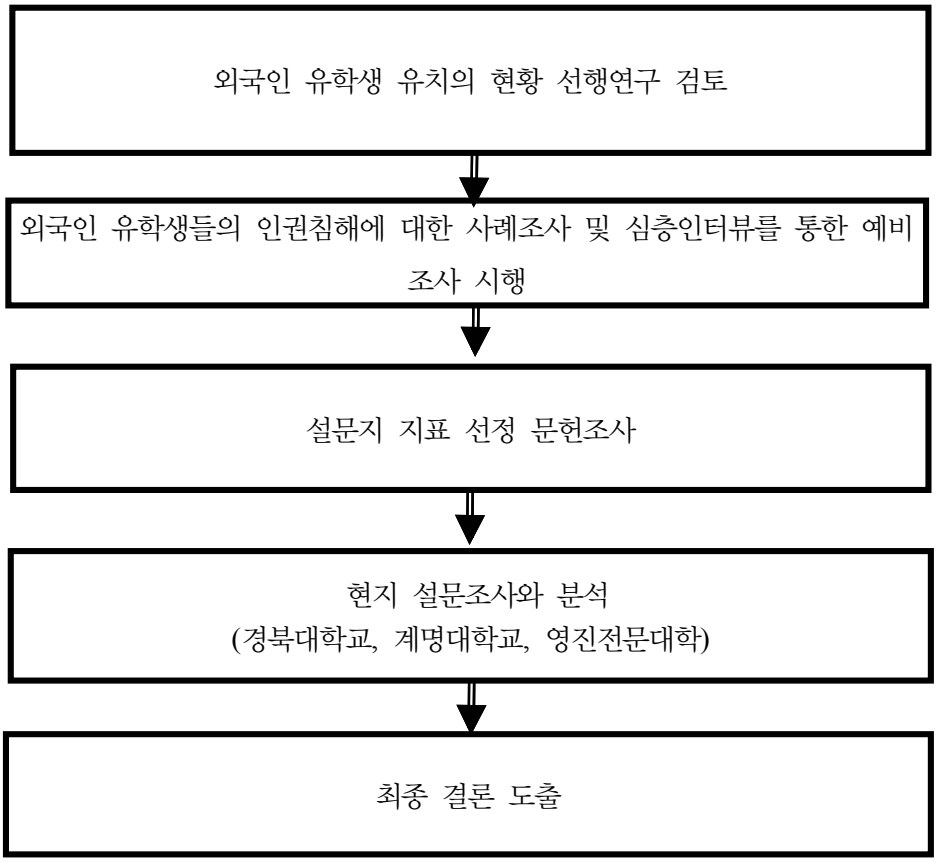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재 지역 내 유학생 유치 현황 및 유치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도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지표 선정의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하여 문헌 조사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지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침해정도를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선행 연구 검토 및 예비 조사를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질문지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09년 8월 26일부터 2009년 9월 7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으로는 4년제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와 4년제 사립대인 계명대학교, 2년제 사립대인 영진전문대학 학생들이 선정 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배포된 설문지는 경북대학교 32부, 계명대학교 32부, 영진전문대학 19부로 총 83부이며, 모두 성실하게 수거되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의와 응답도 병행하여 조사에 임하였던 바가 크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모든 과정에서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직접 조사에 임하였으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 학교 도서관 입구와 교내 식당 인근에서 면대면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응답자 개인 정보를 묻는 질문(독립변수) 6가지, 유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묻는 질문(매개변수) 12가지 최종적으로 인권침해 정도를 묻는 질문(종속변수) 1가지 등 총 19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빈도분석과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는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분산분석과 사후 분석으로는 Scheffe 검정 기법을 사용하였다. 아래에 위의 연구 수행방법과 절차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표 1 설문조사 방법〉

조사기간	2009년 8월26일~9월 7일
조사대상	경북대, 계명대, 영진전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조사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표본크기	83 unit (총 83unit, 회수율 100%)
조사지역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조사분석	SPSS WIN12.0



〈그림 1 연구 수행 방법과 절차〉

제2장. 본론

본론에서는 본 연구의 앞서, 외국인 유학생 인권실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검토 후에야 본 연구의 타당성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국의 유학생 분포 및 특징을 알아본 뒤에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 유학생 유치 전략을 연구하도록 한다.

제1절 선행 연구검토

나임순(2006)은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는 향수병으로 인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다음은 지각된 차별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으로는 성별, 결혼유무, 한국어 수준, 한국 체류기간 등의 네 가지 변인이 있다고 했다. 특히 네 가지 변인 중 한국어 수준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생활 스트레스에서는 학업 문제와 장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친구 문제와 가치관 문제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고, 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으로는 거주환경, 경제적 수준, 한국어 수준 등의 3개 변인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한국어 수준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나임순(2006)의 연구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했다는 점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 요인 분석에 있어 본 연구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또한 김선남(2007)의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수와의 친밀감, 동아리 활동, 동일국적학생과의 친밀감, 한국학생과의 친밀감 등과 문화적응, 성적, 언어수준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의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특수요인, 즉 문화적 이질성 및 언어장벽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대인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유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태한(2001)은 “대학생 인종, 민족 선호도에 관하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서구화 현상을 증명하였다. 특히 한국대학생들이 ‘백인선호의식’을 가지고 무비판적인 ‘미국화’에 동조되어 미국사회에 존재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였다. 박희석(2007)은 “대학생활 적응척도의 요인분석”에서 대학생활 적응 척도(RSACQ)모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시행될 수정된 RSACQ모형과 인권침해와 관계분석에 비교 점을 제공한다.

제2절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특징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교육인적자원부, 2008)

	어학연수	학사	석사	박사	기타	계
아시아	18,264	27,224	8,224	3,019	2,644	**59,375**
아프리카	72	73	183	54	15	**397**
오세아니아	47	42	37	14	38	**178**
북미	515	557	379	71	643	**2,165**
남미	78	93	76	8	23	**278**
유럽	545	208	244	79	483	**1,559**
합 계	**19,521**	**18,360**	**9,143**	**3,245**	**3,846**	**63,952**

유학생의 이수과정의 분포는 어학연수를 제외하고 한국인 대학생의 이수과정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국적별 분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에 큰 비중이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조혜영(2003)의 연구에서 최근 들어 아시아권에 유행하고 있는 '한류'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유학생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전체의 70%에 가까울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많다. 이는 국내 유학생의 인권을 연구함에 있어 중국인 유학생의 인권에 대한 연구가 크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3절 설문조사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은 대구, 경북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와 4년제 사립대학인 계명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인 영진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83명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설문대상의 국적과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한국어판 설문지, 중국어판 설문지, 영문판 설문지 3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변역과정에서의 생기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영문과에 재학 중인 조선족 유학생의 도움을 받았다.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9년 8월 26에서 9월 7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학교의 기숙사, 학생 식당, 도서관, 어학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은 대상자가 자기기입방식에 따라 응답하였다.

2. 변수측정

이현지(2003)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현지 국가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세세한 특성에 따라 보다 복잡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언어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여러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대한 인권침해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변수선택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증명된 변수들과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된 외국인 유학생의 개별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변수들을 본 연구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가. 독립변수

나임순(2006)의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 한국 체류기간, 한국어 능력, 결혼유무가 있다고 하였고, 김영성(2006)은 현지어구사능력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의 선행요소라고 했다. 그것은 언어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도구이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장태한(2001)은 대학생이 가지는 인종, 민족의 선호도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영미권의 국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설문대상을 분류하는 독립변수로서 성별(남, 여), 국적(중국, 유럽 및 북미, 기타), 한국체류기간(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한국어능력(상, 중, 하), 학교{경북대(대구, 4년제, 국립), 계명대(대구, 4년제, 사립), 영진전문대

(대구, 2년제, 사립)}을 선정하였다.

나. 조절변수

baker, sirky(1984)는 대학적응의 정도를 분석하는 척도로 4가지 차원인 학업상의 제약, 대인관계상의 제약, 학교생활의 제약, 심리적 제약을 제안하였고, 이재모(2007), 황해연(2007), 박은경(2008)의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적응요소로서 언어적응,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생활의 학업적인 적응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조사의 차원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baker, sirky(1984)가 제안한 분석 척도에서 학업상의 제약과 학교생활의 제약을 하나로 묶어 이를 학교생활의 제약으로 명하였고, 국가사회제도상의 제약을 새롭게 추가하여 4가지 대분류를 하였고, 각각의 분류에 따라 3가지의 세부질문을 만들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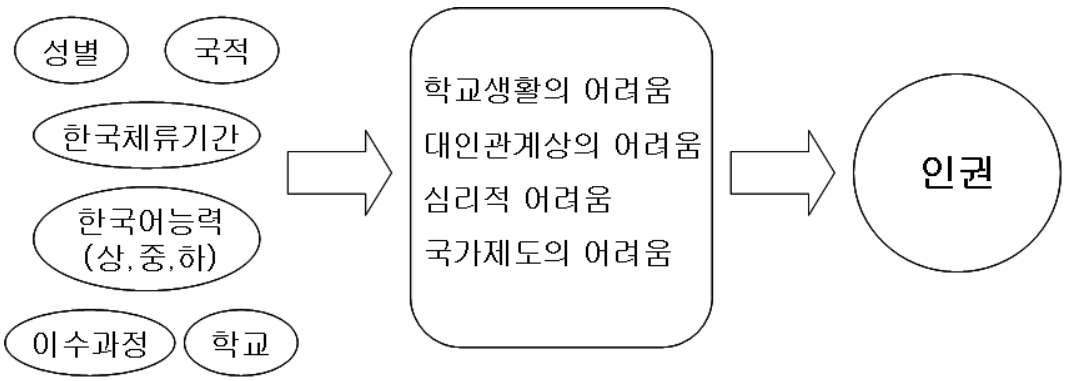
〈표 3 조절변수의 세부질문〉

학교생활의 제약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MT, 체육대회 등 학과 및 동아리행사에서 소외된 적이 있습니까?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업 중 발표나 조별활동에서 소외된 적이 있습니까?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편의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인관계의 제약
• 일상생활에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신 적 있습니까? • 일상생활에서 교수 및 강사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신 적 있습니까? • 한국인을 사귀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리적 제약
•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사회제도의 제약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리 부분에서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의료 및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 중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종속변수

종속변수를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인권침해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3. 분석틀



〈그림 2 연구 모형〉

4. 분석절차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기위해 빈도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학업상의 제약, 대인관계상의 제약, 심리적 제약, 국가제도상의 제약)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측정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에게서 측정된 독립변수에 따라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ANOVA 검정을 시행하였고, 사후평균값의 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매개변수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상관분석과 정준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제4절 실증분석

1. 표본의 인구학적 분석

〈표 4 표본의 인구학적 분석표〉

구분	빈도(%)	
	총 유학생 수 (N=2313)	총 응답자 (N=83)
대학		
경북대학교	980 (42.36)	32 (38.6)
계명대학교	956 (41.33)	32 (38.6)
영진전문대학	377 (16.29)	19 (22.9)
과정		
어학연수	570 (24.64)	19 (22.9)
학사	1235 (53.39)	47 (56.6)
석사	257 (11.11)	14 (16.9)
박사	170 (7.34)	3 (3.6)
기타	81 (3.5)	
성별		
남		43 (51.8)
여		40 (48.2)
체류기간		
6개월 미만		13 (15.7)
1년 미만		26 (31.3)
2년 미만		13 (15.7)
2년 이상		31 (37.3)
한국어능력		
상		5 (6.0)
중		34 (41.0)
하		44 (53.0)
국적 (*모집단은 전국기준)		
중국	44746 (69.96)	49 (59.0)
유럽 및 미주	4002 (6.25)	12 (14.5)
기타	15204 (23.77)	22 (26.5)

〈표 5 구체적 국적분포〉

유럽 및 북미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캐나다	헝가리	미국	리투아니아
2	2	1	2	1	1	2	1

기타								
베트남	세네갈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몽골	케냐
1	1	6	3	4	1	4	1	1

표본으로 선정된 83명의 유학생의 인구학적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대학, 과정, 국적에 있어서 모집단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했다. 성별 역시 남녀의 비율이 거의 절반씩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어 능력과 체류기간 역시 예비조사 및 참고문헌에서의 결과와 비슷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구체적 국적 분포는 각 대학의 해외교류대학의 분포와 거의 일치함을 보였다.

2.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변수들의 차원을 축소하는데 유용한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전체 독립변수들의 차원을 축소하고 향후 분석에서 축소된 변수들 이용한다. 단, 종속변수군으로 이용되는 질문13은 요인분석 없이 하나의 문항으로 다룬다.

〈표 6 요인분석 결과〉

변수 및 설명 문항	성분			
	1	2	3	4
질문1	−.142	−.074	.770	−.045
질문2	−.005	.097	.737	.158
질문3	.127	−.062	.763	−.065
질문4	.041	.734	−.150	.186
질문5	−.014	.808	.052	.238
질문6	.213	.708	.051	−.023

변수 및 설명 문항	성분			
	1	2	3	4
질문7	.831	−.029	−.124	.060
질문8	.781	.136	−.034	.198
질문9	.646	.129	.130	−.130
질문10	.156	.113	.175	.698
질문11	−.087	.028	−.126	.775
질문12	.046	.252	.013	.731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요인분석의 결과 최초의 모형설정에서 설정한 학교생활의 제약(질문 1,2,3), 대인관계의 제약(질문 4,5,6), 심리적 제약(질문 7,8,9), 국가제도상의 제약(질문 10,11,12)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표 7 요인 분석에 의해 축소된 변수그룹〉

변수	문항
학교생활의 제약	질문 1,2,3
대인관계의 제약	질문 4,5,6
심리적 제약	질문 7,8,9
국가제도상의 제약	질문 10,11,12
인권침해정도	질문 13

3.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의 적용이 얼마나 안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흐 알파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6이상이면 문항들 간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생각한다.

〈표 8 변수별 신뢰도 검증 결과〉

변수	문항	Cronbach's alpha
학교생활의 제약	질문 1,2,3	0.644
대인관계의 제약	질문 4,5,6	0.651
심리적 제약	질문 7,8,9	0.658
국가제도상의 제약	질문 10,11,12	0.625
인권침해정도	질문 13	

신뢰도 분석결과, 심리적 제약이 0.65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국가제도상의 제약이 0.625로 가장 낮게 나왔다. 전반적인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문항은 신뢰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4. 문항에 따른 빈도분석

〈표 9 문항에 따른 빈도분석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오차	P-값
1.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MT, 체육대회 등 학과 및 동아리행사에서 소외된 적이 있습니까?	11 (13.3)	26 (31.3)	37 (44.6)	8 (9.6)	1 (1.2)	2.54	.888	.0001
2.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업 중 발표나 조별활동에서 소외된 적이 있습니까?	5 (6.0)	25 (30.1)	41 (49.4)	11 (13.3)	1 (1.2)	2.73	.813	.0001
3.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편의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9 (10.8)	30 (36.1)	36 (43.4)	7 (8.4)	1 (1.2)	2.53	.846	.0001
4. 일상생활에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신 적 있습니까?	12 (14.5)	31 (37.3)	28 (33.7)	11 (13.3)	1 (1.2)	2.49	.942	.0001
5. 일상생활에서 교수 및 강사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신 적 있습니까?	11 (13.3)	24 (28.9)	41 (49.4)	6 (7.2)	1 (1.2)	2.54	.860	.0001
6. 한국인을 사귀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7.2)	20 (24.1)	30 (36.1)	18 (21.7)	9 (10.8)	3.05	1.092	.0001
7.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6 (7.2)	19 (22.9)	41 (49.4)	14 (16.9)	3 (3.6)	2.87	.908	.0001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오차	P-값
8.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6 (7.2)	25 (30.1)	34 (41.0)	18 (21.7)	0 (0)	2.77	.874	.0001
9.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1 (13.3)	34 (41.0)	31 (37.3)	7 (8.4)	0 (0)	2.41	.827	.0001
10.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리 부분에서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1 (13.3)	37 (44.6)	28 (33.7)	6 (7.2)	1 (1.2)	2.39	.853	.0001
11. 의료 및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1 (13.3)	40 (48.2)	26 (31.3)	6 (7.2)	0 (0)	2.33	.798	.0001
12.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 중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 (2.4)	18 (21.7)	34 (41.0)	20 (24.1)	9 (10.8)	3.19	.981	.0001
13. 본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7.2)	14 (16.9)	24 (28.9)	23 (27.7)	16 (19.3)	3.35	1.184	.0001

빈도분석과 t-test결과는 5점 척도에 3점이 보통임을 뜻할 때 질문6, 12, 13을 제외하고는 모두 2점대의 낮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개별 질문의 사례에서 대체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것을 뜻하는데 모든 질문을 포괄하는 종속변수인 질문13에서는 본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에 논리적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하지만 차별을 연구한 다수의 논문에서 개별사례의 점수척도가 대체로 낮게 나온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역시 외국인을 한국인 면접자가 설문자한 점이나 한국인과 동행중인 외국인을 설문조사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편의가 발생했다고 예상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질문의 절대적 수치를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 수치를 비교해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행정이나 제도적인 면이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생활(2.60)이나 국가제도상(2.63)에서 제약을 느끼기 보다는 일상생활이 큰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2.69)와 심리적인 면(2.68)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산분석

가. 학교에 따른 응답의 차이 유무분석

〈표 10 학교에 따른 분산분석표〉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1	경북대학교	32	2.63	1.008	0.372	
	계명대학교	32	2.44	.878		
	영진전문대학	19	2.58	.692		
	합계	83	2.54	.888		
질문2	경북대학교	32	2.84	.954	0.489	
	계명대학교	32	2.69	.780		
	영진전문대학	19	2.63	.597		
	합계	83	2.73	.813		
질문3	경북대학교	32	2.44	1.014	0.309	
	계명대학교	32	2.59	.756		
	영진전문대학	19	2.58	.692		
	합계	83	2.53	.846		
질문4	경북대학교	32	2.69	.998	1.159	
	계명대학교	32	2.41	.946		
	영진전문대학	19	2.32	.820		
	합계	83	2.49	.942		
질문5	경북대학교	32	2.69	.821	0.750	
	계명대학교	32	2.44	.840		
	영진전문대학	19	2.47	.964		
	합계	83	2.54	.860		
질문6	경북대학교	32	2.97	1.177	0.420	
	계명대학교	32	3.19	1.148		
	영진전문대학	19	2.95	.848		
	합계	83	3.05	1.092		
질문7	경북대학교	32	2.63	.907	8.718**	영진, 경북 〈 계명
	계명대학교	32	3.34	.745		
	영진전문대학	19	2.47	.841		
	합계	83	2.87	.908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8	경북대학교	32	2.44	.759	9.515**	경북, 영진 〈 계명
	계명대학교	32	3.25	.718		
	영진전문대학	19	2.53	.964		
	합계	83	2.77	.874		
질문9	경북대학교	32	2.31	.780	1.897	
	계명대학교	32	2.63	.793		
	영진전문대학	19	2.21	.918		
	합계	83	2.41	.827		
질문10	경북대학교	32	2.22	.751	1.001	
	계명대학교	32	2.50	.950		
	영진전문대학	19	2.47	.841		
	합계	83	2.39	.853		
질문11	경북대학교	32	2.41	.712	0.360	
	계명대학교	32	2.31	.965		
	영진전문대학	19	2.21	.631		
	합계	83	2.33	.798		
질문12	경북대학교	32	3.38	1.008	0.907	
	계명대학교	32	3.09	1.058		
	영진전문대학	19	3.05	.780		
	합계	83	3.19	.981		
질문13	경북대학교	32	3.06	1.134	5.005*	영진, 경북 〈 계명
	계명대학교	32	3.84	1.139		
	영진전문대학	19	3.00	1.106		
	합계	83	3.35	1.184		

*p<.05 **p<.01

분산분석을 통하여 학교에 따른 응답 차이를 검정해 보았다. 그 결과 질문 7, 8, 13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Scheffe의 방법으로 사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모든 질문에서 계명대학교 유학생들이 차별을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심리적 제약의 범주에 질문 7, 8에서 타 학교와 비교하여 신뢰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계명대학교의 유학생 관리제도가 타 대학에 비하여 뒤떨어지며, 계명대생의 유학생에 대한 선입견이 상

대적으로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각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표 11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현황〉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버디 프로그램	○	○	○
행정	KNU International Supporters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의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교류 관련 행사 기획, 홍보 진행 등을 담당하는 국제 교류도우미.	X	각 부서의 행정실에 1명씩의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여 교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
언어	International Writing Center 운영	X	English room 학교 각 건물 당 한 개씩 English room을 설치. 외국인 유학생을 상주하게 하여 국내 재학생의 어학 실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교류활동을 활발히 함.
문화	외국인 유학생 투어 시행. ex)울진 친환경 농업 EXPO 투어 유학생등반대회 및 마라톤대회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교내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문화교실 선생님으로 초청하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들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소개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X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영진전문대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제도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북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제도가 다양한 면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계명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제도가 다소 부족하였다. 특히나 행정에서의 통역과 한국어 교육 등 언어적 부분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차이가 계명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이 심리적인 범주에서 많은 차별을 느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이수과정에 따른 응답의 차이 유무분석

〈표 12 이수과정에 따른 분산분석표〉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1	어학연수	19	2.68	.885		
	학사	47	2.45	.802		
	석사	14	2.64	1.082	.414	
	박사	3	2.67	1.528		
	합계	83	2.54	.888		
질문2	어학연수	19	2.63	.761		
	학사	47	2.81	.741		
	석사	14	2.71	1.069	.469	
	박사	3	2.33	1.155		
	합계	83	2.73	.813		
질문3	어학연수	19	3.16	.898		
	학사	47	2.47	.654		석사, 박사
	석사	14	2.00	.877	7.090**	〈 어학연수
	박사	3	2.00	1.000		
	합계	83	2.53	.846		
질문4	어학연수	19	2.00	.882		
	학사	47	2.53	.881		어학연수,
	석사	14	2.64	.745	6.935**	학사, 석사
	박사	3	4.33	.577		〈박사
	합계	83	2.49	.942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5	어학연수	19	2.11	.937		
	학사	47	2.70	.832		
	석사	14	2.57	.756	2.310	
	박사	3	2.67	.577		
	합계	83	2.54	.860		
질문6	어학연수	19	2.84	.958		
	학사	47	3.23	1.088		
	석사	14	2.86	1.292	1.262	
	박사	3	2.33	.577		
	합계	83	3.05	1.092		
질문7	어학연수	19	2.63	.684		
	학사	47	2.98	.872		
	석사	14	2.71	1.139	1.062	
	박사	3	3.33	1.528		
	합계	83	2.87	.908		
질문8	어학연수	19	2.53	.964		
	학사	47	3.02	.794		
	석사	14	2.21	.699	4.177**	
	박사	3	3.00	1.000		
	합계	83	2.77	.874		
질문9	어학연수	19	2.32	.946		
	학사	47	2.45	.829		
	석사	14	2.36	.633	.222	
	박사	3	2.67	1.155		
	합계	83	2.41	.827		
질문10	어학연수	19	2.16	1.068		
	학사	47	2.53	.747		
	석사	14	2.14	.864	1.420	
	박사	3	2.67	.577		
	합계	83	2.39	.853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11	어학연수	19	1.89	.658		
	학사	47	2.47	.804		
	석사	14	2.43	.756	2.562	
	박사	3	2.33	1.155		
	합계	83	2.33	.798		
질문12	어학연수	19	2.63	.831		
	학사	47	3.28	.877		어학연수,
	석사	14	3.36	1.151	5.294**	학사, 석사
	박사	3	4.67	.577		〈 박사
	합계	83	3.19	.981		
질문13	어학연수	19	2.74	1.147		
	학사	47	3.74	1.073		
	석사	14	2.86	1.099	4.850**	
	박사	3	3.33	1.528		
	합계	83	3.35	1.184		

*p<.05 **p<.01

분산분석을 통하여 학교에 따른 응답 차이를 검정해 보았다. 그 결과 질문 3, 4, 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Scheffe의 방법으로 사후 검정한 결과 질문 3에서는 석사, 박사 과정에 비하여 어학연수과정에서 차별을 많이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어학연수생들이 정식 대학생과 구분되는 시간제 수강생으로 등록되어 도서관에서의 도서 대출이나 각종 기타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정식 대학생들에 비하여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4와 질문 12에서는 타 과정에 비하여 박사 과정에서 많은 차별을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박사과정이라는 특성상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어학연수나 학사과정에 비하여 매우 적고,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의 박사학위제도가 일찍이 유학생을 유치하며 보완을 거듭한 다른 교육선진국의 교육제도에 비하여 아직 많이 미흡함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다.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 유무분석

〈표 13 성별에 따른 분산분석표〉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1	남자	43	2.58	.982		
	여자	40	2.50	.784	.173	
	합계	83	2.54	.888		
질문2	남자	43	2.72	.826		
	여자	40	2.75	.809	.026	
	합계	83	2.73	.813		
질문3	남자	43	2.33	.892		
	여자	40	2.75	.742	5.503*	남자 〈 여자
	합계	83	2.53	.846		
질문4	남자	43	2.42	.906		
	여자	40	2.58	.984	.568	
	합계	83	2.49	.942		
질문5	남자	43	2.35	.783		
	여자	40	2.75	.899	4.717*	남자 〈 여자
	합계	83	2.54	.860		
질문6	남자	43	2.88	1.074		
	여자	40	3.23	1.097	2.049	
	합계	83	3.05	1.092		
질문7	남자	43	2.84	.924		
	여자	40	2.90	.900	.098	
	합계	83	2.87	.908		
질문8	남자	43	2.58	.879		
	여자	40	2.98	.832	4.375*	남자 〈 여자
	합계	83	2.77	.874		
질문9	남자	43	2.47	.767		
	여자	40	2.35	.893	.399	
	합계	83	2.41	.827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10	남자	43	2.21	.804		
	여자	40	2.58	.874	3.946*	남자 〈 여자
	합계	83	2.39	.853		
질문11	남자	43	2.28	.826		
	여자	40	2.38	.774	.297	
	합계	83	2.33	.798		
질문12	남자	43	3.00	.951		
	여자	40	3.40	.982	3.552	
	합계	83	3.19	.981		
질문13	남자	43	3.30	1.186		
	여자	40	3.40	1.194	.140	
	합계	83	3.35	1.184		

*p<.05 **p<.01

남녀의 구분에 따른 차별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질문3, 질문5, 질문8 질문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든 질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조사된 것이다. 이는 Cross & Madson(1999)의 성별에 따른 심리제약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강화되는 경향이 큰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정서적 가까움의 정도 및 관계의 유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설명이 되어 진다.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들과의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서적 단절감에 따른 심리적 제약이 크게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제도개선에 있어 여성 유학생들과 대학구성원의 융화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라. 거주기간에 따른 응답의 차이 유무분석

〈표 14 거주기간에 따른 분산분석표〉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1	6개월 이하	13	2.31	.751		
	1년 이하	26	2.77	.951		
	2년 이하	13	2.38	.870	1.016	
	2년 이상	31	2.52	.890		
	합계	83	2.54	.888		
질문2	6개월 이하	13	2.46	.776		
	1년 이하	26	2.96	.871		
	2년 이하	13	2.69	1.032	1.238	
	2년 이상	31	2.68	.653		
	합계	83	2.73	.813		
질문3	6개월 이하	13	2.31	.751		
	1년 이하	26	2.85	.967		
	2년 이하	13	2.31	.630	1.965	
	2년 이상	31	2.45	.810		
	합계	83	2.53	.846		
질문4	6개월 이하	13	2.31	.947		
	1년 이하	26	2.27	.962		
	2년 이하	13	2.92	.862	1.692	
	2년 이상	31	2.58	.923		
	합계	83	2.49	.942		
질문5	6개월 이하	13	2.69	.751		
	1년 이하	26	2.38	.983		
	2년 이하	13	2.54	.776	.484	
	2년 이상	31	2.61	.844		
	합계	83	2.54	.860		
질문6	6개월 이하	13	3.08	1.382		
	1년 이하	26	2.85	.881		
	2년 이하	13	3.08	1.038	.476	
	2년 이상	31	3.19	1.167		
	합계	83	3.05	1.092		
질문7	6개월 이하	13	2.92	1.038		
	1년 이하	26	2.69	.884		
	2년 이하	13	3.08	.862	.577	
	2년 이상	31	2.90	.908		
	합계	83	2.87	.908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8	6개월 이하	13	2.62	.870		
	1년 이하	26	2.73	.962		
	2년 이하	13	2.77	.599	.283	
	2년 이상	31	2.87	.922		
	합계	83	2.77	.874		
질문9	6개월 이하	13	2.77	.725		
	1년 이하	26	2.42	.945		
	2년 이하	13	2.46	.660	1.368	
	2년 이상	31	2.23	.805		
	합계	83	2.41	.827		
질문10	6개월 이하	13	2.15	.987		
	1년 이하	26	2.38	1.023		
	2년 이하	13	2.38	.870	.448	
	2년 이상	31	2.48	.626		
	합계	83	2.39	.853		
질문11	6개월 이하	13	2.38	.506		
	1년 이하	26	2.00	.849		
	2년 이하	13	2.38	.768	2.414	
	2년 이상	31	2.55	.810		
	합계	83	2.33	.798		
질문12	6개월 이하	13	3.15	.689		
	1년 이하	26	2.92	.935		
	2년 이하	13	3.85	1.144	2.762	
	2년 이상	31	3.16	.969		
	합계	83	3.19	.981		
질문13	6개월 이하	13	3.15	1.281		
	1년 이하	26	3.15	1.347		
	2년 이하	13	3.38	1.121	.746	
	2년 이상	31	3.58	1.025		
	합계	83	3.35	1.184		

*p<.05 **p<.01

거주기간과 인권침해의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나임순(2006)의 연구에서 한국거주기간을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증명한 것과는 다소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제도개선에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 한국어능력에 따른 응답의 차이 유무분석

〈표 15 한국어능력에 따른 분산분석표〉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1	상	5	3.80	.837	6.465**	하, 중 〈 상
	중	34	2.56	.927		
	하	44	2.39	.754		
	합계	83	2.54	.888		
질문2	상	5	2.80	1.304	.404	
	중	34	2.82	.758		
	하	44	2.66	.805		
	합계	83	2.73	.813		
질문3	상	5	2.60	1.140	.633	
	중	34	2.65	.950		
	하	44	2.43	.728		
	합계	83	2.53	.846		
질문4	상	5	2.80	1.095	.408	
	중	34	2.41	.892		
	하	44	2.52	.976		
	합계	83	2.49	.942		
질문5	상	5	2.80	.447	.357	
	중	34	2.47	.992		
	하	44	2.57	.789		
	합계	83	2.54	.860		
질문6	상	5	1.80	.837	3.993*	상 〈 중, 하
	중	34	3.03	.870		
	하	44	3.20	1.193		
	합계	83	3.05	1.092		
질문7	상	5	3.00	1.581	.057	
	중	34	2.85	.857		
	하	44	2.86	.878		
	합계	83	2.87	.908		
질문8	상	5	2.40	1.140	1.019	
	중	34	2.91	.900		
	하	44	2.70	.823		
	합계	83	2.77	.874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9	상	5	2.40	1.140	.350	
	중	34	2.50	.749		
	하	44	2.34	.861		
	합계	83	2.41	.827		
질문10	상	5	2.80	.837	.739	
	중	34	2.41	.743		
	하	44	2.32	.934		
	합계	83	2.39	.853		
질문11	상	5	2.80	1.304	1.314	
	중	34	2.38	.817		
	하	44	2.23	.711		
	합계	83	2.33	.798		
질문12	상	5	4.20	.447	2.949	하, 중 〈 상
	중	34	3.15	1.019		
	하	44	3.11	.945		
	합계	83	3.19	.981		
질문13	상	5	3.40	1.140	2.434	
	중	34	3.68	.976		
	하	44	3.09	1.291		
	합계	83	3.35	1.184		

*p<.05 **p<.01

박희석(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는 문화저항, 쓰기장애 그리고 말하기장애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나임순(2006)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한국어능력을 꼽았는데 이는 질문6번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스트레스와 유사한 척도인 심리적 제약의 대표질문인 질문6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수록 차별의 정도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문1과 12에서는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차별의 정도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유학생이 수업에 다소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에 비하여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바. 국적에 따른 응답의 차이 유무분석

〈표 16 국적에 따른 분산분석표〉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1	중국	49	2.47	.739	.401	
	유럽, 북미	12	2.67	.888		
	기타	22	2.64	1.177		
	합계	83	2.54	.888		
질문2	중국	49	2.76	.630	.260	
	유럽, 북미	12	2.83	1.115		
	기타	22	2.64	1.002		
	합계	83	2.73	.813		
질문3	중국	49	2.65	.779	9.964**	기타 〈 중국, 유럽, 북미
	유럽, 북미	12	3.08	.793		
	기타	22	1.95	.722		
	합계	83	2.53	.846		
질문4	중국	49	2.57	.842	5.035**	유럽, 북미 〈 중국, 기타
	유럽, 북미	12	1.75	.866		
	기타	22	2.73	1.032		
	합계	83	2.49	.942		
질문5	중국	49	2.76	.693	5.484**	유럽, 북미 〈 중국
	유럽, 북미	12	1.92	.996		
	기타	22	2.41	.959		
	합계	83	2.54	.860		
질문6	중국	49	3.41	.888	7.669**	유럽, 기타 〈 중국
	유럽, 북미	12	2.42	.996		
	기타	22	2.59	1.260		
	합계	83	3.05	1.092		
질문7	중국	49	3.10	.743	4.330*	유럽, 기타 〈 중국
	유럽, 북미	12	2.50	.674		
	기타	22	2.55	1.184		
	합계	83	2.87	.908		
질문8	중국	49	3.02	.803	5.481**	유럽 〈 중국
	유럽, 북미	12	2.33	.888		
	기타	22	2.45	.858		
	합계	83	2.77	.874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질문9	중국	49	2.47	.844	.640	
	유럽, 북미	12	2.17	.937		
	기타	22	2.41	.734		
	합계	83	2.41	.827		
질문10	중국	49	2.51	.739	1.503	
	유럽, 북미	12	2.33	1.371		
	기타	22	2.14	.710		
	합계	83	2.39	.853		
질문11	중국	49	2.37	.782	.639	
	유럽, 북미	12	2.08	.900		
	기타	22	2.36	.790		
	합계	83	2.33	.798		
질문12	중국	49	3.10	.895	1.540	
	유럽, 북미	12	3.00	1.128		
	기타	22	3.50	1.058		
	합계	83	3.19	.981		
질문13	중국	49	3.94	.852	24.482**	유럽, 북미, 기타 〈 중국
	유럽, 북미	12	2.17	1.115		
	기타	22	2.68	1.041		
	합계	83	3.35	1.184		

*p<.05 **p<.01

장태한(2001)이 “대학생 인종, 민족 선호도에 관하여”에서 증명한 한국 대학생들의 백인선호사상은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잘 드러난다. 질문3, 4, 5, 6, 7, 8, 13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차별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유럽, 북미 지역의 유학생들은 차별을 가장 차별을 적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인관계의 제약을 묻는 질문 6번, 질문 7번, 질문 8번에서 모두 뚜렷하게 유럽, 북미 학생들에 비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매겼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와 피부색이 뚜렷이 구분되는 기타의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피부색을 가진 중국인 유학생들에 비해 차별의식이 덜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타 인종에 필리핀이나 인도와 같이 영어구사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각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의 행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계명대학교에 위치한 ‘글로벌 라운지’는 실내에서

영어만을 사용해야하는 등 '글로벌'을 곧 '미국화'로 인식하여 비영어권국가의 유학생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사례로 인식되고 있었다.

6. 상관관계분석

각 질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7 정준상관분석결과〉

요인		1	2	3	4	5
학교생활 제약	1	1				
대인관계 제약	2	−.030	1			
심리적 제약	3	−.023	.206*	1		
국가사회제도 제약	4	.033	.341**	.123	1	
인권침해정도	5	.088	.178	.259**	.087	1

*p<.05 **p<.01

변수 그룹 간의 정준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대인관계 제약'과 '심리적 제약'이 상관성이 보이고, '대인관계 제약'과 '국가사회제도 제약'이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심리적 제약'은 종속변수인 '인권침해정도'에 상관성을 보였다.

즉, '대인관계 제약'이 '심리적 제약'에 상관성을 보이고, 그 결과 '심리적 제약'이 '인권침해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 질문에 대한 다중상관분석을 시행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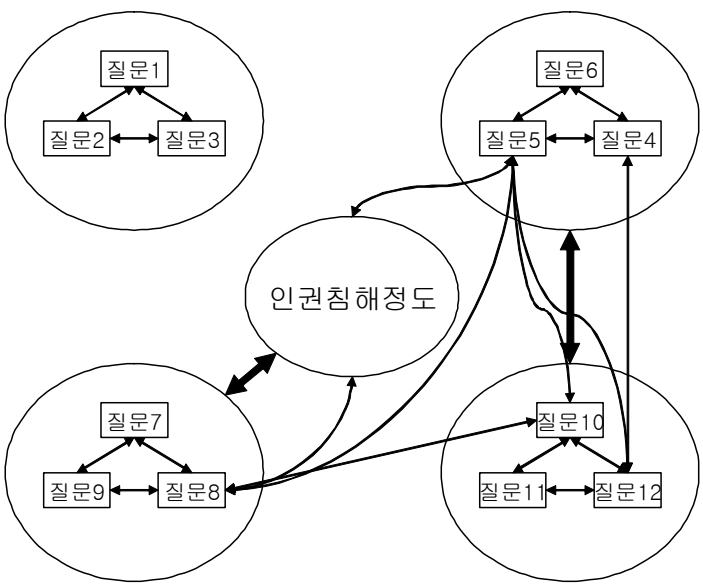
〈표 18 다중상관분석표〉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질문1	x1	1												
질문2	x2	.371**	1											
질문3	x3	.425**	.331**	1										
질문4	x4	−.091	−.050	−.118	1									
질문5	x5	−.006	.156	−.081	.463**	1								
질문6	x6	−.128	.042	.130	.309**	.413**	1							
질문7	x7	−.122	−.098	.013	.078	−.016	.179	1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질문8	x8	−.168	.068	.034	.139	.216*	.191	.515**	1					
질문9	x9	.059	.073	.052	.128	.061	.099	.333**	.317**	1				
질문10	x10	−.022	.149	.153	.170	.227*	.202	.083	.218*	.015	1			
질문11	x11	−.080	−.035	−.060	.173	.184	.094	−.007	.056	−.075	.351**	1		
질문12	x12	−.019	.187	−.139	.331**	.352**	.082	.111	.166	.037	.347**	.386**	1	
인권침해	x13	−.032	.011	.129	.062	.219*	.138	.203	.302**	.089	.094	.124	−.006	1

*p<.05 **p<.01

개별질문에 대한 다중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 변수 그룹을 구성하는 개별질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그 외의 결과는 질문4와 질문12, 질문5와 질문8, 질문5와 질문10, 질문5와 질문12, 질문5와 인권침해정도, 질문8과 질문10, 질문8과 인권침해정도 등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나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정준상관구조〉

그림에서 보듯이 질문1, 2, 3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에서의 제약은 다른 변수그룹 및 인권침해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가 및 학교에서 시행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수업 및 학교생활의 학업적인 부분에 집중된 점을 볼 때 이러한 정책들이 유학생들이 느끼는 인권적인 면이나 심리적, 대인관계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이다. 오히려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인 면이 가장 크고, 이 심리적인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대인관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대인관계와 심리적인 요소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3장 결론 및 제언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대학 캠퍼스 어딜 가더라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게 되었고, 쉽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경제와 대학의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어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와 유치 이후의 무관심한 관리, 그리고 학생사회 내부에서의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차별 등은 국가와 대학의 입장에서도 대학 글로벌화를 앞당기려는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에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시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각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의 정책분석에서 계명대학교가 가장 부실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계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다른 학교의 유학생에 비하여 뚜렷한 차이로 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교의 제도적 지원이 유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단지 대학재정확충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큰 열을 올리는 것을 넘어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이수과정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어학연수생들이 학교편의시설이용에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어학연수생들이 국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대학생이 아닌 시간제 등록생의 신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대학 내에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제도적 수정, 보완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박사과정생이 대인관계에서 많은 차별을 느끼고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의 박사학위제도가 외국인 유학생을 일찍이 수용한 교육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교육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차별정도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 유학생들이 심리적, 대인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인권침해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정서적인 특징에 따른 결과인데, 이와 같은 여성의 특징을 고려할 때 대학 및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여성 유학생을 보다 대학구성원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거의 모든 대학에 존재하는 '여대생 커리어센터', '총여학생회'와 같은 조직을 이용하여, 여성 유학생을 보다 대학사회 안에 유입시키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넷째, 한국어능력에 따른 차별정도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이 심리적인 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차별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교육이 유학 초창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관점에서 길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적에 따른 차별정도에 대한 분석에는 중국 유학생과 서구 유학생들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행연구에서도 조사된 한국인 학생들의 백인선호사상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 들어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닌, 한국인 대학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치 '글로벌'화를 '서양화'로 인식하고, 서양의 것, 서양인에 대한 동경의 선입견을 깨고, 유색인종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는 교양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섯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와 인권침해정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인관계의 제약’이 ‘심리적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제약’이 ‘인권침해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학생활 제약’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과 관련된 대학생활에 중점을 맞춘 현행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제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분명 현행의 지원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유학생과 융화되어 관계를 맺고, 심리적인 만족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구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구, 경북의 특정대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참고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실태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본 연구에서 설정된 네 가지 조절변수군에서 각각 느끼고 있는 차별정도를 인권침해정도에 결부하여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이 진정한 ‘글로벌화’와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인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논문

김선남,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론학회 2007 봄철 정기학술대회, 2007, 29~46

김영성, 호주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적응과 거주이동, 국토지리학회, 지리학 연 제40권 제4호, 2006, 497~512

나임순,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학회, 한국 비영리연구 5권 제2호(2006), 2006, 159~197

박은경,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 이주와 지역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박희석, 대학생활 적응척도의 요인분석, 한국관광학회 ,인천국제관광 학술대회 발표집

(社)한국관광학회 제 62차 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學術研究發表 論文集 Ⅱ, 2007, 346~360

이재모,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이현지 외, 청소년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0권 4호 , 2003, 121~142

장태한, 대학생 인종, 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생각의 나무 ,당대비평 통권 제14호. 3,2001, 99~113

조혜영,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회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2호, 2003, 209~234

황해연, 2007, 재한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aker, sirky,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84, 31 : 179~189

Cross, S. E., & Madson, L. Models of the self :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1997, 5~37

부록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실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대학 : 경북대학교□ / 계명대학교□ / 영진전문대학□
과정 : 어학연수□ / 학사□ / 석사□ / 박사□
성별 : 남자□ / 여자□
한국체류기간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이상□
한국어능력 : 상□ / 중□ / 하□
국적 :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권 및 차별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응답 결과는 오직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을 밝힙니다.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질문	1	2	3	4	5
1.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MT, 체육대회 등 학과 및 동아리행사에서 소외된 적이 있습니까?					
2.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업 중 발표나 조별활동에서 소외된 적이 있습니까?					
3.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편의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4. 일상생활에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신 적 있습니까?					
5. 일상생활에서 교수 및 강사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신 적 있습니까?					
6. 한국인을 사귀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8.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9.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리 부분에서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1. 의료 및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2.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 중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3. 본인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에 응답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for foreign student.

School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 Keimyung University□ / Yeungjin college□
course : language study□ / the university's course □ / the master´s course □ / the doctor´s course □
gender : male□ / female□
visit length in Korea : under 6month □ / under a year □ / under two yeas / more than two years
Korean language ability : High □ / Middle □ / Low □
Nationality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ctual condition of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of foreign students. The result of the research will be used only in a purpose of science.

※ *1- highly disagree 2- disagree. 3- normal 4- agree. 5- highly agree*

Question	1	2	3	4	5
1. Have you experienced of exclusion from retreat or an athletic meeting of department or club because you are foreigner?					
2. Have you experienced of exclusion from group activity or expression in your class because you are foreigner?					
3. Have you experienced to be restricted in using convenient facilities in school because you are foreigner?					
4. Have you experienced to be discriminated by korean student in daily life because you are foreigner ?					
5. Have you experienced to be discriminated by professor or teacher in daily life as you are foreigner?					
6. Do you think there is an invisible wall when you try to make Korean friends?					
7. Have you had a hard time adapting to Korean culture?					
8. Do you think Koreans aren't respectful toward your culture?					
9. Do you think you are not recognized by other students of your school because you are foreigner?					
10. Have you experienced of being discriminated in aspects of administration because you are foreigner?					
11. Have you experienced of discrimination while using medical and public facilities because you are foreigner?					
12. Do you think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improve in aspects of policy regarding foreign students?					
13. Do think your rights isn't protected?					

thank for your response
No.

有关来韩留学生人权状况的调查

学校 : 庆北大学□ / 启明大学□ / 永进专门 大学校□
课程 : 学习韩语□ / 本科生□ / 研究生□ / 博士生□
性别 : 男□ / 女□
驻留期间 : 六个月以下□ / 六个月至一年□ / 一年至两年□ / 两年以上□
韩语水平 : 上□ / 中□ / 下□
国籍 :

本现调查只限于了解分析外国留学生在韩国留学期间所受到的人权歧视状况, 决不用于其他目的.

※ *1- 决不同意. 2- 不同意 一般. 3- 普通. 4- 同意. 5- 完全同意.*

質問	1	2	3	4	5
1. 你是否在系里, 社团活动中因是外国人而受到排斥?					
2. 你是否在课堂活动比如演讲发表时因是外国人而受到排斥?					
3. 你是否在使用学校的各种设备时因是外国人而受到制约?					
4. 你在日常生活中, 受到过韩国学生的歧视吗?					
5. 你在上课时, 受到过老师的歧视吗?					
6. 你在跟韩国学生的交流中有否障碍?					
7. 你在适应韩国文化中有否问题?					
8. 你认为韩国人不尊重外国文化吗?					
9. 因为你是外国人, 所以不能成为真正的学校成员, 对这点你同意吗?					
10. 你在办理事情时受到歧视吗?					
11. 你在使用医疗, 公共设备时受到过歧视吗?					
12. 你认为在留学生政策中存在着不少问题需要改正吗?					
13. 你同意你的人权得以保障吗?					

谢谢合作.

No.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학생부분

이유리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심 –



목 차



요 약 ····· 290

제1장 서론 ····· 293
제1절 연구목적 ····· 293
제2절 연구내용 ····· 293
제3절 연구방법 ····· 294
제2장 다문화가정 및 교육권의 의미 ····· 296
제1절 다문화가정 ····· 296
제2절 교육권 ····· 297

제3장 다문화가정 자녀 및 관련 교육정책 현황 ····· 298
제1절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 298
제2절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교육정책 현황 ····· 299

제4장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부실 원인 ····· 302
제1절 가정환경의 문제 ····· 302
제2절 자녀의 문제 ····· 303
제3절 사회적 인식의 문제 ····· 305
제4절 관련 정책의 문제 ····· 307

제5장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보장 개선방안 ····· 310
제1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 310
제2절 사회적 인식 변화 촉구 ····· 312
제3절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 315
제4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의 촉구 ····· 317

제6장 결론 ····· 320

참고문헌 ····· 321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다문화가정 중,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가장 많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권 부실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다문화가정 및 교육권의 의미 검토,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및 관련 정책 현황 검토,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부실 원인분석,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보장 개선방안 등을 연구의 내용으로 삼았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 8명과의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권 부실 원인을 분석한 후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 연구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 성 8명(필리핀출신 여성 2명, 베트남출신 여성 1명, 중국 조선족여성 2명, 우즈베키스탄출신 여성 1명, 일본출신 여성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국제결혼 여성 대부분은 한국에 적응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들의 자녀 또한 같은 어려움에 있음을 호소했다.

둘째, 국제결혼 여성은 자신의 출신국의 문화를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해 버려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의 자녀가 자신의 출신국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원했다.

셋째, 국제결혼 여성 대부분은 정책(공교육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정

책의 수혜자인 국제결혼 여성과 자녀의 요구가 반영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부실 원인

교육권의 부실 원인을 탐색하고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문제점은 주로 필자와의 심층면담에서 직접 수집한 국제결혼 여성의 인터뷰 및 관련문헌을 분석하였다.

첫째, 가정 내부에서는 경제적 여건과 국제결혼여성의 부적응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인터뷰의 대상인 국제결혼 여성의 자녀 대부분은 취학 전에는 언어학습과 정체성의 문제를, 취학 후에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었다.

셋째, 단일민족주의·혈족주의, 상대적 우월주의, 편견 등의 사회적 인식은 국제결혼 여성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그 영향은 자녀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넷째, 관련 정책의 문제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의 부족,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한 정책수립의 미흡, 일회적인 이벤트성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홍보의 부족 등이 있음을 문헌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보장 개선방안

관련문헌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참조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심층면담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도 일부 활용되었다.

첫째, 남편의 다문화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제결혼업체 자체 의무교육 프로그램, 이중 언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여성 및 자녀의 적응과 일반인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로 일반가정 결연 사업 및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으로 다문화 교육 시범학교를 운영, 국제결혼 여성의 교육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모임의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2009년 5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100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2%이며 2008년 대비 24%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 자녀도 2008년 대비 85.6%가 증가하여 2009년 현재 107,689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1)]

국내 이주 외국인주민의 53%가 저소득층으로 사회적·교육적 기반 취약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있으나 취약한 접근성 및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과의 면담을 토대로, 교육권의 부실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다문화가정·교육권에 관한 의미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다문화가정 자녀 및 관련 교육정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해 파악하여 본다. 그리고 국제결혼 여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의 부실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보장 개선방안에 대해 탐색한다.

---

1)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 행전안전부, 2009

제3절 연구방법

〈표 1.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다문화가정, 교육권에 관한 의미 검토	관련 문헌 검토 관련 법조항 검토 UN 아동권리협약 검토
다문화가정, 관련 교육기관의 현황 및 실태 파악	관련 문헌 검토
문화가정 자녀 교육권의 부실 원인 분석	설문조사 심층 면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보장 개선방안 탐색	연구결과 검토 설문조사 심층 면담

1. 관련 문헌 검토

연구 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등), 학술 논문(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등), 저서(다문화교육 등), 관련 기관 홍보 자료집(교육과학기술부 정책 홍보 자료, 교육청 정책 홍보 자료 등), 관련 통계(교육인적자원부, 통계청 등)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2. 관련 법조항 검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과 관련된 법조항은 대한민국 최고 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마련되어 있고, 보다 구체적인 법조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 2장에서는 헌법에서의 교육권의 의미를, 5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교육권 관련 조항을 다루어 보았다.

3. UN 아동권리협약 검토

UN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채택된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7대 UN 국제인권조약 중 가장 많은 193개의 비준국(대한민국 포함)을 두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중 교육권과 관련된 조항인 제28조, 제29조를 검토해 보았다.

4. 설문조사

가. 조사 대상 및 방법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류를 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 8명(필리핀출신 여성 2명, 베트남출신 여성 1명, 조선족여성 2명, 우즈베키스탄출신 여성 1명, 일본출신 여성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내용은 직접 작성하였으며,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주관식 문항을 풍부하게 하였고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은 4장 및 5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나. 조사 내용

〈표 2.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

영역		조사내용	
제결혼 여성	인적사항	·국적 ·직업	·거주기간 ·자녀수
	사회생활	·적응기간 ·친인척과의 관계 ·한국어 사용 능력 정도	·적응하기 위한 노력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책 관련	·관련 정책 인식 여부 ·관련 정책 참가·불참 이유 ·관련 정책 참가 의향	·관련 정책 참가 여부 ·관련 정책 만족도 ·향후 원하는 정책
	사교육 관련	·사교육 횟수 ·사교육 관련 난점	·사교육 관련 지출

5. 심층 면담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것들 중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들이 겪었던 직접적인 사례와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 원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내용은 4장 및 5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제2장 다문화가정 및 교육권의 의미

제1절 다문화가정

1. 의의

다문화가정의 정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는 한편, 협의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었으나, 1980년 후반부터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라는 의미로써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 가족 등을 지칭하여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 개념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두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2. 유형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처럼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형태인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형태인 이주노동자 가

정,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 가정으로 분류된다.

제2절 교육권

1. 의의

넓은 의미의 교육권의 의미는 개개인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학권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그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교육기회제공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교육권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2.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교육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권을 실현할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UN 아동권리협약에서의 교육권

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라고 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을 규정하고, 제29조는「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동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관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2) 권영성.『헌법학원론』. 2009년. p. 651

입각해 책임 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한다」라고 하여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다문화가정 자녀 및 관련 교육정책 현황

제1절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1. 다문화가정 학교 급별 자녀 현황 3)

〈표 3.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급별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23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97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5	38.1	2,213	38.9	760	84.0	18,778	39.6

2008년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는 모두 18,778명으로 2007년 대비 39.6% 증가하였다. 이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84.2%로, 중·고등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다문화가정 자녀 지역별 현황 4)

〈표 4. 다문화가정 자녀 지역별 현황〉

구분 / 시도	시 지역 학생 수				읍·면 지역 학생 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1,813	319	127	2,259	–	–	–	–
부산	634	92	44	770	–	–	–	–

3)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2009

4)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2009

구분 시도	시 지역 학생 수				읍·면 지역 학생 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대구	340	33	14	387	63	5	1	69
인천	527	65	35	627	33	2	–	35
광주	394	28	17	439	–	–	–	–
대전	249	61	17	327	–	–	–	–
울산	125	20	7	152	95	10	7	112
경기	2,010	417	157	2,584	1,081	159	54	1,294
강원	270	50	13	333	613	45	14	672
충북	244	27	6	277	634	61	22	717
충남	333	93	38	464	902	92	18	1,012
전북	402	55	13	470	833	76	5	914
전남	285	46	23	354	1,390	90	35	1,515
경북	301	50	19	370	849	60	13	922
경남	514	125	37	676	725	112	17	854
제주	90	14	5	109	56	6	2	64
계	8,531	1,495	572	10,598	7,274	718	188	8,180

다문화가정 자녀 중 1/3 수준인 32.7%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 지역 학생 수가 읍·면 지역 학생 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다수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2절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교육정책 현황

1.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교과(사회, 도덕 등) 및 개정교육과정에 타문화 이해·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표를 반영하였으며, 일반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 등 10개 교육청에서 '외국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RHRD)」을 통해 12개 지역의 51개 세부프로그램(결혼이주여성 에듀시터양성사업, 다문화가정 남도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학 및 NGO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자체, 정부 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아주대학교 Global Citizen Academy, 공주대학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을 18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2. 시·도 교육청의 정책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 국내 적응교육 프로그램 '한국 문화 체험 캠프'를 운영하였다. 대상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 초등학생 80명 이었으며, 2박 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내용으로는 시청·경복궁·숭례문·남산·유람선승선·63빌딩 등을 돌아보면서, 전문가의 설명으로 서울의 자연과 생활모습의 특징을 익히고, 민속촌 체험학습, 도자기 체험, 별자리 관찰 등 다양하고 폭넓은 한국문화를 체험하였다.

다문화가정 편견 해소를 위한 장학자료를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교사용으로 개발된 이 장학자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하는 필요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실태, 편견을 풀어가기 위한 사고의 전환 방식, 지도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인 독서릴레이정거장(쌈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부산아시아평화인권연대는 아시아평화인권연대 교육관에 소규모 도서관을 개관하였는데, 부산일보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범국민도서운동본부가 공동주관하였다. 23호점은 종전 부산시민들을 위한 것과는 달리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책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그림책과 동화, 신화와 관련된 서적 등, 다양한 서적 수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아시아 각국어로 쓰여진 장서 700여권을 보유하며, 다문화 가족과 일반 시민이 함께 어울려 독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차별과 편견을 던져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의 '꾸러기 온누리 안의 희망 걸음마'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대상 한글 교육 및 생활체험 프로그램인 미추홀종학사회복지관의 '마음열고 다가서기!'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강화교육청,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등에서 각각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국제결혼 여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실은 한국어 활용능력시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한국문화 현장체험학습, 평생교육 어머니회와 연계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교원 연수 강화, 사이버 상담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라. 광주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 및 각 급 학교 교감선생님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약 450명이 참여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 사례', '국제결혼 정착 사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사례', '시교육청의 다문화가정 사업에 대한 안내' 등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정 남도문화 체험'과 '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 이야기 나눔터'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며, 한국어교재 및 취학 전 학교생활 안내 자료 발간 및 보급, 다문화 가정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사들의 자생적 교육연구회조직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제4장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부실 원인

제1절 가정환경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 학습지에, 학원에 뭐 그렇게 시켜야 할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봐줄 수만 있어도 어떻게 혼자 시켜보겠는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수업은 들을 수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
> <필리핀출신 A씨 사례>[5]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이 100~199만원인 경우가 50%이며, 월 평균 소득은 17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가구 소득의 59% 이며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6] 또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절대 빈곤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5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000원이나, 월 소득이 100-199만원 인 경우의 사교육비는 10만 8000원이다.[7] 다문화 가정 월 평균 소득이 171만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자녀가 1명일 경우 한 달 평균 10만원 내외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제결혼 여성의 부적응

>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했는데도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종종 남편이 나를 두고 나가기도 해요. 저랑 결혼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아요. 전 이렇게 살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
> <베트남출신 A씨 사례>[8]

---

5) 2009년 8월 21일, 필리핀출신 A씨(30세, 결혼 9년차) 와의 인터뷰

6) 여성가족부, 2006

7) 사교육비 현황, 통계청, 2008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는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한국인'이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은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을 '한국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의 가족을 벗어난 친족망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경우, 인근에 사는 친척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왕래가 없으며, 심지어 명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두 번 참여해 보았으나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서 더 이상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소결

다문화 가정의 빈곤층 비율은 57.5% 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율이14.3% 임을 감안했을 때 4배정도 높은 수치이다. 빈곤층의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비 지출 또한 평균의 반을 밑도는 것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 문제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여성 대부분이 친족망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고 남편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가부장적 인식이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결국 아내는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2004년 3,300건에서 2008년 1만1,25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9)]

제2절 자녀의 문제

1. 언어학습과 정체성의 문제

> 아이가 6살이 되니 애 아빠가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다들 그렇게 한다며. 집에서 저와 함께 베트남어로 대화하는 것이 못마땅한지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낸다거나 그런 문화는 없었거든요. 일방적으로

8) 2009년 8월 21일, 베트남출신 A씨(31세, 결혼 11년차) 와의 인터뷰

9) '준비 안된 결혼' 다문화 가정 파탄 는다, 경향신문 장은교·구교형기자, 2009년 7월 22일

> 강요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애는 어린이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떼쓰고…… 정말 힘들었어요. <필리핀출신 B씨 사례>[10]
>
> 하루는 유치원에 보낸 애가 울면서 오더라고요. 친구가 넌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서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했대요. 그랬더니만 한국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다면서 놀렸다더군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 <우즈베키스탄출신 A씨 사례>[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언어학습과 정체성의 형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형성 과정이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설학원을 이용하거나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들어가야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 봉사시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부모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우는 내용이 각각 다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가치관의 혼돈을 겪게 되고 그에 따른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취학아동들의 교육문제

> 아직 한국말을 다 배우지도 못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 가면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오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다 알거라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 넌 학원도 안다니냐며 쏘아붙였다더군요. 기본적인 언어를 몰라 다른 과목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선족 A씨 사례>[12]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아래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독해력과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

10) 2009년 8월 21일, 필리핀출신 B씨(29세, 결혼 9년차) 와의 인터뷰
11) 2009년 8월 21일, 우즈베키스탄출신 A씨(34세, 결혼 13년차) 와의 인터뷰
12) 2009년 8월 21일, 중국 조선족출신 A씨(35세, 결혼 15년차) 와의 인터뷰

등이 일반학생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그에 따라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다. 또한 이들의 상당수는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내고 있다.

3. 소결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경우 취학 전에는 언어학습과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취학아동의 경우 그 문제와 함께 사회적 인식(단일민족주의, 혈족주의 등)과 편견에 부딪혀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들 자녀를 지도해 온 교사들에 의하면, 갑자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생활하게 된 일반 학생들과 교사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한다고 한다.

이처럼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혈인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은 아동과 부모,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제3절 사회적 인식의 문제

1. 단일민족주의·혈족주의

2007년 8월, 한국은 유엔인종차별위원회(CERD)로부터 한국의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의 극복에 대해 권고조치를 받았다. 초등학생 교과서에서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 '피를 나눈 동포들에 대한 연대의식으로서의 민족공동체 의식', '단군의 자손' 등의 단일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혈족사회를 기반으로 농경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가 한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은 핏줄을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다민족, 다인종, 혼혈민족으로 구성된다면 혈연적 동질감이 약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차원의 다문화교육 및 각종 언론의 홍보로 외국인, 혼혈인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이 상당히 변화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의 대부분이 농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직도 농경사회는 혈연주의를 중심으로 가족을 형성 하고 있어 국제결혼 여성의 적응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상대적 우월주의

> 두 외국인이 길을 묻는다. 한 명은 백인, 한 명은 동남아인이다. 똑같은 지도를 들고 똑같은 길 위에서 한 시간 동안 지나가는 행인 에게 똑같은 행선지를 물어보았다. 실험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이가 없을 거라 대답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다. 백인에게는 단 한명도 빠짐없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반면, 동남아인에게는 한 시간 동안 단지 두 명만 길을 알려주었다. <EBS 다큐멘터리 인간의 두 얼굴 시즌Ⅱ-2>[13]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미국인(백인)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동남아인이나 흑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인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사대주의'라는 정신 아래 대국(大國)이라 여겼던 중국을 섬기고 그 문물을 받아왔다. 그 후 급속한 서구화와 함께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양국가와 서양인을 우월한 존재로 받아들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를 측은하게 여기며 은근히 무시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즉 한국인 대부분이 동남아인, 흑인에 대한 상대적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갖고 있는 상대적 우월주의 때문에 대부분이 동남아계열 혼혈아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오늘도 학교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

13) 2009년 4월 28일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인간의 두 얼굴 II 제 2부 '아름다운 세상'편 중 '백인과 동남아인의 길 묻기 실험을 통한 인종에 대한 편견 살펴보기'에 관한 내용을 요약했다.

3. 편견

>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다녀오겠다고 용돈을 조금만 달라고 하니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께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가지 말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1년이나 지났고 가정도 잘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서운했습니다.
>
> <베트남출신 B씨 사례>[14)]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한국으로 팔려온 '씨받이'로 이해한다거나 혹은 한국에 돈 벌기 위해 정상적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온 것으로 생각하는 등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하며, 사회문제의 원천으로 보는 이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이주여성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며, 그 2세도 똑같은 편견 속에 갇히게 된다.

4. 소결

대부분의 사회적 인식의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혼혈인으로 분류되는 자녀들에게도 위와 같은 인식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부적응 원인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자녀의 교육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 영향을 아이가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제4절 관련 정책의 문제

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의 부족

> 최근 들어 우리같이 결혼한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해주는 기관은 많이 늘었어

14) 2009년 8월 21일, 베트남출신 B씨(31세, 결혼 11년차) 와의 인터뷰

> 요. 그런데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은 아직도 못 본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는 것인데, 일하느라 바쁜 애 아빠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
> <조선족 B씨 사례>[15]

다문화가정 정책 대부분은 가족 전체 혹은 국제결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들 자녀를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제결혼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학교에 입학한 국제결혼 여성의 자녀는 지금까지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 국제결혼 여성이나 그 가족을 지원하며 결혼 초기의 지원에 급급하여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2.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수립의 미흡

> 요즘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무척 좋아요. 그런데 대체로 평일에만 운영을 하거나,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평일엔 우리도 일해야 하는데 6시 이전에 모두 끝나버리니 도무지 찾아갈 시간이 나질 않네요.
>
> <일본출신 A씨 사례>[16]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은 시행 초기인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여건과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단기 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므로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이 미흡했다.

3. 일회적인 이벤트성 프로그램

> 몇 년 전이었나, '다문화 가정 여성 요리한마당' 이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국제결혼 여성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가정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행사였는데, 굉장히 즐거웠고 또 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한번 한 뒤로는 또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
> <조선족 A씨 사례>[17]

15) 2009년 8월 21일, 중국 조선족 출신 B씨(34세, 결혼 15년차) 와의 인터뷰

16) 2009년 8월 21일, 일본출신 A씨(33세, 결혼 11년차) 와의 인터뷰

> 작년 여름에 시에서 주최하는 캠프에 다녀왔어요. 한국의 예절과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자리라 생각했는데, 올해는 캠프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질 않네요. 제가 연락을 못 받은 건지…….
>
> <베트남출신 A씨 사례>[18]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 간 화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 각종 문화공연 및 문화체험 마당 등 1회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다수 발견된다. 이주민과 그 자녀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임은 당연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겨냥하여 지나치게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게 될 것이다.

4. 정책 홍보의 부족

> 이런 모임을 갖기 전까지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최근에는 모임을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가서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얼핏 듣긴 했지만, 의사소통 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거까지 들여다 볼 엄두가 나질 않네요.
>
> <우즈베키스탄출신 A씨 사례>[19]

현재 다문화가정 여성과 자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접적 수혜대상자들은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참가율도 낮은 편이다. 대체로 대부분의 정책·홍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지방에 거주한다는 점, 인터넷이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들도 많다는 점 등의 어려움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5. 소결

2005년부터 각 정부부처는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

17) 2009년 8월 21일, 중국 조선족출신 A씨(35세, 결혼 15년차) 와의 인터뷰
18) 2009년 8월 21일, 베트남출신 A씨(31세, 결혼 11년차) 와의 인터뷰
19) 2009년 8월 21일, 우즈베키스탄출신 A씨(34세, 결혼 13년차) 와의 인터뷰

으며, 시·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대책」과,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최근 2~3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의 발전적 성과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5장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 보장 개선방안

제1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1. 국제결혼업체 자체 의무교육 개설

가. 국제결혼 여성의 요구사항

- 결혼 전 본국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 결혼 후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하여 한국어 공부 및 문화에 대하여 충분히 학습하였다. 그러나 남성은 아내의 국가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결혼 후에도 아내 국가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 본국에서는 한국에서처럼 많은 종류의 세제가 없어 세수하는 것부터 빨래까지 모두 하나의 비누로 해결한다. 한국에 들어와 똑같이 하니 남편이 미개인을 취급을 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차이 인데 이해할 수 없는 못사는 국가라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20]
- 동남아 지역은 음식을 달게 먹는 편이다. 한국에 와서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무척 힘들었는데 남편은 한국에 살기 위해선 당연한 것이라며 익숙해지라 강요했다. 심지어 아기를 낳은 후에 난생 처음 먹어본 미역국을 들이밀며 산후조리중에는 미역국만 먹어야 한다고 다른 음식을 전혀 주지 않았다.

20) 조사대상 여성 8명의 설문조사 결과 남편과의 문화차이로 힘들었던 경험은 8명중 7명이 가지고 있었으며, 8명 여성 모두 남편의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제결혼 여성은 생활 속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남편과 문화차이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남편이 자신의 모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모국의 문화를 일상에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기를 원했다.

나. 교육의 목적

외국인 여성과 결혼 할 예정에 있는 남성이 아내의 문화에 대해 선행 하여 학습하여, 문화의 차이로부터 오는 갈등을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게 한다.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두 나라의 문화를 일상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의무교육의 내용에 이러한 목적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교육의 구성

혼인 후에는 사회생활 등의 이유로 교육 참여율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혼인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를 의무사항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참여율이 부진 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의무화한다. 경우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검증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이중 언어 프로그램 개설

가. 국제결혼 여성의 요구사항

- 아이가 어릴 때에는 대체로 집에 엄마와 둘이 있으니 본국의 말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곤 한다. 그러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한국어만을 쓰기를 강요받는다.
- 2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의 아이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엄마나라의 문화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지나친 강요는 아이의 반발심을 사기도 한다.
- 다른 나라에 시집을 왔다는 이유로 태어난 나라의 문화를 모두 버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이에게 엄마가 자라온 나라와 언어, 문화를 알려주고, 혼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싶다. [21)]

국제결혼 여성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본인의 나라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들이 한국어와 본인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일회적인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교육이 되길 희망했다.

나. 프로그램의 목적

아이에게 국제결혼 여성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언어학습과 함께 문화학습을 통해 엄마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본인이 혼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다. 프로그램의 구성

2개 국어가 가능하며, 양국의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문화와 엄마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차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접근성이 용이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배치한다.

제2절 사회적 인식 변화 촉구

1. 일반가정 결연 사업의 활성화

가. 국제결혼 여성의 요구사항

- 한국에 온지 몇 년이 흘렀지만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 간혹 길에서 마주치는 경우에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럽다.
- 모국에서와 같이 가정을 꾸리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주위에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정이 전혀 없다.
- 처음 왔을 때 남편이 일을 나가면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혼자서 할 수있는 취미도 없어 견디기 힘들었다. [22]

21) 조사대상 여성 8명의 설문조사 결과 8명중 5명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참가한 5명중 3명은 정책이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자신의 출신국 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명 모두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제결혼 여성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식사를 차리거나 청소를 하는 등 평범한 집안일에도 크게 어려움을 느꼈다. 이런 경우 한국의 일반가정과 결연을 한다면 보다 쉽게 한국의 가정문화에 대해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래 자녀가 있는 경우엔 집이나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가정에서의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나. 사업의 목적

국제결혼 여성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한국의 가정문화를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 가정을 결연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앤다.

다. 사업의 구성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며,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한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연사업에 참가하는 한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고, 또래 아동이 있는 가정과 결연함으로써 국제결혼 여성과 자녀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마련한다.

2.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의 배치

가. 국제결혼 여성의 요구사항

-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 부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수업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 지적 능력이 부족한 아이의 경우 특수학급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언어 능력이 부족한 아이를 위한 학급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

22) 조사대상 여성 8명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7명이 '외로움'을, 1명이 음식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한국에 적응하는 기간에 대한 질문에 6명이 5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 동남아 계열 혼혈아의 경우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 심지어는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계열 아이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동남아계열 아이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23)

국제결혼 여성은 학교에 관련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계열 아이의 경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정책의 부재는 아이들의 학습 수준으로 이어져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적이 평균을 밑돈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원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했다.

나. 사업의 목적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여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며, 일반 학생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같은 학급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사업의 구성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학교는 1인 이상의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만약 다문화가정 자녀가 언어능력의 부진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따로 학급을 개설하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따로 학급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가 속해있는 학급의 교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을 받고, 해당 아동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적응여부를 살핀다.

그 외에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으로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3) 조사대상 여성 8명의 설문조사 결과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질문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명, '만족하지 않는다.' 3명, '보통이다.' 2명으로 대체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제3절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1. 다문화 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

가. 국제결혼 여성의 요구사항

- 학교에서 아이가 적응을 못했고, 이런 부적응이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학습부진아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 한국인 사회에 있는 혼혈아를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 외모만 다를 뿐 국적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 학급을 개설하거나, 혹은 기관을 설립하였으면 한다. 똑같은 상황의 아이들이라면 최소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진 않을 것 같다. 24)
- 학교 도서관에 가면 한국 전래동화나 서양 전래동화는 많은데 필리핀이나 베트남 전래동화책은 전혀 없다. 주위에서 구하기 힘든 책을 학교에서 구비해 놓았으면 한다.

국제결혼 여성은 학교에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으며, 이들만을 위한 교육 시설이 있으면 바로 전학시키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본인이 태어난 나라의 전래동화책 등을 구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관련 학습기관과 함께 도서관이 설립되기를 원했다. 25)

나. 사업의 목적

언어능력의 부진으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다른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일반학교에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아이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24) 조사대상 여성 8명의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 시 보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명중 6명이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꼭 보낼 필요가 없다고 답한 2명은 일본계열 여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이었는데, 그 이유로 이들은 생김새가 한국인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 언어문제만 해결된다면 굳이 전문 교육기관에 보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점을 들었다.

25)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도서관은 현재 서울·부산 2군데 설치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구비하기 힘든 다문화 교육자료를 갖추어 어머니(혹은 아버지)나라의 문화에 대해 학습한다.

다. 사업의 구성

지역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기숙학교의 형태로 설립한다. 언어능력의 정도에 따라 반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언어능력 향상과 함께 타교과의 학습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특별활동 시간에는 어머니(혹은 아버지)출신 국가별로 반을 구성하여,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쉽게 구할 수 없는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의 책이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전용 도서관을 학교 내부에 설치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저학년 때부터 독서를 통해 타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결혼여성 모임 활성화

가. 국제결혼 여성의 요구사항

-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친구가 전혀 없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다.
- 아무래도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끼리 만나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 시 또는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는데, 이런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행사를 통해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모임을 통해 만나는 것이 좋았는데,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모임을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한다. 결혼 초에는 모임의 존재조차 모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모임에 참석하게 된 후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으로 모임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들은 모임을 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다 활성화시키기를

원했다.

나. 국제결혼여성 모임 활성화의 목적

한국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국제결혼 여성의 적응을 돕고, 한국에 정착한 국제결혼 여성에게는 개인이 얻기 힘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다. 국제결혼여성 모임 활성화 방안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임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국제결혼 여성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모임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준다. 모임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하며, 모임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의 촉구

1.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관련 법안 현황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26]에서 아동의 보육·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2008년 4월 2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6) 제1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27]와, 2009년 7월 1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28]등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권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2. 문제점

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관련 법안의 부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각계 소수자를 위한 법률은 마련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관련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현재 김소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률정보 및 행정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9], 오제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통역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 이은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의 날 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 박순자의원 등 10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일방적·시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다문화가족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2]이 계류 중에 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 조례의 불충분

2009년 9월 현재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42개의 조례가 제정되어있다[33]. 2008년

27) 제23조 제1항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부 또는 모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도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8) 제6조 제1항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교육 지원

29) 2009년 9월 2일 발의하였다.

30) 2009년 6월 23일 발의하였다.

31) 2009년 3월 24일 발의하였다.

32) 2009년 6월 10일 발의하였다.

11월 25일 제정된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지원 조례’를 제외하고는 41개의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을 지원 한다’라는 막연한 표현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 일방적인 지원 위주의 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서도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률과 조례 모두 다문화가정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보고 지원 위주의 정책을 규정하였을 뿐, 상호 이해, 소통 등을 결여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인 ‘사회통합’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다.

3. 향후 과제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정책 및 법제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로서 관련 법제가 상당수 마련되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법제는 미비한 상태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규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조례는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뿐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법령 및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과 근거리에서 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령 및 조례는 일방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대등한 주체로 자리 잡아 통합될 수 있도록 문

33) http : //www.elis.go.kr/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를 검색.

화정책에 치중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교육현장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제6장 결론

2008년 다문화가정 자녀는 15,805명으로 2007년 대비 38.1%가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에 비해 굉장한 수치이며,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민족·다문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의 2세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인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수혜자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다.

수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정책만이 참여도를 높이며,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률의 마련이다. 현재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이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각 부처 간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에 관한 규정이 제10조에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다문화 가정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우려도 있다[34]. 속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령 및 근거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여, 그 기반 아래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되며 이들이 '혼혈아'가 아닌 '한국인'으로서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

34) 펄벅재단 조사 결과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인은 1.1% 수준), 교육인적자원부, 2001년

참고문헌

모선희,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pp.6~8, 2008

전경숙, 정기선, 이지혜[공저],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공편], pp68~70, 2007

김성화,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야대 행정대학원, pp.10~16, 2008. 08

박정화, “한국의 다인종사회 진입에 따른 정치적 함의”, 전북대 대학원, pp. 27~31, 2008. 02

이재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71~74, 2008

전경숙, “2007년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pp.3~4, 2007

동북아시대위원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최종보고서”, 동북아시대위원회, pp.19~22, 2007

권영성.『헌법학원론』. 2009년. p. 651

국회입법조사처, “현행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2 : 사회·문화”, 2008

이재분, “신취약계층(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교육개발 12월 통권 188호, p35, 2008. 12. 01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연구”, 법학총의 제26집 제1호, pp.499~505, 2009. 03

조상균, 이승후, 전진희[공저], “다문화가정 지원법제의 현황,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 pp.159~173, 2008. 03

이웃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만들기 : 신상진 의원 발의「다문화가족지원법」현장 점검, 국회보 통권 504호, pp.68~71, 2008.11.25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2007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현황, 2008

‘준비 안된 결혼’ 다문화 가정 파탄 는다, 경향신문 장은교·구교형기자, 2009년 7월 22일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학생부분

이윤주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88만원 세대'의 주거권 논의를 향해



목 차



요 약 ····· 326

Ⅰ.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 328
1. 20대의 주거가 왜 문제인가? ····· 328
2. 세대 명명의 근거-20대는 누구인가? ····· 331
3. 연구방법 및 범위 ····· 334
4. 선행연구 분석 ····· 336

Ⅱ. 주거권의 개념과 한국의 주거실태 ····· 337
1. 주거권의 개념 ····· 337
2. 한국의 주거실태 ····· 339

Ⅲ.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적절한 주거’를 기준으로 본 ‘88만원세대’의 주거환경 ····· 342
1. 잦은 이동, 임시적 삶-점유의 안정성 ····· 342
2. 방음과 햇빛을 포기하다 - 적절한 주거기반시설과 서비스 ····· 344
3. 열심히 일한 당신, 월세를 내라 - 경제적 적절성 ····· 347
4. 3.6평짜리 상자에 갇힌 삶 - 최저기준 확보 ····· 354
5. ‘악성인구프랙털’ 깨기 - 적절한 위치와 접근 가능성 ····· 355
6. 주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문화적 적절성 ····· 356

Ⅳ. 맺음말 : 새로운 주거권 논의를 향해서 ····· 359

참고문헌 ····· 362

요 약

주거권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가 확보된 '주택'의 의미와 적절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주거'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88만원 세대'의 주거현실을 살펴봄으로서 20대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는데 있다.

'88만원 세대'는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평생 동안 매달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 88만 원 정도만을 손에 넣게 되는 지금의 20대를 지칭한다. 2007년 등장해 화제가 된 이 책은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이라는 단어들이 유행하고 있던 시점에서 현재 20대가 이전의 어떤 세대와도 다른,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에 위치해있다는 의미심장한 문제제기를 이끌어냈다. 이 논문은 위의 이론적 전제에 기대어, 현재의 20대 대부분이 부모의 재산 증여를 통하지 않는다면 독립적인 주거를 꾸릴 수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현실의 20대 주거가 UN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하는 '적절한 주거'의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부모와 한 집에서 살아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는 20대'라는 문제가 주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포괄하고 있는 시사점들은 생각보다 깊고 광범위하다.

20대의 주거문제가 계급갈등이나 세대갈등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회 내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점에 있다.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선 오늘 날, 여전히 주거권에서 소외되는 빈민들이 많은 이유도, 끊임없이 개발과 재개발이 이루어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 박탈은 물론 환경파괴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도,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족단위의 선택이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로 이어졌고, 정부 또한 그러한 투기를 적극 조장하고 유인하는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몇 해에 한 번씩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실질소득은 점점 낮아져왔다. 20대의 주택구입이 그들 부모세대의 주택 구입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아이를 낳는 20대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또한,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독립이 가능한 대부분의 20대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수많은 노인 인구 부양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청년 실업과 저출산 고령화, 만인의 주거권에 대한 대안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맛보고 자랐으며, 개인주의화되고, 이동성이 높아진 삶을 살아온 오늘 날의 20대가 앞으로 선택할 삶의 방식들은 가족의 형태에서도, 생애주기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분화될 것이다. 따라서 20대의 주거권에 대한 대안은 주거의 의미와 형태부터 새롭게 논의함으로써 구상되어야 한다. 빈번한 이동이 일어나고, 평균적인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는 미래 사회에서 주거권은 만인의 ‘동등한 주택소유권’이 아니라, 만인의 ‘안정적인 점유권’을 요구하는 형태로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Ⅰ.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 20대의 주거가 왜 문제인가?

조숙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스스로 일궈나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들은 곧 현실적 벽에 부딪혀 절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독립이나 동거생활같은 불투명한 미래에 몸을 맡기기 보다는 부모와의 삶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 65p)

지금의 20대 중 95%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평생 동안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한 88만 원 정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20대가 처한 승자독식의 생존경쟁 사회를 비판했던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 이 책은 청소년의 동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저자는 서구와 다르게 한국에서 16세 이상의 '성인'이 동거를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예산제약'을 꼽는다. 16세는 물론이고 스무 살이 넘어도,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대학도 나오지 않은 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사회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한국은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서구에 비해 덜 개방적이라는 이유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교적 전통이 엄격하게 지켜지던 조선 시대에 10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지 않았던가? 대체 무엇이 성인을 성인답지 못하게 제약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한국은 임금수준이 낮고, 주거비용은 매우 높으며, 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대학 등록금은 연간 1천만 원 수준으로 올라서 20대의 경제적 독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장학제도가 그리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20대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심지어는 휴학을 하고 틈틈이 하는 아르바이트로는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해낼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산층 정도의 부모가 학비를 지원해주고, 일정한 급여를 보장 받는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절약이 되는 방법일 것이다.

정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년 천만 원 가까이 돈을 내고 대

학을 나와도 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이므로, 대학을 안 다니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겠지만, 고등교육은 인적자본의 잠재력을 높여주고, 높은 임금수준을 보장하는데다, 한국사회에서 특히 인간적 대우의 수준까지 높여주는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빚을 내서라도 대학, 가능하면 서울 안의 4년제 대학에 가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1] 따라서 일반적인 20대 대학생은 매년 천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에, 대학을 다니기 위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경우 기숙사 비용이나 월세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한다. 최근에 서울의 대학가에 늘어나고 있는 민자 기숙사들은 비싼 경우 4개월 기준 160만원에 달하여 일반적인 원룸 월세 시세와 다를 바 없는데다, 서울지역 대학의 지방 학생 비율은 36%인데 반해 기숙사 수용률은 6.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2] 대부분의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중파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인 대학생의 대학생활 유지비용을 계산해보았는데, 등록금 900만원, 생활비 360만원, 주거비 360만원으로 1년에 총 1,620만원이 필요하다면, 장학금을 일부 받고, 과외 등 두 세 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고 해도 1년에 500만원 적자, 따라서 4년 후, 2천만 원 이상의 빚을 가지고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러나 두 세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선 대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다르게 말하면, 가난한 부모를 둔 경우 대학 진학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작년 11월, 등록금 때문에 사채 빚을 얻었다가 갚지 못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딸을 살해하고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부터, 지난 3월 등록금과 생활고에 못이긴 명문대생의 자살 사건, 지난 5월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사건 등은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초중등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연간 1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부담하지만, 졸업 후 취업을 장담할 수 없는 사회에서 20대들은 무엇을 위해 오늘도 룸살롱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일까?[4]

---

1) 그렇게 작년 한 해 동안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대학을 다닌 인구는 63만 5천명, 대출 규모는 23조 386억에 이른다. "2년 만에 15배...'학자금 신불자 1만 명'", 오마이뉴스, 2009.05.03

2) "'88만원 세대'의 독립을 지원하라", 한겨레, 2009.07.12

3) MBC PD수첩 <부자 대학, 가난한 학생> 2009.04.07 방영분

4) "'88만원 세대' 지옥 같은 여름방학", 한국경제, 2009.07.14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약 20%의 20대 중에는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당장 직장을 구해 돈을 벌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임금 수준이 낮고,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에 한 달 수입의 30~50%정도를 '내 집'이 아닌 월세비용으로 지출하고,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졸 임금은 대졸 임금의 3분의 2정도에 머무르며, 이미 '88만원 세대'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말해주듯이 대졸이든 고졸이든 비정규직이 될 경우,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 원 정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인터뷰에 응했던 참여자 가운데는 IT업계에 정직원으로 취직했으나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으며, 그 중 3분의 1을 월세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장 월세 지출을 하며 살아가느라 20대에 저축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의 향후 주거수준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 내에서 20대들이 독립적인 동시에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독립적이지만 매 학기 마다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돌아오는 겨울마다 화장실이 역류할까 조마조마 해야 하는 삶, 안정적이지만 부모의 보호와 제재를 받으며, 미래를 향해 모든 욕망을 보류하고 연기해야 하는 삶, 정말 그것 말고는 없는가?

<88만원 세대> 출간 후 2년이 지난 지금, 20대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신문기사와 칼럼, 그리고 인터넷 공론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20대의 사정은 심각해지기만 했다. 2009년 5월 통계청 연령별경제활동인구 기준 20~29세 실업률은 평균 실업률 3.8%의 2배인 7.6%였다. 20~9세 사이 인구 651만 명 중 64.4%인 419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중 7.6%인 31만 명이 실업자이며, 취업한 387만 명 중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즉, 현재 20대의 약 35%는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이거나 구직단념자이거나 백수인 상태이고, 약 5%는 실업자이며, 나머지 60%중 절반은 비정규직, 절반은 정규직이라는 이야기다.[5] 문제는 다음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사회안전망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앞으로 이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때까지 이어져 사회 전체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심

5)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8월 기준,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570만 명으로 약36%를 차지하는 수치다.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정부공식통계에 의한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36%보다 훨씬 높은 50%이상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이미 60%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어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빈곤층이 20년 동안 2배로 늘고 중산층이 10%나 줄어들어, 앞으로 구조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6)]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이들에게 인간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가 잘 해결되고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왜 주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20대의 욕구가 아니라서? 그보다는 아마 '20대 주거권'이라는 이슈가 나올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닐까? 청소년보다는 성인이, 성인보다는 기혼자가, 기혼자보다는 자식을 가진 부양자가 더 큰 어른으로 대접받는 한국사회에서 스무 살짜리가 어른 행세 못 하는 게 무슨 문제이겠는가? 한국에서 언제 미혼의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적 있는가? 핵가족화가 진행되긴 했지만, 아직도 TV드라마에는 종종 결혼 후 '시집살이'를 하는 부부들이 등장한다. 문화적으로 '어른 됨'이 곧 '부모를 떠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비정규직 20대, 실업자 20대, 대학생 20대의 독립적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20대가 부모를 통해 주거를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20대의 주거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들을 점검하고, 현재의 20대가 처한 조건 속에서 주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세대 명명의 근거-20대는 누구인가?

이 땅의 651만 2천명의 20대들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88만원 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 몇 년 간, 20대에 대한 세대론은 자주 부정적인 용법과 함께 등장하곤 했다. 88만원 세대, 인턴세대, 얼굴 없는 세대, 언어를 상실한 세대·모두에게 욕을 얻어먹는 세대(《시사인》 81호, 2009년 03월), 세대가 없는 세대(《GQ》 2007년 11월호), 트라우마 세대(《중앙일보》 2008.11.19), 불안세대(《아시아경제》 2009.03.26), 희망을 잃은 세대·미래 없는 세대·(저축, 車, 결혼 없는) '3無세대' (《경향신문》 2008.08.17) 등. 인디밴드 'W&Whale'의 노래제목인 <로켓펀치제너레이션>과 같은 명

6) "우리나라 상대 빈곤율 20년새 2배로 악화, 빈곤·상류층 동시에 늘고 중산층 비중 10%P 급감", 한국일보, 2009.07.13

명 외에는 모두가 하나 같이 20대의 안쓰럽고, 무기력한 모습만을 강조해왔다.

일반적인 세대명칭과 최근 20대에 대해 붙여지고 있는 세대명칭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세대론은 나이든 세대를 보수적으로 젊은 세대를 진보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최근의 세대론은 현재 40대인 386세대에 해당하는 논객들이 20대 88만원 세대의 보수화와 탈정치화를 꾸짖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박재흥, 2009) 이러한 '꾸짖음'은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대하며 시작된 촛불집회에 10대 소녀들의 등장이 두드러지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비교적 최근이긴 하지만, 촛불집회에 나온 여중생·여고생과 20대를 비교하는 대표적인 논조는 다음과 같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분노하는 이들은 "80년대 대학생들이 2009년에 부활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라며 덧없는 통분(痛憤)만 쏟아냈다. (중략) 그렇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데모할 것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 도리어 만류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미 너희는 뭘 해도 늦었기 때문이다. (중략) 다만, 나는 지금 10대에게 큰 기대를 건다. 이 친구들은 촛불의 발화점이 됐던 소위 촛불 소년 소녀 세대이다. (김용민,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충대신문》 2009.06.08)*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모두에게 '욕을 얻어먹는' 20대는 과거, 기성세대가 N세대·W세대·R세대·광장세대라 부르며 환호했던 '새로운' 세대다.[7] 지금의 20대들이 10대였을 때,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탈학교 운동이 일어났고, 일부에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운동이 일어났으며, '선거권을 낮추자'는 10대들의 당사자 운동도 일어났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이러한 운동을 주도한 10대들은 당시의 10대 전체에 비하면 소수였을 것이다. 한국 사회 안에 10대라는 존재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기성세대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10대 소녀 일부를 발견하고는 '촛불세대'라

7) 'N세대'는 어릴 적부터 인터넷과 디지털 기반의 의사소통에 능숙한 'Network generation'을 의미하며, 'W세대'와 'R세대'는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당시 자유분방하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 'World cup generation', 태극기를 찢어 옷을 만들어 입거나 빨간색 붉은 악마 유니폼을 거리낌 없이 입는 등 '빨갱이 콤플렉스'의 종언을 보여주는 새로운 세대라는 의미에서 'Red generation'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광장세대'는 월드컵에 이어 2002년 미군 장갑차 중학생 압사 사건에 대한 촛불집회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20대들의 모습을 통해 이름 붙여졌다.

지위를 부여하고 칭송했는데, 과연 그들이 지금의 10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

세대론은 그 세대에 해당하는 모든 성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박재흥(2009 : 23)이 지적하듯이 ‘세대’라는 범주는 계급이나 젠더라는 범주처럼 다차원적이며 내부적으로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그런 작은 차이들을 포용하고 압도하는 큰 공통분모가 있기에 하나의 계급, 하나의 성으로 명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판단에서 조금 벗어나, 나이와 생애주기에 따라, 주요 역사적 경험에 따라, 문화적 행태적 특성에 따라 20대 전반의 특성을 설명해 낼 수 있을까?

우선, 지금의 20대는 생애주기 상 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10대 시절을 보내고, 2000년대에 20대가 된 세대라고 정의해보자. 각각의 시기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의 20대는 거의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80년대부터 IMF직전까지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기였다. 90년대는 노태우 정권의 수도권 신도시 주택 2백 만호 건설 정책을 통해 엄청난 도시 인구가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중산층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시기이며,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되어가던 시기이기도 하다. 95년에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는 87년 민주 항쟁을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98년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문화적으로는 80년대 시작된 문화운동, 여성운동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에 균열과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운동을 통한 변화는 평범한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더라도 핵가족화와 더불어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탈 권위주의, 탈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평등과 성 해방, 다양성이라는 가치의 습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파트형 핵가족에서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자라나, 빠르면 10대 초반에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자기만의 세계가 구축 가능했다는 것도 지금 20대의 특징 중 하나다. 평균 두 명 정도의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원, 자기만의 방과 개인 휴대폰, 인터넷 보급은 이들의 개인주의를 심화시키고, 소비적인 문화로 길들였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도구로 접하며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접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은 이 세대에게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고체계를 가지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로 80년대 생들이 꿈꿀 수 있었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10대 시절에 닥친 금융위기는 다양한 욕망을 위축시키고,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주었다. 한국사회는 3년 8개월 만에 전세계에 유래 없이 빠르게 IMF체제를 벗어났지만,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서 그들이 요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 자본시장 개방, 기업 구조조정, 정리해고 및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받아들여, 98년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었다.

정부는 서둘러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국내의 '알짜 기업'들을 해외자본에 매각하고, 국민 개개인의 서랍 속에서 금반지 등을 꺼내 모금하게 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영자와 정치가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위기를 직접 책임지는 동안, 투자 감소로 고용과 소비가 줄어든 몫은 고스란히 돌아왔다. 96년까지만 해도 4.6%였던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연7~8% 고실업률로 고착화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급속히 위기를 벗어났지만, 급속히 경기침체가 반복되는 남미형 경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도래 했지만 심각해진 양극화, 고실업과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안정적인 직장을 가기위해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등은 80년대 생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된 사회의 모습이다. 비교적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라난 2000년대의 20대들은 '어른'이 되고 나서야 평생 결혼이나 '내 집 마련', 저축을 해내기 어려운 '88만원 세대'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20대 주거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는 했지만, 막상 20대라는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 연구 대상을 어떻게 설정해야할지가 어려웠다. 20대 주거권이라는 주제가 기사나 칼럼을 통해 종종 다루어지긴 했지만,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료수집은 주로 20대 주거권에 관한 신문·잡지의 기사와 칼럼을 바탕으로 하였고, 더 생생한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20대 8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따라서 설문조사 등

양적연구를 통해 20대 주거에 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얻지 못한 것이 이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20대’라는 세대를 그 세대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서 공통적인 경험을 집어내는 방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심층인터뷰 또한 80년대 생이고, 적어도 가족과 떨어져 산지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에 거주 중인 20대로 지역을 제한했다.

인터뷰 응답자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최대 회원을 보유한 전월세 직거래 카페 가입자를 중심으로 모집했다. 직거래 사이트는 부동산 수수료를 절약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곳이고, 아주 싼 방부터 간혹 아파트 매매까지 올라오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전세 1억 원 이하의 매물이 오고가는 곳이다.

카페 게시판에 인터뷰 모집 글을 올리고, 10명 정도의 회원이 응답을 주었으나,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회원들과의 만남을 오프라인까지 연장시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IT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들이 많아, 10명을 모두 인터뷰하지는 않았다. 또한, 인터뷰 약속을 잡고 당일이 되어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카페를 통해 만난 심층 인터뷰 응답자는 3명에 불과했다.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골고루 담아내기 위해 나이, 학력, 살고 있는 지역, 일하는 분야가 다른 5명의 응답자는 연구자의 지인과 지인을 통한 소개로 찾아냈다.

심층인터뷰는 약 1-2시간씩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 8명 중에는 여성이 3명, 남성이 5명이었고, 나이별로는 80년생부터 86년생까지 골고루 분포했으며, 출신지역은 서울 1명, 인천 2명, 전라도 3명, 경상도 2명이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8명이 서울, 1명이 인천이었고, 서울 안에서는 종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마포구, 성북구 등에 고루 걸쳐있었다. 수도권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진학이나 취직 때문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싶어서’, ‘서울(혹은 특정 지역)에 살고 싶어서’였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 큰 변화가 없는 한 졸업이나 휴직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수도권에서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응답자들 중 2명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고졸자 1명, 2년제 대학

졸업자 1명, 직업학교나 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2명,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명이었는데, 학력의 차이로 밖에 가늠되지 않는 현저한 임금격차가 드러났다. 주거형태는 고시텔 1명, 옥탑 1명, 원룸 월세 3명, 오피스텔 전세 1명, 빌라 전세 1명, 아파트(인천지역) 소유 1명으로 나뉘고, 월세의 경우 대체로 보증금을 부모(혹은 한부모)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며, 빌라 전세와 아파트 소유는 결혼을 계기로 대출을 받거나 양가의 도움을 얻어 장만한 경우다. 이들은 응답자 8명 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정규직으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결혼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터뷰 내용은 가족과 떨어져 살기 시작한 이유부터 지금까지 거주했던 공간들의 기본정보(주거형태, 가격, 위치, 설비 등)에 관한 질문들과 한 달 생활비용 및 출처, 지출내용, 부동산 거래 피해 경험 등 경제적 측면, 집주인과의 관계, 부모세대와 내 세대의 차이, 미래에 꿈꾸는 이상적인 주거환경,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등 질문을 기본으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본문에서는 인터뷰 응답자들의 실명 혹은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4. 선행연구 분석

한국에서 주거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20~30년대 초 도시로의 이주가 진행되면서 생겨난 주거권 확보운동, 1970년대 청계천 주변의 불량주택을 철거하며 일어난 철거민 운동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록이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진 것이 1980년대 이후이기 때문이다. 주거권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시작해 90년대에는 주로 강제철거, 주거기본법 입법운동, 주거권의 의미 및 법리,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다가(박문수,1998·이호,1996·이영환,1990·안도찬,1991·김형국,1992·서종균,1998·하성규,1999 등), 2000년대에 들어 노인, 뉴타운 철거민,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재해지역 주민, 성노동자, 한부모가족 등(박연직,문영기,2004·박창수,2005·김수갑,여경수,2005·김성주,2005·하성규,고성열,2006·김종태,정윤수,정상기,2007·강내원,2007 등) 주거권 침해의 원인과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홍인옥(2008 : 109)은 주거권 개념을 적용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는데, 광의의 주거권은 모든 소득계층과 주택점유형태에 관계없이 고르게 적용되는 넓은 의미 개념이고, 협의의 주거권은 주로 빈민, 주거 빈곤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임차가구 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주거권에 관련한 연구주제들은 여전히 협의의 주거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서종균(2000 : 23)이 지적하듯, 주택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이고, 무주택자의 운동이고, 철거민 세입자의 운동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모든 이의 인권이 존중된다면 좋겠지만, 제한적으로 존중되고 있는 사회에서 20대 주거권은 협의와 광의의 의미에 걸쳐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허공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20대가 속한 세대 간 갈등은 직장에서는 윗세대에게 착취당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는 윗세대인 부모의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이 바로 20대의 주거권을 주장하기 까다로운 이유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Ⅱ. 주거권의 개념과 한국의 주거실태

1. 주거권의 개념

인간생활의 기본은 의식주라는 말처럼, 주거는 자연권에 해당한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주거’를 얻을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다면 노동자로서 개인은 노동력 재생산을 통해 임금생활을 할 수 있는 노동권을 침해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주거권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권리다. 지금 20대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적당한가 아닌가를 논하려면 주거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2005년 인권위원회의 보고서[8]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주거권’이라는 명시

8) 「개발지역세입자 등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적인 조항이 없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에는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을 명시하여 물리적 주택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04년에는 건설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a. 점유의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 임차인은 임차의 형태와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위협으로부터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b.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 적절한 주거란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물 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c. 경제적 적절성(Affordability) :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에서 적절한 주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d. 최저기준 확보(Habitability) :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 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e.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병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접근하기 용이한 주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f. 적절한 위치(Location) : 생산 활동의 기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하며, 보건소, 학교, 탁아소 등의 사회적 시설들로부터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g. 문화적 적절성(Cultural adequacy) : 주택의 건설방식에 있어 그 재료나 형태 등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위의 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주거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 거처로서의 ‘주택’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주택’과 관련하여 주거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가 확보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적인 ‘주거’로서의 주거권은 적절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권’

이라 함은 이러한 물리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을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은 주거권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다. 주거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1991년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4는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9)]

심층 인터뷰 응답자들은 이미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통학이나 출퇴근 등 '적절한 위치'가 해결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구성요소를 제외한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인터뷰 응답자들의 주거환경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2. 한국의 주거실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20대의 주거권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하나는 아직도 인구의 50%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20대의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배부른 소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주거불평등은 20대라는 특정 세대 내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열악하더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20대라는 시기의 보편적 특성이 아니냐는 물음이다. 물론, 무허가 판자촌이 즐비했던 60년대와 아파트 천지인 오늘 날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풍요로운 오늘 날의 주거 환경이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0대의 '내 집 마련'이 그들 부모세대의 '내 집 마련'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것은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한국은 본격적인 근대화가 진행된 60년대 이래 꾸준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1963년 땅값을 100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2007년까지 서울 땅 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가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가 올랐고, 1965년 24만 809원

9) 「개발지역세입자 등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72~83p

이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7년 350만 7,091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대도시 땅 값은 실질소득의 50배 이상, 서울 땅 값은 70배 이상 오른 셈이다.[10] 주거환경은 나아졌지만, 땅 값이 오른 속도에 비하면 소득수준은 제자리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집을 구하기는 어려워졌다. 유엔정주권회의(UN HABITAT)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to Income Ratio : PIR)의 적정수준을 3~5배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집값이 연간 소득의 3~5배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PIR이 전국평균 6.5배, 서울은 9.8배, 강남권은 12.8배에 달하고 해마다 더 증가하는 추세다(지동현, 2007).[11]

이러다보니, 근로자 평균소득으로 110m²(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전국 평균 18.6년, 서울은 29.1년, 강남은 44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소득 가운데 지출을 제외한 저축 가능액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 저축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그렇다.(이낙연, 2006)[12] 대학을 나오자마자 빠듯하게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성은 44세, 남성은 47세에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물론 서울로 진입한다면 10년이 더 늦춰지고, 강남이라면 15년이 더 늦춰진다. 또한 이것은 평균 소득 이상을 버는 직장에 취직해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니, 전체 근로자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생각하면 현재의 20대가 자기힘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20대의 부모세대가 젊었을 때는 땅 값이 오르는 동안 이사를 다니며, 아파트를 '갈아타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렇다면, 40대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얹혀살겠는가? 결국 20대의 주택 소유는 부모의 재산 기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눈높이를 낮춰 전세를 알아본다면 어떨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최근 22년 동안 주택 매매가격은 125% 오른 데 비해 전세금은 263%로 곱절이 올랐다. 아파트보다 셋방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 값이 훨씬 많이 올랐다. 아파트 값은 전세금이 매매가격보다 1.7배 오른 데 비해, 단독주택은 3.2배, 연립주택은 2.8배가 오른 것이다.[13] 투기로 집을 구매한

10)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25p
11)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92p
12)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92-93p
13)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94p

사람들이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전세 값을 더 큰 폭으로 올리기 때문에, 내 집 마련만이 아니라 셋방살이조차도 점점 더 힘들어 지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건설과 재개발이 여전히 성행 중인데도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라니, 20대의 주거권만을 특별히 요구하기는 힘든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물론 세대를 불문하고, 인간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주거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미 한국사회가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절반의 무주택자와 절반의 다주택 보유자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점이다. 손낙구는 “전 국민이 가구당 한 채씩 집을 갖는다면 집은 100만 채나 남는다.”고 말한다. (『부동산 계급사회』 184p)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 100%를 넘어섰고, 이 추세대로라면 2012년에는 주택보급률 116.7%로 229만 채가 남아돌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200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 명의로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한 상위 10명의 집만 합쳐도 5,508채에 이른다.[14] 집을 2채 이상 가진 가구는 전체의 6.6%로, 평균 5채씩의 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자는 48.5%, 대출 등을 통해 집을 마련해놨지만 이자 등 금융비용 때문에 자기 집은 세를 주고 남의 집을 옮겨 다니는 가구가 4.2%, 전세나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에서 세를 사는 가구가 6.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를 사는 가구가 30.3%,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심지어는 동굴에 사는 가구가 전체의 4.3%라고 한다. 즉, 주택은 모든 가구가 한 채씩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되었지만, 주택이 재산보유 및 증식의 수단이 되면서 인구의 절반에게 치중된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20대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20대 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한국사회의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와 주거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통으로 기반하여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의 20대가 처한 환경은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부터 이미 고용 유연화라는 변수를 껴안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출발하게 되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어느 세대나 돈을 많이 버는 데 성공한 일부와 실패한 일부는 존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은 전 세대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오늘 날은 20년 전에 비

14)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48p

해 빈부격차가 현저히 심화되었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권위와 권력을 가진 윗세대에 의해 비정규직법안과 청년 초임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대이다. 게다가 2008년 말 불어닥친 세계금융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도 갉아먹었다. 과거에 비해 사회는 풍요로워졌고, 교육의 질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심하게 올랐고, 비용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선 한국사회에서 주거불평등 개선이 '분배의 정의'가 개입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듯이, 한국의 20대가 처한 기성세대와의 불균형한 관계에도 '분배의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적절한 주거'를 기준으로 본 '88만원세대'의 주거환경

1. 잦은 이동, 임시적 삶-점유의 안정성

인터뷰 응답자 8명이 독립해서 살아온 기간을 모두 합치면 45년 정도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사를 다닌 횟수는 총 33회에 달한다. 1년을 넘기기가 어렵게 이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잦은 이동이 일어나는 것일까?

전북 익산에 살다가 대학에 오면서 서울로 이동한 J는 스무 살이 된 2005년, 학교 근처 고시원에 월세 25만원을 내며 6개월 간 살았다. 화장실과 세탁기가 공용이었고, 침대와 책상이 들어가면 꽉차는 아주 좁은 방이었다. 창문도 없었고, 방음은 전혀 되지 않았다. 학교를 옮기겠다고 마음먹고서 익산에 돌아와 1년간 재수를 했다. 다시 서울로 옮겨가 구한 집은 단순히 친구들과 같이 살아보고 싶어서 구한 집이었다. 서울역 근처, 보증금이 없어 무보증에 월세 40만원을 내며 친구들과 함께 살았다. 7평 남짓 되는 공간에 친구들 2명과 함께 6개월을 살았는데, 이 방 역시 창문도 없고, 방음도 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 다음에는 회기역 근처 9평 남짓한 친구의 원룸에서 3개월간 얹혀살았다. 지상 3층, 원룸이라지만, 알고 보면 여관방을 개조한 곳이었다.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원을

내는 곳이었는데, 친구와는 월세를 나누어냈다. 이 집에서는 친구가 여자 친구를 사귀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음에는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성북구에 위치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 근처 고시원을 찾았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인지 월세 32만원에 화장실과 주방, 세탁기가 공용이며, 역시나 방음이 안 되는 좁은 방에서 4개월 정도 살았다.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물론 일도 했다. 한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 한 달에 이틀만 쉬면서, 월급 130만원을 받으며 일했다. 공부를 할 계획이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위해 일을 하다 보니,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스무 살 때부터 거쳐 온 아르바이트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서점 창고정리를 하며 월급 70만원을 받고 일하기도 했고, 호프집 서빙으로 시급 4천원을 받으며 월 60만원을 벌기도 했다. 3개월 정도 일했던 편의점에서는 심야 시간대 시급 4,400원을 받으며 일해 월 80만원을 벌었다. 중식당 서빙,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 등 끊임없이 일했지만, 3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었던 일은 없다.

처음엔 대학 때문이었지만, 다시 서울에 오게 된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과 서울에 가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르바이트 시급도 높고, 무언가 막연히 자수성가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의 땅’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때 품었던 기대는 “그냥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에 살고 싶다는 계획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다. 서울에 와서 처음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공간에서 살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몇 달 지나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결국에 불편한 점이 많아 자주 집을 옮기게 되었다.

약 6개월 간 익산의 부모님 집에 돌아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인천에 있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안락한 오피스텔을 구해 6개월 간 살았다. 서울지역의 월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인천을 택했다.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지역에서 조용히 공부를 했고, 대학 입시를 치러서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에 합격했다. 지금은 학교 근처의 옥탑방에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원을 내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방음이 문제다. 개인택시를 하는 집 주인이 월세 소득을 얻기 위해 없던 옥탑을 가건물로 대충 세워놓은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선 얼마나 오래 살게 될까?

끊임없이 이동해가며 살아야하는 불안정한 삶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여행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주거가 불편하고 불안정한 경우에 말이다. 인터뷰 응답자 중에는 매년 재계약 때마다 5만원씩 월세를 올리는 주인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경우도 있었다. 반면, 인터뷰 응답자들이 한 공간에서 2년 이상 살아가는 경우에 공통된 조건은 그 집의 주거환경이 비교적 준수하고, 월세의 변동이 없으며, 지역을 옮겨야 할 만큼 신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에서 점유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전월세 주거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인데다 시설에 비해 경제적 비용은 지나치게 높고, 폭등은 쉽지만 떨어지기는 어려운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방음과 햇빛을 포기하다 - 적절한 주거기반시설과 서비스

UN에서 이야기하는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기준을 한국 수도권의 주거지역에 들이대는 것만큼 난감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깨끗한 물, 전기, 상하수도와 도로는 구비되어 있지만, 반지하가 아닌데도 채광이 안 되는 곳이 많고, 고시원의 경우 창문조차 없는 밀폐된 공간이 많다. 부동산 투자 바람에 뒤늦게 합류해 급하게 개조한 가건물이나 여관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한, 겉만 멀쩡한 위험한 건물들도 있다. 화장실이나 주방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인터뷰 응답자 중에는 4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푸세식 화장실이 딸린 반지하 월세방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내며 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2006년 UN의 통계를 보면, 서울의 인구밀도(16,589명/㎢)는 세계 주요도시 중 파리(20,238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도쿄(13,671명/㎢)나 뉴욕(10,400명/㎢)보다는 높은 편이다.[15] 세계 54개국의 아파트 임대료 비교에서는, 한국이 영국과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16]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집값은 비싸지만, 일자리부터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따라, 현재 한국 인구의 절

15) UN,「Demographic Yearbook」, 2006

16)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344p 표 1-1을 참고 바람. 세계 54개국 아파트 임대료 2006년.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주 : 주요도시 아파트 방 3개, 달러 기준)

반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살아간다. 정부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과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도시로 이동한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싸고 풍요로운 서울에 거주 중인 인구 중 37%는 슬럼에 살고 있다.[17] 전세계는 물론,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반지하, 학원 일대의 고시원은 대표적으로 슬럼에 해당되는 주거형태일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해온 대부분의 인터뷰 응답자들은 하나같이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겪은 '문화적 충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반지하'라는 주거형태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방음도 안 되는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사는데도 지방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세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방음이 취약한 고시원의 경우, 처음 이사 온 한 달 동안 옆 집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 타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소리로 전해져 괜히 음흉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이게 진짜 사람 살 데가 안 돼요 진짜. 방음도 안 되고, 제가 잠귀가 되게 예민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새벽에 여자가 흐느껴 우는 거예요. 외롭잖아요, 고시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왔으니까. 울어서 가만히 들었죠. 다 들려요. 외로워 죽겠다고 여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흑흑흑...하는데, 30분 정도 듣다가 도저히 안 되가지고 벽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애***, 29세, 남성, 28살에 살던 월세 42만원의 고시원에 대해)*

서울로 이사 온 첫해 내내, 시끄럽고 삭막하고 날카로운 서울과 서울 사람들에게 적응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지방에 비해 열악한 주거기반시설을 가진 서울 사람들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은 이렇다.

"서울 애들은 자연스럽게 뭔가에 압박감이 있어요. 거제는 조선소가 잘 되가지고 취

17) 마이크 데이비스, <슬럼, 지구를 뒤덮다>, 김정아 역, 돌베개, 2007. 40p.
UN HABITAT, "Slums of the World : The Face of Urban Poverty in the New Millenium?", working paper, Nairobi 2003, annex 3.

*업이 쉬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거제 친구들 만나면, '야, 나 차 뭐 살까?'이런 얘길 하는데, 서울 애들은 물가도 비싸고 돈 벌기도 어려우니까 만날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 벌이로 되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아플 거 같아요." (애***, 29세, 남성)*

"서울에 올라와서 1년 동안 계속 아팠어요. 시끄럽고, 사람들도 삭막하고, 사람들이 잘 웃질 않아요. 항상 날카로운 상태로 부딪히면 화내고, 그런 게 잘 적응되지 않았어요. 생리불순도 서울에 와서 처음 겪었어요. 서울의 문화생활을 포기하기는 싫은데,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복잡하고 더럽고, 어떻게 살고 있나 싶어요." (오, 24세, 여성)*

안전시설은 어떨까? 인터뷰 응답자 중 여성인 3명은 공통적으로 주거공간에서 안전의 위협을 느껴본 경험이 있었다. 반지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든지, 복도에 널어둔 속옷을 도난당했다든지,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에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옆집 남자가 급하게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는 소리를 듣곤 했다든지, 밤에 집으로 가는 길에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서 도망을 쳤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지상 3층에 살지만,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창문을 열고 잘 때면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위치에 망치를 두고 잔다는 엉뚱한 이야기도 들었다.

반지하나 1층처럼 비교적 저층에 위치한 방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늘 불안하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부실한 방범창 하나 교체하는 것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미룬다. "니가 하고 싶으면 니가 달아라."라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전 세입자와 비교하면서 "너만 왜 그렇게 까탈스럽냐"고 불평하기도 한다.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해주지 않던 것들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자친구가 강하게 요구하자 집주인이 바로 들어주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불편해도 참는' 참을성이 길러졌다는 사람도 있었다.

"요즘은 새로 짓는 집이 더해요. 원룸이라고 해놓고 고시텔처럼 짓고. 한번은 여름에 벽지도 울고, 새로 산 침대 밑에 곰팡이도 잔뜩 생기고 그래서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만큼 안 습하고 환기 잘 되고, 깨끗한 집이 어디있냐' 그러면서 모르는 척 하

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니까, 곰팡이 생긴, 딱 그 자리에만 벽지를 새로 붙여서 다음 사람한테 세를 놓더라구요.” (오, 24세, 여성)*

주거기반시설이 미비한 열악한 주거, 그래서 곧 저렴한 주거공간은 결국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집단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남성 평균 임금의 60%를 받고 일하는 한국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저렴한 주거공간은 특히 여성을 타겟으로 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소수의 성공한 전문직 여성들은 ‘골드미스’라는 호칭을 얻으며 좋은 주거환경을 누리겠지만, 전문직이 아니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 혹은 여성들의 동거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반적인 주거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인구 중 슬럼에 사는 37%는 계급이 낮거나 여성이거나 젊은 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열심히 일한 당신, 월세를 내라 - 경제적 적절성

경제적 적절성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에서 적절한 주거를 구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우선, 현재의 주거 형태와 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아래는 8명의 응답자들의 나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주거형태, 평수, 주거비용,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나열한 것이다.

	하는 일	나이	주거형태	평수	주거비용	월평균소득
a	대학생	23세	옥탑방	11평	300/25	불규칙+부모님 지원
b	대학생	24세	원룸	10평	500/35	불규칙+부모님 지원
c	IT중소기업 파견직	25세	고시텔	2평	월세35	120만원
d	미술학원인턴	26세	원룸	8평	1,000/30	35만원+부모님 지원
e	영화관매니저	26세	원룸	9평	500/35	120만원
f	대학원진학준비중	28세	빌라	19평	전세8,000	배우자 소득 360만원
g	지역방송국정규직	29세	아파트	32평	매매가 2억	375만원
h	IT중소기업 파견직	29세	오피스텔	10평	전세6,000	160만원

일반적으로 ‘주거빈곤가구’란,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25~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총 206.2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13%를 차지했다.[18)]

이 연구에 응해준 8명의 응답자들은 어떨까? 대학생 a와 b는 등록금과 주거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지만, 노동주기와 임금이 매우 불균형하므로 계산조차 불가능하다. 월세와 생활비를 위해 매달 6~70만 원 이상을 벌기위해서는 평균 시급 4,000원인 아르바이트를 매주 5일간 7~8시간 이상씩 해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대학생활과 함께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 없이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 졸업 후 미술학원에서 저임금을 받고 인턴을 하며, 무료로 미술을 배우고 있는 d는 매월 35만원을 벌고, 생활비로 30만원을 쓴다. 보증금과 월세 30만원은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IT계열 중소기업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c와 영화관 매니저로 일하는 e는 세전소득이 120만원이다. 매달 지출하는 월세 35만원은 전체 소득의 1/3을 차지하는 '주거빈곤가구'에 해당한다.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며 배우자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f는 8천만원짜리 빌라 전세를 얻기 위해 일부 대출을 받아 갚아나가고 있지만, 월 평균 수입의 50%이상을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소득을 얻고 있다. g와 h는 자기 힘으로 모아온 저축액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오피스텔 전세와 아파트 소유권을 얻은 경우다.

8명 중 3명은 자신의 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고, 2명은 수입의 40%정도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 빈곤층, 3명은 주거비 및 생계비 지출 외에 저축이 가능한 상태였다.

흥미로운 것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인 216만7천원[19)]을 상회하는 300만 원대의 임금을 받는 2명의 응답자와 나머지 응답자들의 차이다. 월 평균 수입의 대부분을 주거비와 생활비로 지출하고, 저축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2년제 대학 졸업자, 직업학교 졸업자인데 비해 정규직 평균 임금 이상을 받는 2명의 응답자는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해, 졸업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실업난을 경험한 적이 없는 케이스다. 이들은 취직 후, 3천만 원대 연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기혼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단, 예외적으로, 직업학교를 졸업해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h는 특수한

18) 홍인옥,「주거권 지표개발」, <도시와 빈곤> 통권 87호, 2007, 113-114p.

19) "정규직 임금 3%↑ 비정규직 3%↓" 연합뉴스 2009.05.27

상황에 의해 ‘주거빈곤가구’에서 벗어나 있었다. h는 초등학교 시절 서울의 한 지역에 살다가 아파트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쫓겨나 천막생활을 했던 적이 있다.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재개발로 인해 서울을 전전하다가 결국 부모님의 고향으로 귀향했다. 그곳에서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17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식당에서 일하며, 그곳에서 제공하는 여인숙에서 생활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이 되어 집안 형편이 나아지면서 서울로 와 직업학교를 다닌 후 취직을 하게 되었다. 부동산 때문에 늘 불안정했던 가족의 거주는 결정적으로 부동산 덕분에 안정되었다.

“할아버지한테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땅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지금도 더 뛰어서 계속 오르는 중이예요. 할아버지 농사짓던 땅인데 거기에 다리가 연결되거든요. (지역과 지역을 오가려면) 2시간 걸렸었는데 이제 40분 만에 차로 갈 수 있어요. (중략) 상속받은 지 5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은 못 팔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심적으로 든든한 거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없었으면 서울에서 생활하기 힘들었을 거 같아요. 심적으로.”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아직까지 직접적인 이득을 보지는 못했지만, 땅을 담보로 설정해서 현재 신길 동의 오피스텔과 병원 때문에 서울을 오가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강남에 월세 120만 원 짜리 원룸을 임대해놓았다고 했다. 월 소득 160만원을 벌면서, 매달 월세 120만원을 내고도 저축과 보험료로 70만 원 정도를 지출할 수 있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데도 마음이 여유로운 상황은 모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하루아침에 가능해졌다.

f의 경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갚고 있는데도, 월급의 50%이상을 저축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소득을 얻고 있다. “장기마련저축, 장기마련펀드, 주택마련 청약저축, 일반 적금, 펀드 등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년 안에 2억을 모아 집을 사자는 계획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다. 증권사에 근무 중인 대학동기들이 투자에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한다. 학력격차가 소득격차로, 학맥이 재산증식을 위한 정보 격차로 이어지는 일종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저축을 불리하게 보잖아. 저축만 해서는 안 되는 거 같아서 투자도 하게 됐어. 재테크 사이트에도 가입을 해서 보는데, 여기 가면 어디 금리가 높은지 다 나오니까... 작년에 이자율 8%일 때, 예금 다 집어넣어놨잖아. 지금 3%로 떨어졌는데. (웃음) 그래서 계속 봐야 돼. (중략) 친구들이 다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CMA이율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미리 넣어놔라' 그런 작은 거라도 알려주면 알았다 그러고, '요즘에 일본이 뜬다더라', '베트남이 뜬다더라' 그러면 알았다고 넣었다가 아닌가 싶으면 얼른 빼지."

타인의 주거수준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나와 어울릴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속물적인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끼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해가지고 더 높이 가야겠다는 것 까진 아니지만, 착실하게 돈만 벌어서 살 생각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거 같거든.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내 살 집만 마련해서 만족하고 살아왔는데, 만약에 조금만 욕심 부렸다면 분명히 더 나았을텐데, 내가 거기까지만 하면 많은 건 얻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

부족할수록 풍족한 생활을 꿈꿀 것 같지만, 인터뷰 응답자 중에는 오히려 충분한 생활비를 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비규모 자체를 줄여버린 케이스도 있었다. b와 d는 한 달에 30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가지고 주거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해결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차피 일을 해도 소비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바에 일을 적게 하고, 소비도 하지 않는 편을 택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고, 돈이 떨어지면 집 밖으로 안 나간다.

"돈 떨어지고 일 못 구하고, 그럴 땐 외출을 안 해. 일주일 동안 방 밖에 안 나간 적도 있었어. (중략) 옷을 안사서, 학교 다닐 때 샀던 옷들이 낡아지고 있어. 가장 먼저 안사는 건 옷이고, 책을 무조건 중고책방에서 사. 그리고 조조로 영화관 가는 게 아니면 영화는 다운받아 보거나 안 보고, CD 안 산 지는 오래 됐고, 친구 생일이 있어서

선물을 사야하거나 그러면 그 달은 책 사는 돈을 줄여. 친구들 만날 때는 편의점이나 근처 초등학교에도 가고, 술 마실 때는 싼 술집에 가지... (중략) 책을 사든 옷을 사든, 그건 내가 참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병원은 가야 되니까. 병원비라든가, 돈 떨어지면 지방 부모님 집에 내려갈 차비 정도는 늘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지.”

학력과 임금이 세대 내 불평등의 잣대가 된다면, 세대 간 불평등은 어떨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20대들과 이들에게 급여를 주는 직장상사,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d는 미술학원에서 10개월 째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이름만 인턴이지, 청소, 홈페이지 관리, 수강료 접수, 출석부 점검, 신입생 상담 등 자질구레한 일을 모두 도맡아 한다. 매주 5일 동안 오전, 오후 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일하고 나면 한 달에 35만 원을 받는다. 적은 액수지만, 미술학원 공부도 하고 싶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턴일을 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학원비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1년을 채워 일하고 나면, 일이 끝난 후에도 자유롭게 학원에 와서 작업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계속 일한다고 월급이 오르지는 않는다.

학원 직원들의 급여는 인턴들과 몇 십 배 차이가 난다. 학원 강사의 경우, 수강생이 몰리는 입시철에는 월급으로 천만 원 이상도 받는다. 학생들이 늘어나면 청소도, 홈페이지 관리도, 수강료 접수도 상담도 늘어나 일을 더 많이 해야 하지만, 인턴들의 급여는 변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원장이 인턴에게 세무서 세금 신고를 맡겼는데, 학원의 수입지출 현황을 사실대로 썼다가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카드 수입은 그대로 신고하고, 현금은 600만 원 정도 누락해서 신고를 마쳤다.

지난 해 첫 직장을 외국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시작한 c는 취업한 지 한 달 만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시점이다. 몇 번의 회의가 열리고, 신입부터 차례대로 잘렸다. 첫 직장에서 한 달 만에 해고당한 이력 때문에 트집을 잡힐까봐 서류에는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IT 관련 중소기업에 파견직으로 취직했다. 같은 IT계열 종사자인 h는 비정규직 복직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증권거래소에 파견 업무를 나갔었다.

"서울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 연봉을 좀 깎고, 채용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증권거래소 신입 연봉이 4500만 원이예요. (중략) 과장 같은 사람들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을 거의 안 해요. 관리직이니까. 그런데 연봉이 1억 7천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 연봉 줄이면 신입 몇 명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c는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 대기업 건설회사 파견 근무를 6개월 간 다녀왔다. c에게 '꿈의 집'은 아파트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집 주인이 말만 하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움직여 밥도 하고 빨래도 해주는 그런 곳이다. 마침 파견 나갔던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유비쿼터스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간 고급 빌라 건설이었다. 강남 지역의 한강 근처에 위치한 120~140평대의 이 빌라는 '서울 상위 0.1%'를 대상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웬만한 계열사 사장도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이곳은 홍보용 책자 50부를 주문제작 하는 데만 몇 천만 원이 투입되었다. c는 지난 6개월 간, 비좁은 고시원에 누워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참으며 나름대로의 휴식을 취하고, 이 빌라의 IT 전산망을 설계하는 일을 하러 직장에 나갔다. 여전히 그는 이 고시원의 월세 35만원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소득의 1/3을 고시원에 쏟아 부으면서 부유층을 위한 고급빌라를 설계하고 있는 모습을 '세대 간 갈등'이라는 플롯으로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0.1%'가 꼭 중장년층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대에 고급빌라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부모의 재산 증여로 출발점부터 달라진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20대에게 펼쳐지는 세계는 고급빌라 보다는 '신입부터 해고'이거나 '월급 35만원의 평생 인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세계를 창조한 것은 '신입부터 해고 한' 또는 '월급 35만원을 주고 있는'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세웠던 가설이 하나 있다. 인터뷰 응답자들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들은 회사에 가면 '신입부터 해고'하고, 집에 오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월세를 더 받아내려고 궁리하는 돈 많은 괴물들이 아닐까? 궁극적으로 강남에 투자하기 위해 서울 외곽지역에 부실한 원룸 건물들을 뚝딱 세워놓고 몇 년 째 월세 수입을 쫙 뽑아

내고 있는 비열한 투기세력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을까?

하지만, 인터뷰 응답자들이 거쳐 간 총 33개 주거지에서 부동산 입대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집주인들은 의외로 적었다. 물론 모두가 중장년층에서 노년층 사이긴 했다. 건물 몇 채를 운영하는 '큰 손'들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재테크 수단으로 원룸을 구입해 두었거나 주요 소득 외에 용돈 벌이 개념으로 집에 딸려 있는 반지하나 옥탑방을 개조해 세를 놓았고, 때때로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자기 집을 세 내놓고 더 열악한 주거지에서 살아가는 노인들도 있었다. 중장년층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세대 착취가 극심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소규모 재테크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눈에 띄었다고는 하나,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왜 모두가 부동산에 목을 매고, 투기에 가담하는 것일까?

부동산 재테크 경우, 그 행위 자체를 두고 비난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투기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규제 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함으로서 횡행했고, 저축이나 투자보다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특히 IMF 이후,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노출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선택한 자발적인 '생계대책'이기도 하다. IMF 이후 일본식 종신고용제가 해체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거 양산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여파는 개별 가구 단위의 자구책 마련으로 이어졌고, 바로 이것이 '전 국민의 재테크 참여'를 이끌었다.

부동산 '투기' 혹은, '재테크'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세를 내놓는 원룸 주인들이 바로 그들의 부모이기도 하다. 불안한 사회에서 자식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물려주고자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바로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구조를 공고화하는데 기여했다. 결국, '내 새끼' 잘 키우자고 일어난 전 국민의 재테크 참여 운동은 역설적으로, '내 새끼'들의 주거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다. 원룸을 많이 소유한 부모를 둔 자식이 아닌 이상, 열악한 고용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당신', 월세를 내야한다. 월세를 내서, 내 또래인 집주인의 자식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 했는가'가 대대손손 빈부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

는 사회구조는 앞으로 더욱 더 소수의 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20대들을 '빛나는 경제 성장'의 수혜로부터 소외시킬 것이다.

4. 3.6평짜리 상자에 갇힌 삶 - 최저기준 확보

주거의 최저기준을, 공간의 크기와 추위·습기·더위·비·바람을 막을 수 있느냐로 가늠한다면, 대체로 최저기준이 확보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옥탑방이나 쉽게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는 반지하, 그리고 폭우가 오면 침수되는 저지대를 제외하면 건축설비 자체가 부실한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대체로 최저기준은 통과한다. 공간의 크기도 마찬가지다. 2004년 6월 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최저기준에 대입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인터뷰 응답자 8명 중 5명이 10평 이하의 방에서 살고 있었다. 실평수는 그보다 작으니까 실제로는 10평도 안 되는 비좁은 공간이 대부분인 것이다. 고시원에 살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2평 남짓 되는 공간에 몸을 딱 끼워서 자야하는 답답함을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최저기준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의 구성은 방 1개와 부엌1개가 딸린 12m², 즉 3.6평에 불과하다.[20]

---

20) 건설교통부 최저주거기준. 출처「개발지역세입자 등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아래처럼 가족 단위에 따라 주방과 방으로 주거를 구성하는 방식은 미국식 핵가족을 위한 주거에서 유래한 것이다.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는 현재에도 적절한 구성인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1.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 주거면적(m²)
1	1인 가구	1K	12 (3.6평)
2	부부	1DK	20 (6.1평)
3	부부+자녀1	2DK	29 (8.8평)
4	부부+자녀2	3DK	37 (11.2평)
5	부부+자녀3	3DK	41 (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49 (14.8평)

주1 : K;부엌, DK;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주2 : 침실분리기준 : 부부침실 확보,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침실분리, 만 8세 이상 이성자녀는 상호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2.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확보

3. 구조·성능·환경 기준 :
- 영구건물로서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확보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구비
-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이미 10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 면적이면 핵가족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최저기준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3.6평 안에 방과 부엌이 들어있고,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거가 '최저기준'으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할 사람들이 오늘도 몸에 꽉 끼는 침대에 누워 잠을 설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인구 당 면적의 절대적인 한계 때문에 최소면적 기준을 넓히기 어렵다면, 다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쾌적한 공동시설을 만든다든지, 공간의 높이나 창문 크기, 벽 색깔을 조절해 시각적 해방감을 제공한다든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수납공간을 구석구석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도 고민해야 한다. 좁은 공간에 갇혀 강박적으로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동물원의 맹수들로 충분하지 않은가.

5. '악성인구프랙털'[21] 깨기 - 적절한 위치와 접근 가능성

대부분의 인터뷰 응답자들은 스스로 적절한 위치와 접근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로 이주해온 경우이다. 20대가 독립을 결심하는 이유에는 내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싶다'는 욕망, 외적으로 취직이나 진학을 위해 도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조건이 함께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부분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터뷰 응답자들은 이주의 목적을 진학이나 취업이라고 말하는데, 일자리는 물론이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직업학교나 학원을 다닐 때에도 지방보다 서울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의 인구유입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당분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과 도시의 불균형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경기도를 서울시에 편입시켜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적절한 위치와 접근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인구밀도를 분산시키고, 지방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개개인의 노력과 경제적 부담을 통해 도시 이동은 지속되고, 그것은 더욱 심각한 주거환경 악화(인구 대비 주거

21) "인구프랙털", 한겨레, 2005.08.18일자 기사 참조. '프랙털(Fractal)'은 부분이 전체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구조를 가리키는데, 이 기사를 쓴 김지석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전국적으로 도시에 인구 대부분이 밀집해 살고 있는 한국의 인구분포도가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면적이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를 가져올 것이다. 2002년 이미, 서울은 한국의 중앙행정 기능의 100%, 경제기능의 76.1%, 정보기능의 93.6%, 국제기능의 92.7%를 보유했다. 국토면적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100대 기업체 중 95개, 공공기관의 90%가 몰려있고, 금융기관 대출의 64%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2008 : 78p) 수도권만이 문제는 아니다. 도 단위 기준으로도, 도내 절반가량의 인구가 광역시에 몰려있다.

현재 상태에서 도시의 임금 수준이 더욱 나빠지고,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비교적 땅 값이 싼 지방에서 살아가길 선택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낮은 인구밀도, 쾌적한 자연환경, 교통체증이 없는 곳, 그러나 동시에 일자리도, 명문대도, 멀티플렉스 극장도 없는 곳.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일종의 슬럼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 분산을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누구도 자처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재산 격차가 수입격차를, 수입격차가 사교육비 격차, 학력격차를 판가름하는 사회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가장 높고,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3장 참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면서 편리한 교통과 교육, 의료, 주거시설을 이용하기란 불가능한 것일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무언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도시의 주거불평등과 슬럼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대책에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6. 주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문화적 적절성

문화적 적절성은 ‘주택의 건설방식에 있어 그 재료나 형태 등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보장되려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모두 충족되면,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받는 상태가 이루어질까?

주거 현실에 비추어, 주거권에 관한 요구로서는 꽤나 고급스러운 ‘문화적 적절성’이

라는 기준은 모두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동이 잦은 삶, 평균적으로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조건 속에서 어쩌면 필요한 것은 만인의 ‘동등한 주택소유권’이 아니라, 만인의 ‘안정적인 점유권’이 보장되는 것일지 모른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고용 유연화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유연화를 하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취업과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비정규직이 되는 게 곧, ‘손해 보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일 수는 없을까?

8명의 인터뷰 응답자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거공간을 물었을 때,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대체로 도시 근교의 넓은 전원주택에서 도시를 오가며 살아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았다.

“애 키우는 재미로 살 것 같으면 지방이 좋은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려면 서울이 좋죠. 왜 구지 서울에서 사나 했는데, 문화적 혜택 때문인 것 같아요.”

“상반되는데, 녹지 공간이 충분한 곳이면서, 교통도 충족되는 곳. 아파트 꼭 안 살아도 되고, 동네는 안전한 곳이어야겠지.”

그리고 모두가 하나같이 ‘불가능하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곤 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8명 중 3명은 아파트를 특별히 추구하지도 않으며, 집을 소유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월세의 부담이 없는 전셋집 정도만 가지게 되어도 만족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결혼을 이미 한 사람도 2명 있었고, 장래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며, 가까운 사람들과 쉽게 오갈 수 있는 정서적·이념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꿈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지금과 같은 주거 현실 속에선 한 때의 허무한 공상에 불과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주거형태에 대한 이와 같은 상상은 사실, 다양한 지향을 고려한 주택 보급으로 이어져야 한다. 서울과 같은 글로벌한 거대 도시로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일본의 도쿄에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조건과 지향에 맞추어, 공간 활용도가 높은 주거시설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건설업계 2위 기업인 〈다이와 하우스 Daiwa House>는 평균 63m²(약 20평) 크기의 공간에 거주하는 도쿄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면서도 공간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디자인의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 70여 가지 형태의 조립식 소형 주택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신규주택 건설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주택보다 2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22)]

주목해야할 점은, 밀집된 공간 제약 속에서 다양한 주택양식을 꽃피워 보려는 접근 방식이다. 한국의 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는 건설 대기업들이 큰 분양지를 얻어 높은 이익을 뽑아내기 위한 건물들만을 지어낸다는 점도 작용한다. 건설 회사들이 거품을 빼고, 정말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주택을 건설하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아직 실험 중에 있지만, 자원낭비를 줄이고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도 있는 '컨테이너 주택'처럼 주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23)]

최근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통해 양산된 초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오로지 높고, 크고, 미래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도시 경관에 대한 미학적 감각이 상실된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5~600m 높이의 각종 '타워'들이 '서울의 랜드마크'를 자처하며 설계되고 있다. 아파트는 다세대가 모여 살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 에너지가 절약되는 주거형태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파트는 평균 수명이 매우 짧다. 영국은 141년, 미국은 103년, 프랑스는 86년, 일본은 30년인데 비해 한국은 14.8년으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24)] 모두가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파트 평균 수명이 14년 안팎인 것은 문제가 많다. 재건축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도 문제지만, 건축물 폐자재는 더욱 골치 아픈 환경파괴주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미 몇몇 연구 보고서 등을 통해 음성제어 시스템, 다기능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주택들이 설계되었다.[25)]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모든 기술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평등하

---

22) KBS 2TV 다큐 해외걸작선 <도쿄의 공간 절약법> 2009.07.04 방영분 참조

23) "'들고 다니는 우리집'…부동산이 아니랍니다", 한겨레, 2009.03.19

24) "논두렁아파트, 병풍아파트... 아파트 다시 생각하기", 오마이뉴스, 2008.04.21

25) 이연숙, <오고 있는 미래, 반응하는 세계주택-미래가능성주택 산업기술과 고부가가치 주거문화창조를 위한 창의적 지혜와 실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제14장 "한국의 미래주택관 'Human space'"를 참고하면, 21세기 전반부에 등장할 신세대 소형 주택, 현대판 전통삼대동거주택, 우주선을 빗대어 만든 '캡슐 하우스', 미래건강주택 유형을 만날 수 있다.

게 보급되지는 않는다. 모든 유행과 최첨단 기술의 보급을 주도하는 것은 상위계층이다. 상위 0.1%를 위한 최첨단 미래주택이 건설되는 가운데, 창문도 없는 2평짜리 고시원, 햇빛이 들지 않는 반지하에 많은 젊은 세대가 들어가 숨 쉬고 있는 현실이 공존한다. 사회 전체가 상위 0.1%를 위한 건축에 들이는 노력과 자원을 현존하는 최저기준 이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돌린다면,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혈압과 당뇨를 체크해주며 건강염려증을 조장하는 미래주택보다, 이미 있는 공간들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가꾸어 나가는 미래주택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Ⅳ. 맺음말 : 새로운 주거권 논의를 향해서

처음 20대 주거권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물었던 것은 “그래서 주거권이 주택을 말하는 거냐, 아파트를 말하는 거냐”라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주거권에 관한 논의는 80년대 빈곤문제 연구소 등에서 시작되어 꾸준히 이어져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무소 등을 통해 천천히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거이자 주택이기도 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한, ‘주거권’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았다.

지금까지 주거권 연구는 철거민이라든가, 노숙자, 장애인, 성매매여성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연구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수적으로 절대 소수가 아니기에 하나로 잡히지도 않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기엔 뭔가 조금 모자란 20대의 주거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오늘도 을지로 입구에는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상가 바닥에 침낭을 깔고 잠을 청할 것이고, 빈곤층으로 밀려난 4·50대 가장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시원의 좁은 방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심지어 2009년은 용산도심재개발 지역에서 대책을 요구하던 세입자들의 참사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20대 주거권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누가 더 빈곤한가, 누가 더 끔찍하게

살고 있는가를 경쟁적으로 증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고통 받고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내고 있었다. 따라서 주거권이라는 개념도 변화가 요구된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가 열렸고, 과거에 비해 직장의 이동이나 국내외로의 여행이 잦아지는 등 이동성이 높아진 삶은 나이가 들면 정착하는 전통적인 생애주기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

결혼을 통해 아파트형 핵가족으로 도시에 정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안정적인' 점유만 가능하다면, 주택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생겼다. 인구의 절반이 5채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주택자로 살아가고 있는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가구 1주택 소유를 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지향을 고려하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주거권 논의는 진화해 가야 한다. 또한, 이런 점에서 20대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20대만을 떼어놓고 이야기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가 비록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20대의 주거를 설명해내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관해 거칠게라도 화두를 던져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높은 주거비용,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라는 세 가지 축이 만나, 지금의 20대는 일종의 계급으로 작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앞서도 말했듯이 20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균질한 집단이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대의 경제적 취약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가족 내에서 해결되고 있다. 어른이 되어야할 20대가 자발적으로 부모와의 삶을 택하고, 부모세대가 다 큰 자식을 오래도록 부양하는 상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감춰버린다.

유럽의 '천유로 세대'와 다르게 한국의 '88만원 세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이라는 취업형태가 한국에서 유독 치명적인 이유는 그들의 실업이나 직장의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호해주는 아무런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IMF 직후, 한국사회는 대기업 경영자들의 잘못된 투자방식과 정격유착으로 벌어진 위기를 국민 개개인이 집안에 보관해둔 금을 꺼내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지금은 주거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재테크’를 위한 부동산 투기 또한, IMF이후,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 없이 살아남아야 했던 가족단위 생존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각자가 생존을 위해 싸워야했던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한국사회에 약자에 대한 보호망이 전무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들이다. 앞으로 20대 대다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인 주거를 해나가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20대 주거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인 논의의 차원에서 해결되는 경험이 우리 안에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혼부부에 밀려, 기성세대에 밀려, 20대의 주거권은 맨 마지막으로 물러난다.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집단은 노동을 통해서든 노동력 생산을 통해서든 사회에 좀 더 기여를 많이 한 쪽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전체가구 중 22.4%가 1인 가구이며, 이 중 43%에 달하는 인구가 25~34세 사이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1~2인 가구용 도심 소형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고시원 등 불량 건물에 의해 낙후된 주거품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미관에도 기여하겠다는 건설업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규제완화와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면,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한 주택설계는 돈 많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고급개인주택의 건설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26] 이처럼 20대 주거의 문제는 정부에 의해서도, 20대를 주 고객으로 둔 대학에 의해서도,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 등장한 20대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20대를 설명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특정한 방법으로 모집된 8명의 응답자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20대의 전반이 처한 ‘어떤 상황’을 단편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 20대 주거권에 관한 논의가 지금까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이번 논의의 출발과 결론이 다소 불명확함을 필자도 느끼고 있다. 수많은 통계들이 한국사회의 주거권 실태를 고발하지만, 명확한 것 같은 통계수치들 속에서 헤엄치다 보면 또 다시 문제의 본질이 어렴풋해짐을 느꼈다. 그런 어렴풋함 속에서 20대 주거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질문을 던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한다.

‘20대의 주거권’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해, 한국사회 주거불평등의 구조와 원인을

26) “‘1~2인용 전용주택’ 브랜드 속속 나와”, 한겨레, 2009.02.01

살펴보는 등 주거 문제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20대도, 주거도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땅에 대한 성찰인지도 모른다. 땅 위에는 인간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다. 약 2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집도, 이렇게 많은 인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화가 진행되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는 땅 위에서 다른 생물들을 몰아내고 도시를 세웠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서"[27] 오늘도 사람들은 이사 갈 준비를 한다. 정기용의 말대로,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삼성에서, 현대에서, 롯데에서, 거주자가 아니라 '재산관리인'으로서 살아간다.

주거권의 확대라는 주제가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틈새까지 구석구석 개발하고, 개발의 결과를 모두가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라면, 뜻을 함께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거를 매개로 인구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생애주기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 등을 연결지어 생각하면서 삶과 연결된 주거의 영역을 살려내는 것, 주거를 매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으로,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지도 모르겠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 개마고원, 2008,

마이크 데이비스, 김정아 역,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2007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이연숙, "오고 있는 미래, 반응하는 세계주택-미래가능성주택 산업기술과 고부가가치 주거문화창조를 위한 창의적 지혜와 실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정기용, "사람, 건축, 도시", 현실문화, 2008

27) 정기용, <사람, 건축, 도시>, 현실문화, 2008. 22p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한국도시연구소,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항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5

박재흥,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2009년 봄호 (통권 제81호)

서종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권 운동“, <도시와 빈곤>, 2000년 2월 (통권 42호)

장경석·김준형, “대학생 주거비부담 연구 : 서울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대학생주거복지와 정책과제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2002

홍인옥, “주거권 지표개발”, <도시와 빈곤>, 2007년 9월 (통권 87호)

다큐멘터리 영상자료

KBS 2TV, 다큐 해외걸작선 <도쿄의 공간 절약법>, 2009년 7월 4일 방영분.

MBC, PD수첩 <부자 대학, 가난한 학생>, 2009년 4월 7일 방영분.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일반부분

조기성 /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임용덕 / 경기 산본초등학교 교사
정영찬 / 인천 안산초등학교 교사

2007 개정 초등 저학년 교과서를 활용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 탐색

– 2007 개정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



목 차



요 약 ····· 368

제1장 서론 ····· 369

제2장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인권교육의 의의 ····· 370

제1절 인권교육의 동향 ····· 370

제2절 학교 인권교육의 단계적 적용의 필요성 ····· 371

제3절 초등 저학년에서의 인권교육 방안 모색 ····· 375

제3장 초등 저학년에서의 2007 개정교육과정과 인권교육 ····· 378

제1절 2007 개정교육과정(총론)과 인권교육 ····· 378

제2절 초등학교 '통합 교과'와 인권교육 ····· 378

제3절 통합 교과의 인권교육 내용 체계 분석 ····· 383

제4장 초등학교 통합교과 인권교육 내용안 ····· 385

제1절 바른 생활과 인권교육 내용안 ····· 385

제2절 슬기로운 생활과 인권교육 내용안 ····· 389

제3절 통합교과에서의 인권교육 외연 확장 : 즐거운 생활과 ····· 393

제5장 초등 저학년에서의 인권교육 수업안 개발 ····· 394

제1절 1학년 인권교육 수업안 ····· 394

제2절 2학년 인권교육 수업안 ····· 399

제6장 결론 및 제언 ····· 402

참고문헌 ····· 404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첫 적용된 현 시점에서 개정 교과서를 활용하여 초등 저학년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새롭게 제작될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인지발달에 따라 단계적으로 초등 저학년부터 인권교육 요소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UN의 인권 기준을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고, 이 기준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인권적 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의 준거안으로서 인권교육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들 내용은 1)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교육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수준을 파악하여 아동이 흥미를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발견하고, 2) 특히, 연구가 미진한 저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UN의 인권 기준에 따라 자아 존중 및 타인 존중, 인권원리들을 지지하는 학급 문화의 발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3)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저학년 인권교육의 중추적인 교과인 통합교과를 통하여 인권교육적 내용 요소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권교육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예시자료로서 초등 저학년의 인권교육 수업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근거하여 저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인권교육의 목표 설정과 함께 인권교육의 내용 및 수업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프로그램화한다면, 학교 인권교육은 유엔의 국제적 기준에의 도달 및 향후 학교 인권교육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탄력으로 아동들의 인권을 보는 시각 변화와 의식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학교 인권교육의 대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새로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에 의거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교과서 집필과정에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게 될 학교 교과서에 인권 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초·중등 인권교육과정시안 개발,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인권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2월에 고시된 새로운 초·중등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인권교육' 개념이 도입되어 초등학교에서부터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영어 등 통합교과 형태로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덕과목과 사회과목에서 집중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인권교육이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에서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인권관련 교육으로서 장애인 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포함돼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권교육 10개년 후속조치로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권고사항, 즉 초·중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 권고를 이행하게 됐다. 초·중등 학생 때가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학교가 입시위주의 환경으로 인해 많은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도입되는 것은 학교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친인권적 학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이루어지도록 제시됨에 따라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인권교육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많이 개발되었지만, 초등 저학년에 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새롭게 제작될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부터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수준에서 적용해야 하는 인권 기준[1]을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2]의 준거안으로서 인권교육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시켜 통합교과별로 개정된 교과서를 활용하여 초등 저학년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장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인권교육의 의의

제1절 인권교육의 동향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에 따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OHCHR, 2007 : 23~24).

> 지식 및 기능의 제공과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 인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지향하는 훈련, 보급 및 홍보를 위한 노력
> a)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 b) 인간의 개성과 그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개발
> c) 모든 국가, 원주민, 인종·국적·민족·종교·언어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성 평등, 우호관계 증진
> d) 모든 사람들이 자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부여
> e)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

1) 초등학교는 아동들이 가정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지식, 경험을 접하게 되는 곳이다.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도 깨닫게 된다.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인권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인권을 의식하는 기본 생활태도, 자신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구정화, 2004 : 58). 이러한 중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교육체계안(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한다.

2) 인권 친화적(Friendly Human Rights)이라는 것은 '인권을 중요한 학습 내용요소로 다룬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권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내용을 구성하거나 삽화를 구성한다.'는 것이다(강명숙, 2007). 인권교육이 강조된 교과서에서는 "①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②인권협약 내용을 제시한다, ③삽화나 사진에서 인권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 ④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인권 침해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실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활용한다."등의 인권 친화적 집필기준을 교과서 분석 단계에서 준수하였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학교교육체제에 흡수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전략에는 다양한 실행과정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사와 아동들에게 수업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과 '교육적 자료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권교육은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통합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교실에서 인권교육의 원리들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하여 대상 아동의 발달단계와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인권에 관한 일련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모든 협약과 선언문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같은 모든 주제들은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규범적 준거의 틀을 제공해주는데,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핵심내용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두 문서는 경험을 평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원리들과 아이디어들을 제공한다 (OHCHR, 2007 : 26).

이러한 문서들이 지적인 중요성 이상의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은 그러한 사실과 기본 요소들을 자신들의 실제 생활 경험의 기반 위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정의, 자유, 평등에 관한 그들 자신들의 이해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초점은 외부의 문제와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 자세 및 태도와 같이 내부로도 향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고 인권을 위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권교육은 독립적인 연구·분석 및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참여적 방법론(participatory methodologly)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제2절 학교 인권교육의 단계적 적용의 필요성

세계인권회의의 요청에 따라, 1994년 유엔 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유엔 인권교육 10개년[3]으로 선포하면서, "인권교육은 정보의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되

3) 1994년 12월 23일 유엔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권장하였다. 이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유엔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 - 인권교육 : 삶을 위한 교훈'에 잘 드러나 있다.

며, 모든 발달단계와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회에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종합적인 평생과정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OHCHR, 2007 : 23). 이후에 유엔은 이의 맥을 이을 필요가 있다고 하여 학령기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의 2005~2009년에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일명 NAP : 2007~2011)[4]을 통해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교과서에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인지적 교육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관점은 Piaget[5]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Piaget는 인지 발달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이 있다고 하였다. [표 1]에서 Piaget의 인지 발달단계에 따른 인권교육의 단계적 접근법[6]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각국 정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모든 인권에 관한 존중과 보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있다.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 NAP)은 2007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보인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시민 정치적 권리보호, 사회보장권, 노동권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년 8월 9일 - 1980년 9월 16일)은 스위스의 철학자, 자연과학자이며 발달심리학자이다.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연구인 인지발달이론과 자신의 인식론적 관점인 "발생적 인식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55년 제네바에 발생적 인식론 국제 센터를 창립했고, 1980년까지 지도적 위치를 맡았다. 에른스트 폰 글라저스펠트(Ernst von Glasersfeld)는 피아제는 "구성주의 인식론의 위대한 선구자"라고 했다.(출처 : 위키백과)

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2007), 『학교 인권교육 길잡이 - 유엔의 초·중등학교 인권학습활동 안내서』,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p.27.

[표 1] Piaget의 인지 발단단계에 따른 인권교육의 단계적 접근법 비교

단계	사고의 특징	인권교육의 단계적 접근법 중 주요 개념	
		단 계	목 표
전조작기 (만 2~7세)	①상징의 발달 ②자기중심적 사고 ③물활론적 사고 ④직관적 사고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만3세-7세)	•자아존중 •부모와 교사 존중 •타인존중
구체적 조작기 (만 7~11세)	①자아중심성과 사회화 ②변환 ③가역성 ④ 보존개념 ⑤논리적 조작	초등학교 고학년생 (만8세-11세)	•사회적 책임 •시민의식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 권리와 구분하기
형식적 조작기 (만 11~15세)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든 11~12세 이후 아동들이 사고는 완전히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범위까지 확장된다.	중학생 (만12세-14세)	•세부적 인권에 대한 지식

[표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7세 이전(전조작기) 아동들의 사고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생각한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시기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선물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꽃핀을 선물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 시기의 인권교육 단계별 접근법에서 보면 이 시기의 인권교육의 주요 목표는 자아존중, 부모와 교사 존중, 타인존중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여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도 깨닫게 된다. 아동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존중)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에 맞추어 아동 자아를 표현하고 경청하고, 타인에게 피해(감정적, 신체적)를 주는 것의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시킴으로써 점차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슬기로운 생활에서의 주요 핵심인 기초 탐구 능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인정 및 존중의식은 탐구 생활의 기초가 되며, 탐구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존중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들은 전조작기 아동과는 달리,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보존문제

를 해결하고 자신의 대답에 관한 옳은 추론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사고와 지각 간의 불일치에 직면했을 때, 보존문제들에서처럼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지각적 결정과는 반대로 인지적이고 논리적 결정을 한다. 아동은 더 이상 지각적 경계에 머물지 않으며, 7세와 11세쯤이 되면 전조작 아동의 지적활동을 제한하던 모든 인지적 조작을 할 수 있다.

즉, 구체적 조작기 아동과 인권발달단계의 교육법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하다. 전조작기 아동의 사고는 자아중심성에 의해 지배되고, 타인의 관점을 추측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고의 타당성을 찾으려는 욕구가 부족하다.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사고는 이러한 측면에 자아중심적이지 않다. 이 시기 아동은 타인과 자신의 견해가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아동은 자신의 사고의 타당성을 찾으려고 한다. 이 시기의 인권교육의 주요 목표는 사회적 책임, 시민의식,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 권리와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인권교육의 실행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두 단계 모두 논리적 관점에 의해 여러 가치를 구분하고 인정할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들은 사고가 완전히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범위까지 확장된다. 발달은 구체적 문제에 대한 논리적 해결에서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 해결로 진행된다. 이상적인 감정과 성격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인권 교육 발달단계는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인용하는 실행을 통해 세부적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들이 추상적 사고를 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 및 이상적인 감성을 이루는 것이 인권교육 발달단계의 주요 개념과 실행을 해 나가는데 일치한다.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2007)가 제시한 인권개념의 단계적 접근법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고, 아동의 인지발달단계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흥미를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교실에서 인권교육의 원리들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하여 인권교육은 대상 아동의 발달단계와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OHCHR, 2007 : 23).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구체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태도를 기르는 데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이 인권교육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어린이 성장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권을 존중하는 성인으로서 자라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는 기존 학교 교육과정에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인권문제들을 교과목에 통합시켜 수업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3절 초등 저학년에서의 인권교육 방안 모색

1. 초등 저학년에서의 인권교육 목표와 내용

저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자아 존중 및 타인 존중, 인권원리들을 지지하는 학급 문화의 발달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기본적인 인권문서들의 근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인권문서의 좀 더 복잡한 내용에 대한 교육은 개념 발달 및 분석적 추론 능력이 좀 더 발달된 고학년에게 적합할 것이다(OHCHR, 2007 : 25).

아래의 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인권개념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제시한 것 중,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 해당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서 본 연구에 부합되는 부분이다.

[표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교육체계안(초등학교 저학년 단계)[7]

단계	목표	주요 개념	실행	세부적 인권문제	인권기준, 제도 및 기제
아동기 초반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만3~7세)	-자아존중 -부모와 교사 존중 -타인존중	-자아 -공동체 -개인 책임	-의무 -자아표현/경청 -공정성 -소집단 활동 -협력/분담 -민주주의 -개별 활동 -갈등 해결 -원인/결과의 이해 -타인의 입장 이해	-인종차별 -성차별 -불공정성 -(감정적,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학급규칙 -가정생활 -공동체 규범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위의 인권교육 체계안을 바탕으로 한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의 목표는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데 있다. 이것은 전체 인권문화의 기반이 되는데, 이러한 목표를 이룸으로써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기초를 닦아 결과적으로 인권원칙을 우리 인간의 삶에 최대한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 및 문화에 인권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 과정은 인권에 관한 학습내용을 통합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이 현재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교실과 학교를 벗어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축적해 나가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2. 초등 저학년에서의 인권교육 방법

초등 1, 2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무엇

7) [표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교육체계안(초등학교 고학년 단계)

단계	목표	주요 개념	실행	세부적 인권문제	인권기준, 제도 및 기제
아동기 후반(위의 것 모두 포함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생 (만8~11세)	-사회적 책임 -시민의식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 권리와 구분하기	-개인의 권리 -집단 권리 -자유-평등 -정의 -법치주의 -정부-안보	-다양성의 가치 인정 -공정성 -사실과 의견 구분 -학교 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	-차별/편견 -빈곤/기아 -불법(부당함) -민족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수동성	-인권의 역사 -지방, 국가의 법체계 -지방, 국가의 인권관련 역사 -UNESCO, UNICEF -비정부기구(NGO)

을, 왜 가르치는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인권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 1, 2학년 학생은 인지적으로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이행하는 시기로서, 대체로 논리성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며 실제로 보이는 것에 사고의 근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점차 학교 등 집 밖의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의 대상이 가족에서 또래 친구들로 확장되면서 사회적 능력과 태도를 기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접근보다는 구체적인 체험과 실천이 중요하며, 단순히 언어적 상호 작용이나 인식 차원에서 가치 규범을 접하기보다 실제로 조작해보며 행동하는 가운데 깨우침과 습득이 이루어져, 내면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해 가도록 하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즉,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한 지식 위주, 기본권 위주의 교육보다는 '인권을 통한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사고 및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아동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생활 관련 소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인권 침해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실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권을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이해하고, 인권을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권감수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각의 변화(구정화, 2009a : 1)를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다른 교과와 학교의 전반적 생활, 가정 생활 등과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초등 저학년에서의 2007 개정교육과정과 인권교육

제1절 2007 개정교육과정(총론)과 인권교육

(2) 운영

(아)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교과부, 2009a : 164)**

- 범교과 학습 활동의 통합적인 운영 :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사회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한 범교과 학습 활동을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 교육을 비롯하여 위의 지침 (아)항에 제시된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은 재량 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교과와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지침에 의하여 관련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서 학년별로 학교 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편성되어야 하고, 심도 있는 수업을 통하여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초등학교 '통합 교과'와 인권교육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진술로서, "국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정과 사회

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면서 학생들에게 ***타인 존중과 배려, 의사 소통 능력, 시민 의식, 인권 존중 의식***, 경로 사상 등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교과부, 2009b : 4)고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으로서 인권교육에 대한 실천의지를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반영하였다.

통합 교과는 단일화된 지식의 관점으로 구성된 학문이 아동의 사고를 제한하고 그들 생활의 경험과 유리되기 때문에 아동의 경험과 학습을 조화롭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학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학생의 생활과 관련하여 조화롭게 연계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생활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생활과 경험 중심으로 배열하는 통합 교육과정이 요구된다(교과부, 2009b : 89).

이에 따라 교과 간의 통합적 접근에서 벗어나 주제 중심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 교과별 내용 체계표를 대주제와 활동 주제 중심으로 구성(교과부, 2009b : 4)하였으며,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서 어떻게 학습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이나 놀이를 선정하여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통합 교과의 저학년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주제 중심 구성의 특성은 교과 및 수업에서의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적합함과 동시에 초등 저학년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의 방향을 잡는 데에 기본 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 '우리들은 1학년과'와 인권교육[8)]

'우리들은 1학년'의 개정 배경으로서 "타인 이해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 반영"이라는 부분은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타인 이해 및 배려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로서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성격과 행동 양식, 모습, 생각, 생활 양식, 문화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부분을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지낼 수 있는 타인 이해와 배려가 중요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교과부, 2009b : 23). 이에 해당되는

8) '우리들은 1학년과'는 개정 교과서가 교육청별로 따로 편찬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지침 분석에 한정하며, 교과서 분석 과정에서는 제외함.

구체적 활동 주제는 '다른 사람 배려하기', '더불어 생활하기'이며,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실천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권교육적 내용 요소가 반영되었다.

['우리들은 1학년' 교과의 성격]

3항 :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 및 가치 형성을 돕는 기초 교과이다. 우리들은 1학년은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학습하게 되는 교과로서,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고, 가치 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특별한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집단 생활에서의 기본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절과 규범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우리들은 1학년' 교과의 목표]

*** 기본적인 학교생활 규범을 익혀 학교생활을 바르게 한다.**

*** 바르고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을 즐겁게 한다.(교과부, 2009b : 24~27)**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친밀하고 깊이 있는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바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친구와의 사이에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면서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게 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교과부, 2009b : 27). 이 목표는 대주제 '즐거운 학교생활'과 연계되는 하위 목표로서 인권교육 관련 내용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처음 맞이하는 교과로서 인권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2. '바른 생활과'와 인권교육

['바른생활과'의 성격]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알고 익히도록 체험과 실천 중심의 통합 교과이다. 이를 위해 '바른 생활'과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학생의 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학습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바른 생활'과는 내 일 스스로 하기, 예절 지키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하기의 다섯 가지 대주제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강조하는 환경 교육, **인권 교육**, 정보 통신 윤리 교육, 통일 교육, 생명 존중 교육, 교통 안전 교육, 진로 교육 **등의 내용도 활동 주제에 반영하였다.**

'바른 생활'과의 교수·학습은 초등 1, 2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익히고, 바른 생활 태도가 **내면화 되도록 구체적인 체험과 실천을 강조**한다(교과부, 2009b : 57~58).

'바른 생활'과는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인권 교육의 내용을 활동 주제에 반영하였다고 교육과정에 명시함으로서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도 반영됨을 의미하며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상에도 인권교육적 요소가 다수 반영됨을 의마하기도 한다. 또한, 교과의 성격에서도 개인과 사회 생활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체험, 실천을 통한 내면화를 통해 아동이 인권적 요소를 습득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슬기로운 생활과'와 인권교육

['슬기로운 생활과'의 성격]

'슬생'과는 자신과 주위의 구체적인 사회 현상 및 자연 현상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탐구 활동 중심의 통합 교과이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은 가정, 학교, 이웃, 마을 등 일상생활의 장에서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학생들이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따로 학습하기보다는 통합하여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생'과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하여 살펴보기, 무리짓기, 재어보기, 조사/발표하기, 만들기, 놀이하기 등의 기**초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상 및 자연 현상의 상호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게 하며 바르게 판단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교과부, 2009b : 89).

위의 성격을 통해 '슬생'과 교육 내용은 일상생활의 장에서 접할 수 있는 세계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데 필요한 주제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선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의 장을 통해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탐구 활동 중심의 '슬기로운 생활'과 수업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인권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경험하고, 판단하도록 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슬기로운 생활과'의 목표]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에 대한 경험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며 슬기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나. 초보적인 탐구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주위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주위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하려는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교과부, 2009b : 91~92)..

위의 목표를 통해 '슬생'과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현상을 이해하고 슬기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 현상의 올바른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인권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아동의 기본학습 및 탐구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인권교육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는 데에 슬기로운 생활과에서의 인권교육적 의의가 있다.

제3절 통합 교과의 인권교육 내용 체계 분석

다음은 본고 4쪽의 [표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교육체계안(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을 분석 준거로 삼아 2007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통합 교과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1. 바른 생활과의 인권교육 내용 체계

[표 4] '바른 생활과'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체계표

학년	대주제	활동 주제	인권교육의 요소와 내용	교과서 관련 단원
1	내일 스스로 하기	- 몸 깨끗이 하기 - 자세 바르게 하기 - 스스로 준비하기	- 자아, 개인책임, 개별 활동, 자아표현/경청	1-1 2단원. 스스로 잘해요 1-1 4단원. 바른 자세 1-2 1단원. 나의 몸
	예절 지키기	- 바르게 인사하기 - 바르게 식사하기	- 공동체, 타인의 입장 이해, 학급규칙, 가정생활	1-1 3단원. 가족은 소중해요 1-2 3단원. 함께하는 한가위
	다른 사람 생각하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여럿이 함께 쓰는 물건 소중히 다루기 - 환경을 보호하기	- 공동체, 협력/분담, 소집단 활동, 원인/결과의 이해, 타인의 입장 이해, 갈등해소, 공동체 규범, 의무, 학급규칙	1-1 5단원 사이좋은 친구 1-2 4단원 함께 쓰는 물건 1-2 5단원 환경이 웃어요
	질서 지키기	- 차례 지키기 - 규칙 지키기	- 의무, 원인/결과의 이해, 학급규칙, 공동체 규범	1-1 1단원. 즐거운 학교생활 1-2 2단원. 차례를 지켜요
2	내 일 스스로 하기	- 몸차림 단정히 하기 - 물건을 아끼고 정리 정돈하기 -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	- 자아, 개인책임, 자아표현, 개별활동, 학급규칙	2-1 1단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2-1 2단원 계획대로 실천하는 생활 2-1 8단원 아껴쓰고 제자리에

학년	대주제	활동 주제	인권교육의 요소와 내용	교과서 관련 단원
	예절 지키기	– 바르고 고운 말 쓰기 – 가족끼리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기	– 공동체, 자아표현/경청, 가정생활	2–2 2단원 바른말 고운말 2–2 5단원 화목한 가정
	다른 사람 생각하기	–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약속 지키기 –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 – 생명을 보호하기	– 공동체, 협력/분담, 소집단 활동, 원인/결과의 이해, 타인의 입장 이해, 갈등해소, 공동체 규범	2–1 4단원 사이좋은 이웃 2–1 5단원 함께 사는 우리 2–2 1단원 소중한 약속 2–2 7단원 생명의 소중함
	질서 지키기	– 교통 질서와 규칙 지키기 – 공공 장소에서 질서 지키기	– 의무, 원인/결과의 이해, 학급규칙, 공동체 규범	2–1 6단원. 함께 지켜요 2–2 6단원. 지키면 안전해요

- 3~6학년의 도덕과와 연계되는 교과로서 전 영역에 걸쳐 인권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제별로 인권교육 요소를 추출하여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2. 슬기로운 생활과의 인권교육 내용 체계

[표 5] '슬기로운 생활'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체계표

학년	대 주제	활동 주제	인권교육의 요소와 내용	교과서 관련 단원
1	나의 몸	– 소중한 몸 – 건강한 몸	– 자아, 개인책임, 자아표현, 개별 활동	1–1 4단원 건강하게 생활해요 1–2 1단원 나의 몸
	우리 가족	– 우리 가족과 친척 – 서로 돕는 우리 가족	– 공동체, 협력/분담, 소집단 활동, 가정생활, 공동체 규범	1–1 3단원 가족은 소중해요 1–2 3단원 함께하는 한가위
2	자라는 우리들	– 커 가는 내 모습 – 자라면서 달라지는 역할	– 자아, 개인책임, 자아표현, 개별 활동	2–1 1단원 커가는 내 모습 2–1 2단원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을	- 소중한 우리 이웃 - 우리 마을 살펴보기	- 공동체, 협동/공유, 소집단 활동, 타인의 입장 이해, 공동체 규범	2-1 4단원 사이좋은 이웃 2-1 5단원 함께 사는 우리

- 슬기로운 생활과 내용체계의 큰 틀로서, 1학년에서는 우리 가족, 2학년에서는 우리 마을로 대주제를 선정하여 저학년에서의 인권활동의 장은 개인, 가정, 이웃, 학교를 포함한 일상생활 중심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고학년에서는 고장, 지역, 국가, 세계로의 인권활동의 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데에 밑거름이 되어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권교육의 첫 출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제4장 초등학교 통합교과 인권교육 내용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인권개념이나 체계적인 지식보다는 타인존중이나 공감하기 등의 기본적인 가치를 몸에 습관적으로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동들이 가정과 유치원을 넘어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접하게 되는 곳이다.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도 깨닫게 된다. 즉 이 시기에서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존중(긍정적인 태도)을 함양하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추구해야 할 인권교육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1절 바른 생활과 인권교육 내용안

바른 생활은 기초적인 가치와 규범을 가르치는 교과로서 아동이 보다 다양한 인권개념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인지발달 단계에 비추어, 인권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인권의 기초적인 가치인 다른 사람의 의사와 인격 존중하기, 배려, 공감, 상호의존성 등을 이해하고 몸에 익히는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학년 1학기 5. 사이좋은 친구

이 단원에서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몸에 익히도록 학습하는 단원이다. 특히 66쪽 '우리반 친구들에게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의 기본 이념을 인식하게 하는데 좋은 주제이다. 또한 72쪽과 73쪽의 '친구와 화해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아봅시다.'는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하고 있다. 인권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그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존엄성을 해하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인권 침해 형태임을 알게 할 수 있고,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인권의 기본 이념임을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역할 놀이와 연극을 한다면 좋은 인권교육 활동이 될 것이다.

1학년 2학기 4. 함께 쓰는 물건

4단원 '함께 쓰는 물건'은 나의 물건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한 여러 예시와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교실에서 함께 쓰는 물건, 학교에서 함께 쓰는 물건, 공공장소에서 함께 쓰는 물건 등을 소중하게 다루고, 아껴 쓰는 방법과 그 이유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개발권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인간다운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1학년 2학기 5. 환경이 웃어요

5단원 '환경이 웃어요'는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재활용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내용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분류 배출하고, 재활용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다. 환경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 보호 활동의 일환인 쓰레기 분리 수거를 생활화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권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전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환경보전 의무는 그러한 권리를 누리도록 서로가 지켜야 할 몫이다.

2학년 1학기 5. 함께 사는 우리

이 단원의 핵심어는 배려와 존중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자"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느 누구의 권리도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등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50쪽 삽화에서는 다문화 가정, 공공기간에 휠체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져 있어 이용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53쪽에서는 지하철의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좌석, 점자 보도 블록, 버스 안의 노약자 보호석, 휠체어 리프트, 유아를 위한 변기, 장애인 주차 시설에 관한 삽화를 제시한 후, 교사가 수업 중 설명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어 있어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원이다.

특히, 생활의 길잡이(52~53쪽)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한 사람씩 이야기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가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3) 내 생각을 정리하여 이야기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여 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 활동으로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게 하는 활동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60~61쪽의 삽화에서는 다양한 민족, 인종, 장애,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모두 어울려 손잡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단원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선 생각한 후, 나의 권리를 존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의 권리를 배려, 존중할 줄 아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 볼 것을 단원의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2학년 2학기 2. 바른말 고운말

이 단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바른말과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하고, 몸에 익히고 어른들에게 상황에 맞는 바르고 고운 말이 무엇인지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친구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존엄성을 해하는 가장 일상적인 인권침해 행태임을 알게 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인권의 기본 이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원에서 소개하는 말하기 놀이(21~22쪽)를 이용하면 좋은 실제적 인권교육 활동이 될 것이다.

2학년 2학기 6. 생명의 소중함

이 단원은 살아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고 나아가 주변의 동식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까닭을 지니는 것이다.

80~81쪽을 보면 우리는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내용과 삽화, 한편으로는 를 또 다치거나 사람이 죽는 내용과 삽화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과 오직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만으로 아무조건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준 단체 등(83쪽 예시)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생각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 존중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한 점은 생명권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좋은 사례이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자유권 규약 제6조에서

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슬기로운 생활과 인권교육 내용안

슬기로운 생활의 교육과정은 인권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과 잘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나를 둘러싼 사회와 자연 환경을 탐구하고 발표하며, 그 과정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표현의 자유권, 안전 및 보건권 등의 개념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슬기로운 생활의 교과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놀이함으로써 건강과 보건의 권리를 다룰 수 있고, 다양한 가족을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보육원 가족들을 인지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식물 살펴보기 및 주위환경 돌아보기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지구의 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인정 및 존중의식은 탐구 생활의 기초가 되며, 탐구생활을 통하여 증진시킬 수 있다.

1학년 1학기 1. 즐거운 학교 생활

본 내용은 학교 안 시설, 학교 밖 모습, 교통안전 생활 등 학교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는 단원이다. 또한, 교통안전놀이(16~19쪽)의 학습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 및 보건권 등의 개념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단원이다.

1학년 1학기 3. 가족은 소중해요

이번 단원은 가족을 소개하고 가족이 하는 일, 서로 돕는 가족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고 즐거운 가정생활을 위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주는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시된 삽화에서는 가족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가사 노동을 남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분담하고 있는 장면(아버지께서 다림질 하는 모습(40쪽)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단원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이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단원은 가사 노동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에서 여성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실현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원이다.

또한, 이 단원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대가족 사진을 삽입하여 핵가족화 된 현대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 단원이 다른 학년 및 교과의 모범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족 제시(38~39쪽)와 함께 바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삽화/사진의 제시(2컷), 보육원가족도 가족의 일부분이라는 삽화 제시 부분이다.

이 부분의 교사용 지도서(114쪽)를 살펴보면, 위의 내용과 같은 교과서 사진을 살펴보기를 통해 동기 유발 단계에서 다양한 가족 사진을 제시하여 다른 점을 찾고 학생 자신의 가족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대가족과 핵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에 대해 안내하되,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만 있는 가족', '외국인이 있는 가족' 등으로 사진을 보며 설명하고,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족, 핵가족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도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되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여러 모습의 가족이 있으며 이런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고 알려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의 일원인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고려하면서 인권친화적 관점의 교육을 서술하고 있다.

1학년 1학기 5. 자연과 함께해요

이 단원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피고, 살아 있는 것과 살아 있지 않은 것, 동

물과 식물에 대해 학습하는 단원이다. 본 내용은 아동들로 하여금 자연과 함께하는 내용을 학습하면서 주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애착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하여 각종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익힘으로서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권을 학습하기에 적합하다.

1학년 1학기 6. 와! 여름이다.

이 단원은 여름 날씨, 여름철 건강, 안전한 물놀이 등에 대해 학습하여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내는 법에 대해 학습하는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보건의 권리(건강을 향수할 권리)와 유급 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단원이다.

78~79쪽에 나와 있는 여름철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어 보건의 권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내는 내용의 전반적인 이 단원의 내용은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단원이다.

1학년 2학기 1. 나의 몸

본 내용의 목적은 관찰과 놀이를 통하여 나와 친구의 모습을 살펴보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본 후, 신체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는데 있다. 15쪽을 보면『몸이 불편한 친구를 돕는 방법을 생각하여 봅시다』와 연결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의 소중함을 알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부할 수 있다. 또한, 5쪽에서는 나의 친구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삽화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몸이 불편한 친구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장애인의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이 단원은 사회복지권이란 권리를 교유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단원이다. 사회복지권

은 국제인권협약 중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위 자유권규약이라 부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불법적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등 복지권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행위로 증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소수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국가에 대해 이를 청구할 권리와 관련된다.

1학년 2학기 4. 가을의 산과 들

본 내용은 가을의 산과 들을 배경으로 나뭇잎, 곡식과 열매를 찾아보거나 관찰, 자료의 수집, 분류, 표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가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자연 친화적인 행동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학년 2학기 7. 겨울 방학을 알차게

이 단원에서는 겨울방학을 보람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단원이다. 특히 건강과 안전, 안전하게 겨울놀이를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잠을 푹 자고, 편식 없는 고른 식사, 규칙적인 운동, 몸을 깨끗이 하는 생활을 제시한 후,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해 제시하여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안전하게 놀이하는 법을 구분하는 삽화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단원은 안전에 관한 권리와 생명권과 관련하여 교육할 수 있는 제재로서, 개인의 생명과 관련한 인간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제3절 통합교과에서의 인권교육 외연 확장 : 즐거운 생활과

이번 4장에서는 2007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 통합교과 인권교육 내용안을 살펴보았다. 올해(2009년)에 출판된 초등학교 1,2학년 개정교과서의 내용은 개정 전 교과서보다 세계인권선언의 권고 내용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교과서의 내용에서는 교과서를 사용하여 다양한 인권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드러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면서 학생들이 인권과 차별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무디게 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개정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바른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에만 관련내용이 치중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권교육은 다양한 교과목을 통하여 인권을 학습할 때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통합한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는 인권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즐거운 생활은 궁극적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발육을 도모하는 교과로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즐거운 생활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서 인권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다. '놀이와 표현'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감상'과 '이해'를 통하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운 생활이야 말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수준에 맞게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과이지만, 금번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인권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에 비추어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즐거운 생활 교과서에 인권의 존엄성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과 관련된 놀이와 활동을 반영하고, 이를 노래와 그림으로 나타내며, 인권적 태도를 몸에 익히기 위한 집단놀이와 집단 창작을 제시한다면 이 시기의 인권개념의 단계적 접근의 주요 목표인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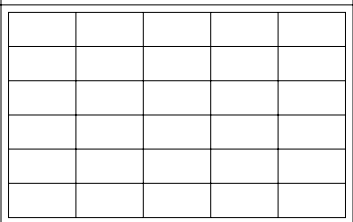
제5장 초등 저학년에서의 인권교육 수업안 개발

다음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교육체계안(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을 준거로 삼아 2007 개정 교육과정 1·2학년 통합교과를 개발한 인권교육 관련 수업안으로서, 향후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색과정에서의 하나의 예시자료라 할 수 있다.

제1절 1학년 인권교육 수업안

교 과 명	통합단원(바생, 즐생, 슬생)	단원	1. 즐거운 학교 생활	장 소	0-0 교실
학습주제	다양한 친구의 모습 이해하기	교과서	-	시간	80분(2차시)
수업목표	다양한 친구 모습의 이해를 통해 모두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그림 자료	참고 자료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45쪽. 유사점과 차이점 인식하기		

학습 단계	주요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교 수 활 동	학 습 활 동		
관심 갖기	동기 유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동기 유발**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진 보여주기 ◦[그림1]토끼로 보이나요? 오리로 보이나요? ◦[그림2]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그림3]이 그림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학습 문제 안내하기**	♧ **동기유발** ○그림이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지 각자 생각하고 대답해본다. -토끼, 오리 -새, 말 -두 명의 사람이요. -트로피요. ♧**학습 문제 인식하기**	5’	‘인권’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보는 사람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PPT (그림 1-3)
활동 하기	학습 문제 확인	**다양한 친구의 모습을 알아본다.**			◐학습문제 칠판에 제시
	학습 활동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친구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기	♧ **학습 활동 안내** 학습 활동을 함께 확인한다.		

	안내 학습 활동 하기	활동 2-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그려보기 **♧학습 활동 1** ◉친구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기 ○무작위로 한명의 친구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모습을 보여준 후 첫인상이나 느낌을 말하여 본다. ○다른 한명의 친구를 나오게 하여 같은 방법으로 첫인상이나 느낌을 말하도록 한다. ◉두 친구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찾기	○모습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본 후 발표한다. ○모습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본 후 발표한다.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적어 본 후 발표한다.		학습지.
활동 하기	학습 활동 하기 발표와 적용 하기	**♧학습 활동 2**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여 본다. ○발표가 끝나면 친구 이름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붙여 불러준다. 활동 1과 활동 2를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하여 본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 씩 다르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다름을 알려주며 모습이 나와 조금 다르더라도 모두 나의 친구들임을 알고 사랑하도록 한다.	◉그림이나 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다. 보여주고 싶은 이유를 적어 발표한 후 수업 후 게시판에 게시한다. -똑똑한 ○○ -미소가 예쁜△△ -목소리가 큰 ㅁㅁ		◐색연필, 학습지
정착 및 적용	게임을 통해 이해 하기	♥ 종이에 나의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적어 내 몸에 붙인 후 정해진 시간에 가장 먼저 모든 친구의 모습과 이름을 적어보도록 한다. 가장 먼저 적으면 빙고를 외친다.		5’	▷빙고 종이

교 과 명	통합교과(바생, 즐생, 슬생)	단원	3. 가족은 소중해요	장 소	0-0 교실
학습주제	다양한 가족의 모습 알기	교과서	바른 생활 32-37 슬기로운 생활 34-41	수업시간	40분
수업목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자료	다양한 가족 사진	참고 자료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46쪽. 같은 사람끼리 보트 타기 50쪽. 우리 가족 인형 만들기		

학습 단계	주요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교 수 활 동	학 습 활 동		
관심 갖기	동기 유발	♧ 학습 분위기 조성 및 동기 유발 가족에 관계된 노래 부르기 아빠 힘내세요, 아빠,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어요. 개구쟁이 내 동생, 곰 세 마리 ♧ 학습 문제 안내하기	♧ 동기유발 노래를 하면서 가족의 모습을 흉내내는 율동을 함께 한다. ♧ 학습 문제 인식하기	5’	
	학습 문제 확인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이해한다.**			◐학습문제 칠판에 제시
활동 하기	학습 활동 안내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가족의 모습 비교하기 활동 2- 가족의 뜻 알아보기 활동 3- 다양한 가족의 모습 알아보기	**♧ 학습 활동 안내** 학습 활동을 함께 확인한다.		
	학습 활동 하기	♧학습 활동 1 ◉가족의 모습 비교하기 ○교과서 38쪽의 사진을 보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어떤가 살펴보기 ○우리 가족과의 같은점과 다른점 찾아 보기 ♧학습 활동 2 ○가족의 뜻 알아보기 -가족 : 한집에 모여 사는 부모와 그 자식들, 혹은 배우자 또	○사진마다 있는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 한다. ○우리 가족과 비교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 한다. -사촌 형제는 친척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한집에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이나 핵가족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의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 예)할머니와 손주 손녀만 있는 가정

		는 그 구성원 -친척 : 어머니와 아버지, 배우자와 혈연이 가까운 사람	살면서 생활을 함께 하면 가족이 될 수 있음.		
활동하기	학습활동하기	**♧학습 활동 3** ◉다양한 가족의 모습 알아보기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가족의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한다. 사진속에 있는 가족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수가 가장 많은 가정은 어디인가요? --우리집과 같은 가족이 있나요?	 -가족수가 다르다. -할머니와 아이들만 사는 가족들도 있다. -아버지만 있는 가족도 있다.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도 있다. -사랑의 집 가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발표한다.		
정착 및 적용		우리 가족의 손가락 인형을 만들어서 각 구성원이 되어 자기소개 해보기	-아빠 소개 : (아빠의 입장으로 이야기 한다.)		

교 과 명	통합교과(바생, 즐생, 슬생)	단원	1. 나의 몸	장 소	
학습주제	몸의 각 부분이 하는 일 알기	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8~11	시 간	40분
수업목표	몸의 각 부분이 하는 일을 알아보고 체험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한다.				
학습 자료	종이, 색연필, 전신 명칭 그림, 마스크, 안대		참고 자료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P48. 벽/바닥에 나 그리기	

학습 단계	주요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교 수 활 동	학 습 활 동		
관심 갖기	동기 유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동기 유발 머리 어깨 노래 부르기 ♧학습 문제 안내하기	♧ 동기유발 노래 하면서 율동을 통해 몸의 각 부분을 움직인다. ♧학습 문제 인식하기	5’	

	학습 문제 확인	**몸의 각 부분이 하는 일을 알아보고 소중함을 알 수 있다.**			◐ 학습문제 칠판에 제시
활동 하기	학습 활동 안내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우리 몸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 알기 활동 2- 우리 몸의 각 부분이 하는 일 알기 활동 3- 몸의 부분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체험하기	**♧ 학습 활동 안내** 학습 활동을 함께 확인한다.		
	학습 활동 하기	♧학습 활동 1 ◉우리 몸 그리고 각 부분 명칭 적기 ○종이에 우리 몸을 그린 다음 명칭을 적는다. ○친구와 비교한다. ○전신 그림을 붙여놓고 부분별로 이름을 확인한다.	○종이 위에 내 모습을 크게 그린 다음 각 부분의 명칭을 적는다. ○친구와 비교하여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완성한다. ○틀린 부분은 고쳐본다.		
활동 하기	학습 활동 하기	**♧학습 활동 2** ◉우리 몸의 각 부분이 하는 일 알기 -우리 몸에서 눈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다른 부분이 하는 일을 발표한다. **♧학습 활동 3** ◉몸의 부분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체험하기 -눈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불편할까요? -마스크를 입에 착용하고 스피드 퀴즈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발표한다. -안대를 쓰고 교실을 걷게 한다. -말로만 안내하여 정해진 목표에 걸을 수 있도록 한다.		전차시에 미리 과제를 내어 준다.

			-몸 동작으로만 표현하여 정답을 맞춰 보도록 한다.		
정착 및 적용		-우리의 몸 하나하나는 소중하며 우리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불편함을 알도록 한다. -누구나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으므로 불편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2학년 인권교육 수업안

교 과 명	바른생활	단원	1.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장소	
학습주제	학교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학급 규칙을 정하기	교과서	바른 생활 8-11	수업 시간	40분
학습목표	학교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학급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차트 자료, 매직 펜	참고 자료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P56-58. 학급규칙 정하기		

학습 단계	주요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교 수 활 동	학 습 활 동		
관심 갖기	동기 유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동기 유발** ○교과서 8쪽을 보면서 이야기하기 ◦[그림1]첫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그림2]두번째 사진은 어떤 쪽이 보기가 좋을까요? ◦[그림3]세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 동기유발 ○그림을 보면서 생각되는 느낌을 발표한다.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는 그림과 휴지통에 쓰레기를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진 모습이요. -책과 소고가 잘 정리된 곳이요. -질서 있게 잘 걷는 모습과 복도에서 장난치는 모습이요.	5’	

		◦그림들을 보면서 느낀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는 여러 곳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면 깨끗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학습 문제 안내하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학습 문제 인식하기		
	학습 문제 확인	**학교에서 스스로 해야할 일을 말하고 학급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학습문제 칠판에 제시
활동 하기	학습 활동 하기	**♧학습 활동 1(모둠학습)** ◉학급에 필요한 것 알아보기 ○학급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인당 5개씩 생각한다. ○모둠별로 10개의 것을 정하여 차트로 만들어 본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권리 정하기 ○각 모둠이 정한 필요한 것 차트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권리 10개를 선정하여 본다.	 ○각자 필요한 것을 정한 후 모둠으로 모여 10개의 규칙을 만든다. ○차트를 만들어 전시하여 본다. -모둠마다 우리가 10가지를 정하거나 전체 거수를 통해 10개를 정한다.	15‘	권리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풀어서 설명한다.
활동 하기	학습 활동 하기 발표와 적용 하기	**♧학습 활동 2** ◉권리 10개를 책임으로 바꾸어 쓰기 ○권리와 책임의 차트 2개를 만들어 교실에 게시한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름을 이야기 하며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이 동반함을 이야기 해 준다.	 ◉권리를 책임으로 바꾸게 한다. 예)우리 모두가 교실에서 안전해야 한다.→나와 친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위험한 장난을 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우리의 권리 10개를 함께 읽는다. -교실에서 지켜야 할 책임 10개를 함께 읽는다.	15‘	◐차트 종이
정착 및 적용	규칙 적용 하기	♥ 생활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의 벌과 책임을 잘 지켰을 때의 상을 제시하여 준다.		5’	

교 과 명	바른 생활	단원	7. 생명의 소중함	장 소	0-0
학습주제	생명이 소중한 까닭 알고, 인권 이해하기	교과서	2학년 2학기 바른 생활 78-83	시 간	40분
수업목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인간이 가진 기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세계인권 선언ppt자료	참고 자료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58-63쪽 인권 이해하기		

학습 단계	주요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교육정보 자료 및 유의점
		교 수 활 동	학 습 활 동		
관심 갖기	동기 유발	♧공부할 내용 알아보기 ○교과서 78-79쪽 보면서 이야기 하기 ◦78-79쪽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 있나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림 속 동식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중 어느것이 더 소중한가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학습 문제 안내하기	♧ 동기유발 ○그림을 보면서 보이는 것을 발표한다. -눈사람이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요. -살아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은 모두 소중합니다. ♧학습 문제 인식하기	5’	
	학습 문제 확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인간이 가진 기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문제 칠판에 제시
활동 하기	학습 활동 하기	**♧학습 활동 1** **어떤 사람이 소중한가요?**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비행기가 비행중에 심각한 고장이 났습니다. 이 비행기에있는 낙하산으로 승객 대부분이 비상 탈출을 했으나 5명은 낙하산이 고장나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낙하산은 단 2개. 누가 낙하산을 타야 할까요? 남은 사람 :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위문공연을 가던 원주민, IQ160의		15‘	이야기가 있는 학습지

		천재소년, 임신을 한 엄마, 최고의 스타 누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할까요? 답은 수업이 끝나고 이야기 해 줍니다.	-노벨상, 소년, 스타 등		
활동하기	학습활동하기 발표와 적용하기	**♧학습 활동 2** ◉인권에 대해 알아 보기 ○생명은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들의 생명과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한다.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학급 목록에 빠져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권리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권리를 발표한다.	-인권선언을 보면서 1학기때 함께 했던 우리반의 권리와 비교하면서 빠진 권리는 무엇이고 새로운 권리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15‘	◐인권 선언문 요약 PPT
정착 및 적용	인권 이해하기	-앞의 이야기에서 누구를 구하고 싶나요? -그 누구의 생명이나 소중하고 생명에는 더 귀하고 덜 귀함은 없습니다. -공부를 더 했거나 업적이 뛰어나다고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5’	

제6장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도입이라는 유엔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바탕 위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교육 체계안에서 강조하는 인권교육의 단계적 접근법을 고려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사각지대

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 학교 인권교육의 기본적인 모습과 방향에 비추어 보면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과 더불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은 인지발달로 다양한 사고와 가치의 구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학년 및 학교급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에 비하여 연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유엔이 인권교육 10개년 후속조치로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권고사항인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의 인권교육 도입'과 '학령기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2005~2009년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적용'이라는 국제적 기준의 인권교육 흐름에 단편적 내지 명목상 편승하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통합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교실에서 인권교육의 원리들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하여 대상 아동의 발달단계와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많은 다양한 실행과정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사와 아동들에게 수업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과 '교육적 자료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개정을 마친 교육과정과 이를 근거로 개편하고 있는 교과서가 친인권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여 미반영 및 잘못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수정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교육에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아동들에게 발달단계별 적합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내용 체계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 체계안을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적합한 인권교육 내용 및 수업 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프로그램화한다면,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인권을 찾아가는 하나의 큰 시금석이 되어 인권 친화적 교실 형성, 나아가 사회 형성이라는 인권교육에서의 대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의 사회적 의미 확장 및 향후 학교 인권교육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탄력으로 아동들의 인권을 보는 시각의 변화와 의식의 확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명숙(2007),『인권 친화적 초등학교 인권교육 내용체계화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 광노의, 홍순정,『유아교육사상』, 도서출판 문음사, 2000.

3. 교육과학기술부(2008a),『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총론, 재량활동』, 광주 : 한솔사

4. 교육과학기술부(2008b),『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특별 활동』, 광주 : 한솔사

5. 교육과학기술부(2009a),『바른생활 1-1 교과서』,『바른생활 1-1 지도서』, 서울 : (주)두산

6. 교육과학기술부(2009b),『바른생활 1-2 교과서』,『바른생활 1-2 지도서』, 서울 : (주)두산

7. 교육과학기술부(2009c),『바른생활 2-1 교과서』,『바른생활 2-1 지도서』, 서울 : (주)두산

8. 교육과학기술부(2009d),『바른생활 2-2 교과서』,『바른생활 2-2 지도서』, 서울 : (주)두산

9. 교육과학기술부(2009e),『생활의 길잡이 1-1 교과서』, 서울 : (주)두산

10. 교육과학기술부(2009f),『생활의 길잡이 1-2 교과서』, 서울 : (주)두산

11. 교육과학기술부(2009g),『생활의 길잡이 2-1 교과서』, 서울 : (주)두산

12. 교육과학기술부(2009h),『생활의 길잡이 2-2 교과서』, 서울 : (주)두산

13. 교육과학기술부(2009i),『슬기로운생활 1-1 교과서』,『슬기로운생활 1-1 지도서』, 서울 : (주)두산

14. 교육과학기술부(2009j),『슬기로운생활 1-2 교과서』,『슬기로운생활 1-2 지도서』, 서울 : (주)두산

15. 교육과학기술부(2009k),『슬기로운생활 2-1 교과서』,『슬기로운생활 2-1 지도서』, 서울 : (주)두산

16. 교육과학기술부(2009l),『슬기로운생활 1-2 교과서』,『슬기로운생활 2-2 지도서』, 서

울 : (주)두산

17. 교육인적자원부(2007),『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8. 구정화·송현정·설규주(2004),『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19. 구정화(2009a),「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사회과교육』, 제48권 1호, pp. 1~12

20. 구정화(2009b),「교과서 안의 인권」,『교과서 안 인권 찾기』,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교과서 모니터단 발대식 및 간담회 자료집

21. 국가인권위원회(2002),『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22. 박경태(2007),『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23. 성현란 외 6명(2001),『인지발달』, 학지사.

2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2007),『학교 인권교육 길잡이 - 유엔의 초·중등학교 인권학습활동 안내서』,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5. 허수미(2008),『인권적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 설정』,『사회과교육』, 제47권 4호, pp. 153~181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일반부분

김영갑 / 부천 부명고등학교 교사

인권 친화적 학교만들기

–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목차



요 약 ····· 410

Ⅰ. 들어가는 말 ····· 412

Ⅱ.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의 필요성 ····· 413

1. 고등학교 생활 모습 ····· 413

2.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의 필요성 ····· 416

Ⅲ. 학교 인권에 대한 교수학습과 생활지도 선행 연구 ····· 418

1. 학교 인권에 대한 교수학습 선행 연구 ····· 418

2. 학교 인권에 대한 생활지도 선행 연구 ····· 419

Ⅳ. 인권 친화적 개념 ····· 421

Ⅴ. 인권 친화적의 기준 ····· 424

Ⅵ. 인문계 고등학교 하루 생활에서의 반인권적 지도와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 ····· 428

Ⅶ. 맺는 말 ····· 440

참고문헌 ····· 442

요 약

학생의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할 곳이 학교가 반인권적 기관이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반인권적 학교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를 쇄신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하루 일과를 통해 학생 인권이 지도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반인권적인 지도를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으로 전환하여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울타리를 타고 사회로 번져 갈 희망을 기대하며 이에 필요한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연구 하였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인문계 고등학생의 하루 일과를 추적하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이 반인권적인 부분을 다룬 것을 역으로 해석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권 친화적 개념은 반인권적 개념의 역(逆) 개념을 추론해서 정의를 내렸다. 인권 친화적이라 함은 "인권을 친구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인권에 대한 친숙한 분위기가 늘 스며들어 따뜻한 인간관계가 유지되도록"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접할 때,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따뜻한 마음이 교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 친화적 기준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에서 제시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참고하였다. 현재의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근거로 하여 12개의 학생 권리를 추출한 후, 이것에 근거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기준 8개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을 반인권적인 현재의 학교 문화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로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매뉴얼을 만들어 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학생과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의 반인권적 지도를 극복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

을 제시하였다. 그 영역을 교문지도, 0교시 수업, 조회, 수업, 쉬는 시간, 점심 및 저녁시간, 청소시간, 자기 주도 학습 시간, 시험, 복지, 자치, 인격, 교과, 하교 등으로 나누어 세세하게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학교가 인간의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학교, 신 새벽을 가르며 배움의 터를 향해 전진하는 학생들의 힘찬 발걸음이 교문 앞에서 중단되지 않는 학교가 되기를 갈망한다.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한다. 청소년인 학생들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반인권적인 지도로 학교 현장에서 인권은 숨을 죽이고 있다. 개인주의적 사고와 생활양식에 익숙한 학생과 공동체(집단)를 강조하는 교사 간에 갈등과 알력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인권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교사들은 교권으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인권과 교권의 충돌 양상으로 보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는 인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나의 인권이 소중하면,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하는데, 타인의 인권을 무시·억압·차별·폭압하고 있음에도 그것의 탈출구로 학생들은‘인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교육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교사의 입장과 학생을 자율적 청소년으로 인식하여 ‘자율적인 학습 주체’라고 주장하는 학생의 입장이 충돌한 것이다.

>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각목으로 학생을 때려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사는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 학교 2학년인 임 군을 교무실로 불렀다. 김 교사는 임 군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던 과정에서 임 군이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는 것을 부인하자 20cm 길이의 각목으로 임 군의 어깨를 때렸고, 이후 부러진 골프채를 이용해 엉덩이와 팔 등을 수차례 때렸다. 병원 진단결과 임 군은 타박상 등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김 교사는 경찰에서 “임 군이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도 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노컷뉴스 2009년 9월 8일

위에서 보여주는 학생 인권 침해는 체벌, 동료 교사들의 묵인으로 인한 체벌의 동조, 학생의 변론권의 무시, 교육적 지도 상황을 벗어난 비교육적 교육 방식을 들 수 있다면, 교사의 교권 침해는 교사의 지도 불응, 증거가 뚜렷한데도 거짓말을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은 교사의 반인권적 지도로 전치 2주의 진단과 함께 학교 부

적응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곳에는 ‘교육’과 ‘인권’이 숨 쉴 곳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비단 한 고등학교에서만 나타나는 일일까? 이 일은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또한, 교사들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을 교육하는 방법을 달리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학생과 갈등 및 대립을 빚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학교 문화를 쇄신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하루 일과를 통해 학생 인권이 지도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반인권적인 지도를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으로 전환하여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울타리를 타고 사회로 번져 갈 희망을 기대하며 이에 필요한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려면, ‘인권 친화적’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국제인권기준과 법률의 관점에 부합하는 인권 친화적 기준에 맞는 학교상(學校象)을 정립하여 작으나마 그 불씨를 살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 인권이 통하는 학교,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의 필요성

1. 고등학교 생활 모습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하루 기준으로 학교에서 13시간 내지 15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학생 시절을 성공을 위한 관문인 명문대학에 진입하기 위해 자신의 현재의 삶을 온전히 ‘공부’에 투자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 고등학생에게도 인권은 엄연히 존재하고 보장받아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침 등교부터 시작되는 반인권적 학교 문화는 하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

다.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의 동선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모습과 흡사 유사하다. 그래서 학교는 일단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곳으로 각인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의 학교생활을 스케치하면,

8시 이전에 학교에 등교한다. 교문에서 복장 및 용모 검사를 하는 데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서 실외화를 실내화로 갈아 신고 올라간다. 주번이면 이보다 먼저 등교하여 교실과 복도 등을 청소한다. 지각을 하면 교문에서 학생지도부 선생님에게 한번 야단맞고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께 또 야단맞는 고통의이중주를 경험한다.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 못했으면, 다시 야단맞는다.

1교시 수업 시간이다. 교재 및 과제를 준비 못했으면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다시 야단맞는다. 수업 시간 중 졸거나 자면 다시 선생님의 불호령이 나오고, 공부가 안되어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기를 하다 걸리면 휴대폰을 압수당한다.

수업이 끝나 복도를 나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야단맞는다.

2교시 수업 종이 친 후에 들어가면, 교과 담당 과목 선생님에게 야단맞는다. 이렇게 2교시를 끝낸 후 3교시, 4교시를 무사히 마치면 즐거운 점심시간이다.

점심은 하나 밖에 없는 식당에서 선배 우선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후배인 나는 다시 2,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식단을 보면, 어느 때는 먹을 만한 음식이 나를 유혹하지만, 또 다른 때는 먹을 만한 것이 없어 급식은 '싸구려'라는 이미지를 깊게 각인시킨다. 식사를 하고 급우나 친구들과 놀려고 운동장을 나오면 이미 상급 학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음악이나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갈 곳이 마땅치 않다.

5교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다. 헐레벌떡 교실을 향해 가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5분 늦게 들어가 담당 과목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 아까 실랑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 꾸중을 들으니, 수업을 들을 마음이 싹 가신다. 밥도 먹고 해서 졸음도 온다. 조용히 눈을 감은 것이 그만 잠들고 말았다. 선생님의 명령을 받은 짝이 흔들어 깨웠다. 선생님 앞에 불려가 다시 야단을 맞고 남은 시간을 엎드려뻗쳐를 하였다. 수업이 끝나 해제는 되었지만, 몸이 몹시 피곤하다. 자리에 엎드려 잠을 청한다.

6교시 체육시간이 되었다. 이제 신나게 축구를 할 것이다. 급우들을 남녀 두 팀으로 나누어 축구 경기를 하였다. 우리 문전을 향해 돌진하는 상대편에게 태클을 걸어 무사히 공을 빼앗았다. 그리고 공을 상대방 문전 앞으로 세게 차니, 우리 팀 공격수가 공을 받아 차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의 수비의 발길질을 피해 공격수가 골인을 시켰다. 그러나 엄청 위험하게 수비를 당한 공격수는 수비수에게 욕을 하고 수비수는 그것에 분노해 다시 욕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지경까지 갔다. 그래서 좋았던 체육 시간은 찜찜한 마음만 남겨 놓고 끝나고 말았다.

7교시는 전 시간에 몸과 마음을 풀어 그런 대로 잘 보냈다.

청소 시간이다. 주어진 청소 구역을 청소하고 친구들과 잡담을 하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8교시 보충수업 시간이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라 진지하게 공부를 하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15분 정도 기다리다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농구를 하였다. 서로 몸과 몸이 부딪치면서 느끼는 팽팽한 승부욕으로 짜릿한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쉬운 저녁 시간이 지나고 야간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이 되었다. 오늘 일과를 잘 마무리 하는 이 시간, 아쉽게 보낸 시간을 보충하여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다짐을 하고 공부하려는데, 옆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어. 가르쳐 줘”라고 말을 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OK” 라고 하는데, 감독 선생님이 “너희들 나와. 왜 소곤거려 공부하는 다른 학생을 방해하는 거야.”라는 지적을 받아 벌로 복도에서 엎드려뻗쳐를 하였다. 억울하고 분하면서 말을 시킨 친구가 야속하기만 했다. 선생님의 훈계를 듣고 교실로 들어와 못다 한 공부를 하고 야간 자기 주도 학습을 끝마쳤다. 이제 집으로 간다. “내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이렇듯 인문계 고등학교의 하루는 힘겹고 버거운 삶을 강요당하는 전쟁터와도 같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배우는 학생들도 뇌관을 쥐고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피해 살아간다. 그것이 터지면 대형 ‘인권 침해 사고’다. 그래서 이곳에 인권이 머물 여유나 공간은 제로에 가깝다.

2.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의 필요성

위 상황에서 벗어나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는 없는가? 그렇지 않다. 그럼, 신나고 즐거운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그것은 인권 친화적 학교이어야 한다. 반(反)인권적이고 무(無)인권적인 학교는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의 인성을 어긋나고 각(角)지게 만든다. 그래서 짜증나고 신경질적인 학교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본연의 교육 정신으로 되돌아갈 때, 학교는 인권 친화적이 될 수 있다.

그럼, 학교에서 일반화된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나 인권 침해적인 요소 등을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1]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교 규율이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학교 규율은 정당성을 잃는다. 보충 수업이나 자기 주도 학습 등의 교육 활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심한 말을 스스럼없이 함부로 말해 상처를 주고,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미룬다. 이런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열쇠를 잃은 자물통이다.

둘째, 성적, 성, 학년 또는 나이, 경제적 형편, 가족 형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교육을 받는 것은 고통이다. 이런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영원한 이방인이다.

셋째, 교육목표에 벗어나고, 학생들을 배제한 채 교육을 결정하고, 선택권은 있으되 선택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부적절한 학습 환경으로 공부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교육을 받을 접근권이 차단되는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주인을 잃은 지 오래다.

넷째, 자치 활동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고, 학생대표기구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동아리 활동을 규제하는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늘 2%가 부족한 것이 아닌 98%가 부족한 음료수다.

---

1) 진영종 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2007, 30-49쪽의 침해유형을 학교 상황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다.

다섯째, 체벌과 얼차려 등과 같은 모욕적인 처우를 당하고, 원하지 않는 데도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적으로 시키고 행사에 강제 동원당하는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접촉 사고 난 차량과도 같다.

여섯째, 양심에 반하는 서약을 강요당하고, 일방적으로 남의 생각을 주입받는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슈퍼마켓에 놓인 상품처럼 사람들의 손을 타는 거와 같다.

일곱째, 표현의 자유를 제한 당한다. 복장과 두발, 매체 활동, 학교 이외의 다른 표현물의 소지 및 의견을 물을 수 있는 활동이 금지된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다.

여덟째, 학생의 개인 정보가 침해당하고, 교육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버젓이 공개되고, CCTV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감시당하고 있으며, 특정 반의 출입이 금지당하는 등 관계와 소통이 금지당하는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어항 속의 붕어와도 같다.

아홉째,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하고,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통한 해결이 부족하고, 좋은 먹거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학생 스스로 감당할 만한 상황이 늘 압박으로 느껴지는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만 하는 말(馬)과 같다.

열 번째,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학교 환경, 화재나 사고 시 응급 처치 방법 등 긴급 대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배 밖에 나와 있는 간(肝)과도 같다.

열한 번째, 쉬는 시간에 부당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에서 편히 쉬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과 같다.

열두 번째, 정당성을 벗어난 징계와 징계 절차, 징계 기록의 유출, 변론할 기회를 상실 당한 학교 문화에서 인권은 사상누각(砂上樓閣)과 같다.

이러한 반 인권적이고 무인권적인 학교를 첫째, 학생 인권이 존중되고 지켜지며 신장되고 있는 학교, 둘째,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반인권적 문화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견지할 수 있는 학교로 변화시키는 것이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통해 학생들이 생기가 넘쳐 나고 마음이 청결하며 혈맥이 고동치고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며 자존과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진정한 학교다운 학교로 거듭나야 함은 모든 교육 관계자들의 이상이자 희망이다.

Ⅲ. 학교 인권에 대한 교수학습과 생활지도 선행 연구

1. 학교 인권에 대한 교수학습 선행 연구

권재원은 학생들은 수업 내용보다 학교의 비민주적 문화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 고 하였다. 그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따분하고 일방적인 수업, 수업 내용보다는 선생님들의 불친절과 친밀한 상호 작용의 부족을 큰 불만으로 보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피드백에 무성의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응답을 해도 불친절하게 하며, 심한 경우 화를 낸다는 것[3]이다. 또한, 그는 재미도 목적도 없는 지루한 수업을 장시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몰입 경험 없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지루한 고통의 수업 시간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4]이다.

이수광(2000)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입시 대비수업, 보충교재 위주의 수업, 무기력하고 성의 없는 수업, 준비성 없는 형식적인 실험·실습 등을 하는 것, 교사의 자질 부족에서 비롯되는 수업의 부실 사례, 학교 관리자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교육과정의 편파적 운영, 선택 과목의 제한, 강제적 교과 외 수업, 자율학습 시간에 진도 나가기, 교육 여건 부족에 따른 교수 학습의 형식화, 학교 이익 우선주의에 근거한 편파적 진로 지도 등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조용히 침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3)는 교사들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타인

---

2) 권재원, 사교육문제와 학교 내 청소년 인권의 관계,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2008, 86쪽.

3) 권재원, 청소년의 학교·학원에서의 불만에 대한 질적 조사 : 수업과 처우,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2008, 106쪽.

4) 권재원, 청소년의 학교 수업 몰입에 영향을 주는 교사 특성에 대한 연구-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즐겁게 혹은 지루하게 만드나?,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2008, 168-169쪽.

과 비교하기, 무시하기, 창피 주기 등의 수업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모욕감을 주어 학습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종태 외(2005)는 인권교육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권침해의 예방과 인권문해력, 인권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 갖기, 관용과 존중, 평화와 연대의 문화 만들기, 인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2. 학교 인권에 대한 생활지도 선행 연구

권재원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학생인권'에 대한 의식과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은 규범의 행위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칙이 필요하며, 그 제정과 개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5]고 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3)는 학교 문화의 반인권적 특성에 대해 첫째, 의사 표현 및 자율적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둘째, 학교 규칙의 정당성에 대해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행동 셋째, 학교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처 방안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 넷째, 교사의 학생 권리 침해 다섯째, 체벌을 들고 있다. 체벌은 잘못 행동한 학생의 인격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주고 체벌의 일상화는 비행을 고착시키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악순환 시키며, 법과 도덕의식 발달 과정을 저해하며, 폭력과 통제에 익숙한 수동적 인간상을 내재시켜 복종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

정준교(2002)는 0교시에 시행되는 자율학습, -1교시에 시행되는 방송 수업, 정규 수업 이외의 야간 자율학습 등이 개개인의 참여 의사나 신체적 경제적 가정적 사정 등이 고려되지 않고,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배경내(1998)는 학생들은 훈육과 온정적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 학교가 요구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규율에 복종해야 '학생답다'는 억압적 기준에 구속된 존재들이며, 교문 앞에서 모든 권리를 유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통제의 메커니즘은 '억압적인 규율과 처벌 장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

5) 권재원(2008), 중·고등학교 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조사,『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2008, 209, 262쪽.

생들의 삶을 억압하는 학교규율은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제정되며, 엄격한 처벌 장치를 통해 유지되며, 이러한 억압적 규율과 처벌 장치로 인해 학교에서는 '통제와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김은경(1999)은 체벌의 유형으로 첫째, 도구를 이용한 체벌로, 대걸레자루, 아이스하키스틱, 야구방망이 등 견봉류, 실내화, 혁대 등 피혁류, 자, 출석부 등 학습도구류, 기타 학교규정으로 정하는 교편 이외의 도구를 이용한 체벌 둘째, 손·발로 가하는 체벌로, 손바닥(주먹)으로 뺨, 머리 가해, 발로 차기, 꼬집기 등 셋째,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로, 원산폭격, 한강철교, 책상 들고 서 있기, 엎드려 뻗쳐있기, 무릎 꿇기, 오리걸음, 토끼뜀, 선착순 달리기 등 넷째, 일부 학생의 잘못에 대한 단체 기합 다섯째, 언어폭력으로 인격 모욕적 언어, 비속어, 은어, 신체장애 및 성적 모욕어 등 여섯째,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로,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는 체벌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고,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체벌 등을 행한다는 것이다.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려면,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방법 및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벌 장소는 교실 내, 교내운동장, 학교 건물 안(복도, 화장실, 체육관 등), 학생부실, 교무실, 학교 주변 등 이라고 하였다.

길은배 외(2005)는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을 교실과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것,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두발 규제, 교복 선택의 폭이 좁은 것, 휴식이나 이동 시간에 핸드폰 이용 시 혼나거나 압수당하는 것, 가격에 비해 급식 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지 못한 것,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 고민을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것, 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처벌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는 것, 아플 때 보건실을 자유롭게 이용애는 없는 것,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없는 것, 성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 소지품 검사, 외모로 인한 놀림이나 차별, 교사의 체벌이나 폭언, 교내 동아리 활동에 참여 권리가 없는 것,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 등을 학교 인권 침해 내용으로 꼽고 있다. 학생의 건강권으로 학교의 0교시 수업이 계속되는 한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학력, 대학입시 문제가 학생의 인권 수준을 결정하며, 학생 인권은 성인들의 태

도 및 결정 여하에 따라 좌우되며,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불편사항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승규 외(1999)는 학생들은 도서관, 화장실, 책·걸상, 냉·난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학교 시설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학생 초등 12.1%, 중등 27%, 고등 47.8%가 생리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생리 시 학생들의 휴식 요구에 대해 공결처리, 조퇴, 보건실 순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인권 침해로 교사의 언어, 체벌, 차별, 복장 규제, 성희롱, 신체적 수치심, 심부름 순이었다.

박효정 외(2006)는 중등학생의 인권실태를 학생인권 의식실태, 학생인권 침해실태, 인권교육실태 등으로 분석하였다. 학생인권 의식실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세 주체가 중등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며, 학생인권 침해유형을 기본권적 침해, 규율 차원의 침해, 제도 차원의 침해, 관계 차원의 침해, 학부모에 의한 침해 및 기타 학생 인권 침해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실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거의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인권 친화적 개념[6)]

인권은 단순히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라기 보다는 “인간답게 살 권리”(human rights)로 모든 사람들이 성, 연령, 신체적 조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으로 억압받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나와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교육하며, 나와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주어지고

6) 박상준(2003),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법교육과 관련하여, 『시민교육연구』, 2003, 125-133쪽을 학교 상황에 맞게 재설계함.

실천을 요구받는다. 이와 같은 활동의 누적으로 인권을 친구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인권에 대한 친숙한 분위기가 늘 스며들어 따뜻한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인권 친화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친화적은 구체적으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따른 정형화된 삶을 거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사회적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견지하며 비판과 대안을 찾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친인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권 친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과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판단능력을 획득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인권에 대한 열망에 입각하여 보편적인 인권 규약을 알고 주변의 인권침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들과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도록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관점을 갖는다.

둘째, 인권 친화적 행위 성향을 갖도록 한다. 인권 친화적 행위 성향이란 인권 친화적 행위를 체험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몸에 밴 행위의 성향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과 사고능력을 활용하여 실제의 삶 속에서 친인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만든다.

셋째, 인권의 경험과 인권경험의 토론을 실질적으로 통합한다. 인권의 경험이란 학생들에게 주요한 인권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친인권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 인권 친화적 행위 성향을 습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경험의 토론이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넷째, 실제의 삶 속에서 인권 친화적 행위를 실천하는 방식과 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인권의 경험과 인권경험의 토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실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 인권 친화적 행위 성향이 내재화되지 못해 반인권적, 무인권적, 친인권적 행동이 구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가 구성원들 간의 여유 있고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

는 건강한 인권 문화가 학교 내에 자리 잡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인권 친화적이 되기 위한 과정을 [표1]로 정리하여 그 개념을 명료하게 하였다.

[표 1] 인권 친화적이 되기 위한 과정

[인권의 중요성 인식]
기본적 지식과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판단능력 함양

⇩

[인권 친화적인 행위 성향 습득]
실제의 삶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행위 유도

⇩

[인권의 경험]
친인권적 행위의 경험
시청각 자료를 통한 간접경험

⇩

[인권 경험의 토론]
인권침해 상황의 토의
보편적 인권 원칙의 학습
친인권적 행위의 선택

⇩

[인권 친화적 행위의 실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

[인권 친화적 학교 분위기 형성]
학교 구성원들 간의 여유 있고 친숙한 분위기 형성

Ⅴ. 인권 친화적의 기준[7)]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 친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아동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생에 해당된다.

첫째, 비차별의 원칙(2조) : 어떠한 아동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아동 최상의 이익(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이의 4개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누릴 권리를 살펴보면,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학교당국과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의 존엄성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의견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차별 금지

학생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성, 장애, 인종, 출신지역, 성 정체성, 가족형태, 외모,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성적, 학년, 나이 등이 다를지라도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교육에 대한 권리

학생은 배움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학생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

7) 진영종 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2007, 7쪽을 바탕으로 해서, 62-126쪽을 참조하여 학생들이 누릴 권리 12개를, 8~29쪽을 참조하여 학교 상황에 맞도록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의 기준 8개를 추출하였다.

근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감당할 만한 수준의 배움을 누려야 한다.

(4) 학생 자치

학생자치활동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5) 신체의 자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몸의 존엄성과 안전, 자유를 위협받는 경험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파괴한다. 학교는 학생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해치는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처우, 자유의사에 반한 행위로 학생의 인격 형성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사상, 양심의 자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7) 표현의 자유

학생은 말이나 글, 예술, 매체, 몸 등 자기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생활양식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8)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학생은 일기나 통신, 소지품, 사적 공간, 친구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교육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유출돼서는 안 된다.

(9) 건강권 보장

학생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도록 점검하고 건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 안전권 보장

학생은 신체의 안전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안전을 이유로 학생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학생의 다른 권리의 실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11) 쉼, 놀이, 문화의 자유

학생은 쉬고 놀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만이 우선시되어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12) 사건 조사와 징계

학생은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존엄을 지키고 존중받아야 한다. 학교의 각종 징계 규정은 상위법에 부합해야 하고, 조사와 징계는 공정하고 적법하며 학생이 감당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 4개의 일반 원칙과 12개의 학생 권리에 근거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한과 권리 행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능동적인 참여, 의사 결정,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며, 다양성을 교육의 토대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학생이 부당하게 구별되거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혹은 잠재적인 차별을 확인하고 이에 맞서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4) 감당할 만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학교 교육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학생 친화적이고 학생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은 학교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상호존중, 이해와 평화,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통해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6)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학교는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학교에 들어오기 전과 학교를 떠난 후 학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해 존중하는 학교

학생의 삶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은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이다. 건강, 안전, 성장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결정에 참여하고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8) 교사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교사의 연대가 필요하다. 교사의 연대는 책임, 충분한 권한과 역량의 확보가 있을 때 가능하다. 교사는 학교의 변화를 이끌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로서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Ⅵ. 인문계 고등학교 하루 생활에서의 반인권적 지도와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하루 일과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반인권적 지도를 개선하여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권 마인드가 필수이지만, 인권 친화적 교육을 하고 싶어도 그 방안을 모르면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표2]는 인문계 고등학교 하루 생활에서의 반인권적 지도와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을 매뉴얼화 한 것이다. 각 상활별로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을 개선하여 인권 친화적인 교육을 한다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간의 관계도 원만하고 친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인문계 고등학교 하루 생활에서의 반인권적 지도와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

영역	세부 내용	반인권적 지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
교문지도	1. 교문지도	1. 학생 간 계급 문화 조장 – 선도부 제도 – 학생에 의한 교문 지도	1. 학생회 선도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등교 봉사단을 조직하여 학생의 안전한 등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교 주변에서 등교를 방해하는 위험물은 제거한다[8]. 2. 교복 압수 : 해당 학생이 몸에 맞는 교복을 입도록 이해시킨다. 더 나아가 부모와 전화 상담이나 학교 내방토록 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3. 교복 찢기 : 학생 교복은 사유 재산이므로 훼손하는 것은 변상 조치해야 하며, 학생이 보는 앞에서 훼손시키는 것은 학생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 2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이해하고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체벌과 얼차려는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체벌은 학생 신체에 교사가 직접 고통을 가한다는 것이고, 얼차려는 학생이 자신의 신체에 직접 고통을 가하도록 교사가 지시함으로써 행해진다. – 체벌이나 얼차려를 막기 위해 학교마다 학생의 행동 수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차는 계도, 2차는 경고, 3차는 벌점 부여, 4차는
	2. 교복불량	1. 교복 압수 2. 교복 찢기	
	3. 두발불량(규정보다 머리 카락의 길이가 긴 것, 염색, 파머)	1.체벌 – 머리 잡아당기기 – 머리 알밤매기기 2.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 3. 제한된 규정으로 두발 정리 요구나 머리카락 자르기	
	4. 실외화미착용	1.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 2. 청소하기	
	5. 명찰 없음	1.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 2. 청소하기	

영역	세부 내용	반인권적 지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
교문 지도	6. 지각	1. 얼차려 – 엎드려뻗치기 – 선착순 달리기 2.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	누적 점수에 따라 학부모 상담, 5차는 '푸른 교실'에 입교한다. 5. 용의 복장과 두발 규정을 교칙에서 삭제한다. 단, 부득이 그 규정이 필요할 시에는 학생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의무화한다. 6. 학생들의 위반 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그래서 학생이 이해하여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 – 차별적이고 모욕적이며 위협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함 7. 학생 스스로 자신의 두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두발 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두발 관리를 방치할 경우 경고–벌점부여–학부모상담 –푸른교실 순으로 학생의 행동 변화를 가한다. 8. 청소는 자기 주변의 상황을 청결하게 가꾸는 행동이다. 이것이 벌로 진행될 때, 청소는 하기 싫은 행위로 변질되어 주위가 불결해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청소는 자기 내면의 어두운 면도 청결히 하는 '자기정화적' 의미도 있으므로 청소를 벌로 연결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 9. 선착순 달리기는 체력이 약한 학생에게는 이중 고통이 되고, 동료를 밀쳐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비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다[9]. 함께 교가를 불러 학교 사랑하는 마음 갖기[10], 내면의 자기에게 반성하는 구호 외치기 – "○○아. 일찍 일어날게."
0교시 수업	1. 이른 등교로 의한 지각	1. 체벌 2. 얼차려 – 엎드려뻗치기 3. 벌금 4.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 5. 주번 임명	1. 1교시 수업을 8시 이후에 편성(부천 ○○고) – 7시 45분 등교, 50분 조회, 8시 10분 1교시 수업, 4시 청소, 종례로 일과를 조정하면 된다. – 담임과의 첫 만남이므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학생은 정시 등교, 교사는 부드러운 아침 시간을 마련하는 배려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2. 7시 이전에 등교할 때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많으나 7시 45분 이전에는 거의 많은 가정이 아침 식사를 끝내기 때문에 학생의 아침 식사는 가정의 몫이 될 수 있다. 식사를 못한
	2. 아침 식사를 걸러 건강		

영역	세부 내용	반인권적 지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
0교시 수업	권 상실		학생에게 가정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지참하도록 한다. 3. 지각하는 사유나 원인을 파악하여 지각을 근절해야지, 지각했다는 결과 하나로 여러 개의 처벌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악한 행동을 증폭시키는 어리석음을 낳는 것이다.
조회	1. 지시사항 미이행	1. 체벌 2. 얼차려 3. 벌금 4.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 5. 청소하기	1. 벌금은 학생의 용돈이나 부모의 돈을 강제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교육적이다. 학교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학생을 계도–경고–벌점 부여–학부모상담–푸른교실 등의 교육 순서로 학생 행동에 수정을 가하도록 한다. 2. 빽빽이는 백지를 주고 그것을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채우게 하는 벌이다. 학습의 관점에서 폐해가 크고, 몸으로 느끼는 고통도 크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다. 일종의 가혹행위라 할 수 있다. 대신, 학생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경구(警句)를 찾아 적어오기,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글로 적어 보기 등을 실시한다. 3. 반성문 쓰기는 선생님의 요구에 맞도록 정해진 각본대로 씀으로써 학생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지도 방법이라 비교육적이다. 생활일기나 생활이야기 또는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글을 쓰게 하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도 되고 글쓰기 연습도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 지각	1. 체벌 2. 얼차려 3. 벌금 4.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 5. 청소하기	
	3. 교복 불량	1. 체벌 2. 얼차려 3. 벌금 4.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	
	4. 두발불량	1. 체벌 2. 얼차려 3. 벌금 4.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	
	5. 주번 활동 미흡	1. 체벌 2. 얼차려 3.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	
	6. 자기주도학습 무단 외출, 조퇴에 대한 처리	1. 체벌 2. 얼차려 3. 벌금 4. 부적절한 언어 사용 5. 백지의 빽빽이[11] 6. 반성문 쓰기	

<table>
<tr><th>영역</th><th>세부 내용</th><th>반인권적 지도</th><th>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th></tr>
<tr><td rowspan="8">수업</td><td>1. 교과서 및 공책 미 지참</td><td>1. 체벌
2. 얼차려
3. 부적절한 언어 사용</td><td rowspan="8">1. 체벌과 얼차려
★ 교사는 먼저 자기감정을 조절해야 한다[12].
– 분노가 느껴지면 마음속으로 ‘忍’을 외치며 감정을 조절한다.
– 학생의 반응보다 행동 원인을 먼저 생각한다.
– 순간의 선택이 자존을 지킬 수 있다. 그 자리를 잠시 피해 흥분을 가라앉힌다.
★ 쌍방향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한다[13].
–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일방향 그린마일 제도를 학생만이 아닌 학생들에 의해 선생님 및 학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서로 간의 노력과 관심을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막아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대안 방식을 말한다.
– 집행 기구로서 자치 인권회의 구성
– 상점 제도의 다양화(학생에게는 상장, 도서상품권 지급, 인권친화 뱃지, 견학 자격부여, 외부 포상 시 상점이 많은 학생에 대한 추천 순위 우선 등, 교사에게는 다면 평가 및 성과급 평가 요소에 일부 반영)
1) 학생들이 여러 군데에서 소곤거리면,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 그 때는 수업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학생들을 10초 동안 일어섰다 앉힌다. 교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리에 앉아요.”라고 하면 된다. 분위기가 잡히지 않으면 10초 씩 연장한다[14].
2) 떠들거나 장난쳐서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말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적절한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면 경고–벌점부여 순으로 지도한다.
3) 과제물을 해 오지 않은 학생에게 숙제를 안 한 이유를 묻고 말할 기회를 제공한다. 과제물을 해올 수 있도록 재(再)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안할 경우, 수행평가 성적에 반영하거나 벌점을 부여한다.
4) 책을 준비하게 하여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도록 한다. 가급적 책은 최근에 출간된 것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으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좋다[15].</td></tr>
<tr><td>2. 과제물 미이행</td><td>1. 체벌
2. 얼차려</td></tr>
<tr><td>3. 조는 행위 및 자는 행위</td><td>1. 체벌
2. 얼차려
3. 수업권 박탈
4. 부적절한 언어 사용(상습 학생)</td></tr>
<tr><td>4. 장난치기</td><td>1. 체벌
2. 얼차려
3. 수업권 박탈</td></tr>
<tr><td>5. 그림 그리기</td><td>1. 체벌
2. 얼차려</td></tr>
<tr><td>6. 휴대폰 보기 및 문자 전송</td><td>1. 체벌
2. 얼차려
3. 수업권 박탈</td></tr>
<tr><td>7. 재미없는 수업</td><td>1. 체벌
2. 얼차려
3. 수업권 박탈
4. 반성문 쓰기
5. 단체 기합</td></tr>
</table>

영역	세부 내용	반인권적 지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
수업			5)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 대해 글을 쓰도록'한다. 사건의 진술서 형식으로 쓰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의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 지를 짐작해서 적어보도록 한다. 6) '나-전달하기 방식으로 1 : 1 대화 트기'[16]이다. 그 당시의 선생님인 내가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생도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도록 하여 오해를 이해로 만든다. 선생님의 일방적 훈계식 대화는 무의미하다. '선생님은 선, 학생은 악'이라는 구도를 깨야 한다. 7) '교장실에 머물게 하게 방안'[17]이다. 이 때 교장은 학생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학생 상담일지를 만들어 상담 내용을 기록한다. 인생의 선배이며 학교의 최고 어른과 한 장소에 머물면서 느끼고 생각한 바가 많아 행동 수정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8) 흥분한 학생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종이에 줄을 긋게' 한다. 종이 위에 1센티미터 간격으로 가로 세로의 줄을 긋게 한다[18]. 감정이 절제된다. 9) '운동장을 걷게' 한다. 길을 걷는 것은 구도의 한 방법이다. 길에 진리가 있다고 하지 않은가?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걷게 한다[19]. 10)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서로 간에 잠깐 눈을 감자. 서로의 짜증을 상쇄시킬 수 있다[20]. 11)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의 교육적 후원을 해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12) 상황에 따른 인권 친화적 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한다[21].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 규칙 위반 : 행동 수정 기법, 캠페인활동 – 학습 방해 : 집중력 기르기, 보상과 강화 활용하기 – 폭력·괴롭힘 : 덕성 강화 훈련(어렵고 힘든 곳 청소하기–학교 담당자와 함께 한다, 독거노인 찾아 봉사활동 하기) – 교사에게 도전 : 가정 지도 요청, 충동 조절하기

영역	세부 내용	반인권적 지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
수업			– 도벽, 폭력 의존 : 품행장애 의심,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도 – 상습적 무단 행동 : ADHD의심,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도 2. 수업권 박탈 법률이나 학교 규율에 의한 결정, 긴급성이 요구되는 조사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외는 일단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저지른 행위를 규제하거나 반성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22]. 3. 전자기기 압수 1) 전자기기를 사용해야만 할 불요불급할 상황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2)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적이 되도록 계도하고 돌려준다. 3) 계도와 경고 조치 이후에는 벌점을 부여하고 압수조치 한 후, 학부모가 내교하여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학생의 부주의함을 상담하고 부모님에게 돌려준다. 4. 학생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FUN'한 수업이 되도록 수업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23].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재 연구와 지도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쉬는 시간	1. 무단 외출, 조퇴	1. 체벌 2. 얼차려	1. 학생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경구(警句)를 찾아 적어오도록 한다.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글로 적어 본다[24]. 2. 그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글쓰기[25]를 한다. 3. ADHD 의심,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도 4. 돈내기 놀이는 노름의 성격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건전한 놀이라 할 수 없다. 5. 학교 건물 내의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흡연을 금연으로 바꾸도록 행동 수정을 한다. – 흡연의 원인, 흡연 후의 기분 등을 상담을 통해 치유한다.
	2. 복도에서 뛰고 장난하기	1. 체벌 2. 얼차려	
	3. 괴성지르기	1. 체벌 2. 얼차려	
	4. 돈내기 놀이	1. 체벌 2. 얼차려	
	5. 말뚝박기 놀이	1. 체벌 2. 얼차려	
	6. 흡연	1. 체벌 2. 얼차려	

영역	세부 내용	반인권적 지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
점심, 저녁 시간	1. 새치기	1. 체벌 2. 얼차려	1. 새치기를 해야만 했던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물어본다. 그런 것이 없이 새치기가 이루어졌다면, 경고–벌점 부여의 순으로 전개된다. 2. 폭력 사고 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임시 조치하여 또 다른 폭력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26]. 3. 잔반과 식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게 한 후, 잔반과 식기 정리의 중요성을 계도한다. 상습적인 경우, 잔반과 식기 처리에 대한 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 4. 학년이나 나이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27]. 저 학년이나 아래 사람이 먼저 윗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는 세계화 시대와 인격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
	2. 잔반 정리 안하기	1. 체벌 2. 얼차려	
	3. 식기 정리 미흡	1. 체벌 2. 얼차려	
	4. 흡연	1. 체벌 2. 얼차려	
	5. 폭력행위	1. 체벌 2. 얼차려	
	6. 도벽행위	1. 체벌 2. 얼차려	
	7. 급식순서	늘 고학년이 먼저 먹도록 하는 것	
청소 시간	1. 청소 안하기	1. 체벌 2. 얼차려 3. 단체 기합	1. 청소를 안 한 이유를 묻고 말할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의 이유 및 필요 등을 설명하여 청소를 하도록 계도한다. 2. 상습적으로 청소를 안 할 경우, 벌점을 부여하고 자신의 청소 구역을 청소하게 관리·지도한다. 3.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구역인 교무실, 행정실, 교장실, 교사용 화장실 등을 학생이 청소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28].
	2. 담당 구역 청소 대충 하기	1. 체벌 2. 얼차려	
	3. 딴짓하기	1. 체벌 2. 얼차려	
	4. 무단 외출, 음식 사먹기	1. 체벌 2. 얼차려	
자기 주도 학습 시간	1. 정해진 시간 자리 착석 안하는 것	1. 체벌 2. 얼차려 –엎드려뻗치기	자기 주도 학습 시간에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그 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 자기 주도 학습 시간 전에 자신이 공부할 교재를 미리 준비시켜 소란함을 차단한다. 2. 자리에 앉지 않고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학생은 복도 쪽으로 불러 주의를 주고 제 자리에서 정숙하게 공부하도록 한다. 3. 졸거나 자는 학생은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 졸음이 달아나도록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 정도 시키고 주의를 준 후, 입실시켜 공부하도록 한다. 그래도 계속 졸거나 자면 불이익이 일어날
	2. 조는 행위 및 자는 행위	1. 체벌 2. 얼차려 – 엎드려뻗치기 – 매미	

<table>
<tr><th>영역</th><th>세부 내용</th><th>반인권적 지도</th><th>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th></tr>
<tr><td rowspan="5">자기 주도 학습 시간</td><td>3. 장난치기</td><td>1. 체벌
2. 얼차려
– 엎드려뻗치기
– 매미</td><td rowspan="5">수 있음을 경고한다.
4. 공부를 하지 않고 딴 짓을 하는 학생은 복도로 불러내 짧은 상담을 하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도 계속 딴 짓을 하면,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5. 매미는 벽에 신체를 틈 없이 바짝 밀착시키는 벌로 인간을 동물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것이므로 비교육적인 행위이므로 행해서는 안 된다.
6. PMP, MP3의 압수는 전자 기기를 이용한 학습을 차단하는 행위이므로 비교육적인 행위이다. PMP, MP3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방법과 관리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을 계도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다짐을 새기는 글을 적도록 한다. 반성문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래도 몰래 PMP, MP3를 비교육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시간 동안 사용 불가하도록 담당 교사가 관리하고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이 끝나면 되돌려 주면서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휴대전화, 사진기, 음악재생기(MP3) 등에 대한 합당한 이용 규정을 제정한다.
7. 담임이나 담당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외출이나 조퇴를 한 경우, 일단 학생이 학교에 없음을 부모나 담임선생님에게 알리고 학생이 무슨 사유로 귀가나 학교 밖을 나갔는지를 알아본다. 학생이 부모와 함께 있을 경우, 학생을 잘 타이른 후 시간이 되면 학교로 보내도록 한다.</td></tr>
<tr><td>4. 딴 짓하기</td><td>1. 체벌
2. 얼차려
– 엎드려뻗치기</td></tr>
<tr><td>5. PMP로 영화보기, MP3로 음악듣기</td><td>1. 체벌
2. 얼차려
3. PMP, MP3 압수</td></tr>
<tr><td>6. 떠드는 행위</td><td>1. 체벌
2. 얼차려
– 엎드려뻗치기
– 매미
3. 단체 기합</td></tr>
<tr><td>7. 무단 외출, 조퇴</td><td>1. 체벌
2. 얼차려
– 엎드려뻗치기
– 매미</td></tr>
<tr><td>시험</td><td>1. 부정행위
– 다른 학생의 답보기
– 다른 학생에게 답 가르쳐 주기
– 전자기기 이용하기
2. 성적게시</td><td>1. 체벌
2. 얼차려
3. 부적절한 언어 사용
4. 비하
5. 바닥에 엎드려 반진술서 쓰기</td><td>1. 부정행위를 했다고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2.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학교규정에 의해 조치하되, 계속 교육을 위해 신중하게 처리한다.
3. 성적을 게시하여 다른 학생이 나의 점수까지 알게 하는 것은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이므로 주의해야만 한다. 교과나 담임선생님은 한 학생씩 불러 자기 점수를 확인하게 한 후, 사인을 받는다. 반장을 통해 점수 확인 후 사인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td></tr>
</table>

영역	세부 내용	반인권적 지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
복지		1.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이나 건물의 으슥한 곳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방치하는 것 2. 겨울에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음 3. 교복선택의 폭이 좁음 4. 급식 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지 않음 5. 고민을 상담할 교사가 없음 6. 처벌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는 것 7. 학생의 신체 발달에 따른 책걸상 보급 미흡 8. 사물함의 크기가 작고 협소함 9.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하는 것 10. 화장실에 생리대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11. 보건실 안에 남, 녀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것 12. 여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개수가 남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대소변기 개수에 비해 적다. 13. 장애 학생이 이용하기 불편한 경사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아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14.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에서 편히 쉬거나 뛰	1. 학교시설 배치계획 수립 시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시설이 설치되도록 의무화한다. 2. 겨울 난방비에 급탕비 사용료를 학교 예산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온수가 나오도록 시설을 완비한다. 3. 교복 패션이 10년이 넘어도 변화되지 않은 채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시대감각에도 맞지 않은 것을 계속 입게 하는 것은 교복 선택을 강제하는 것임으로 교복의 형태가 변경되고 학교에 대한 정체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 교복제정(변경)위원회를 구성하여 10년 주기로 교복의 패션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급식 메뉴 선정 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급식메뉴 선정회의’를 의무화하여 균형 잡히고 맛있는 급식이 되도록 한다. 5.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거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을 상담실에 배치하여 학생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인사 조직 시 반영한다. 6. 학생 사안을 조사하는 ‘학생 조사실’이라는 특별실을 마련하여 이곳에서 담당선생님이 학생을 조사하도록 하여 학생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이 위협에 의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담당교사는 조사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여 차후 발생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변론 자료로 활용케 한다. 7. 책걸상을 학생 신체 발달에 맞게 보급한다.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에게 고정적인 책걸상을 보급하여 신체의 변형이나 발달을 지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사물함의 크기가 작고 협소하여 책가방의 무게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학생 사물함의 크기는 최소한 W300×D400×H385 9.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육 활동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가난이 잘못이 아니라, 가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일이 부끄러운 일임을 가르친다.

영역	세부 내용	반인권적 지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
복지		어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10. 여자 화장실 입구에 생리대 판매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11. 보건실 내를 남, 녀 공간을 분리하여 여학생과 관련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2. 신체적인 면을 고려하여 여학생의 변기를 늘린다. – 학교 화장실 설치 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설계한다. 13. 장애 학생에 대해 적합한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 부적합할 경우 개·보수한다. 14. 실내·외 유휴 공간을 학생들의 쉼터로 만들어 편안한 휴식을 보장한다.
자치		1.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 자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학교 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3.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의 권리가 없는 것 4. 학생 자치를 위해 배정되어 있는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 5. 동아리의 활동내용이 설립취지와 관계없는 활동을 하는 것	1. 학교 신축 시 자치활동 공간과 홍보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 학생 대표의 입후보 자격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29]. 3. 동아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신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30]. 4. 교육과정에 보장된 자치 시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을 이유가 있을 시 공지하여 수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대체 시간을 확보한다[31]. 5. 설립된 동아리는 학교 운영에 명백한 위험을 주지 않는 한, 설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32].
인격		1. 가방, 사물함, 책상 서랍, 등 개인 공간을 뒤지거나 검사하는 것 2. 학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소지품검사를 몰래 실시하거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불시에 무차별적으로 검사하는 것	1. 가방, 책상서랍, 사물함 등을 사적 공간으로서 존중한다. 2.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의 소지품이나 개인 공간을 검사할 수 있다[33]. 3. 소지한 물품을 압수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34]. 4. 외모에 대한 규제나 낙인, 비하나 혐오 발언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외모는 선천적인 것이므

영역	세부 내용	반인권적 지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
인격		3. 소지품 검사에서 나온 물건을 타인에게 공개하면서 수치심을 주는 것 4. 외모로 인한 놀림이나 차별 5.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허용하고 바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 6. 무리하게 순결 교육을 강요하거나 특정 성경험을 여학생의 성관념 문제로 몰아 교육하는 것 7. 건의함을 설치하고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의견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8. 학생이 수용하지 않는데도 학생을 껴안거나 신체에 손을 대는 것 9. 흡연 단속 등을 이유로 강제로 검진 행위를 하거나 금연침 등을 강제로 시술하는 것 10.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 11. 교복 착용 사 양말, 속옷 색깔, 구두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 12. 학생이 쓰거나 받은 편지, 쪽지, 다이어리 등을 열어보거나 공개하는 것 13. 학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소지품 검사를 몰래 실시하거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불시에 검사를 하는	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점에 따라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다르므로 고정 관념에 의해 사람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 5. 양성평등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과 복장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6. 학생 성교육 이수 시간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미 이행한 학교에 대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7. 학생의 건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한다.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민원처리지침에 의거하여 답변을 한다.) 8. 성폭력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한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비록 좋은 동기로 학생의 몸을 접촉하더라도 학생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처신한다. 9. 학생의 자발적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몸을 강제로 검진하거나 의료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35]. 10.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학생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연령과 체력, 건강 상태 등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36]. 11. 교육 활동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개인의 취향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12.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일기장을 검사하거나 검사 후 포상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므로 지양하고 상담편지 나누기, 생활문 쓰기 등 교육 목표의 성취와 사생활의 권리 보호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3.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만, 전체 학생을 비행(문제) 학생으로 예단하여 개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37]. 14. 조사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나타나는 데도

영역	세부 내용	반인권적 지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안
인격		것 14. 학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조사하지 않고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혐의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 15. 학대를 받는 학생에 대해 동료 학생들의 놀림이나 따돌림, 폭력 등이 이루어지는데도 방치하는 것	조사 과정에서 혐의 학생으로 인정하여 공개재판 형태를 취하는 것은 학생을 공포 분위기 속에서 조사하는 것이므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 학생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5. 학대받는 학생이 놀림이나 따돌림, 폭력 등으로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담임선생님과 관계 선생님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38]. 16. 학생의 문제로 학부모가 내방할 경우, 상담실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과		1. 학생 교과 선택권의 제한 2. 보충수업 시간에 정규수업 진도를 나가는 경우 3. 방과후 교육이나 보충수업을 개설 시 특정 과목 수강을 강요하거나 다양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	1. 도교육청과 학교 선택으로 되어 있는 교과 선택권을 교원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중심 선택권으로 확대한다. 2. 보충수업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므로 참가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진도 나가기 등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3. 선택과목 개설 전에 학생의 선호도 파악, 선택과목의 수 확대, 다양한 강사진 구성을 통해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한다.
하교	실외화 신고 교실 및 복도 걷기	1. 체벌 2. 얼차려 3. 부적절한 언어 사용 4. 비하 5. 바닥에 엎드려 반진술서 쓰기	1. 실외화를 신고 간 이유를 말할 기회를 제공하며,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 등을 설명하여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계도하고 '청결'과 '불결'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게 한다. 2. 상습적으로 실외화를 신고 실내 생활을 할 경우, 벌점을 부여한다.
	흡연 및 싸움	1. 체벌 2. 얼차려 3. 부적절한 언어 사용 4. 비하 5. 바닥에 엎드려 반진술서 쓰기	1. 흡연은 학생의 건강에 해롭고 경제적 손실도 있는 만큼, 금연하도록 지도하고 심한 경우 학부모를 통해 금연 교실에 의한 금연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도록 한다. 2. 학생 간에 싸움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방해하고 힘에 의한 질서를 옹호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싸움을 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Ⅶ. 맺는 말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수긍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들 간에 입장은 다르다. 학생은 더욱 학생다워야 하고, 선생님은

8) 진영종 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2007, 111쪽
9) 송승훈, 체벌을 대신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1999, 참조
10) 위 자료 참조
11) 위 자료 참조
12)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제는 안아줄 때입니다, 2009, 동영상 참조
13)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2009), 11-13쪽
14) 송승훈, 체벌을 대신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1999, 자료 참조
15) 위 자료 참조
16) 위 자료 참조
17) 위 자료 참조
18) 위 자료 참조
19) 위 자료 참조
20) 위 자료 참조
21) 광주광역시교육청(2009), 동영상 참조
22) 진영종 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2007, 79쪽.
23) 권재원, 청소년의 학교 수업 몰입에 영향을 주는 교사 특성에 대한 연구-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즐겁게 혹은 지루하게 만드나?,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2008, 168쪽.
24) 송승훈(1999) 자료 참조
25) 송승훈(1999) 자료 참조
26) 진영종 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2007, 121쪽
27) 위 책, 67쪽
28)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실천방안자료집, 2009, 260쪽
29) 진영종 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2007, 82쪽
30) 위 책, 84쪽
31) 위 책, 82쪽
32) 위 책, 84쪽
33) 위 책, 96-97쪽
34) 위 책, 97쪽
35) 위 책, 87쪽
36) 위 책, 87쪽
37) 위 책, 97쪽
38) 위 책, 119쪽

더욱 선생님다워야 하며, 학부모는 더욱 학부모다워야 하고, 교육당국은 더욱 교육당국다운 면모를 가진다면 학교는 더욱 살 만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가르치며 미래의 꿈을 영글게 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이런 낭만을 꿈꿀 정도로 낭만적이지 않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감당할 만한 교육을 뛰어넘는 초인간적인 교육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한 반에 4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숨쉬기에도 부족한 좁은 공간에서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환경이 반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고 이 속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영혼이 조금씩 시들고 쭈그러져 폭력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세뇌시키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는 영영 불가한 것인가?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는가? 이대로 학생과 선생님들의 영혼이 시들도록 내버려두어도 좋은가? 라는 우문(愚問)에 답해야 한다는 내면의 저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양심'의 지시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루의 버거운 학습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학생의 일과를 추적하면서 학교가 반인권적인 상황 속에 구조적으로 놓여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런 반인권적인 상황의 '역설'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와 당위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은 대부분 반인권적인 교과 지도와 학생 지도에 관한 것으로 인권 친화적 교과 지도나 학생 지도를 찾기가 어려워 반인권적 교과 지도와 학생 지도의 어느 장면에서 구조적으로 반인권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인권 친화적 개념은 반인권적 개념의 역(逆) 개념을 추론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인권 친화적이라 함은 "인권을 친구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인권에 대한 친숙한 분위기가 늘 스며들어 따뜻한 인간관계가 유지되도록"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접할 때,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따뜻한 마음이 교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 친화적 기준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에서 제시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참고하였다. 현재의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근거로 하여 12개의 학생 권리를 추출한 후, 이것에 근거한 인권 친화

적 학교 문화 기준 8개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을 반인권적인 현재의 학교 문화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로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매뉴얼을 만들어 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학생과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의 반인권적 지도를 극복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비록 초보적이고 보편적인 지도 방안은 아니더라도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먼저 이것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출발한 것이다.

연구의 아쉬운 점은

첫째, 여러 연구자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접근했으나, 중도에 탈락하여 다양한 학교 환경에 대입하여 그 결과를 추출하지 못한 점이다.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학급 수, 학교인원, 남녀 학생의 비율, 남녀교사의 비율, 학교 관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 학교 인권 교육 실태, 학부모들의 인권 의식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인권 친화적 교육 방안도 다르게 해석되거나 산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 문헌과 연구자의 개인적인 교육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보편적인 교육 방안이 되기에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셋째,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한 것을 토론해서 알찬 교육적 경험을 제시해 주지 못한 점이다. 이 부분은 다음 연구자들과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활동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학교가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기를 기대하며, 신 새벽을 가르며 배움의 터를 향해 전진하는 학생들의 힘찬 발걸음이 교문 앞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갈망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실천방안자료집, 2009

권재원,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한국학술정보(주), 2008

진영종 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7

박효정 외, 중등학생 인권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6

이종태 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2005

길은배 외,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청소년위원회, 2005

강승규 외, 즐거운 삶터로서 좋은 학교 만들기 방안 연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4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청소년보호백서-청소년 인권을 중심으로-, 2003

김은경,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학교 체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학위 및 기타 논문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배경내,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송승훈, 체벌을 대신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 1999

정준교, ‘인권지향적 고등학교의 문화적 특성과 학생 청소년들의 창의성 및 복장 변형 행동’,『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제9권 제1호, 141-165, 2002.05

박상준,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법교육과 관련하여,『시민교육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제35권 제1호, 2003.03

동영상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2009), 인권정착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교원연수 동영상-이제는 안아줄 때입니다.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2009년 9월 8일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공모 응모작
일반부분

김지현 / 부산YMCA 시민중계실

금융 채무자의 인권에 관한 고찰

– 대부업 채무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목 차



요 약 ····· 448

제1장 서 론 ····· 450
제1절 문제의 제기 ····· 45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53

제2장 금융 채무자의 권익 침해 양태 ····· 453
제1절 계약체결과정 ····· 454
제2절 계약이행과정 ····· 456
제3절 채권추심과정 ····· 456

제3장 채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조명 ····· 459
제1절 서 설 ····· 459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460
제3절 개별 기본권의 침해여부 검토 ····· 462
제4절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 ····· 470

제4장 채무자권익 침해방지·구제를 위한 정책 및 법률의 검토 ····· 473
제1절 정책 ····· 473
제2절 관련 법률 ····· 480
제3절 결론 ····· 482

제5장 결론-남겨진 문제들과 제언 ····· 483
제1절 채무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 ····· 483
제2절 채무자의 인권을 위한 제언 ····· 484

참고문헌 ····· 487

요 약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의 사건에서부터 대부업을 운영하는 조직폭력집단의 협박에 못이겨 자살한 영세상인의 사건까지 최근 대부업자의 횡포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자도 대부업에 의해 피해를 입는 자도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정확한 정보 없이 불리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채권의 형성과정, 성매매나 불법적 방법이 강요되는 채권의 이행과정, 그리고 협박과 폭력이 동원되는 계약 추심과정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의 지위는 위태롭기만 하다.

하지만 대부업의 횡포가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사회적 약자나 인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채무자 역시도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채무자가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규정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대부업자의 잦은 협박과 독촉전화는 채무자의 인격을 모욕할 뿐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으며, 잦은 방문이나 독촉장 발송은 채무자의 주거의 자유와 명예권 까지도 앗아가고 있다.

물론 대부업의 횡포가 극심해 질수록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법률도 마련되고 있다. 최근 2009년 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산발적인 규정들을 통합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여러 유관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어 종합적인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을 내어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단지 경제적인 목적이나 사회질서유지의 관점으로 접근되어서는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 즉 궁극적으로 채무자는 사회의 약자로 볼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관점에서의 정책이나 법률의 도입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에 정책 수행과 법률의 실현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채무자는 피해 의식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인 인권 주체로서의 의식을 가

지고 대부업에 대응하여야 하며, 대부업자는 자신이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각성하고 내부적인 반성과 자율 규제가 필요하며, 정부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채무자에게 적극적인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사적자치의 원칙의 한계와 채무자의 인권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 채무관계는 사적자치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있기 마련이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본주의의 근본 메커니즘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채무의 성실한 이행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마땅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금전채무의 경우에 채무를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즉 채무자를 인권 침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나 채무자의 인권 문제는 단지 사적자치의 영역에 맞겨 두기에는 침해의 범위와 정도가 너무 광범위하다. 2008년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사금융시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전체국민의 5.4%인 189만 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1], 경찰의 강경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사금융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거나, 추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박이나 폭행 혹은 매춘까지도 동원되는 경우가 있어서 채무자의 지위는 위태롭기만 하다.

최근에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부녀를 죽음에 까지 몰고 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인터넷 창업을 목적으로 모 여대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그런 후에도 빚이 남자 아버지에게 딸의 윤락행위를 알리면서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였다. 결국 사채업자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추심행위는 채무자의 아버지가 딸을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목을 메어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였다.[3] 이 사건은 사회에 사채업자의 잔혹함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경찰과 금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부녀 살인

1)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8.6.3., 2면

2) '불법 사금융 범죄 급증-올해 1만 4천건', 연합뉴스, 2009.10.9.

3) '부녀 죽음 내몬 악덕 사채업자 잡았다.', 서울신문, 2009.4.10., 8면

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은 극단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채무자라는 존재는 사회적인 약자이며, 자본주의의 사적자치원칙이라는 큰 정당성의 틀에 갖혀 약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2. 채무자의 사금융 이용원인

채무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자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 채무자의 잘못라고 돌리기에는 생계의 위협으로 인한 대출의 경우가 너무 많으며, 채무자의 해이라고 탓하기에는 고이자율의 벽이 너무 높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사금융을 이용하는 원인 중 1순위는 생활비였고, 2순위는 사업자금이었다.[4] 즉 채무자가 책임감 없이 금원을 대출하여 낭비를 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현실의 급박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면 이들이 채무를 지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단순히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들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문제의 제기 및 논문의 구성

인권문제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던 장애인, 여성, 근로자 등의 소수자 문제는 아직 사회 곳곳에 시정되어야 할 곳이 남아 있다고 하나,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고, 그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인권문제는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되는 것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시각에서의 침해 구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성경에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는 말이 있다[5]. 신분제나 노예제는 역사 속으

4) 09년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9.8.7., 10면, 본고 5면의 그림 1 참조

5) 잠언 22장 7절

로 자취를 감추었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채무의 늪이나 채권자의 과도하고 비인권적인 채권추심 등은 현대판 신분제의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채무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다양한 양태를 살펴본 뒤(제2장), 채무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헌법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제3장). 그런 다음 채무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이나 법률 등을 검토해 본 뒤(제4장), 이를 바탕으로 남겨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을 하려 한다(제5장).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현재 채무자의 인권을 다룬 연구 논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본적으로 검토하였다. 채무자의 현황에 대해서는 개인 연구자의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조사결과나 보도자료를 활용·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사금융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기사들을 수집·발췌하였을 뿐 아니라 필자가 2008년부터 부산 YMCA 시민중계실 개인회생·파산 상담팀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상담 내역도 기관의 양해를 얻어 소개 하였다.[6)]

금융 채무자의 인권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사금융이나 대부업으로 인한 불법 추심 외에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비롯한 강제집행 제도나, 신용조회업이나 신용정보업에 관한 규정 등도 채무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영역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채무자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만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즉 계약의 형성과정, 계약의 이행과정, 계약의 추심 과정에 한정하여 채무자의 인권과 침해상황을 검토하였다.

한편 금융채무자에는 제도 금융권의 채무자도 있지만 인권침해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대부업과의 관계에서 이므로 제3금융권인 대부업 등 사금융 채무자의 인권을 주로 다루었음을 밝혀 둔다.[7)]

제2장 금융 채무자의 권익 침해 양태

최근 2009년도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피해상담센터의 상담현황을 분석해 보면, 현재의 사금융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상담

6) 실제 사례를 익명으로 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의 수정을 거쳤음을 밝혀 둔다.

7) 1금융권(banking sector)은 은행으로 시중, 지방, 특수은행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까지 포함된다. 제2금융권(non-banking sector)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통칭하는 것으로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제3금융권은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사채업 등을 일컫는다.

횟수가 2006년도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있고 2009년도에는 정점에 이르고 있다.[8] 이는 상담 제도의 홍보 및 활용이 원활하다는 의미와 동시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많이 노출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보면 고금리와 불법추심으로 인한 것이 대표적이며 2009년의 경우 두가지의 상담이 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채무자가 입게 되는 이러한 피해들을 계약의 과정에 따라 나누어 고찰해 보려 한다.

〈표 1〉 2009년 금융감독원 사금융 센터 상담현황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상반기	합 계
									상반기		
고 금 리	949	889	1,126	872	479	387	576	605	**321**	**493** (19%)	6,376 (22%)
불법추심	187	489	760	551	374	295	450	679	**320**	**425** (16%)	4,210 (14%)
등록·광고	214	505	151	7	483	254	244	360	**191**	**145** (6%)	2,363 (8%)
중개수수료	31	114	51	9	73	69	156	272	**122**	**111** (4%)	886 (3%)
기타부당[1]	350	405	240	410	484	510	348	313	**142**	**245** (9%)	3,305 (11%)
단순상담[2]	1,534	1,220	856	1,049	1,334	1,551	1,647	1,846	**966**	**1,215** (46%)	12,252 (42%)
합계 (A)	**3,265**	3,622	3,184	2,898	3,227	3,066	3,421	4,075	**2,062**	**2,634** (100%)	29,392 (100%)
수사기관통보(B)	591	312	206	359	148	39	57	81	**16**	**69**	1,974
통보율(B/A)	18%	8%	6%	12%	5%	1%	2%	2%	**1%**	**3%**	7%

<출처 : 금융위원회>

제1절 계약체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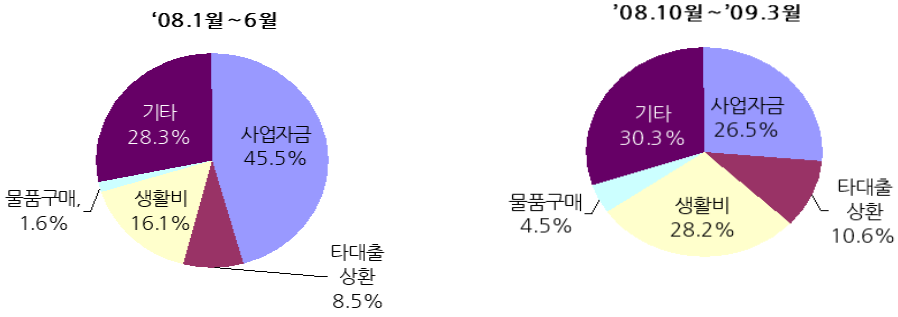
계약체결과정에서 사금융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9]는 주로 대부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데 먼저 부당하게 높은 이율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금융 채무자는 주로 가계생활자금에 사용할 용도로 대출을 하게 되고, 대다수는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금융을 이용한다.[10] 즉 채무자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으

8) 2008년 10월 8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08년 상반기 중 상담건수가 2,062건으로 전년 상반기(1,776건) 대비 16.1% 증가하였다고 한다.

9) 정찬우,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7,6., 목차 9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부터 대부업체 이용자 및 보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규정이 없다.

므로 불가피하게 채권자가 제시하는 높은 이율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고금리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로 맺은 대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채무자가 임의로 충당하였을 때에는 원본에 충당된다(이자제한법 제2항, 제3항).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규제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악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무지한 저학력자나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향까지 보인다.[11)]

그 밖의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로는 (ㄱ) 주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신용도에 대한 조사가 없이 간이하게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부족으로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ㄴ) 먼저 돈을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 후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변칙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ㄷ) 대부업자가 계약의 내용, 특히 구체적인 이자율, 이자산정방식에 대해 고지하기를 회피하므로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고지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12)]



<출처 : 금융위원회>

그림 1 대출형태에 따른 비율조사

10) 정찬우,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7,6., 24면 그림 10,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대출이 안될 것 같아서가 33%로 가장 많았고, 연체기록이 29%로 뒤따랐다. 09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8.7., 9면, 사금융 대출 형태로 생활비가 28.2%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이 26.5%로 뒤를 이었다.

1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접수된 사금융 피해상담사례 9,667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자가 55%, 남자가 45%의 비율을 보임을 밝혔다.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법채권 추심 등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12) 정찬우, 대부업제도개선 및 금융소외계층지원방안, 2007.6. 참조

제2절 계약이행과정

채무자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는 채권자로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이행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속칭 카드깡[13]으로 변제를 강요받거나 장기매매나 매춘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제를 할 것을 강요받는 것이다[14]. 최근 문제되었던 부녀살인사건에서 대부업자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모 여대생이 매춘의 방법을 택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또한 이행 과정이 불투명한 것 또한 문제이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로 변제금을 고율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면서도 원금과 이자의 잔액을 명시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하는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충당되는지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울며겨자먹기로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제3절 채권추심과정

채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권 추심과정이다. 사금융이나 대부업자를 통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행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채무는 채권사에서 채권추심회사에 위임 ·양도하여 채권추심회사에 의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법률로 금지하는 주요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였으나 통상 불법추심행위는 단순히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15]

---

13) 카드깡이란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불법행위이다.

1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다.

15) 이천현·김지영·임정호, 불법채권추심행위, 수사연구 통권308호, 2009.6., 28면

〈표 2〉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과 관련 규정

불법 채권 추심행위 유형		공정추심법	여전감독규정 (제24조의 8)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체포·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제9조 제1호	제1항 제1호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9조 제4호	제1항 제3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행위		제9조 제2호	제1항 제2호
다음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제1항 제7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제9조 제2호	–
	정당한 사유없이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제9조 제3호	–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제9조 제5호	–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9조 제6호	–
채무자가 결재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하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	제1항 제5호
심야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	제1항 제6호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

폭행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적인 행위를 말하며,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16] 실제로 채권추심과정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이 협박인데, 채무사실을 공표하겠다고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가족에게 해악을 입힐 것을 고지하는 등이 주요 유형이다.[17]

16) 이천현·김지영·임정호, 앞의 논문, 28면

17) '당신 부모한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빚 갚아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빚 빨리 안갚으면평생 후회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계약을 사용하는 행위이며 주로 법원·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위력의 사용이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한다든지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충분한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등이다.[18)]

2. 과도한 전화 독촉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입는 것은 과도한 전화독촉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전화는 생활과 밀착된 수단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전화나 야간에 전화하는 것은 채무자가 위축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 쉽다. 대법원은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회(48일간 460여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19)]

3.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이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모범기준에 의하면 허용되는 방문횟수는 주2회 이내이며 오후 9시에서 오전 8시 사이의 방문은 부적절한 야간 방문이 된다.[20)]

게 해주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것,'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다니게 하겠다', '아이들 등·하교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것 등이 협박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업무 모범기준, 금융감독원, 2006, 7면

18) 이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 제6항 제4호).

19) 이천현, 김지영, 임정호, 앞의 논문, 30면 각주5),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도8447

20) 이러한 행위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 금지된다.

4. 채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이란 채권자, 원금 채무액, 연체이자, 연체기간, 일부 변제여부 등의 사실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여 변제요구하는 경우이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채무가 있다고 계속해서 채권 추심하는 경우라든지, 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친족이나 지인들에게 부채의 사실을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 외에도 엽서, 팩스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게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부재를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21)]

제3장 채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조명

제1절 서 설

앞서 살펴본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인 대부업자 등에 비해 취약한 지위에 있으며 권익침해의 양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에 대해 인권의 주체나 인권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것인가? 인권의 다른 이름인 헌법상의 기본권에 의하면 채무자의 인권은 어떻게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것인가?

인권선언이나 각 나라의 헌법은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역시 23조[22)]에 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산권의 인권성은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재산권이 다른 기본권 행사의 전제가 됨을 이유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

21) 이 경우 역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 및 제6호에서 금지되는 유형이다.

22)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일반적이다.[23] 채권자의 채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채무자의 인권이 헌법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미주 인권협약 제21조의 재산권 규정중 제3호에 보면 「고리대금 및 기타 영태의 사람에 대한 착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24]」라고 규정하여 채무자를 고리대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인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의 경우 채무자의 명예나, 생명 신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의 인권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헌법에 채무자의 인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주인권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인권이 논의될 여지는 있다. 또한 대부업자 등 채권사의 불합리한 대우로 채무자가 겪게 되는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나 극심한 혼란과 좌절감, 무력감 등의 피해는 헌법 제10조[25]에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을 강화시킨다. 포괄적인 채무자의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본권 각칙의 명예권이라든지 사생활의 자유, 주거권, 신체의 자유 등은 채무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 틀림없다. 아래에서는 헌법 기본권[26] 각 조항에 따를 때 채무자의 지위가 어떤지 살펴보고 침해여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은 역사적으로 그 성립과정을 살펴볼 때 국가나 공권력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권으로 형성되었다. 즉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헌법과는 별도의 사적자치와 계약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의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

2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116-117면 참조

24) Article 21.3. Usury and any other form of exploitation of man by man shall be prohibited by law.

25)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환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6)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이고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같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므로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기로 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2009년, 285면 참조

기본권은 사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27)]

그러나 기본권이 본래 대 국가적 방어권이었다는 이유로 대 사인적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만은 없다. 종전에는 주로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의 위협 하에 있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이제는 국가기관 만이 아니라 사적 단체나 조직체 그리고 사인에 의하여 위협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28)29)]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기업체의 퇴직 내규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을 차별하는 등 기업에 의해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이다.[30)] 현재 우리나라 학설의 경향은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31)]

채무자의 기본권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주로 채권자나 금융회사, 대부업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본권은 기본권의 대 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효력 보다는 대사인적인 효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가 아닐지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32)] 이하에서는 채권자나 대부업자에 의해 침해되는 채무자의 개별 기본권을 검토해 본다.[33)]

---

27) 계희열, 헌법학(중) 신정2판, 박영사, 2007년, 87면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9년, 324-325면

29) 인권위원회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01.11.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상담건 4만여건 중에 사인간의 침해는 334건이다. 이는 침해와 차별에 속하지 않은 기타 항목에 속하며, 기타 항목의 1800건 중에 법령·제도개선(470건)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30) 계희열, 앞의 책, 87면 주 15) 참조

31) 권영성, 앞의 책, 329면; 계희열, 앞의 책, 99면;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4판, 박영사, 2008년, 258면-100면

32)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과 달리 사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체인 대부업체 측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규제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3) 채무자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그러한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공권력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되어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구할 수 있다.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이 존재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동법 제41조)도 제기할 수 있다.

제3절 개별 기본권의 침해여부 검토

1.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

A씨(30대, 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차에 핸드폰 문자로, 손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오자 전화를 하였다. 그 대부업체에서는 통화하고 있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동의만 한다면 곧바로 입금을 해 주겠으며 계약서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낸 것에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A씨는 급한 마음에 동의를 하였고, 곧바로 갚으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다. 대부업체는 그 후 계약서를 보내왔으나 산정기준이 모호하고 어려워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A씨가 전화로 문의하여도 서명하여 반송할 것을 강요할 뿐 정확한 내용에 대해 고지해 주지 않았다. 이에 A씨가 계약을 해제하려 하였으나, A씨에게 어려운 산정기준을 들먹이며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일시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34]

B씨(20대, 여)는 빚이 많고 신용도가 낮아 더 이상 제도 금융권의 대출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대출과정에서 대부업체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대부업체는 인감증명서 등을 유용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원을 통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B씨는 빌리지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35]

우리 헌법은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론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이에 포함된다.[36] 특히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데, 계약의 자유란 계약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34) 부산 YMCA 시민중계실 개인회생·파산 상담내역, 2009년 2월

35) 부산 YMCA 시민중계실 일반상담내역, 2009년 4월

36) 허영, 앞의 책, 324면; 헌재결 1998.5.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549면),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계약의 자유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하므로, 계약의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헌재결 2003.5.15. 2001헌바98, 헌재공보 81,475(480면), 사적자치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인데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의 자유로 나타난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37]

제2장에서 설명한 피해 유형과 A와 B의 사례의 경우에서 볼 때 궁박한 상황에 있는 채무자는 채권자인 대부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과 해제가 자유롭지 않으며, 대부업체의 일방적인 강요나 요구가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주지하거나 고지받기도 상당히 어렵다. 이는 채무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일종인 계약의 자유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온다고 판단된다.

2. 명예권

> 서울에 사는 C씨는 08년 11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대부업자는 C씨가 제직하고 있는 회사로 수차례 추심전화를 하는 등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추심을 하여 C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으며,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38]

인격권이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부정설은 우리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인격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여 인격권을 긍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39] 이러한 인격권의 내용에 명예권이 포함된다[40]. 즉 모든 국민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명예에 대한 침해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채무사실의 공표는 이러한 헌법상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빚이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

37) 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바19

3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9년 상반기 사금융피해센터 상담현황, 2009.8.11., 사금융피해사례-금감원에서 해당업자를 불법 이자수취 및 불법추심행위(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임.

39) 권영성, 앞의 책, 378면, 헌재결 2004.5.27.2003헌가1,2004헌가4(병합)

40) 대법원은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0조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다」(1993.6.22. 92도3160)고 하여 개인의 명예보호가 인격권의 일종임을 밝혔다.

빚이 있다는 사실과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사실을 C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부업자의 독촉이나 추심과정에서 주변의 지인들이 알게 된다면 이는 채무자가 사회에서 형성하고 있는 명예와 채무자의 명예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당한 추심과정에서 부채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으나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라든지, 채무자의 거주지·직장 방문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D씨(60대, 남)는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하였으나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금융회사의 직원이 수차례 방문하여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인근에 있던 성인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여 싸인을 받아갔다.[41]

E씨(40대, 여)는 원래 거주지가 서울이었으나 과도한 빚의 독촉에 못 이겨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E씨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은 추심업자가 자녀들의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것이었다. E씨의 자녀들은 집으로 찾아오는 추심업자들에 의해 이미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고 있고, 채권사로부터 온 우편물 하나에도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었다.[42]

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근대 형법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지만, '불이익한 처우'가 형사법상의 불이익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43]

채권 추심의 과정에서도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41) 부산 YMCA 시민중계실 개인회생·파산 상담내역, 2008년 6월

42) 부산 YMCA 시민중계실 개인회생·파산 상담내역, 2009년 1월

43) 허영, 앞의 책, 358-359면 참조

발생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채무자와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는 경우가 그 것이다. 예컨대 D씨의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아들에게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고, 적법한 보증의 형식이 아닌 채무 상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또한 E씨의 사례에서는 집으로 자주 방문하여 다른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고, 자녀들에게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채권사 직원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에 의한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헌법의 자구해석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침해의 주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이 경우 채권자 역시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노출되는 것이다.

4. 사생활 영역의 자유

> F씨(50대, 여)는 100만원 가량을 대출하여 매달은 정한 기한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갚았으나 채권사 측에서는 이자 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원금과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채권사는 변제기일이 가까워지면 F씨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폭언을 하며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는데 F씨는 그때마다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전화로 일상적인 생활 조차 하기 힘들었다.[4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은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공간적·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도입되게 된 헌법상의 권리이다.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이다.[45]

---

44) 부산 YMCA 시민중계실 개인회생·파산 상담내역, 2008년 12월

45)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9, 450-456면 참조

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ㄱ) 사적 사항(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의 공개, (ㄴ)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ㄷ) 인격적 징표(본인에게 고유한 속성)의 타인에 의한 이용 등 비밀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의 불가침을 그 내용으로 한다.[46] 앞서 소개한 명예권의 사례에서도 문제되었지만, 채무자의 차용사실이나 연체사실이 채권사의 고의적인 누출에 의해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 된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싶어 하며, 채무 사실이 누출되는 것이 명예나 신용의 훼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나.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과 유지·사생활 평온의 불가침-프라이버시권

빈번한 방문이나, 야간의 방문, 과도한 전화 등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 받기에 충분하다. F씨의 경우도 채권사 직원의 잦은 전화와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매달 지급일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었으며, 지급일이 아니라도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다. 자기 정보 관리통제권

채무자가 자신에 관한 권리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열람청구권이 포함 된다.[47]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관련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고 그 정보를 채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은 채무자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용이 하지 않다. F씨의 경우도 간헐적으로 빚을 갚아왔

---

46) 권영성, 앞의 책, 450-451면

47)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3금융권 등 제도 금융권 이외에는 본인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와 이자액, 이자산정내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부채확인서의 발급에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 원금 이상의 금원을 상환하였기에 자신의 채무 잔액 및 이자의 잔액을 알고 싶었으나, 채권사 직원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변제액이 이자로 먼저 상환되기 때문에 아직 잔액과 이자가 남아 있다는 것과, 채무 이행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는 모욕적인 말이었다. 자신이 얼마동안 얼마의 금액을 갚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의 제약이 되는 것이다.

5. 주거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G씨(60세, 남)는 생활고에 못이겨 부채를 지게 되었다. G씨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채권사의 계속되는 추심에 G씨는 결국 주거지를 옮겨야 했고,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숨어서 지낼 수 밖에 없었다.[48]

가.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는 개인에게 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기초적인 생활공간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권리이다.[49] 주거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주거의 불가침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주거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다.[50]

여기서 침해의 의미는 거주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채권 추심을 위하여 과도하게 집에 방문하는 것은 주거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주거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과도한 방문이나 야간에 이루어지는 방문은 채무자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 자유로운 인격의 발

48) 부산 YMCA 시민중계실 개인회생·파산 상담내역, 2009년 7월

49)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성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50) 권영성, 앞의 책, 464면; 계희열, 앞의 책, 413면, 주거의 자유는 전체 법질서의 객관적 요소로서 사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즉 주거의 자유규정은 사인상호간의 관계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적용되며 사인을 구속한다.; 허영, 앞의 책, 377면

현을 위한 기초적인 생활공간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나. 거주이전의 자유

채무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상 규정된 자유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이전하거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옮기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G씨는 과도한 채권추심에 못 이겨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고 급기야 주민등록까지 말소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악덕 대부업자의 경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권자를 회피하여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채권자가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하기도 한다. 이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옮기는 결과가 되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거소를 설정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51]

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최근 부녀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 사건이 문제되었다. 여대생 H씨는 학비와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 사채업자는 여대생이었던 H씨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윤락행위를 해서라도 돈을 갚을 것을 강요했다. H씨는 사채업자의 강요에 못 이겨 유흥업소에 나가 돈을 벌었고, 사채업자는 이 사실을 H의 아버지에게 알려 결국 H의 부가 H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52]

채권 추심의 과정에서 폭력 집단 등을 통한 불법적인 폭력이나 강요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53] 특히 여성의 경우 윤락 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헌법에서

---

5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의해 주거의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의 소제기 등을 통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것으로(민사집행법 제80조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부 기재→경매 공고→경매기일지정→경매·입찰→법원의 경락허가결정→채권자에게 대금지급).

52) '부녀 죽음 내몬 악덕 사채업자 잡았다.', 서울신문, 2009.4.10., 8면

53) '영세상인 자살 몬 살인적 고리'. 부산일보 2009.10.5. 4면, '이들(조직 폭력)은 돈을 갚지 못하는 영세업주들을

규정하고 있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헌법 제37조 1항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규정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54]

7. 일할 권리

> I씨는 친구의 보증 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I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빚을 갚아보려고 일자리를 구하였으나, 번번히 월급이 압류를 당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I씨는 결국 일용직을 전전할 수 밖에 없었고,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55]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제32조 1항 1문), '근로의 권리'란 자신의 일할 능력을 임의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56]

과거 신용불량자제도는 채무자가 신용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직업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 변제 자력을 잃게 되고, 또 다시 채무초과상태를 가지고 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채무자의 일할 권리의 심각한 제한이 되었다. 신용불량자제도가 없어지게 된 현재에도 신용불량자를 대체하는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가 존재하며, 채무불이행자는 여전히 신용

상대로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4월 초 양산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모(37)씨가 협박에 못이겨 스스로 차량에 연탄불을 피워 목숨을 끊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의 협박에 못이겨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4)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12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1992.12.24.)고 판시하였다.

55) 부산 YMCA 시민중계실 개인회생·파산 상담내역, 2009년 5월

56) 허영, 앞의 책, 495면

거래나 할부거래, 금융권 취업에 제약을 받게 된다.

I씨는 월급 압류[57] 등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빚을 갚을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과 무분별한 압류는 채무자의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제4절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

1. 서설

기본권 충돌이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 인권 문제에서도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권자의 재산권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채무자의 인격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채권자의 재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도한 채권 추심을 하거나 독촉을 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인격권 등의 채무자의 기본권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 내지 국가로부터의 자유권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양면성)와 기본권의 구속력이 공권력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주체에도 확장된다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면서 국민들의 상충하는 여러 이해관계가 기본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충돌 역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었다.[58]

기본권 충돌의 해결 이론은 국외법과 국내 헌법상 이론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인격권 등의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헌법 이론에 따라 풀어보려고 한다.

---

57) 강제집행 절차는 본 논문의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채권 추심의 일종으로서 압류를 인권 침해 유형에 포함시켰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류는 불법 채권추심의 일종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58) 홍성방, 앞의 책, 316면

2. 기본권 충돌의 해결 이론

가. 기본권의 서열 이론

기본권의 서열에 따른 해결이란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 중에서 보다 중요하고 보호가치가 큰, 즉 보다 서열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시킨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기본권들 사이의 추상적·고정적 서열(Rangordnung)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59] 이 경우 '인간의 존엄성' 또는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 질서의 가치적인 핵이 다른 모든 기본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6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채무자의 인격권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의 재산권 보다 높은 서열의 기본권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도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경제적 자유에 기초해 채무자의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허용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서열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모든 기본권의 서열을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나. 법익형량의 원칙

법익형량의 원칙이란 복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각 기본권을 인정하였을 때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는 방법이다.[61] 이 이론 역시 앞서 기본권의 서열 이론에서 설명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위계질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이론에 따를 때 채권자의 재산권을 인정하였을 경우의 사회적인 이익과, 채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였을 때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사안에서 기본권의 우열을 가

---

59) 계희열, 앞의 책, 125면

60) 허영, 앞의 책, 265면, [독일판례] 생명권을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시킨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인공임신중절행위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 Vgl.BVerfGE 39, 1(43); 86, 390;88, 203, 이 판결들에서 동 재판소는 임산부의 '개선신장의 자유'보다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적인 효력을 인정하였다. (주 2)에서 재인용); 헌재결 2004.8.26. 2003헌마457, 헌재공보 96, 902(904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 혐연권은 건강권과 생명권에 근거한다는 이유도 밝혔다.

61) 권영성, 앞의 책 340면; 계희열, 앞의 책 126면; 허영, 앞의 책, 264면; 홍성방, 앞의 책, 322면

리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생명권·인격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생명과 인격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은 비생명적·비인격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경제적·정치적·사회적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62] 채무자의 인격권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개별 사안에서 기본권의 법익을 형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하나의 기본권을 우선시하여 다른 기본권의 효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 규범조화적 해석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해결원칙이다.[63] 규범조화적 해석을 위해서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으로는 대안식 해결방법이 있는데 대안을 도출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수혈 뿐인데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금지하여 종교의 자유와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후견법원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안식 해결방법을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본권에 적용해 본다면, 채권자의 재산권의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용인할 수 있는 선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채권 추심이나 독촉을 정형화된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일정시간과 장소에서는 금지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62) 권영성, 앞의 책, 340면; 허영, 앞의 책, 265면

63) 권영성, 앞의 책, 340면 '형평성의 원칙'; 계희열, 앞의 책, '실제적 조화의 원리'; 허영, 앞의 책, 266면; 홍성방, 앞의 책, 324면 '실제적 조화의 원리'; 헌재결 1991.9.16. 89헌마165, 판례집3, 518(529면), 파스퇴르 유업과의 정 정보도청구소송중에 중앙일보사가 정간물 등록법(제16조 제3항과 제19조 제3항)의 위헌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을 조화적인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문제의 법조항은 반론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했다.

라. 검토

기본권 서열이론이나 법익 형량 이론에 의할 때, 인격권은 다른 기본권 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인격권이 채권자의 재산권보다 존중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규범조화적 해석을 따를 때 채권자의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을 제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선에서 추심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 채무자권익 침해방지·구제를 위한 정책 및 법률의 검토

제1절 정책[64]

1. 사전적 예방

가. 대부업 이자제한

(1) 서설

사금융 이용자가 바라는 정부정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적용금리의 인하이다.[65] 이는 고금리의 문제가 사금융의 이용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압박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실제 상담 건수에서도 입증되고 있다.[66] 이에 따라 계속해서 고금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및 금융당국, 국회에서도 고금리를 낮추

64)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 2009.4.28. 참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저 신용층의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사채업자 등의 불법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정부 기관이 최근 2009년 4월 종합적인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사금융 혹은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는 유관 부서들이 많아서 서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정책의 흠결 혹은 중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다.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이 대책마련에 힘을 모은 것은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으로 주장되던 모든 정책 제안 등을 총 망라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65)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앞의 자료, 1면, 이용자가 바라는 정부정책의 1위가 적용금리인하로 29%이다.

66) 09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9.8.7. 참조

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67] 이하에서는 고금리에 관한 현행 규정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본 후 타국의 현행 이자제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또한 고금리 제한 정책의 특성과 그에 따른 헌법적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2) 이자제한관련 법령의 연혁 및 현행규정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되어 최고이자율을 제한하여 폭리행위를 금지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 시기에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에는 민법 104조[68]의 일반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자제한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불법적인 사채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가 등장하였으며, 채권추심과정에서 온갖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여 서민금융 시장에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초래하였다.[69]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2002년 이자제한법을 대신하여 불법적인 사채업자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등록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70]을 제정하였으나 당시 최고 이자율이 연 66%로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이자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어 2007년 이자제한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71]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4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최대 60%로 규정되어 있으며(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의 최고 이자율은 49%까지 가능하다(시행령 제5조 제2항).

결국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된다.

---

67) 고금리 낮아질까...대부업체 전방위 압박, 연합뉴스, 2009.7.20.

68) 민법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69) 한정미,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기업법 연구, 한국기업법학회,제22권 제13호, 2007.12., 123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채시장의 평균이자율을 연 223%에 이르렀고,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80%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폭행·협박 등 사채업자의 일방적 횡포에 시달리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115-116면

70) 정식 명칭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다.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71) 한정미, 앞의 논문, 123면 참조

(3) 고금리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앞서 설명한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법률규정과는 달리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자율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의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규제하는 대차법은 대금업자에 대한 이자상한을 29.2%로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은 원본의 크기에 따라 15~20%이며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금리상한에 대한 일반규정은 없으나,유럽중앙은행(ECB)이 정하는 기준이율에 따른 채권법현대화법에 의할 때 금전채무의 지연이자율은 8.19%, 상인 간의 지연이자율은 11.19%가 된다.

미국은 주별로 금리상한에 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주채무법(General Obligations Law), 주 은행법(The Bangking Law) 등에서 고금리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민사제한이율은 원금에 따라 다르지만 250달러 미만의 대부의 경우 16%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뉴욕주 형법(The Penal Law)은 고금리에 대하여 징역 등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4) 고금리 제한 정책의 특성

고금리를 제한하는 정책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만, 입법론 상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제한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정책적인 검토를 요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금리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대형업체는 금융 당국의 감시를 벗어나서 금리상한 이상의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강화할 것이므로 저 신용자들이 대형업체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소형업체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상한을 초과하는 금리를 부과하는 업체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금리상한이 하향 조정된다면 이윤 확보를 위해 불법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72] 즉 저금리일 경우 대부업체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금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함에는 정책에 따른 득실을 비교형량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금리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의 도입 또한 요구된다. 우선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신용이 충분한 고객은 서민금융활성화를

72) 정찬우, 앞의 논문, 50면 참조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도 금융권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도가 낮은 고객 중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계층은 금리상한수준에서 대부시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부업체에 조달의 길[73]을 넓혀주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대안 금융을 마련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안정망 확충을 통하여 흡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74]

(5) 고금리의 헌법적 고찰

고금리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무조건 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성을 가진다. 하지만 고금리를 방치하는 것 또한 비 인권적인 처사가 될 수 있다. 고금리의 대부업체는 이용자가 대부분 경제적 궁박자나 저신용자이므로 고 금리를 실질적으로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금리의 정책을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를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불이행자의 지위에 놓이게 함과 다름 아니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한편 헌법은 사회보장권의 일종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규정하고 있다. 고금리의 정책은 이러한 헌법의 사회보장적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따라서 금리의 제한에 관한 정책과 아울러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강화

채무자를 미등록 대부업체나 고금리 사채업자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 채무자들을 가능한 한 제도 금융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생활자금의 대출지원을 한다든지[75],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지원하는 것[76],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안 금융

73) 양석승 대부업 협회 회장은 "무작정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하기보다는 조달 비용을 줄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금리 낮아질까..대부업체 전방위 압박 연합뉴스 2009. 07.20.

74) 정찬우, 앞의 논문, 50면 참조

75)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생활자금 대출지원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09.6.).,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앞의 자료, 2면 참조.

76) 은행의 저신용자 정용대출상품 개발·판매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금감원, 4월).,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앞의 자료, 2면 참조.

기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77]은 이러한 노력의 일종이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합법적인 제도권 안의 대출을 통하여 생활비를 조달함으로써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부업법이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78] 등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인식률을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사금융이용자들의 경우 금리제한규정에 대한 인식률 5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법 채권 추심 규제법령에 관한 인식률은 40%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79] 서민들이 사금융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등 관련 규정의 인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서민금융지원 내용이나 사금융 피해예방 및 신고방법 등 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등에서 서민 금융안내 책자 및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서민금융 포털 사이트[80] 등의 활용을 제고하는 것[81] 등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표 3〉 대부업법 인식수준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남성(70%)	여성(30%)
전혀 모름		23%	45%	37%	35%	33%	38%
1개 이상		75%	52%	63%	64%	66%	62%
	1개	18%	13%	24%	21%	22%	19%
	2개	23%	17%	15%	18%	17%	21%
	3개	16%	9%	8%	8%	8%	8%

77)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대출수요에 비해 지원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정찬우, 앞의 논문, 60면

7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의 경우 최근 2009년 2월에 제정되었으나, 불법채권추심 등에 관한 규제 규정 등은 구대부업법에 존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79) 정찬우, 앞의 논문, 31면 참조

80) 대표적 서민금융 포털 사이트로 서민금융 (s119.fss.or.kr),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 등이 있다.

81)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앞의 자료, 5면

4개	18%	12%	16%	17%	19%	14%
무응답	2%	3%	0%	0%	0%	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금융감독원>

라.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체제의 강화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나 관련 인력 등의 미비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다. 대부분의 광역시·도의 대부업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다른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업체 등록·변경 업무 이외에 현장 검사 등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수행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효과적인 지도·감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82]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대부업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한다거나,[83] 단속요령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 후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관리·감독이 실시 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84]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관련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 하겠다.[85]

2. 사후적 구제

가. 불법 사금융 단속강화

사금융으로 인한 불법추심 등을 경찰을 통해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널리 이용되지 않았고 경찰의 단속은 한시적

82) 김대규, 대부업 규제 및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기업 제22권 제3호(통권 제34호), 502면

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및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의 조항에 대부업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과 그 직무범위를 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84) 김대규, 앞의 논문, 502~503면 참조

85) 금감원에서 지자체로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점검 및 상담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마련되어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4면

인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형사적으로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채무가 그대로 잔존하는 것 또한 형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로서 작용하였다. 하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나 고소·고발을 장려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불법 사금융에 적대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권리의식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불거지면서 검찰·경찰·지자체·금감원 등이 불법 사금융행위에 총력 단속을 기울이고 있다.[86] 또한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불법 대부업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 들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끝난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사금융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 상담센터의 운용 및 신용회복제도

상담센터의 확충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를 안내하고 구제를 돕는 것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여 궁박상태로 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은 은행 연합회에 소속된 채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있으나 3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최대 8년 까지 현재 채무액의 원금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개인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거나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되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

86)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앞의 자료, 3면

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새로운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제2절 관련 법률[87]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대부업·대부 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88] 이 법은 지난 외환 위기 이후 고금리 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자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음성적인 사채업자를 '등록'제도를 통하여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그 내용도 대부업 등록, 이자율 제한, 대부중개의 제한, 대부업 광고 규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실상 대부업자에의 적용 범위 확대 등 대부업자들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2009년 1월 21일 전면 개정된 대부업법은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였는다. 등록신청시 등록요건을 강화[89]하고, 대부계약 체결시에 구체적인 내용의 대부계약서[90]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한편 개정 대부업법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87) 이자제한법은 앞서 이자제한에 관한 파트에서 설명하였다. 18-19면 참조, 각 법률의 주요한 내용은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88) 대부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9) 신청서에는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경영하려는 대부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부업의 교육의 이수여부를 등록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부업법 제3조 2항, 3항 참조

90) 대부업자,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계좌이체 방식의 변제인 경우 계좌번호, 해당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6조 1항 참조

를 설립하는 규정을 두어 대부업법을 준수하도록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고, 대부업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을 개선·권고하며 대부업 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1] 이는 대부업법 스스로의 정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자율규제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09년 2월 6일 제정되고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종래 대부업법이나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규정 등에서 산발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법을 제정하면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92], 규제 대상을 대부업체 외에도 채권추심업자나 일반 채권자로 넓혔으며, 위반시 처벌도 강화[93]하였다.[94]

3. 신용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여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추심업의 경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채권추심업무를 했을 때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95]

---

91) 대부업법 제18조의 2~18조의 6참조

92) 본고 앞의 5-7면

93) "내달부터 심야에 빚 독촉 못한다", 연합뉴스, 2009.07.16. 참조

94)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부업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95) 신용정보법 제27조 6항은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

4.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규정

여신 전문 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 신용카드업자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지켜야 할 규정들을 두고 있다. 폭행·협박, 위계·위력,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 심야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등이 금지 유형에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채무자에 대한 권익침해 양태에서 표로 설명하였다.[96]

제3절 결론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는 늘어가고, 불법 대부업이나 불법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나 관련 기관은 다각도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2009년 4월에는 각 기관의 정책을 망라한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들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를 심화한 관련 법률들 또한 제·개정되었다. 지금의 제도와 법률은 기존의 논의들을 아우르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에 대해 무지하거나 정책의 테두리에 포함되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존재한다. 관계기관들은 현재 마련된 조치들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기관 상호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갓 도입된 정책과 법률들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이다.

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7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6) 본고 6-7면, 표1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과 관련규정 참조

제5장 결론 – 남겨진 문제들과 제언

제1절 채무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

현재는 채무자의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계약관계에 기초한 법의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기 쉽다. 하지만 채무자도 계약관계에 기초한 당사자이기에 앞서 한 인권의 주체로서 인권 침해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로 접근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인권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대등한 관계로 보기보다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이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마련된 정책이 형식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채무자의 인권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정책이 도입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이 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영세상인이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던 조직 폭력 집단의 협박에 못 이겨 한 영세상인이 자살한 사건은 그 단적인 예이다. 조직폭력 집단은 사무실을 옮기거나 지역 담당을 서로 바꾸는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고, 이들의 협박이나 강요에 못 이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도 수인이라고 한다.[97] 이러한 사건은 법이나 정책이 존재함에도 서민들이 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대부업이나 불법추심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규정은 있으나 대부업자는 그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서민은 그러한 법이나 정책을 모를 뿐 아니라 설혹 알더라도 신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형사절차를 이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채무자를 위한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 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 통로가 마련하는 것과 구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그러한 배려의 일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려 한다.

97) 영세상인 자살 몬 '살인적' 고리, 부산일보, 2009.10.5., 4면

제2절 채무자의 인권을 위한 제언

1. 채무자의 인권의식 함양 및 교육

채무자가 인권침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해결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구제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과 아울러 채무자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채무자는 스스로 인권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사회적 죄인이라는 의식에서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이나 피해의식을 느낀다. 하지만 채무자도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자이기 앞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옹호하고, 침해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2.채무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기존의 채무자 상담센터가 존재하지만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물론 채무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상담기구를 좀 더 마련하고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나 민원안내콜센터 등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것은 해결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과 고발을 받아 가해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기관에 연계해 주는 정도이다. 따라서 상담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사례가 접수되면 이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연결하는 등 채무자는 인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형사적 접근이 어려운 채무자일지라도 상담센터의 접근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상담을 인권 침해 상황에서의 구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따지기 앞서 인권 침해 상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가해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중재(ADR)기구의 확충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은 채권자의 측면에서도 비 효율적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인권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중재해 주는 기구를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인권 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가 아닌 사인에 의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 및 조정도 서로 간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

개별 채무자에게 연체가 시작되게 되면, 변제액이 불어나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채권사에서는 채무를 감면해주더라도 일시불로 갚을 것을 요구한다.

한편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를 조정하여 원금 선에서 분납하여 납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지만, 조정 내용이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도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개별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채권사와 합의를 끌어 낼 수 있는 중재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맹목적인 독촉으로 벗어나 정상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채무자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상담, 중재를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인권센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자적인 기구로 두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고, 보다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들,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 인권위원회, 시민단체나 행정관청 등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4. 대부업자의 자율 규제

대부업자 내부에서도 스스로 인권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규제하고 정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대부업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을 개선·권고, 대부업 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대부업 협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채무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큰 기여가 될 뿐 아니라 사인 간의 기본권 침해에 있어 가장 적합한 해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 채무자 인권에 대한 정책적 배려

채무자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도 기존의 경제적인 관점이나 사회질서 유지의 관점이 아닌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채무자가 사회적 약자임을 인식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책이 도입,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부업이나 채무의 금리를 낮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업이 음성화되는 것을 규제하면서 금리를 낮춘다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채무자의 인권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인권 침해는 주로 채권사인 사인에 의해 이루어지나 이를 방관하고 인권침해 주체에 대한 규제를 게을리 한다면, 이는 곧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동시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책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9년

계희열, 헌법학(중) 신정2판, 박영사, 2007년

박찬운, 인권법, 한울 아카데미, 2008년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3판, 박영사, 2007년

홍성방, 헌법학 개정6판, 현암사, 2009년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년

2. 논문

김대규, 대부업규제 및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22권 제3호, 2008년 9월

김대규, 대부이자의 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5권 3호, 2008년

김상찬·이충은, 고율의 이자약정과 반사회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32호, 2008년 11월

윤부찬, 미국의 이자제한법과 우리에의 시사점, 비교사법, 한국 비교사법학회, 제13권 3호, 2006년

이천현·김지영·임정호, 불법채권 추심행위, 수사연구, 제27권 제6호, 2009년 6월

정찬우, 대부업제도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16권 제6호, 2007년

조상원,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북부검찰실무연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한정미,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22권 제1호, 2008년 3월

3. 보도자료 및 기사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8.6.3.

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8.12.22.

‘부녀 죽음 내몬 악덕 사채업자 잡았다.’, 서울신문, 2009.4.10., 8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금융위원회 외, 2009.4.28.

8월부터 개정안 시행, 세계일보, 2009.7.17.

고금리 낮아질까...대부업체 전방위 압박, 연합뉴스, 2009.7.20.

09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9.8.7.

영세상인 자살 몬 ‘살인적’ 고리, 부산일보, 2009.10.5.

‘불법 사금융 범죄 급증-올해 1만 4천건’, 연합뉴스, 2009.10.9.